발 간 등 록 번 호
57-3720018-000001-11

議政白書

제 7 집 [제4대 후반기]

蔚山廣域市北區議會

제 7 집

議政白書

-제4대 후반기-

(2008. 7. 1 ~ 2010. 6. 30)

蔚山廣域市 北區議會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북구의 상징

마크

녹색부분 산, 육지 – 자연
파랑부분 바다 – 자연
주황색원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공단
의미 전체적으로 산과 바다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연과 산업 중 어느 한곳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지역발전의 모습을 의미.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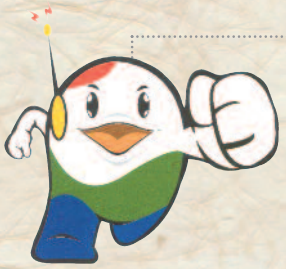

컨 셉 든든한 북구, 달리는 북구, 아이디어 북구
형 태 돌고래
의 미 강한 생명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젊고 높은 지능의 돌고래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반짝이는 아이디어, 새로운 탄생,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

상징물

구화 | 참나리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북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구목 | 느티나무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서 북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북구의 희망을 상징함.

구조 | 산까치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북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발간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안 승 찬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제5대 북구의회가 구민의 염원을 가득안고 새롭게 출발한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의 근간인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저희 의원들로서는 선배의원님들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더욱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제4대 후반기 2년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기록한『의정백서 제7집』발간이 이러한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지역의 중요한 역사문헌이라 생각하며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으며, 완벽한 자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제5대 북구의회는 선배의원님들이 일구어온 지방자치의 기틀을 이어받아 한층더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주민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싶은 북구, 주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북구, 나아가 타지역 주민이 이사오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비전있는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제시,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자료수집과 편찬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8만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써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정립하는데 소중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축 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 종 오

자랑스런운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북구의회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의회 제4대『의정백서』가 발간됨을 축하드립니다.

의정백서는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활동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으로 구민에게 좀더 다가가고, 구민들이 의회와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구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 고견은 물론 견제와 조정으로 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고유업무인 조례 제·개정, 정례회 등을 비롯하여 각 지역구의 쏟아지는 민원에 대하여 밤낮없이 주민과 함께해야 하며, 철저한 연찬을 하지 않으면 구민들의 민원욕구에 부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제5대 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어느 의회보다도 상호신뢰를 갖고 정당간 협력하는 모습들이 북구 미래의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500여 공무원들은『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하여 무엇보다 의회를 존중하고 북구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보완하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구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북구의회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제4대 북구의회『의정백서』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0. 12.

축 사

국회의원
조 승 수

18만 북구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북구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셨던 제4대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4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의정백서』발간을 18만 북구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 ·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북구가 자연과 환경, 주민이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8만 북구주민들의 자부심과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주민을 비롯해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제4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은 지난 4년 우리 북구가 어떻게 성장 · 발전해 왔는지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5기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의 축소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 만성적인 재정난 등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주민참여의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 지속발전 가능한 북구, 더불어 사는 희망의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북구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의정백서가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 사무과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12.

제4대 북구의회의원일람

의 장 단

(재임기간 : 2008. 7. 3 ~ 2010. 6. 30)

의 장	부의장	부의장
윤 임 지	문 석 주 (임기 : 2008. 7. 3 ~ 2010. 4. 21)	류 인 목 (임기 : 2010. 4. 22 ~ 2010. 6. 30)

제4대 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원구성(2008. 7. 3)

제4대 북구의회의원일람

第4代 議員現況

(임기 2006. 7. 1 ~ 2010. 6. 30)

選擧區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
가 선거구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尹 任 志	■ 學 歷 – 강동초등학교 졸업 – 강동중학교 졸업 – 울산공업고등학교 졸업 ■ 經 歷 – 민주자유당 제14대 대통령선거 중앙대책위지도위원 역임 – 제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울산북구 지구당선거대책위 부위원장 역임 – 경상남도 농민후계자연합회 감사2선 역임 – 경상남도 울주군 농민후계자 회장 역임 –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역임 – 울산공업고등학교 30회 동기회 회장 역임 – 울산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역임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역임 –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역임 – 현) 울산광역시 새농민회 부회장 – 현) 북구 수산조정위원 – 현)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추진위원 – 현) 북구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현)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173-7 ☎ 295-8833 (E-mail) mi55982@nate.com 017-564-8833
가 선거구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朴 炳 錫	■ 學 歷 – 근덕농업고등학교 졸업 – 방송통신대 농학과 졸업 ■ 經 歷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교육위원 역임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상무 집행위원 역임 –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역임 – 북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 역임 – 현) 북구 행복마을 운영위원장 – 현) 신천초등학교 운영위원 – 현)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자문위원 – 현)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현) 북구 지방재정 심의위원 – 현) 북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58-9 협성노블리스 110동 802호 ☎ 295-8187 http://blog.daum.net/ greenps/ 017-588-1217
나 선거구 농소2동, 농소3동	 文 碩 柱	■ 學 歷 –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 – 대구 미래대학 졸업 ■ 經 歷 – 농소고, 천곡중 운영위원 역임 – 쌍용아진1 · 2 · 3 · 4단지 아파트 연합회장 역임 –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역임 – 현)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현) 북구 아파트 연합회 고문 – 현) 북구 배드민턴 연합 회장 – 현) 천곡초등학교 운영위원 – 현) 북구 지방재정 심의위원 – 현)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 – 현) 북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 – 현)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 연합회 부회장 – 현) 제4대 울산광역시 구 · 군의회 의장협의회 후반기 부회장 – 현)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달천아이파크 107동 2002호 ☎ 298-1937 (E-mail) munsju88@hanmail.net 011-854-1937

第4代 議員現況

(임기 2006. 7. 1 ~ 2010. 6. 30)

選擧區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
나 선거구 농소2동, 농소3동	 李 銀 英	■ 學 歷 – 복산초등학교 졸업 – 학성여자중학교 졸업 – 울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 經 歷 – 울산여성회 부설 북구 가정폭력 상담소장 역임 – 북구 지방재정 심의위원 역임 – 북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 역임 – 현) 농소3동 여성회 회장 – 현) 동천초등학교 운영위원 – 현) 북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현)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위원 – 현) 울산여성회 성교육 강사 – 현) 울산 몰래산타 대표 – 현) 천곡지역 아동센터 대표	(자)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쌍용아진 102동 802호 (E-mail) bukwomen@naver.com 010-6536-1366
다 선거구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柳 在 鍵	■ 學 歷 – 울산고등학교 졸업 – 용인대학교 졸업 –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 經 歷 – 동울산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 역임 – 제2 · 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역임 –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 북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역임 – 북구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역임 – 연암초등학교 운영위원 역임 – 현) 재울용인대학교 동문회장 – 현) 효문동 환경정화위원회 회장 – 현) 효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현) 울산광역시유도회 이사 – 현) 효문동 청소년환경봉사단 단장 – 현) 울산광역시 용무도협회회장 – 현) 북구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현)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사)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북구회장 – 현) 재성종합상사 대표	(자)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80-6 ☎ 288-0203 (사)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32-1 재성종합상사 ☎ 287-5060 (E-mail) 0203rj@hanmail.net 017-558-8931
다 선거구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柳 寅 牧	■ 學 歷 – 학성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졸업 ■ 經 歷 – 현대자동차노동조합판매본부 부본부장 역임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 역임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역임 – 현)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 – 현) 북구 도시녹화 위원 – 현) 북구 문화정책 위원 – 현) 북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 – 현) 북구 생활보장 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64-1 문화아트빌 202 ☎ 287-5644 (사) ☎ 288-8333 (E-mail) ryoo1604@yahoo.co.kr 011-573-1604

제4대 북구의회의원일람

第4代 議員現況

(임기 2006. 7. 1 ~ 2010. 6. 30)

選擧區	姓 名	學歷 및 經歷	住所·電話
비례대표	 李 英 姬	■ 經 歷 – 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상임위원 – 현) 한나라당 북구여성자원봉사회 봉사부장 – 현) 울산광역시 아동협의회 이사 – 현) 한나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 – 현) 북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 현) 북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현) 북구 건강도시 운영위원 – 현) 북구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쌍용아진 101동 1204호 ☎ 295-9369 (E-mail) y93699@hanmail.net 010-8526-6139

MINOLTA
MD ROKKOR
Reminiscence
Reminiscence
Reminiscence

寫眞으로 보는
議政活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06회 제1차 정례회 개회(2008.7.1)

제4대 후반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원구성(2008.7.3)

2008년 행정사무감사 상안어린이공원 현장확인(2008.7.12)

조례입법연구회 운영(2008.7.2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대전시 유성구·원주시의회 방문 자전거도로 벤치마킹(2008.8.12)

북구어르신 행복마을 방문 추석위문품 전달(2008.9.11)

북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심의의결(2008.10.24)

제9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2008.10.2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2회 북구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2008.10.29)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외 3개소 현장확인(2008.11.13)

투병중인 환경미화원 돕기 성금 전달(2008.12.15)

2008년 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보고회 개최(2008.12.2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박맹우 시장과 2009년 신년 간담회(2009.1.9)

제110회 임시회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현장 외 4개소 현장활동
(2009.2.16)

북구 전통시장 방문 현장활동(2009.2.16)

연암동 재활용 선별장 방문, 재활용 선별작업과 애로사항 수렴(2009.2.1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나잠 어업인 탈의장 '우가포 해녀의 집' 준공식(2009.3.11)

제64회 식목일 기념식수(2009.4.10)

1004릴레이 희망의 마라톤 환영식(2009.4.20)

제87회 북구어린이날 큰잔치(2009.5.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의정실무능력향상 특별연수 및 경영수익사업 등 벤치마킹(2009.5.13)

문화유치원 원생방문 현장견학 체험학습(2009.6.2)

중산동 농소화훼작목반 방문, 호접란 모종넓히기 작업 및 애로사항 수렴 (2009.6.4)

송정유치원 원생방문 현장견학 체험학습(2009.6.8)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09년 행정사무감사 농소3동 자전거도로 설치지역 현장확인(2009.7.11)

다문화 이주여성 북구의회 방문(2009.7.22)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2009.7.24)

오토밸리 복지센터 개관식(2009.7.29)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울산 구·군의원 합동 워크숍(2009.8.19)

희망근로 숲가꾸기 현장방문 자원봉사활동(2009.8.28)

추석맞이 재래시장 이용홍보 및 격려방문(2009.10.1)

상안동 동산마을 농소 배 작목반 배수확 자원봉사활동(2009.10.2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농소고등학교 학생 현장견학 체험학습 북구의회 견학(2009.10.23)

제116회 임시회, 울산외고 건립현장 등 6개소 현장활동(2009.10.28)

등산로 정비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견학(2009.11.6)

구민의견수렴을 위한 “의정모니터” 위촉(2009.11.9)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정례회 개최(2010.1.11)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 참여(2010.1.14)

제118회 임시회, 송정동 주민센터 건립현장 점검 현장활동(2010.2.23)

현대차 미소금융재단 울산지점 개소(2010.3.31)

目　　次

■ 발간사

■ 축　사

■ 제4대 북구의회의원 일람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51

제2절 의회연혁 ····· 53

제3절 의회일반현황 ····· 55

1. 제4대(후반기)의회 원구성 ····· 55
2. 의회기구 ····· 56
3. 의원현황(직업, 학력, 연령, 성별) ····· 56
4. 의회예산(당초)현황 ····· 57
5. 의사당 시설현황 ····· 58
6.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 58
7. 의회의 권한 ····· 59
8. 의회의 역할 ····· 60

제4절 구정기본현황 ····· 61
1. 지역여건 ····· 61
2. 구정현황 ····· 61
3. 구민생활지표 ····· 62
4. 동별 인구·면적 현황 ····· 64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 ····· 65

제2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 69
1. 의회역대 집회 현황 ····· 69
2. 연도별 집회 현황 ····· 70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 현황 ····· 71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 72
제3절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내용 ····· 73

제3장 제4대 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106회 제1차정례회 ····· 79
1. 개회이유 ····· 79
2. 개회사 ····· 79
3. 의사일정 ····· 82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85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제137호) ····· 85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의안번호138호) ····· 86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 89
제2절 제107회 임시회 ····· 92
1. 개회이유 ····· 92
2. 개회사 ····· 92
3. 의사일정 ····· 94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9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43호) ····· 96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 97
□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 99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6호) ····· 100
제3절 제108회 임시회 ····· 103
1. 개회이유 ····· 103
2. 개회사 ····· 104
3. 의사일정 ····· 106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108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호) ····· 108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150호)109
□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155호) ····· 111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56호) ····· 112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51호) ····· 114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53호) ····· 116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57호) ····· 120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58호) ····· 121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59호) ····· 124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60호) ····· 126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61호) 127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안번호163호) ····· 128
제4절 제109회 제2차정례회 ····· 131
1. 개최이유 ····· 131
2. 개회사 ····· 132
3. 의사일정 ····· 135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142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 142
□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70호) ····· 143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1호) ····· 144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호) ····· 14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5호) ····· 147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호) ····· 149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 151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0호) ····· 155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1호) ····· 158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호) ····· 159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82호) ····· 161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호) ····· 163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제167호) ····· 164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5호) ····· 165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호) ····· 167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170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 173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 174

제5절 제110회 임시회 ····· 177
1. 개회이유 ····· 177
2. 개회사 ····· 178
3. 의사일정 ····· 179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182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189호) ····· 182
□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 ····· 183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2호) ····· 184
□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 186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7호) ····· 188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4호) 190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5호) ····· 192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의안번호 제196호) ····· 194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호) ····· 197
제6절 제111회 임시회 ····· 201
1. 개회이유 ····· 201
2. 개회사 ····· 202
3. 의사일정 ····· 203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5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 205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호) ····· 206
□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02호) ····· 20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9호) ····· 210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 2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212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동동 주민센터·천곡문화센터,
의안번호 제204호) ····· 215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산문화센터, 의안번호 제205호)
····· 217
제7절 제112회 임시회 ····· 219
1. 개회이유 ····· 219
2. 개회사 ····· 220
3. 의사일정 ····· 222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24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7호) ····· 224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8호) ····· 226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 228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 230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22호) ····· 233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6호) ····· 233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1호) ····· 235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13호) ····· 23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214호) ····· 239
□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 241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9호) ····· 243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
····· 245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 248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1호) ····· 250
제8절 제113회 임시회 ····· 254
1. 개회이유 ····· 254
2. 개회사 ····· 254
3. 의사일정 ····· 256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57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6호) ····· 257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 ·· 258
□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 제227호) ·· 260
제9절 제114회 제1차정례회 ····· 262
1. 개회이유 ····· 262
2. 개회사 ····· 262
3. 의사일정 ····· 264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29호) ····· 269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0호) ····· 270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1호) ····· 272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2호) ····· 274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 276
제10절 제115회 임시회 ····· 278
1. 개회이유 ····· 278
2. 개회사 ····· 279
3. 의사일정 ····· 281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8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39호) ·· 284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4호) ····· 284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 ·· 286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 288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 ····· 288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 29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 29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41호)·· 294
제11절 제116회 임시회 ····· 296
1. 개회이유 ····· 296
2. 개회사 ····· 297
3. 의사일정 ····· 298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301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51호) ····· 30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8호) ····· 303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 305
제12절 제117회 제2차정례회 ····· 308
1. 개회이유 ····· 308
2. 개회사 ····· 309
3. 의사일정 ····· 312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320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 ····· 320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 322
□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9호) ····· 324
□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 326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 ····· 328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5호) ····· 332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 ····· 335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 ····· 338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64호) ····· 343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호) ····· 344
제13절 제118회 임시회 ····· 346
1. 개회이유 ····· 346
2. 개회사 ····· 347
3. 의사일정 ····· 349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353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68호) ·· 353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 359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 ····· 360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0호) ···· 362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 363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 366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367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0호) 369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71호) ····· 370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 373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4호) 375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5호) ····· 377
제14절 제119회 임시회 ····· 380
1. 개회이유 ····· 380
2. 개회사 ····· 380
3. 의사일정 ····· 382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384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3호) ····· 384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4호) ····· 385
□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85호) ····· 387

제4장 예산·결산심의사항

제1절 2007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 391
제2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96
제3절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99
제4절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07

제5절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13
제6절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17
제7절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23
제8절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429
제9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434
제10절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37
제11절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43
제12절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49
제13절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53

제5장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461
1. 감사개요 ····· 461
2. 감사실시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 462
3. 행정사무감사 일정 ····· 464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465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465
6. 증인 선서 방식 ····· 466
7. 기타 행정사항 ····· 466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467
제2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504
1. 감사의 목적 ····· 504
2. 근 거 ····· 504
3. 감사기간 ····· 504
4. 감사실시기관 ····· 504
5. 감사실시 경과 ····· 505
6. 감사결과 ····· 508
제3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547
제4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549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 549
2.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 55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611
1. 감사의 개요 ····· 611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 612
3. 행정사무감사 일정 ····· 614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615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615
6. 증인 선서 방식 ····· 616
7. 행정사항 ····· 616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617
제6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657
1. 목 적 ····· 657
2. 근 거 ····· 657
3. 감사기간 ····· 657
4. 감사실시기관 ····· 657
5. 감사실시 경과 ····· 658
6. 감사결과 ····· 661
제7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692
제8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694
1. 시정·건의 요구사항 현황 ····· 694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695

제6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구정질문 ····· 751
제2절 5분 자유발언 ····· 764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현황 ····· 791
제4절 주요의정활동 ····· 807
1.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 807
2. 『조례입법연구회』 운영 ····· 809
3. 정례회 및 임시회 현장활동 강화 ····· 811
4. 의정실무능력향상 특별 연수 ····· 812

5. 자원봉사활동 실시 ····· 813
6. 2008년 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및 연수보고회 개최 ····· 815
7.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 816
8. 사회복지시설 방문 설·추석 위문품 전달 ····· 818
9. 타 의회 의정자료수집 및 선진시설 벤치마킹 ····· 820

제5절 의정활동일지 ····· 822

[附 錄]

1. 역대 의장단 명단 ····· 849
2. 초대의원 명단 ····· 850
3. 초대의원 사진 ····· 851
4. 제2대의원 명단 ····· 852
5. 제2대의원 사진 ····· 853
6. 제3대의원 명단 ····· 854
7. 제3대의원 사진 ····· 855
8. 제4대의원 명단 ····· 856
9. 제4대의원 사진 ····· 857
10.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이전) ····· 858
11. 역대 구청장 명단 ····· 859
12.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 859
13. 역대 전문위원 명단 ····· 859

제 1 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제2절 의회연혁
제3절 의회일반현황
제4절 구정기본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부족국가시대

○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지명을 하곡으로 개칭,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태조때 하곡, 동진, 우풍현을 합하여 흥려부로 승격

○ 제16대 현종때 울주로 개칭

□ 조선시대

○ 제3대 태종 13년 울주를 울산으로, 선조 31년 울산 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41년 부군 정리 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 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하고 울산면, 사항면, 대현면으로 행정구역개편

□ 현　　대

○ 1962. 2. 1 : 각령 제403호로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

(당시 농소면 송정리, 화봉리 편입)

○ 1962. 6. 1 : 법률 제1086호로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명칭변경
(농소·강동면→울주군 편입)

○ 1985. 7. 15 : 대통령령 제11716호로 구제실시
(2구 1출장소 40개동, 중·남구)

○ 1988. 1. 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방어진출장소 설치

○ 1991. 1. 1 : 방어진출장소→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동)
(울주군→울산군으로 명칭변경)

○ 1995. 1. 1 :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군, 도·농통합
(울산군→울주구로 명칭변경)

○ 1995. 3. 2 : 농소면→농소읍으로 승격

○ 1996. 12. 31 :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공포
(북구는 종전 울산시 중구 송정, 효문, 진장, 양정동과 울주군 농소읍, 강동면으로 구역획정)

○ 1997. 7. 15 : 울산광역시 및 북구설치<신설> → 8개동
(농소읍→농소1, 2, 3동, 강동면→강동동으로 전환)

○ 1998. 3. 1 : 대통령령 제15652호 “광주광역시북구등4개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거 동구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 9개동

○ 1998. 10. 1 : 인구과소동 폐치분합 진장동·효문동 → 효문동(8개동)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1차 구조조정 지침>

○ 2001. 6. 1 : 청사 소재지 변경
(남구 신정3동 585-9→북구 연암동 1004-1)

제2절 의회연혁

□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 1952. 4. 25 : 초대 읍·면의원 선거(56명)

○ 1956. 8. 8 : 제2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1960. 12. 19 : 제3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1961. 9. 1 : 울산읍·면의원 해산

□ 울산시 승격 이후

○ 1991. 3. 26 : 울산시의회의원 선거(50명)

○ 1991. 4. 15 : 초대 울산시의회 개원

— 임기 : '91. 4. 15 ~ '95. 6. 30

○ 1992. 7. 12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중·남·동구 각 1명)

○ 1993. 7. 10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동구 1명)

□ 울산시·군 통합 이후

○ 1995. 1. 10 : 울산시·군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64명)

○ 1995. 6. 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5. 7. 11 : 제2대 울산시의회 개원(60명)

— 임기 : '95. 7. 1 ~ '98. 6. 30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97. 7. 15 ~ '98. 6. 30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72명)

○ 1998. 3. 1 :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98. 7. 1 ~ 2002. 6. 30

○ 2000. 2. 21 :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02. 7. 1 ~ 2006. 6. 30

○ 2006. 5. 31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 제4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06. 7. 1 ~ 2010. 6. 30

○ 2010. 6. 2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제3절 의회일반현황

1. 제4대<후반기>의회 원구성

○ 의장단 선거【전반기 의장 임기 중 선거】

2008년 6월 30일 10시에 개회된 제10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7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반기 의장인 류재건의장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 윤임지의원, 부의장에 문석주의원을 선출하였음.

○ 의장단선거 실시결과

- 투표참석 의원7명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실시
- 총 투표수 7표 중 무효와 기권 없이 윤임지의원이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에 당선되었음.
- 총 투표수 7표 중 무효와 기권 없이 문석주의원이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었음.

2. 의회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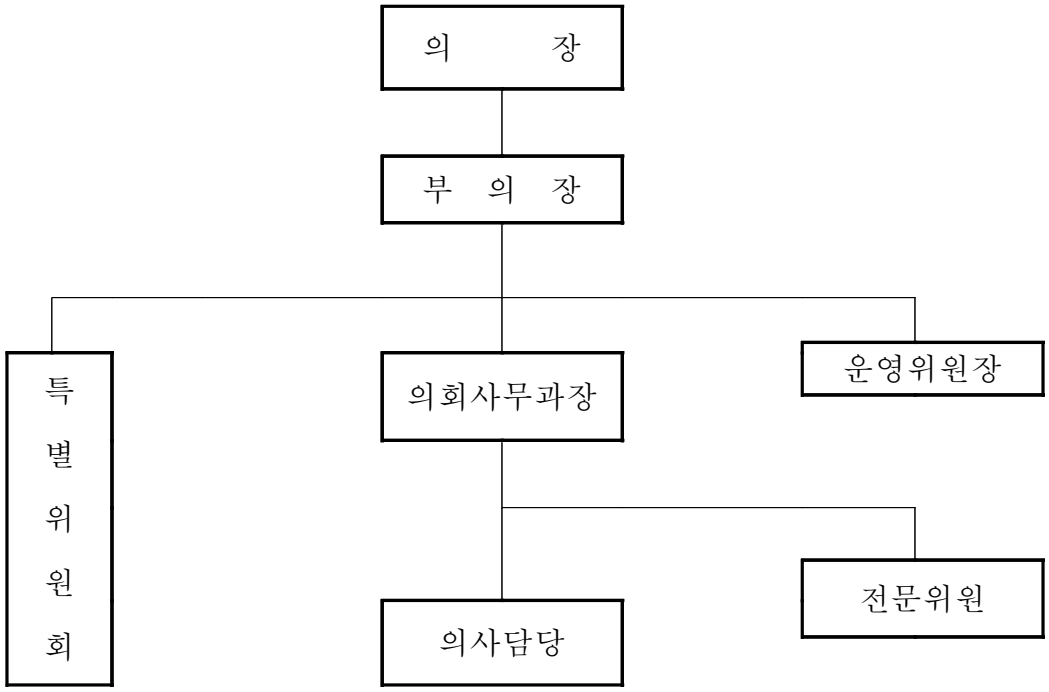

3. 의원현황

□ 의원정수

계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비례대표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3동	효문·양정·염포동	
7	2	2	2	1

□ 직업별

직업별 / 의원수	농 업	상 업	회사원	기 타	비 고
7	1	1	3	2	

□ 학력별

학력별 / 의원수	국졸	중졸	고졸	대재	대졸	대학원졸	기타
7			1		3	2	1

□ 연령별

연령별 / 의원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			6	1	

□ 성 별

의 원 수	계	남	여	비고
7	7	5	2	

4. 의회예산(당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계	지방의회 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
2006년도	899,138	283,116 (의정활동)	616,022 (의사운영)
2007년도	949,808	315,442 (의정활동)	634,366 (의사운영)
2008년도	1,190,896	579,370	611,526
2009년도	1,287,155	664,987	622,168
2010년도	1,227,266	596,134	631,132

5. 의사당 시설현황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 면적 : 북구청 5층 1,174.55㎡ (355.30평)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평)	비 고
본 회 의 장	211.23(63.90)	
방 청 객 실	60.23(18.22)	
소 회 의 실	108.00((32.67)	
의 장 실	70.47(21.32)	
부 의 장 실	60.70(18.36)	
의 원 사 무 실	129.05(39.04)	2인1실 3개
다 목 적 실	129.00(39.02)	
의 정 자 료 실	72.00(21.78)	
의 회 사 무 과	102.85(31.11)	
전 문 위 원 실	51.43(15.56)	
방 송 실 등 6 실	179.59(54.33)	

6.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직위 및 직급	정 원	현 원	비 고
계	13	13	
5급(과 장)	1	1	
5급(전문위원)	1	1	
6급(의사담당)	1	1	
6급(전문위원)	1	1	
7급(행 정 직)	2	3	
8급(행 정 직)	1	1	
9급(행 정 직)	1	0	
기 능 직	5	5	사무보조2, 속기사2, 운전원1

7. 의회의 권한

○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는 통제권으로 매년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있음.

○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스스로 규율을 정함.
(회의규칙, 회기결정 등)

○ 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선출

○ 청원처리권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함.

○ 의견표명권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건의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8. 의회의 역할

○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

(선거지역뿐만 아니라 해당자치단체 전주민 대표)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

○ 입법기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역할

제4절 구정기본현황

1. 지역여건

○ 주거, 공단, 해양관광, 수산의 3개 권역별 지역·기능적 구분
○ 주민생활 및 의식이 도시·농촌적 요소 공존
○ 신개발지로서 도시기반시설 미비와 행정수요의 다양

2. 구정현황(2010. 6. 30.현재)

□ 면 적

○ 행정구역 □□□□□□□□□□ 157.38㎢
○ 도시계획구역

(단위 : ㎢, '10.10.31현재)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보전	생산	계획	
152.14	**116.63**	11.51	1.08	10.23	93.81	**6.68**	4.0	1.49	1.19	**28.83**

※ 개발제한구역 76.34㎢(48.51%)

□ 인 구

가 구	총 인 구 수			외국인 등록수
	계	남	여	
57,123세대	173,771명	89,810명	83,961명	2,003명

□ 행정조직

○ 기 구

('10.10.31현재)

구 분	본 청	사 업 소	동
현 황	3국 1실 17과	1사업소(보건소)	8개동

○ 공 무 원

(정원/현원)

계	본 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500명	378명	13명	36명	73명

○ 예산(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2006년도	74,022	73,507	514	38.4%
2007년도	85,087	84,318	769	37.9%
2008년도	111,672	110,778	894	28.3%
2009년도	120,515	115,936	4,579	35.0%
2010년도	132,099	127,312	4,787	35.5%

3. 구민생활지표(2010. 6. 30.현재)

□ 보건복지

식품접객	공중위생	의료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명)					생활폐기물 발생량(일평균)		1일분뇨 수거량 (수거율)
		기관	병상수	소계	일반	시설	조건부	특례	1인1일 발생량	총발생량	
2,695 개소	432 개소	159	692	1,138 (8개소) / 2,161	1,064 / 1,826	8개소 / 187	64 / 132	10 / 16	0.76kg	132.5ton	77ton (%)

□ 지역경제

경 지 면 적				기 업 체		노조설립업체	
소 계	전	답	과수원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조합원수
2,080ha	780ha	1,150ha	118ha	902 개	41,277 명	17 개	37,171 명

□ 도시건설

도 로				주 택	상 수 도			하 수 도		
연장	도로율	포장도	포장율	보급률	1일 급수량	1인당1일 급수량	보급률	총인구	보급인구	보급률
542.5 ㎞	12.26 %	204.4 ㎞	97.24 %	49,612 107.5%	44,243 ton/일	260 ℓ	97.9%	173,677명	135,422명	77.97%

□ 교 통

자 동 차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72,102대	56,369대	2,926대	9,351대	456대

□ 교 육

(개소/학생수, '10.10.31현재)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41개소 / 32,430명	19 / 14,958	12 / 9,242	8 / 7,906		2 / 324

4. 동별 인구·면적현황(2010. 6. 30.현재)

구 분	면 적 (㎢)	법정동	인구수 (명)	지 역 여 건 및 특 성
계	157.38	27 (2개동중복)	173,771	
농소1동	14.91	4 (2개동중복)	21,672	농소라는 말은 고려 태조때의 박윤웅 공의 **식읍지(食邑地)**인데서 생긴 말이며, 아파트단지가 많고 경주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재래시장 및 신개발주거지역임**
농소2동	11.41	3 (2개동중복)	30,919	
농소3동	31.07	5	40,609	
강동동	60.70	9	4,741	강동지역은 신라초에 율포현이 있고 울산지역의 동쪽이며, 해수욕장과 산과 바다가 조화된 **천혜의 관광지역**이며 **국제규격의 강동축구장**이 있음
효문동	16.29	4	29,339	효문은 세종때 효자였던 송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문이라 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많은 **준공업지역**임
송정동	10.79	2	20,225	송정은 큰 노송들이 많이 우거져있고 좋은 정자가 있었다하여 송정이라고 하였으며, 울산공항이 있고 북구 중심의 **교통요충지역임**
양정동	6.67	1	12,655	영조때 오정리와 양정리의 두마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회사가 소재해 있고, **7,800여평의 양정생활체육공원**이 있음.
염포동	5.54	1	13,611	염포는 이조때 수군의 군사기지와 왜군 회유책으로 개항한 **제포, 부산포와 함께 3포의 하나**였으며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회사가 소재하고 있음.

5. 울산광역시구·군 일반현황(2010. 6. 30.현재)

□ 인구·면적현황

구 분	면 적(㎢)	인 구 (명)			외 국 인 등록수(명)
		계	남	여	
계	1,058.20	1,116,189	573,985	542,204	15,138
중 구	36.99	231,463	118,583	112,880	1,694
남 구	72.55	342,113	174,357	167,756	3,718
동 구	35.94	171,599	89,877	81,722	2,894
북 구	**157.38**	**173,771**	**89,810**	**83,961**	**2,003**
울주군	755.34	197,243	101,358	95,885	4,829

□ 재정규모현황(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울산광역시	2,171,934	1,632,681	539,253	62.62%
중 구	157,115	153,091	4,024	19.28%
남 구	220,335	208,644	11,691	45.76%
동 구	117,874	112,948	4,926	36.3%
북 구	**132,099**	**127,312**	**4,787**	**35.5%**
울 주 군	418,933	374,422	44,511	49.04%

제 2 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제3절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내용

제1절 집회현황

1. 의회역대 집회현황

구 분	연 도	정 례 회		임 시 회		합 계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초대	계	1	35	9	25	10	60
	'97	1	35	4	11	5	46
	'98			5	14	5	14
제2대	계	6	140	36	184	42	324
	'98	1	35	6	31	7	66
	'99	1	35	11	45	12	80
	2000	2	35	8	45	10	80
	2001	2	35	9	45	11	80
	2002			2	18	2	18
제3대	계	8	152	29	168	37	320
	2002	2	35	5	27	7	62
	2003	2	35	8	45	10	80
	2004	2	34	8	46	10	80
	2005	2	48	5	29	7	77
	2006			3	21	3	21
제4대	계	8	184	22	170	30	354
	2006	2	40	3	12	5	52
	2007	2	44	5	31	7	75
	2008	2	50	6	50	8	100
	2009	2	50	6	51	8	101
	2010			2	26	2	26

2. 연도별 집회현황

연 도	정 례 회		임 시 회		합 계		법정회기일수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계	23	511	96	547	119	1,058	
'97	1	35	4	11	5	46	연 80일 (정기회 35일 이내)
'98	1	35	11	45	12	80	〃
'99	1	35	11	45	12	80	〃
2000	2	35	8	45	10	80	〃 (정례회 35일 이내)
2001	2	35	9	45	11	80	〃
2002	2	35	7	45	9	80	〃
2003	2	35	8	45	10	80	〃
2004	2	34	8	46	10	80	〃
2005	2	48	5	29	7	77	연 80일
2006	2	40	6	33	8	73	정례회 45일 이내, 임시회 매회기 15일 이내
2007	2	44	5	31	7	75	연 110일 이내 (정례회 50일 이내)
2008	2	50	6	50	8	100	〃
2009	2	50	6	51	8	101	〃
2010			2	26	2	26	〃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회 기	회 별	소 집 요 구 인	집 회 기 간	일수
제106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08. 7. 1 ~ 7.21	21
제107회	임시회	박병석의원 외 2명	2008. 9. 3 ~ 9.11	9
제108회	임시회	문석주의원 외 2명	2008.10.23 ~ 10.31	9
제109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08.11.24 ~ 12.22	29
제110회	임시회	이은영의원 외 2명	2009. 2.10 ~ 2.24	15
제111회	임시회	류인목의원 외 2명	2009. 3.26 ~ 4. 3	9
제112회	임시회	류재건의원 외 2명	2009. 5.27 ~ 6. 1	6
제113회	임시회	이영희의원 외 2명	2009. 6.15 ~ 6.22	8
제114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09. 7. 1 ~ 7.20	20
제115회	임시회	박병석의원 외 2명	2009. 9.21 ~ 9.29	9
제116회	임시회	문석주의원 외 2명	2009.10.27 ~ 10.30	4
제117회	정례회	북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집회)	2009.11.23 ~ 12.22	30
제118회	임시회	이은영의원 외 3명	2010. 2.18 ~ 3. 4	15
제119회	임시회	류인목의원 외 2명	2010. 4.16 ~ 4.26	11

제2절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후반기>(2008.7.1~2010.6.30) 2008~2010년도

회 수	기 간	일 수	계	예산 안	결산	조례 안	동의안 (승인)	건의 안	결의 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합 계		195	190	9	2	105	10	0	1	0	6	5	52
소 계	2008년도	68	63	3	1	36	3	0	1	0	2	3	14
제106회	2008. 7. 1 ~ 7.21	21	9		1	3	1						4
제107회	2008. 9. 3 ~ 9.11	9	9	1		4			1				3
제108회	2008.10.23 ~ 10.31	9	19			11	1				1	2	4
제109회	2008.11.24 ~ 12.22	29	26	2		18	1				1	1	3
소 계	2009년도	101	102	5	1	54	6	0	0	0	3	2	31
제110회	2009. 2.10 ~ 2.24	15	14			9					1		4
제111회	2009. 3.26 ~ 4. 3	9	12	1		6	2						3
제112회	2009. 5.27 ~ 6. 1	6	18			13	1						4
제113회	2009. 6.15 ~ 6.22	8	8	1		3							4
제114회	2009. 7. 1 ~ 7.20	20	14		1	4	2					1	6
제115회	2009. 9.21 ~ 9.29	9	12	1		7							4
제116회	2009.10.27 ~ 10.30	4	4			2							2
제117회	2009.11.23 ~ 12.22	30	20	2		10	1				2	1	4
소 계	2010년도	26	25	1	0	15	1	0	0	0	1	0	7
제118회	2010. 2.18 ~ 3. 4	15	17			12	1				1		3
제119회	2010. 4.16 ~ 4.26	11	8	1		3							4

제3절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내용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06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2008. 7. 1 ~ 7. 21	21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3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 등 3건)
제107회 (임시회)	의 원	2008. 9. 3 ~ 9. 11	9	○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4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4건) ○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의결
제108회 (임시회)	의 원	2008. 10. 23 ~ 10. 31	9	○ 조례안 11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제109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08. 11. 24 ~ 12. 22	29	○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 ○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조례안 18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10회 (임시회)	의 원	2009. 2. 10 ~ 2. 24	15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안 9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 ○ 현장활동(농소1동 주민센터 건립 현장 등 5개소)
제111회 (임시회)	의 원	2009. 3. 26 ~ 4. 3	9	○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6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강동동 주민센터·천곡문화센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중산문화센터)
제112회 (임시회)	의 원	2009. 5. 27 ~ 6. 1	6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 조례안 13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13건)
제113회 (임시회)	의 원	2009. 6. 15 ~ 6. 22	8	○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3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등 3건)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14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2009. 7. 1 ~ 7. 20	20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조례안 4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15회 (임시회)	의 원	2009. 9. 21 ~ 9. 29	9	○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7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제116회 (임시회)	의 원	2009. 10. 27 ~ 10. 30	4	○ 조례안 2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상황 등 8건) ○ 현장활동 (울산외고 건립 현장 및 진입로 개설 현장 등 6개소)
제117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09. 11. 23 ~ 12. 22	30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10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

회 별	집 회 요구자	집회기간	회기	주 요 활 동 사 항
제118회 (임시회)	의 원	2010. 2. 18 ~ 3. 4	15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안 12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등 12건)
제119회 (임시회)	의 원	2010. 4. 16 ~ 4. 26	11	○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조례안 3건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 3 장
제4대 후반기 개회상황

제1절 제106회 제1차정례회
제2절 제107회 임시회
제3절 제108회 임시회
제4절 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5절 제110회 임시회
제6절 제111회 임시회
제7절 제112회 임시회
제8절 제113회 임시회
제9절 제114회 제1차정례회
제10절 제115회 임시회
제11절 제116회 임시회
제12절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13절 제118회 임시회
제14절 제119회 임시회

제1절 제106회 제1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8. 7. 1. 10:00

다. 회　　기 : 2008. 7. 1. ~ 7. 21 (21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어느 듯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제105회 임시회에서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었습니다.

후반기 의장에 윤임지 의원님이 그리고 부의장에 문석주 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후반기 우리 구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4대 전반기 의회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의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16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2년 동안 16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따가운 질책과 견제를 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심기일전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금번 제1차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시 다루게 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의 사후평가임과 아울러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재정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번 제1차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의정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6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단편적인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비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큰 틀의 정책감사가 이루어져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는 장마가 길어지고 더위도 기승을 부린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습니다.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가 알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16만 구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 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되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류 재 건

3. 의사일정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7. 1~ 7. 21(21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7.1 (화)		(개 회 식)	
10:00 개회식 직 후	1	1.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3.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7.2(수)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제137호, 총무국-총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도시녹지과) 3.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건축주택과)	부 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7.3(목)10:00		개 별 현 장 활 동	
7.4(금) 10:00	3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40호,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미화과)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기획감사실(기획홍보실)	
7.5(토)		휴회(토요일)	
7.6(일)		휴회(일요일)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7.7(월) 10:00	4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7.8(화) 10:00	5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총무국(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7.9(수) 10:00	6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주민생활지원국(복지서비스과,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7.10(목) 10:00	7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 보건소	
7.11(금) 10:00	8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도시경제국(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 의회사무과	
7.12(토)		현 장 확 인(장소는 추후결정)	
7.13(일)		휴 회(일요일)	
7.14(월) ~ 7.18(금)		행 정 사 무 감 사 (세부 감사일정 붙임 참조)	
7.19(토)		휴 회(토요일)	
7.20(일)		휴 회(일요일)	
7.21(월) 10:00	9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8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2008. 7. 14 ~ 7. 18(5일간)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08. 7. 14(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 총 무 국 • 총 무 과 • 회계정보과 • 지방세과 • 민원지적과	
2008. 7. 15(화)	10:00	〃	○ 총 무 국 • 환경위생과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서비스과 • 문화홍보과	
2008. 7. 16(수)	10:00	〃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미화과 • 평생교육과 ○ 도시경제국 • 도시녹지과 • 경제교통과	
2008. 7. 17(목)	10:00	〃	○ 도시경제국 • 건 설 과 • 건축주택과 • 생명산업과 • 재난관리과	
2008. 7. 18(금)	10:00	〃	○ 보 건 소 ○ 기획감사실 ○ 의회사무과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제13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6. 18.(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7. 2.(제106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8년 5월 29일자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로부터 이송 되어 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자치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

나)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서 제시한 숙박비 30,000원을 40,000원으로 수정 가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여비지급에 따른 예산집행의 형평성 문제 및 혼선 야기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사후정산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안전부 조례안의 본 취지에 위배됨.

○ 따라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 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지난 제104회 임시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에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 제2호의 숙박비를 1박에 30,000원으로 제시하였는데

○ 현실가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30,000원을 40,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 집행부에서는 여비조례 안이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상이할 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여비지급액이 달라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 등 혼선이 초래되며

○ 특히 국·시비 여비에 있어 사후 정산에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이 맞지않아 집행에 불편이 우려되어 재심의를 요구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 제104회 임시회시 수정 가결한 여비조례 재심의안은 부결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의안번호13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6. 18.(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7. 2.(제106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북구 실정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하여 녹화하고 가로수의 식재 등 원인자와 훼손자 부담금 등의 기준을 마련한 도시녹화 조례를 제정,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주민이 행복한 환경복지 북구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주요골자

ㄱ. 도시녹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심의사항(안 제3조)

- 장·단기 북구 도시녹화계획 수립 및 변경
- 20m미만 도로 등에 식재할 가로수, 수벽 등 수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

- 구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 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및 환경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ㄴ.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

○ 가로수 식재 등의 승인(안 제8조) : 구청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로수 조정공사의 시행(안 제9조)

-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업체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공사 또는 공단

○ 하자담보

- 준공검사 신청 시 하자책임을 위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 원인자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 원인자 부담금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 하자보수보증

금 면제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 하자검사, 반환, 직접사용, 세입조치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 구정 목표인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도시녹화사업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선적으로 손쉽게 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20m 미만 도로 가로수 와 공원 등으로 도로 및 공원시설 공사에 수종식재 기본계획수립에 나무관리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 전문가 및 관련분야 담당 등 15명 이하로 하는 도시녹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므로 타 자치단체보다 이색적인 도시환경을 꾸며 장·단기적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 공무원 단독으로 구상 하는 것보다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다면 보다 더 아름다운 북구가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2조(훼손자 부담금 등) ① (생 략) ② 훼손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훼손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	제12조(훼손자 부담금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으로 하고, 원상복구 시 훼손자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가로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부과·징수한다.	가로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부과·징수한다. ③ 훼손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훼손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 시 훼손자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6. 18.(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7. 2.(제106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2007. 12. 21)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 (안 제2조)

•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 광고물 정비 및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등 기금 사용처에 대한 명시

○ 기금의 운영관리 (안 제4조, 제13조)

• 기금의 적립방법과 운영,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직무 (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및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2항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영한다는 조항이 2007. 12. 21자 신설되므로

○ 현재까지는 광고 관련 수입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므로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북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 광고사업 수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하는 보조금등 광고관련 수입금은 광고 관련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삭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과 건축주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절 제107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박병석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8. 9. 3. 16:00

다. 회　　기 : 2008. 9. 3.~ 9. 11.(9일간)

라. 부의안건

○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제107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늘 구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리증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삶도 다양화 되고 그에 따른 구민의 요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수반되는 구민의 요구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발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거나 예산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의회 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하나하나가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간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 17만 구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치솟은 유가가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주위에 이러한 경제난으로 어려운 이웃이 있지 않는지를 뒤돌아보고 관

심을 갖는 훈훈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8. 9. 3 ~ 9. 11(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8.9.3(수) 16:00		(개 회 식)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개회식 직 후	1	1.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47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0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 143호, 기획감사실)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총무국) 7.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주민생활지원국)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주민생활지원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8. 9. 4(목) 10:00	2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008.9.5(금) 10:00	3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주민생활지원국	
2008.9.6(토)		휴 회(토요일)	
2008.9.7(일)		휴 회(일요일)	
2008.9.8(월) 10:00	4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2008.9.9(화) 10:00	5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경제국	
2008.9.10(수) 10:00	6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2008.9.11(목) 10:00	7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당일 의사일정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9.11(목) 10:00	7	1.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8.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9. 3.(제10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외 많은 상위 법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조례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다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타 부서의 개별적인 조례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 및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반영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함(안 제2조)

○ 조례의 본문·부칙·별표·별지서식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함(안 제3조제2항)

○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조문을 일괄정비함(안 제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고, 조례의 본문・부칙・별표・별지서식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며,

○ 조례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 등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개별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8.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9. 3.(제10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무원여비규정」이 사후정산제도로 개정·시행(2008. 1. 1)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자가용 이용 출장 직원에 대한 증빙자료 징구 곤란
-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사비(私費) 사용 후 정산해야하는 문제점 발생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안) 통보 : 2008. 4. 8.

나) 주요내용

○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 명시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다목 적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공무원여비규정」(사후정산)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급
- 현행 운임 및 숙박비 사후 정산제 ⇒ 정액제로 환원(별표)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2008. 5. 15. 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9호로 같은 조례안이 제출되어 5. 28 제10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숙박비를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으나 6. 18 구청장으로부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서 제시한 숙박비를 인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여비지급에 따른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혼선 야기 우려로 재의 요구되어 7. 2 제1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 2008. 4. 8.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개정안」에 따라 구청장의 여비지급기준을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토록 상향조정하고,

○ 운임 및 숙박비 지급시 「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후정산에서 제외하여 정액제로 환원하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여비규정」이 사후정산제도로 개정·시행(2008. 1. 1)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8.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9. 3.(제10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6·25전쟁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전쟁에 참

가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참전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여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안 제4조)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에 대하여

○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8.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9. 3.(제10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공공요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조례에 규정하고, 종류・용도・색상 및 재질은 환경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가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신제품들이 출시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규칙에 규정하여 소비자인 주민이 편리한 봉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많을 경우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고 있으나, 주민과 환경미화원이 너무 무거워 이동하거나 상차하는데 애로가 있어 75리터 쓰레기봉투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ㄱ.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및 재질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3조제2항)

○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재질 등은 규칙에 규정하여 신기술의 발달로 좋은 제품이 나올 경우 즉시 주민에게 편리성 제공

ㄴ.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4조제3항)

○ 주민의 편리성을 감안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봉투가 출시되므로 제작사양을 규정하여 적시성과 편리성을 갖춘 봉투를 제공하고자 함.

ㄷ. 75리터 쓰레기봉투 용량 및 판매가격에 신설(안 별표 3)

○ 50리터와 100리터 사이에 75리터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버리는 주민과 치우는 환경미화원에게 편의 제공

○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75ℓ	1,461	400	190	2,051	169	2,220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재질과 제작사양을 규칙으로 규정토록 개정하여 신기술의 발달로 주민의 편리성을 감안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봉투가 출시되고 있어 적시성과 편리성을 갖춘 봉투를 구민에게 제공토록 하고,

○ 쓰레기봉투 용량 기준에 50리터(1,490원)와 100리터(2,960원) 사이에 중간단계의 봉투가 없어 가정에서 쓰레기를 100리터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무게로 인하여 배출과 수거과정에 주민과 환경미화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중간단계인 75리터(2,220원) 용량의 봉투를 제작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절 제108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문석주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8. 10. 23. 10:00

다. 회　　기 : 2008. 10. 23. ~ 10. 31.(9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영희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건의원 외 3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석의원 외 3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국화꽃 향기가 그윽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제108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에도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조례입법연구회 활동 그리고 민원상담실 운영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구민의 민원해결에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의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제10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106회 제1차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게 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우리 의원들이 조례입법연구회 활동을 통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주요관심 사항인 등산로 정비계획과 동천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도 보고 받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은 집행부의 처리사항을 보고

받아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분야의 사람들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현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세계금융위기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여의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연의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구민한마음체육대회와 직원 체육대회가 금주와 다음주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경쟁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람된 결실과 성취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8. 10. 23~10. 31(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10.23 (목)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 5분 자유발언(류인목 의원) 1.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정질문의 건(문석주 의원, 박병석 의원)	
2008.10.24 (금)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2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0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 이영희의원 발의-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 문석주의원 발의-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 주민생활지원국)	원안가결 부 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부 결 수정가결
2008.10.25 (토)		휴회(토요일)	
2008.10.26 (일)		휴회(일요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10.27 (월)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 류인목 의원 발의-기획감사실)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이은영의원 발의-기획감사실)	수정가결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류재건의원 발의-기획감사실)	수정가결
		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 박병석의원 발의-기획감사실)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 류인목의원 발의-기획감사실)	원안가결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163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2008.10.28 (화) 10:0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총무국	
2008.10.29 (수) 10:00	5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 속〉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주민생활지원국	
2008.10.30 (목) 10:00	6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 속〉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도시경제국 ○ 등산로 정비계획(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 동천 하천정비계획(도시경제국 건설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10.31 (금) 10:00	7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 속〉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1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0. 24.(제10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

나) 주요골자

○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 : 안 제5조제3항 신설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

도록 명시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 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15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0. 24.(제10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신설 10년의 우리 구가 우수인재의 역외 이탈방지 및 교육기반시설 확충으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명칭 정리(안 제1조)

○ 재단의 대상사업 범위 규정(안 제2조)

○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조성(안 제3조)

○ 재단의 지원방법 및 정관의 기재사항(안 제4조, 제5조)

○ 재단의 임원구성 및 이사회 개최를 통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안 제6조, 제7조)

○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사업연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

○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재단 운영의 지도·감독 규정 (안 제12조, 제13조)

○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우수인재의 역외 이탈방지와 및 교육기반시설 확충으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북구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장학사업, 교육기관 유치사업, 학력증진사업 등 대상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와 제5조에는 재단의 지원방법과 정관 기재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는 임원구성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 설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수익사업, 사업연도, 재정지원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3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재단을 설립하여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등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 유치사업과 학력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우수인재의 역외 이탈방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사)을 구성할 경우 안 제13조의 지도·감독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15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0. 24.(제10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는 1997년 7월 15일 북구조례 제40호로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시대적·사

회적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 새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마을이 없어 본 조례는 사문화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폐지조례안은 1997. 7. 15. 구 개청 당시 새마을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새마을기금을 운용하는 마을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5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0. 24.(제10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구세의 1.5%에서 2%로 상향하여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관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1.5%”에서 “전년도 결산 구세의 2%”로 개정【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교육경비 지원확대로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 안 제4조 중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1.5%”를 “전년도 결산 구세의 2%”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의안번호 제156호와 제151호로 제출된 2개의 개정조례안은 개정 목적이 교육지원경비 보조금액을 늘려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같으며, 보조기준액을 제156호는 전년도 결산 구세의 2퍼센트로, 제151호는 전년도 결산 구세(구세외수입 포함)의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별표]와 같이 2008년도 기준(2007년도 결산 구세 및 세외수입) 교육지원경비 보조기준액이 현행(구세의 1.5퍼센트)의 경우 335백만원이며, 구세의 2퍼센트로 상향조정할 경우 447백만원으로 현행 대비 112백만원 늘어나며, 구세입(구 세와 세외수입)의 1.5퍼센트로 조정할 경우 897백만원으로 현행 대비 562백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구세의 경우는 과세대상물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액에 큰 변동 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는 매년 과세물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준요율 결정은 우리구의 재정 여건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 제151호의 안 제4조 단서 신설부분은 2008. 5월 우리구 유치를 위해 울산광역시교육감과의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원협약서에 따라 앞으로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지원하여야 함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가칭 울산외국어고) 설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외 규정을 별도 신설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5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0. 24.(제10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교육기반 시설 불균형 해소와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치확정(2008. 5. 20)된 특수목적고((가칭)울산외국어고)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준액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하고, 구세의 명확한 명시를 위하여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4조(보조기준액 등) 개정

• 전년도 결산 구세의 1.5퍼센트

⇒ 전년도 결산 구세(구 세외수입 포함)의 1.5퍼센트

• 보조기준액(전년도 결산 구세의 1.5퍼센트 이내) 항목의 단서 신설

신설내용 :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반시설 불균형 해소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치확정된 특수목적고(가칭 울산외국어고)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지원을 위하여 보조기준액에 대한 개선·보완과 구세의 명확한 명시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안 제4조 중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구세의 1.5퍼센트”를 “전년도 구세(구 세외수입 포함)의 1.5퍼센트”로 하고, 본 조항 말미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의안번호 제156호와 제151호로 제출된 2개의 개정조례안은 개정 목적이 교육지원경비 보조금액을 늘려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같으며, 보조기준액을 제156호는 전년도 결산 구세의 2퍼센트로, 제151호는 전년도 결산 구세(구 세외수입 포함)의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별표]와 같이 2008년도 기준(2007년도 결산 구세 및 세외수입)교육지원경비 보조기준액이 현행(구세의 1.5퍼센트)의 경우 335백만원이며, 구세의 2퍼센트로 상향조정할 경우 447백

만원으로 현행 대비 112백만원 늘어나며, 구세입(구 세와 세외수입)의 1.5퍼센트로 조정할 경우 897백만원으로 현행 대비 562백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구세의 경우는 과세대상물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액에 큰 변동 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는 매년 과세물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준요율 결정은 우리구의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 제151호의 안 제4조 단서 신설부분은 2008. 5월 우리구 유치를 위해 울산광역시교육감과의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원협약서에 따라 앞으로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지원하여야 함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가칭 울산외국어고) 설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외 규정을 별도 신설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5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0. 24.(제10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활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평생교육센터 내 안전사고 발생 대비 보험가입 규정 신설(안 제18조)

○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된 경비의 지도·감독 규정 신설(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소속기관이나 시설, 구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 안 제3조의2에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2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6조 제3항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자원봉사자 모집·활용에 관한 규정과 안 제18조에 안전사고 발생대비 보험가입규정을, 안 제19조에 평생진흥교육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안 제3조 제3항에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의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

○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제5조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부과사항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0조의 수당 등 지급 규정에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만 수당 등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규정은 없으므로 본 조항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수당지급 규정을 일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 안 제16조 제2항은 제3항에 사용료·수강료 징수기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불필요함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6조 제3항의 [별표] 사용료·수강료의 징수기준에 있어 수강료는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과정은 월 50,000원 이하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나, 자격증 취득훈련과정 월 20,000원 이하와 평생교육 일반과정 월 10,000원 이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소 낮게 책정된 것으로 이는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 제16조 제4항에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은「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③ (생 략) ④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강사의 자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③ (생 략) **④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강사의 자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5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0. 27.(제10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된 이후 유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원이 구 산하에 설치된 각종위원회 활동은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으로 고유한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에 구 소속 직원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북구의회 의원을 추가【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된 이후 의회 의원이 구 산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활동으로 보아 의회 의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 안 제3조 중 수당지급 대상 위원을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서 “구 소속직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여 구 산하 위원회에 참석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과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2006. 1. 1.부터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되었기에 구 산하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회 의원에 대하여 구 소속직원과 같이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원에게 참석수당 미지급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5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0. 27.(제10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시 서류심사외 면접심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탁기관 선정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실시【안 제5조제4항 신설】

○ 위원 구성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개정【안 제6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시 서류심사외 면접심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 정심사위원회 구성시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4항에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위탁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면접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 안 제6조(위원회 등) 제3항 중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4항에 “위원회 서류심

사와 위탁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면접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 심사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하고, 심사시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심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면접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5조 제4항의 내용을 제6조 제4항 말미에 임의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6조 제3항의 위원중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위탁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면접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삭 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 등) ①-③ (생 략)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등)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5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0. 27.(제10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자의 참여로 사업우선순위 결정시 객관성 확보와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시 구·동 게시판에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공고하도록 하여 참신하고 능력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범위 확대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 위원 위촉시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동 게시판 등에 공고【안 제7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시 위촉공고문 공고 장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 안 제2조(정의)에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제3호에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제4호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분

야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여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며,

○ 안 제7조(임기 및 위·해촉) 중 공고 장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안 제2조 중 주민의 범위에서 제3호에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신설과 안 제7조 중 공고 장소를 구·동 게시판으로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2조 제4호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분야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신설하는 부분은 이미 같은 조례 제6조 제3항 제3호에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 신설이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3. (생 략) 4.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분야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2조(정의) 1.-3. (개정안과 같음) **4. 〈삭 제〉**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6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0. 27.(제10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보·인터넷에 공고함에 있어 공고기간을 명문화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보조금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보·인터넷 등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15일전에 공고하도록 명문화 【안 제6조제2항】

○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심의일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안 제8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개정【안 제1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공보·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는 기간을 명문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여 보조금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2항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15일 이상” 공고토록 하고, 안 제8조(심의) 중 보조금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등을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일 7일전에 회부하도록 하며, 안 제19조(보조) 제2항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15일 이상 공고토록 함으로써 많은 사회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신청서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7일전에 회부토록 함으로서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보조금 집행결과를 15일 이상 공고토록 함으로서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 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6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5.(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0. 27.(제10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감사청구는 주민이 단체장이나 공무원의 법령위반 등에 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현행 우리구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연서의 수를 상한선인 200명 이상으로 하고 있어 주민들이 좀 더 용이하게 감사를 청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연서의 수를 하향조정하여 주민들이 좀 더 용이하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중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감사청구 남발 여지도 있으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확대와 주민의 권리신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안번호16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7.(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0. 27.(제10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건물신축 : 1개동(지상2층) 530㎡

○ 추정가격 : 984,000천원

○ 취득사유 : 기존 정자활어직판장과 연계한 수산물유통센터(구이단지 및 건어물 판매장) 건립으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변경안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북구 구유동 324-1번지에 기존 정자직판장과 연계한 수산물유통센터(구이단지 및 건어물 판매장) 1개동 지상2층, 530㎡를 984,000천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기 위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산물유통센터(구이단지 및 건어물 판매장)를 건립 운영할 경우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 중요재산 취득의 경우,「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당 5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도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942백만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4절 제109회 제2차정례회

1. 개최이유

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8. 11. 24. 10:00

다. 회　　기 : 2008. 11. 24. ~ 12. 22(29일간)

라. 부의안건

○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목의원 외 3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희의원 외 3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석주의원 외 4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석의원 외 4인 발의)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석의원 외 4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재의요구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의원 외 3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의원 외 3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석주의원 외 3인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근면과 성실함을 상징하는 소의 해 기축년 새해를 설계하는 제109회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 의회에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

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발전과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석구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당면 주요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경우 내년 한 해 동안의 우리 구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와 각종 경제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종합해 보면 3% 초반 정도로 올해보다도 훨씬 저조한 경제성장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상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채용구조 축소 등으로 실업률이 상승함은 물론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새해 예산 편성함에 있어 모든 것을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경제활성화,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과 일회성, 전시성 예산 등이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와 답변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주민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저소득층은 더욱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다가오는 2009년 새해를 더욱 힘차고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8. 11. 24~12. 22(2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8.11.24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1	1. 제10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178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4.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5. 제10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8.11.25 (화) 10:30	2	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9호, 류인목의원 발의-도시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 이영희의원 발의-도시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문석주의원 발의-도시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2호, 박병석의원 발의-도시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8.11.26 (수) 10:00	3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79호, 기획감사실)	
2008.11.27 (목)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주민생활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4호, 주민생활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3호, 박병석의원 발의-주민생활지원국)	부 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2008.11.28 (금) 10:00	5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총무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167호, 기획감사실)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8.11.29 (토)		휴회 (토요일)	
2008.11.30 (일)		휴회 (일요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8.12.1 ~ 12. 14	6-15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당초예산안 심의	
2008.12.15 (월) 10:00	16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구정질문의 건(이은영 의원)	
2008.12.16 ~ 12. 21	17-20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추경예산안 심의	
2008.12.22 (월) 10:00	21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일정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8. 12. 1～12. 15(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8.12.1 (월) 10:00	6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기획감사실　○ 보건소	
2008.12.2 (화) 10:00	7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2008.12.3 (수) 10:00	8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총무국(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2008.12.4 (목) 10:00	9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2008.12.5 (금) 10:00	10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주민생활지원국(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2008.12.6 (토)		휴회 (토요일)	
2008.12.7 (일)		휴회 (일요일)	
2008.12.8 (월) 10:00	11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8.12.9 (화) 10:00	12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도시경제국(건설과, 건축주택과)	
2008.12.10 (수) 10:00	13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호, 문석주의원 발의)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도시경제국(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2008.12.11 (목) 10:00	14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이은영 의원 발의 - 주민생활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류인목의원 발의 - 도시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문석주의원 발의 -도시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 문석주의원 발의-도시경제국)	심의보류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8.12.12 (금) 10:00	15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8.12.13 (토)		휴회 (토요일)	
2008.12.14 (일)		휴회 (일요일)	
2008.12.15 (월) 10:00	16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구정질문의 건(이은영 의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

제10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8. 12. 16~12. 22(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12.16 (화) 10:00	17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감사실 ○ 총무국	
2008.12.17 (수) 10:00	18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주민생활지원국	
2008.12.18 (목) 10:00	19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경제국 ○ 보건소	
2008.12.19 (금)	20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008.12.20 (토)		휴 회(토요일)	
2008.12.21 (일)		휴 회(일요일)	
2008.12.22 (월) 10:00	21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7.(류인목의원 외 3인)

○ 심의일자 : 2008. 11. 25.(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늘려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수를 당초 전체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안 제6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위원 구성에 있어 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 안 제4조 중 “제3호(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제3호의 해당 위원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7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7.(이영희의원 외 3인)

○ 심의일자 : 2008. 11. 25.(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없는 위원회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회의운영 등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본 조례를 시행하는 담당부서의 국장인 도시경제국장 또는 위원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위원을 지명하여 위원장 사고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장 사고시 연장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도시경제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없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회의운영 등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도시경제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위원장 직무 대행자를 “도시경제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규정할 경우 대행자가 도시경제국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7.(문석주의원 외 4인)

○ 심의일자 : 2008. 11. 25.(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달천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 즉 협의회에 대하여 구청장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명문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에 따른 해지기준 신설【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달천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관리 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위탁의 해지사유를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6조(위탁의 해지)에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제3호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제4호에는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로 하여 위탁의 해지사유를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은 부분이 다수가 있으므로 향후 조속한 시일 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7.(박병석의원 외 4인)

○ 심의일자 : 2008. 11. 25.(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구민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상

생의 신노사 협력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사정구민협의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노사의 참여가 아니라 전체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노와 사를 대표하는 위원이 참여하여야 신노사 협력체제를 실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구성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로 개정

【안 제4조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사용자・북구・구민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사정구민협의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 안 제4조 제3항에 위원 위촉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며,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 제3항 중 위원은 동수로 “하며”를 “하되”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며,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 7. (생 략) ④ (생 략)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3.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1. 27.(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서관 평생교육 및 문화강좌 운영 관련 수강료 징수 근거 마련

○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관련 대출근거 정비

나) 주요내용

○ 평생교육, 문화강좌 운영 수강료 징수근거 및 징수기준 신설(안 제3조, 제13조, 별표)

○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관련 대출근거 신설(안 제17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안 제6조, 제3조,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평생교육 및 문화강좌운영 관련 징수 근거마련과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관련 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 안 제3조 제4호, 안 제13조 제3항과 제4항 및 【별표】2호에 도서관의 평생교육 및 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수강료의 징수근거와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관련 대출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안 제13조 제3항 중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에 있어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징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는 문화강좌”로 수정하여 명확히 함이 타당하며,

○ 【별표】2호의 일반강좌(주1~2회 기준) 수강료를 월 20,000원 이하로 책정한 부분에 있어 제10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울산

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평생교육일반과정 수강료(주2회 기준)를 월10,000원 이하로 규정한 것보다 2배 높게 책정한 것으로 같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를 두 조례에서 2배의 차이가 나게 책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보류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1. 27.(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쓰레기봉투를 현행 20종에서 6종으로 단일화하여 소비자인 주민들이 이사 등으로 환불·교환하는 불편사항 해소

○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변동이 없도록 하고, 2008년도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봉투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 현행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공급가격 중 처리비를 수집·운반비로 전환(2007년 대비 4.8%)하여 청소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

레기봉투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 현행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공급가격 중 비용간 조정을 통하여 수집·운반비를 인상하기 위하여

○ 제16조 제1항의 【별표3】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중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및 공급가격 금액은 변동이 없도록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격 중 처리비를 감조정하여 수집·운반비를 4.8%(2008. 8월기준 물가상승율)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표2】의 2007년도 기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용역(수집·운반비)비율과 같이 4개 구청 중 우리구가 비율이 가장 낮고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공급가격 중 비용간 조정을 통하여 유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봉투 수집·운반 위탁업체에 대하여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수집·운반비를 인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청소대행업체와 계약기간(계약기간 만료일: 2008. 12. 31)중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09. 1. 1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7.(박병석의원 외 4인)

○ 심의일자 : 2008. 11. 27.(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인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와 관내 107개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은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과 지원으로 함.【안 제1조】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로당별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경로당 신축의 경우 이용 노인 인구수, 인근 시설과의 거리,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개동에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안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구청장은 시설의 개·보수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 비용의 일부 및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운영비 및 냉·난방비는 국·시비보조금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이용 노인수 및 실제 사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인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경로당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규정하며,

○ 안 제4조에는 경로당의 시설 개·보수 및 신축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경로당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매년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6조에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 등 시설관리토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경로당 신축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신청 절차와 개·보수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는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 안 제12조에는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와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반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안 제7조(시설의 관리)에 있어 연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 등을 하도록만 규정하고, 문구가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한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지원규모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분은 삭제함

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8조(시설의 신축), 제9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신청)와 제10조(개·보수 비용부담) 및 제11조(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의 경우 제4조에서 지원내용과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축의 우선순위 결정, 기부채납과 신청절차, 비용부담 기준 등은 시행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현재까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및 관리지침』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이번에 조례의 제정으로 경로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시설관리)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지원 규모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시설관리)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 제11조. (생 략)	〈삭 제〉

제12조. ~ 제15조. (생 략)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 제11조. (현행 제12조부터 15조까지와 같음)**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1. 28.(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종합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부서명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변경(안 제3조 및 제5조의2)

○ 분장사무 조정

• 총무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5조제2항제1호)

• 도시경제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삭제(안 제6조 제2항제8호)

- 도시경제국 분장사무 중 공공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 추가(안 제6조제2항제8호)

○ 부서명칭 변경

-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변경(안 제5조의2)
- 복지서비스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안 제5조의2)
- 생명산업과를 농수산과로 변경(안 제6조)
-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변경(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부서명을 개정하기 위하여

○ 국, 과 명칭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복지서비스과”를 “사회복지과”로, “생명산업과”를 “농수산과”로,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각각 변경하고

○ 분장사무중 도시경제국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개편하여 민방위 사무를 총무국 총무과로 변경하고, 시설재난관리과에는 기존 재난관리사무와 공공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를 분장함에 따라 민방위 사무를 총무국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도시경제국 분장사무에서 삭제하며, 공공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를 도시경제국 분장사무에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관리 체계

를 일원화하고, 국·과의 명칭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일부 누락된 제5조의2 제2항 본문과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생략)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 5.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신 설〉 ② ~ ⑨ (생 략)	제5조의2(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현행과 같음) ② **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1. 28.(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우리 구 기본절감 목표인력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493명 ⇒ 484명으로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80명 ⇒ 471명

○ 제3조와 관련된 별표의 직급별 정원 조정

• 9명 감(9급 △5, 기능10급 △4)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08. 5. 1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구 2007. 12월말 기준 기본절감(총액인건비 5%) 목표인력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 현행 정원의 총수 493명에서 본청에 9급 4명과 기능10급 4명 등 8명과 직속기관에 9급 1명 등 총9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의 수를484명으로 조정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1. 28.(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교육기반 시설의 불균형 해소와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유치확정(2008. 5. 20)된 특수목적고((가칭)울산외국어고)의 원활한 설립 추진에 있어, 협약체결(북구청 ↔ 시 교육청)에 의한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1조(목적)의 개정

•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급학교의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정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의 개정

•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기반사업”추가

○ 제4조(보조기준액 등)의 개정

• 보조기준액 항목의 단서 신설

- 신설내용 :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 은 예외로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08. 5. 20. 교육기반시설의 불균형 해소와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치가 확정된 특수목적고(울산외국어고)의 원활한 설립 추진에 있어 2008. 5. 30. 북구청과 시 교육청과의 지원협약 체결에 따라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조의 경비보조 목적에 있어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서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로 하여 학교 설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 안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기반사업”을 추가하며,

○ 안 제4조의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에 있어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와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시 교육청과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지원협약에 따라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2010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부지매입비를 2009년도 예산에 편성 지급하여야 함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1. 28.(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재단의 설립 및 사업 규정(안 제2조, 제3조)

○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조성 및 구 출연금(안 제4조, 제5조)

○ 정관의 기재사항(안 제6조)

○ 재단의 임원구성 및 이사회 운영(안 제7조, 제8조)

○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사업연도 및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대부 등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

○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재단 운영의 지도·감독 규정(안 제13조, 제14조)

○ 재단 운영규정(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8. 10. 24.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에서 의안번호 이사장 및 이사 구성과 지도·감독 관계, 재단의 수익사업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등으로 인하여 부결되어 보완 제출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재단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장학사업, 교육기관 유치사업, 학력증진사업 등 대상사업을 규정하며,

○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과 출연금을, 안 제6조에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에는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이사장과 이사는 구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시·구의회 의원 및 교육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등으로 하는 임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며,

○ 안 제8조에는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는 이사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는 사업연도 구분과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각각 규정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공무원의 파견과 겸임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5조에는 재단의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조례안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수인재육성과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1. 28.(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수산업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함

○ 2007년도 정부종합감사 시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미개정으로 지적됨.

나) 주요내용

○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업허가 수수료 신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의한 수산물가공업 등록 수수료 신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이 어업신고 대상에서 어업허가 대상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되어 이 두 어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2001. 9. 1. 해양수산부령 제202호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

칙」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기 위하여

○ 【별표 1】 구분란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의 제3호에 (39)부터 (41)까지를 각각 신설하여 (39)에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1건에 8,000원, (40)에 종묘생산업허가는 1건에 8,000원, (41)에 수산물가공업등록은 1건에 8,0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아래 【표】와 같이 타 자치단체의 수수료와 비교할 때 건당 8,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적정하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 상위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되는 등 법령 재・개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제16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08. 11. 28.(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관을 달리하는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며,

○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07. 7. 9)에 의하면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지방의원에게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 우리 구와 소속을 달리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까지 참석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2. 3.(문석주의원 외 2인)

○ 심의일자 : 2008. 12. 10.(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1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별로 월정수당 등 의정비에 대한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

당,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보(2008. 11. 28)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월 2,950,000원에서 월 2,139,160원으로 개정함.

(안 제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당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7】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안전부 의정비 기준제시액(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 의정활동비) 3,553만원(월정수당 2,233만원 + 의정활동비 1,320만원)에서 월정수당의 상한액인 +20퍼센트인 3,999만원을 의정비 지급 잠정안으로 결정하여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심의한 결과 2008년도 의정비 4,860만원 대비 20% 삭감된 3,887만원(월

정수당 2,567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2008. 11. 28. 의회로 통보된 사항으로

○ 2008년도 의정비 4,860만원 대비 973만원이 삭감되어 의정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을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8.(이은영의원 외 3인)

○ 심의일자 : 2008. 12. 11.(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1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기금의 용도에 있어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노인복지증진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하여 심의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포함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심의를 생활보장위원회로 규정

【안 제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용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안 제1조, 제4조, 제5조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안 제1조(목적)를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주민 및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한 부분에 있어

○ 이 조례는 안 제5조 제3항의 계정 구분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자금,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장애인복지자금 등 4개의 개별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조례로써 목적에 이들 개별 기금계정

에 대한 설치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 운용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은 설치목적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최소한의 기간, 즉 5년 이내로 정하고,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자금계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 안 제6조 제2항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개정하는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1항에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제1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2호: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3호: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1항에도법 제20조 제4항의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기금 설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의한 기금 설치시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 기금의 설치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되며,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8.(류인목의원 외 2인)

○ 심의일자 : 2008. 12. 11.(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1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로법」 제101조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현행법에는 300만원 이하 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행정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9조 및 별표 3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제101조(과태료)에서 도로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행정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 안 제9조 및 별표3을 신설하여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할 경우 행정 신뢰도 제고와 도로관리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개 정 안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부 과 기 준	과 태 료 상한금액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초과면적 1제곱미터이하 5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2호	점용면적 1제곱미터이하 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3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3호	3,000,000원	3,000,000원
4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4호	3,000,000원	3,000,000원
5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2호	미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6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기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3호	미 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수정안】

수 정 안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부 과 기 준	과 태 료 상한금액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초과면적 1제곱미터이하 5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이내마다 30,000원씩 추가	3,000,000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2호	점용면적 1제곱미터이하 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 이내마다 50,000원씩 추가	3,000,000원
3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3호	3,000,000원	3,000,000원
4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4호	3,000,000원	3,000,000원
5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2호	미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6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기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3호	미 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8.(문석주의원 외 3인)

○ 심의일자 : 2008. 12. 11.(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1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여론이 높아 지원대상의 폭을 넓히고, 보조금 신청시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업비 산정에 있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단지내 도로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담장 및 감시 카메라 보수를 추가【안 제4조제2항 제2호 개정, 제6호와 제7호 신설 】

○ 보조금 신청시 복수의 견적서 첨부【안 제9조제2항제3호】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여론이 높아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보조금 신청시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 안 제4조 제2항의 지원대상에 “단지내 도로 유지보수, 단지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단지내 담장 및 감시카메라 보수”를 추

가하여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안 제9조 제2항 제3호중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보조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복수의 견적서 첨부)”로 개정하여 사업비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에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7.(문석주의원 외 3인)

○ 심의일자 : 2008. 12. 11.(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1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해야 할 분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에 구성에 있어서도 구성위원을 명확히 하여 이해당사자간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여 원활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정할 수 있는 분쟁사항을 명확히 구분【안 제3조 】

○ 위원 구성을 세분화【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구성위원을 명확히 하여 이해당사자간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여 원활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안 제3조(기능)에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조정”사항을 세분화 하여 명시하고

○ 안 제4조(구성)에는 위원 구성에 있어 분쟁의 당사자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를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당해 분쟁의 조정완료와 동시에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한 2명을 제외한 위원은 3년으로 정하는 등 원활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제3조(기능)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제4조(구성)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전면개정되면서 「주택법」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었으며,

○ 「주택법시행령」제67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인,

◦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그 밖에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① (생 략)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가 추천하는 1인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1인 3. ~ 6. (생 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생 략)	제4조(구성)① (개정안과 같음)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2명**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2명** 3. ~ 6.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개정안과 같음)

제5절 제110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은영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9. 2. 10. 11:00

다. 회　　기 : 2009. 2. 10～2009. 2. 24.(15일간)

라. 부의안건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의원 외 4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의원 외 5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의원 외 3인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축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구 번영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 한 해 우리 구가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울산외고 설립 지원, 중산문화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달천운동장 조성, 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 건립, 각종 도시개발사업 관리 등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정책 발굴을 도모하여 북구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구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전 있는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 장기화, 수출 부진과 내수시장 위축, 행정환경 급변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

상됩니다만,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감을 갖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이번 첫 임시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시책에 맞추어 녹색성장 추진 시책과 신속한 재정 조기집행은 물론 민생안전 지원을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번 임시회 시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에 대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올해의 첫 임시회부터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1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9. 2. 10～2.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 2.10 (화) 10:00 개회식 직 후	1	(개 회 식)	
		1. 제110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10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2.11 (수) 10:00	2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2009.2.12 (목) 10:00	3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2009.2.13 (금) 10:00		□ 현장활동 ○ 농소1동 주민센터 건립 현장(시설재난관리과) ○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경제교통과) ○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장(시설재난관리과) ○ 달천아이파크 앞 유적공원 현장(도시녹지과) ○ 장등마을 체육시설 현장(문화홍보과)	
2009.2.14 (토)		휴 회(토요일)	
2009.2.15 (일)		휴 회(일요일)	
2009.2.16 (월) 10:00	4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총무국(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189호,도시경제국)	부 결
2009.2.17 (화) 10:00	5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009.2.18 (수) 10:00	6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생활지원국(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2.19 (목) 10:00	7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2009.2.20 (금) 10:00	8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도시경제국(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2009.2.21 (토)		휴 회(공휴일)	
2009.2.22 (일)		휴 회(일요일)	
2009.2.23 (월) 11: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1호, 문석주의원 발의-도시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문석주의원 발의-도시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3호, 이은영의원 발의-도시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부 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9.2.24 (화) 10:00	10	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5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 (의안번호 제196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이은영의원 발의-생활지원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부 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의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당일 의사일정 변경

제1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9. 2. 10～2.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2.13 (금) 10:00	4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총무국(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189호,도시경제국)	
2009.2.14 (토)		휴 회(토요일)	
2009.2.15 (일)		휴 회(일요일)	
2009.2.16 (월) 10:00		□ 현장활동 ○ 농소1동 주민센터 건립 현장(시설재난관리과) ○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경제교통과) ○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장(시설재난관리과) ○ 달천아이파크 앞 유적공원 현장(도시녹지과) ○ 장등마을 체육시설 현장(문화홍보과)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제18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2. 29.(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2. 13.(제110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택법」제52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이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님. 굳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제67조를 그대로 옮기거나, 구체화하는 수준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위원의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항을 수정 또는 추가는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제4호의 “법률전문가” 및 제5호의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은 법령에서 정한 위촉 대상이 아니므로, 상위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오니,

○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합니다.

3)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2. 2.(문석주의원 외 4인)

○ 심의일자 : 2009. 2. 23.(제110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한 양수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받은 양수기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

고 꼭 필요할 경우 관리책임자로부터 승낙을 받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양수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관리책임자로부터 승낙 받은 경우에는 양도 가능 【안 제8조 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한 양수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받은 양수기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관리책임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8조2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2. 2.(문석주의원 외 2인)

○ 심의일자 : 2009. 2. 23.(제110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지역자율방재단 단장과 부단장 선출방법은 단원이면 누구나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단장의 경우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장과 부단장을 동단장 및 단체 방재단 대표 중에서 선출하면 좀더 유능한 인재가 단장과 부단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동에서조차 동단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가 단장이나 부단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임. 또한 방재단 소집을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단장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소집할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 하도록 하여 방재단 소집의 주체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구청장의 자의적인 소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단장 및 부단장에 선출될 수 있는 자를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로 한정하고 선거권도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에게만 부여 【안 제3조제2항】

○ 방재단 소집을 단장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단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의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과 부단장의 선출에 있어 유능한 인재가 선출될 수 있도록 대상 자격과 선출방법을 변경하고, 방재단 소집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구청장의 자

의적인 소집을 막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장과 부단장은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중에서 선출하되,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 대표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고

○ 안 제8조 제1항에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안 제3조 제2항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동단장 및 단체방재단의 대표”로 제한한 부분에 있어 단원 중 특정인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3조 제2항의 단장 및 부단장의 피선거권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개정하므로 현 조례에 따라 선출되어 임기가 2007. 9. 18부터 2010. 9. 17까지 재임중에 있는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보장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신설함이 타당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2. 2.(이은영의원 외 5인)

○ 심의일자 : 2009. 2. 23.(제110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타 위원회 운영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 안 제13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 조사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의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2. 4.(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2. 23.(제110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2008.7.9)에 따라 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 제11조)

○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 제18조)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1조)

○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의2)

○ 수수료 면제조항 및 안전도검사 대상시설물 추가(안 제34조)

○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조정(안 제35조, 별표 5)

○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안 제37조)

○ 그 밖의 관련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 12. 21. 같은 법 시행령이 2008. 7.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2008. 11. 11.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시 광역시장과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1조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있어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전주 및 가로등주가 삭제됨에 따라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 안 제18조제4항의 전광류 표시방법에 있어 영 제 31조 제4항 제3호에서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당초 30%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 안 제31조의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있어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과 영업소내 등록번호와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며,

○ 안 제33조의2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35조의 【별표5】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을 조정하고 광고물 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며,

○ 안 제37조에 특정구역내 광고물의 원활한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으로 전주 및 가로등주가 광고물 표시금지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별표 2】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에서 전주와 가로등주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광고물 실명제의 시행과 옥외광고업

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2. 4.(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2. 24.(제110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 시달(2008.9.29) 및 상위 관련법이 개정되어 인용조문 정정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 등「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명칭 변경(안 제7조)

○ 임대주택사업자 범위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삭제(안 제10조)

○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정비(안 제15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6조)

○ 「화물유통촉진법」을「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안 제19조)

○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등으로 2008. 9.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구세 감면 조례 표

준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제3호 및 제24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 상위법령인 임대주택법 등의 개정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사업자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를 “임대사업자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 조제1항제1호·제2호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중 내용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 제19조의 제목을 상위법령인 2008. 2. 4일 「화물유통촉진법」에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에 따른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임대주택법」과 「물류정책기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2. 4.(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2. 24.(제110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세에만 한정되어 있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세입 전반으로 확대하고, 민간인에게도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민간인에게도 지급 가능토록 근거 마련(안 제2조)

○ 지급기준 항목 추가 신설(안 제3조)

•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 징수액의 2/100

•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등을 발견하여 점·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징수액의 5/100

• 새로운 시책개발 등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 징수액의 1/100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06. 3. 30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세에서 세입 전반으로 확대하고, 민간인에게도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목적) 중 “세수”를 “세입”으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하고,

○ 제2조 제1항 지급대상에 있어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과 “새로운 시책개발 등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각각 추가하여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 제3조 제1항의 지급기준에 있어 제2조 제1항의 지급대상의 확대에 따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하여 제3호에는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2, 제4호에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사용료 등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제5호에는 새로운 시책개발 등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1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개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 표준안에 따라 세입증대를 위해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구·군별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현황 : 【붙임】 표 참조).

【표】

구·군별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현황

구 분	중구	남구	울주군	동구	북구 개정안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100분의1	100분의1	-	100분의1 [기존]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분 이상 (중구:1년경과) 체납액을 징수한 자	100분의5	100분의5	100분의5	-	100분의5 [기존]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경우	100분의5	100분의2	100분의2	-	100분의2 [신설]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100분의 20이내 [별표1]	100분의5	100분의5	-	100분의5 [신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의안번호 제19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2. 4.(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2. 24.(제110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와「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의무를 규정(안 제1조, 제3조, 제4조)

○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등의 생태계 보호·복원 노력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5조)

○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및 정밀조사, 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생태환경이 우수한 장소의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등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입제한, 행위위반자 중지명령, 개발사업 등 시행시 생태통로의 설치를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민간 자연보전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단체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자연자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 안 제5조에는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등에 대한 생태계 보호·복원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및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 및 생태교육 등 활용에 적합한 장소의 자연휴식지 지정과 관리 등을 규정하고

○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정하도록 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입제한, 행위위반자 중지명령,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등을 규정하며, 안 제17조에는 개발사업 등 시행시 생태통로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 안 제18조에는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자연보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장으로 시달된 자연환경보전조례 준칙안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참고로, 본 조례는 전국 광역시·도와 일부 시·군에서만 제정 운용하고 있고, 광역시 중 자치구에서는 아직까지 제정하여 운영중인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울산광역시 관내 구·군에서는 울주군이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8.(이은영의원 외 3인)

○ 심의일자 : 2009. 2. 24.(제110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기금의 용도에 있어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노인복지증진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하여 심의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포함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심의를 생활보장위원회로 규정 【안 제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용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안 제1조, 제4조, 제5조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안 제1조(목적)를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주민 및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한 부분에 있어

○ 이 조례는 안 제5조 제3항의 계정 구분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자금,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장애인복지자금 등 4개의 개별 기금

을 통합관리하는 조례로써 목적에 이들 개별 기금계정에 대한 설치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 운용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은 설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최소한의 기간, 즉 5년 이내로 정하고,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자금계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안 제6조 제2항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개정하는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1항에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제1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2호: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3호: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1항에도 법 제20조 제4항의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기금 설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의한 기금 설치시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 기금의 설치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4) 심의결과 : 부결

제6절 제111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인목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9. 3. 26. 10:00

다. 회　　기 : 2009. 3. 26 ~ 2009. 4. 3(9일간)

라. 부의안건

○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구청장 제출)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회기 중에도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조례 입법연구회, 민원 상담실 운영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신속한 재정 조기 집행은 물론 민생안전 지원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오셨듯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그동안 충분히 수렴해 온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상정된 의안들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벌써 4월 달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최되는 제3회 강동수산물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

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11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9. 3. 26～4. 3(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3.26 (목)	1	개 회 식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00 개회식 직 후		1. 제11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1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3.27 (금) 10:00	2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2009.3.28 (토)		휴 회(토요일)	
2009.3.29 (일)		휴 회(일요일)	
2009.3.30 (월) 10:00	3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생활지원국	
2009.3.31 (화) 10:00	4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경제국	
2009.4.1 (수) 10:00	5	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생활지원국)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호, 총무국)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호, 총무국)	원안가결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동동 주민센터·천곡문화센터, 의안번호 제204호)	원안가결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산문화센터, 의안번호 제205호)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4.2 (목) 10:00	6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009.4.3 (금) 10:00	7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3. 17.(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4. 1.(제111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08.1.8) 됨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

나)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안 제6조)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및 도시경제국장

○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년 1월 8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인 부구청장”에서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 안 제6조제2항에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 안 제6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을 “위원장과 도시경제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구청장과 도시경제국장”으로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3. 17.(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4. 1.(제111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택법」(‘03.5.29 법률 제6916호, 시행 ‘03.11.30) 및「주택

법 시행령」(‘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시행 ‘03.11.30)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제4조)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항 등(안 제5조부터 제9조)

○ 분쟁조정 신청, 효력, 종결 등(안 제10조부터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령 제92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나, 2003.5.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시행일:2003.11.30)과 2003.11.29 대통령령 18146호로 주택법시행령(시행일 : 2003.11.30)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택법」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안 제2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에는 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주택법 시행령」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따르도록 하였고, 안제4조의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포괄적으로 언급되어 있던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타 조항의 경우에도 기존 조례보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률인 「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이 2003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조례도 신속히 개정되어야 하는데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0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3. 17.(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4. 1.(제111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08.3.21 법률 제8966호, 시행 '08.6.22) 되면서 기존「임대주택법」제18조의2제5항에 규정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내용이 삭제됨

○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부개정('08.6.20 대통령령 제20849호, 시행 '08.6.22)되면서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세칙□□이 신설되어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기존「임대주택법」제18조의2 제5항의□□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근거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임대주택법」이 2008. 3. 21자로 전부 개정되면서 임대주택법」제18조의2제5항이 삭제되었고, 2008. 6. 20.자로「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근거가 되는「임대주택법」제18조의2제5항이 삭제되었고,「임대주택법」제33조제2항에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3. 17.(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4. 1.(제111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서관 교육·문화강좌 운영 관련 수강료 징수 근거 마련 및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관련 대출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서관 교육·문화강좌 운영 수강료 징수근거 및 징수기준 신설(안 제3조, 제13조, 별표)

○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관련 대출근거 신설(안 제17조)

○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교육 및 문화강좌운영 관련 징수 근거 마련과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관련 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 안 제3조 제4호, 안 제13조 제3항과 제4항 및 【별표】 2호에 도서관의 교육 및 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수강료의 징수근거와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관련 대출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09회 제2차 정례회시 수강료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수강료와의 차이로 인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부결될 당시 논란이 되었던 평생교육 부분은 제외하고 수강료의 금액을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수강료 기준에 맞게 보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3.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4. 1.(제111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관련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도에 적용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현행□□1천분의 2□□를 “1천분의 1.8”로 개정(안 제25조제1항 단서)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에 따라 2009년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1.8”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세율인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타 자치단체의 항공기 세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타 자치단체 항공기 세율 현황: 붙임)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3.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4. 1.(제111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여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

가를 지급한 부분은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므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 시 허가 준공된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도 동일한 대부요율(25/1,000)을 적용(안 제28조제3항제3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대부료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조정감액률을 40~50% 차등 적용에서 70%로 일률적 상향조정(안 제33조)

○ 사유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연도를 1981. 4. 30. 이전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서 1989. 1. 24. 이전의 건물로 매각기준 완화(안 제39조제3호)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일: 2009. 4. 27)과 2008. 12. 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의 개정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여 공유재산 분류

체계를 개선하며,

○ 제4조(심의회의 업무)제1항제2호를 영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의 개정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은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므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서 삭제하고,

○ 안 제28조제3항제3호중 국유재산법에 의한 주거용 토지 대부료 요율적용과 같이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 시 허가 준공된 건물뿐 아니라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도 동일한 대부요율(25/1000)을 적용하도록 하며,

○ 영 제16조(사용료의 조정) 및 제34조(대부료의 조정)의 개정으로 대부료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조정감액률을 40~50% 차등 적용에서 70%로 일률적 상향조정하고,

○ 안 제39조제3호에 2008. 9.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사유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년도를 1981. 4. 30 이전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서 1989. 1. 24. 이전의 건물로 매각기준을 완화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대부요율 적용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매각기준을 완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동동 주민센터·천곡문화센터, 의안번호 제20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3.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4. 1.(제111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 : 2건 14필지 4,110㎡

- 건물신축 : 2건 2개동(지상3층) 2,228㎡

○ 추정가격 : 5,733백만원(토지매입 2,051, 건물신축 3,682)

○ 취득사유

- 강동동주민센터 신축(회계정보과)

- 천곡문화센터 건립(문화홍보과)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이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강동동 주민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 정자동 277-2번지 외 4필지 2,310㎡와 건물 1개동(3층) 1,128㎡를

취득(토지 추정가액: 1,386,000천원, 건물 추정가액 : 1,865,000천원)하고,

○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농소지역에 동 주민센터와 문화의 집이 한 건물에 위치하여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좁고 이용자에 비해 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등 동 주민센터와 거리가 먼 천곡동 지역의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천곡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토지 천곡동 266-2번지 외 8필지 1,800㎡와 건물 1개동(지상3층), 1,100㎡를 취득(토지 추정가액: 665,000천원, 건물추정가액: 1,817,000천원)하기 위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천곡문화센터 건립의 경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8. 9.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시기를 기본계획의 경우 익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수시계획의 경우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만 규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긴급한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번 취득대상 2건의 경우 기존 동 주민센터 건물의 노후화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좁고 이용자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산문화센터, 의안번호 제20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3.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4. 1.(제111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산동문화센터 건립계획」변경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1건

ㅇ 취득내용

- 토지매입 : 중산동 798-2번지 외 2필지 3,066㎡

- 건물신축 : 1개동(지상4층) 1,100㎡

- 공 작 물 : 다목적 구장 1식

ㅇ 추정가격 : 3,869백만원

○ 취득사유

- 행정기관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문화 소외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중산 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 부지매입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및 다목적구장 조성 등 사업량 증가에 대하여 변경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변경계획안은 행정기관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문화 소외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중산 문화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부지매입비 상승 및 다목적구장 조성 등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가 당초 2,300백만원에서 1,569백만원이 증가한 3,869백만원으로 68.2%증가함에 따라 변경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변경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이유 중 건물 증축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추진 시에 건립대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매입대상부지 총 3필지 중 1필지만 매입하고 2필지는 지주의 수령거부로 매입을 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부지매입비도 당초 800백만원에서 1,511백만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바, 향후 공공건물 건립 시에는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시정을 촉구하고, 이번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7절 제112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재건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9. 5. 27. 10:00

다. 회　　기 : 2009. 5. 27～2009. 6. 1.(6일간)

라. 부의안건

○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류인목의원 발의)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석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문석주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안

(이은영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병석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국민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책임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민생안정 지원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힘들었던 실물경제가 다소나마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회복이 아닌 지속적인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하는 제112회 임시회에서는 다가오는 제1차정례회에서 다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와 함께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사전에 구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통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6월 달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당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갑작스런 이상고온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주 내린 비가 여러모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북한 핵실험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인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09. 5. 27 ~ 6. 1(6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5.27 (수) 10: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23호)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5.28 (목)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7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총무국)	수정가결 수정가결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8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류인목의원 발의-생활지원국)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2호)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9.5.29 (금)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 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 박병석의원 발의-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문석주의원 발의-의회사무과)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의안번호 제214호, 이은영의원 발의-의회사무과)	원안가결 부 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9.5.30 (토)		휴 회(토요일)	
2009.5.31 (일)		휴 회(일요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6.1 (월)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도시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2호, 박병석의원 발의-도시경제국)	수정가결
		4.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0호, 도시경제국)	부 결
		5.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1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5. 28.(제11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적의 침투·도발 및 위협 등에 있어서 관·군·경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방위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위원임기(안 제2조)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안 제3조)

○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안 제4조)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 및 위협 등에 있어서 관·군·경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방위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는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협의회의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 안 제7조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며, 안 제8조에는 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 본부를 두고, 지원본부에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운영토록 하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과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을 살펴보면, 본 법은 1997. 1. 13 법률 제5264호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시행일자: 1997. 6. 1) 되었으며,

○ 법 제정 당시부터 제5조와 제9조에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된 지 1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정하지 아니하고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상위법령과 명칭이 맞지 않은 “지원본부”를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간사) ①·② (생략) 1. (생략)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제6조(간사)** ①·② (생략) 1. (생략)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5. 28.(제11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울산광역시 및 타 구·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당직수당 상향 조정(안 제7조제4항)

• 현행 일·숙직수당 30,000원을,

- 평일 50,000원,

-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60,000원으로 상향 조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울산광역시 및 타 구·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 안 제7조 제4항에 현행 일·숙직수당 30,000원을 평일에는 50,000원,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은 6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북구지부와 협상을 거쳐 평일은 50,000원,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은 60,000원으로 인상 결정하였고, 울산광역시와 타 구·군과 비교할 때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당직수당은 예산에 비해 소액으로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변동이 있을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됨으로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평일 숙직수당 : 5만원(1회, 1인당) 2.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수당 : 6만원(1회, 1인당)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4. 28.(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5. 28.(제11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 완화

○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공무원법」 개정(2008.12.31 법률 제9301호) 사항을 반영

나) 주요내용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1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제11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있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11조제1항에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1조제2항에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규정을 각각 신설하며,

○ 안 제12조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2008. 12. 31일자로 법률 제9301호로 「지방공무원법」이 전면 개정되고, 2009. 2. 25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1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19.(류인목의원)

○ 심의일자 : 2009. 5. 28.(제11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안 제4조】

○ 대상자 결정 【안 제5조】

○ 보험료 지급【안 제6조】

○ 환수 등【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방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로부터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대상자를 신청 받아 대상자를 결정하여 울산중부지사 계좌로 지급하며,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현재 울산광역시 4개 구·군 중 동구를 제외한 남·중구·울주군에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수납자”를 “대상자”로,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급여”를 “지원”으로 하여 조항의 서식 제목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년 월분)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수납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급여**대상자 명단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만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삭제>** [별지 제1호서식] (년 월분)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2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21.(의장 제의)

○ 심의일자 : 2009. 5. 28.(제11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감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감사기간 : 2009. 7. 10 ~ 7. 16(7일간)

○ 감사장소 : 북구 의회 소회의실

○ 감사의 주체 : 본회의(전 의원 7명)

○ 감사방법 :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의 요구 및 확인, 현장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

○ 감사 요구자료 : (붙임참조)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5. 29.(제11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과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안 제3조, 별표 1, 별표 2)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제4조, 별표 3)

• 5급 이상 조례(6급 이하는 총수만 기재), 6급 이하는 규칙으로 개정

○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 조항 신설(안 제5조)

•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08. 7. 3 대통령령 제2090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과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여 5급 이상은 조례로,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며, 6급 이하 정원 384명에서 1명을 감하여 직속기관(보건소)에 5급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 5급 1명을 증원하며,

○ 안 제5조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신설하여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인구증가로 인해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5급 직제를 신설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총 정원에서 1명을 감하여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19.(박병석의원)

○ 심의일자 : 2009. 5. 29.(제11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및 여성위원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안 제3조제2항】

○ 위원중 공무원의 비율은 2분의 1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여성 40% 이상, 시민단체 20%이상으로 구성【안 제3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및 여성위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 안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안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중 공무원의 비율을 2분의 1이내로 구성하고, 여성위원을 40%이상, 시민단체 20%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먼저 현행 조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44조(지방투자 심사위원회의 설치)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는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 투자심사위원회의 경우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울산광역시 북구 설치시 조례제정 당시부터 통합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되나, 안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호선할 경우 행정내부를 잘 알지 못해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 제3조제4항에서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 위촉시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함으로 객관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과 같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3조 제4항 중 여성 40%이상, 시민단체 20%이상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위원과 시민단체위원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위원 위촉시 지역 여건상 각 분야별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비율조정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19.(문석주의원)

○ 심의일자 : 2009. 5. 29.(제11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외 많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북구 의회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다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개별적인 조례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 및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반영으로 향후 행정 신뢰도 제고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함(안 제2조)

○ 조례의 본문·부칙·별표·별지서식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함(안 제3조제2항)

○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조문을 일괄정비함(안 제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다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개별적인 조례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 및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반영으로 향후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별표 1]과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에는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에 낫표(「」)를 사용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조례중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을 [별표 2]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7개 조례 중 23개 법령 및 조문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 안은 의회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및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명 및 조문을 그 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21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19.(이은영의원)

○ 심의일자 : 2009. 5. 29.(제11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외 많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북구 의회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규칙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다수 규칙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개별

적인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 및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반영으로 향후 행정 신뢰도를 제고

나) 주요내용

○ 규칙의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함(안 제2조)

○ 규칙의 본문·부칙·별표·별지서식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함(안 제3조제2항)

○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규칙 조문을 일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규칙 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규칙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다수 규칙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개별적인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와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반영으로 향후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별표1]과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등 5개 규칙으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에는 규칙에서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규칙 중 상위 법

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을 [별표 2]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중 7개의 법령 및 조문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 검토결과 본 제정 규칙 안은 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규칙에서 인용되는 법명 및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20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4. 28.(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6. 1.(제112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비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기초자지단체로 직접 교부하던 방식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방식으로 변경

○ 보조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지원사업의 정의(안 제2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세입의 정의(안 제3조)

○ 세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의 정의(안 제4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안 제5조)

○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준용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교부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안과 제2안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은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5조와 제6조는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설치된 기금,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의 규정에 정한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제외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당초부터 일반회계에 편성 집행하거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그동안 지원금액이 적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사료되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6. 1.(제112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개정(2008.2.29)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06.10.29)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2005.5.18)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적용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함(안 제6조제4항제4호 단서)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경감(안 제6조제4항제5호)

○ 재래시장 이용 고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 경감(안 제6조제4항제6호)

○ 다자녀 가정에게 발급하는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 경감(안 제6조제4항제7호)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2008. 2. 29「공직선거법」의 개정과 2006. 10. 2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및 2005. 5. 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현행 규정상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4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하며,

○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신설하여 제5호에는 「공직선거법」제2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 2,000천원을 경감하고,

○ 안 제6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며,

○ 안 제7조에는 다자녀 가정에 발급하는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등 상위 법령의 제정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19.(박병석의원)

○ 심의일자 : 2009. 6. 1.(제112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구민 자전거의 운영 【안 제6조】

○ 자전거이용자 보험【안 제8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안 제10조】

○ 자전거 펌프장 설치【안 제14조】

○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안 제18조】

○ 위원회의 설치【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두개의 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도 지자체별로 조례가 제정 중에 있는 가운데, 구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등과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민 자전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자전거 펌프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6조에서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이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안 제22조에 민

간단체 지원 등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17조 단서의 자전거전용도로내 전기자전거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있어 전기자전거는「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 및 제18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으로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조항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6조(구민자전거의 운영) (생 략) ② (생 략)	**제6조(구민자전거의 운영)**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생 략)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3.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한다. 3.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생 략)	**제17조 <삭제>**
제18조~제30조(생 략)	**제17조~제29조 <조문 번호 수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6. 1.(제112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한 북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분담률 향상을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

○ 자전거이용구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 자전거 보험을 명시함.(안 제8조)

○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출·퇴근수당 지급을 명시함. (안 제10조)

○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함.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두개의 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도 지자체별로 조례가 제정 중에 있는 가운데, 구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며, 다른 부분은 안 제10조의 자전거 출·퇴근 수

당에 대한 부분으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강제사항은 아니나, 시행에 있어 자전거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법에서 자전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등록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급 대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또는 각급 학교에 대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 예산 지원부분과 자전거 펌프장 설치, 자전거타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운영,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은 본 조례 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 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6. 1.(제112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옥상녹화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절약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

지 절약형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구차원에서 울산광역시의 옥상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실천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대상(안 제4조)

- 공용건축물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 3층 이상
- 민간건축물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 3층 이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안 제5조)

- 단열 및 기밀계획, 배치 및 평면계획, 그 밖의 계획 등 에너지 절약 설계의 세부적 기준 마련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안 제6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및 제11조 규정 적용
- 건축주·시공자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 당부

○ 녹화계획서 제출대상(안 제8조)

- 공용건축물 :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슬래브로 된 건축물
- 민간건축물 :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슬래브로 된 건축물

○ 옥상녹화의 적용대상 및 면적기준(안 제9조)

-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옥상녹화

- 그 밖의 건축물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옥상녹화

○ 옥상 및 벽면 등의 녹화 설계기준(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 옥상녹화, 벽면녹화, 그 밖의 조경식재 설계기준 마련

○ 녹화계획서 제출 및 변경(안 제13조)

- 녹화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에 대한 절차와 별지서식에 대한 사항

○ 녹화완료서 제출 및 확인(안 제14조)

- 녹화완료서의 제출 및 확인에 대한 절차와 별지서식에 대한 사항

○ 녹화의 관리 및 시정권고(안 제15조, 안 제16조)

- 건축주 등은 녹화완료서를 근거로 조경시설 등을 관리
- 구청장은 녹화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건축주 등에 시정을 권고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의 구성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총칙부분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옥상 및 벽면 등의 녹화 설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을 정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있어,「건축법」제66조 및「건축법 시행령」제91조 규정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목욕탕, 문화 및 집

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학교, 수영장, 업무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에 대하여「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에너지 절약 설계 대상 건축물을 공용건축물은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 민간건축물은 건축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로 하되,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에너지절약 설계를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사항이 없어「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권장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 안에 정한 기준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권고의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조례안을 통해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상징적인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옥상 및 벽면 등의 녹화 설계기준 규정 또한 권장·권고 사항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범국가 시책인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8절 제113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영희의원 외 2인

나. 개회일시 : 2009. 6. 15 (월) 10:00

다. 회　　기 : 2009. 6. 15~6.22 (8일간)

라. 부의안건

○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문석주의원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초여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등 점차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달에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것은 실로 우려할만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구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반기에만 벌써 네 번째로 개회되는 임시회인 가운데 곧 1차정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오셨듯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그동안 충분히 수렴해 온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6월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도 8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원과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소모성 사업이 아닌 생산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66개에 이르는 단위사업별로 꼼꼼히 챙겨 봐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 계절인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17만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3. 의사일정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09. 6. 15~6.22(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6.15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25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장
		5.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감사실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6호) 7.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 건 소 8.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4호)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9.6.16 (화) 10:00	2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소회의실
2009.6.17 (수) 10:00	3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경제국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8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6. 15 (제11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하는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원 확대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안 제3조제2항】

○ 위원중 공무원의 비율은 2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시민단체의 비율은 20%이상으로 구성【안 제3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안 제3조제4항에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은 2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시민단체의 비율은 20%이상으로 구성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앞선 제112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여성위원 비율 문제로 부결된바, 이를 보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3 (이영희의원)

○ 심의일자 : 2009. 6. 15 (제11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우리 구 주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안 제4조】

○ 클린 에어 존 지정 및 지원【안 제5조】

○ 금연교육 및 홍보 등【안 제6조】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생활권 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소 등에 대하여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5조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클린 에어 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금연홍보관을 설치·운영과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행하는 금연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는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및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검토결과 안 제4조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공중시설과 지정기준·방법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등 일부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버스·택시정류소 등 다중이용 장소에 대하여 금연권장구역을 지

정·운영하고, “클린 에어 존”을 지정·운영하는 등 현행법령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 제22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8 (문석주의원)

○ 심의일자 : 2009. 6. 18 (제113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심의사항, 구성, 회의, 수당과 여비【안 제4조~7조】

○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안 제8조】

○ 고시【안 제9조】

○ 보전관리【안 제11조】

○ 지원 등【안 제14조】

○ 표창【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향토문화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향토문화재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향토문화재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및「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과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향토문화재 지정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1조, 안 제14조에서는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소유의 향토문화재에 대해 예산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되어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예산지원대상을 심의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9절 제114회 제1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9. 7. 1　10:00

다. 회　　기 : 2009. 7. 1 ~ 7. 20 (20일간)

라. 부의안건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병석의원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중 남은 반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2006년7월1일 출범하여 이제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3년 전 이곳에서 의원선서를 통해 다짐했던 초심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의 무한한 봉사자로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갈등을 통합,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17만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의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 문제에 있어 여러 구민의 의견을 두루 모아 보다 생산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희망과 감동을 주는 북구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단편적인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큰 틀의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권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유

용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재정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에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과다 불용액을 비롯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17만 구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 여름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하절기를 맞아 17만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3. 의사일정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9. 7. 1~ 7. 20(2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7.1 (수)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7.1 (수) 10:00 개회식 직 후	1	1.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35호) 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결산검사 대표위원 - 류재건 의원) 5.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장
7.2(목) 10:00	2	1.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33호, 민원지적과, 생활지원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2.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7.3(금) 10:00	3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소회의실
7.4(토)		휴 회(토요일)	
7.5(일)		휴 회(일요일)	
7.6(월) 10:00	4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국(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소회의실
7.7(화) 10:00	5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소회의실
7.8(수) 10:00	6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29호, 도시경제국)	부 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9(목) 10:00	7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경제국(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7.10(금) ~ 7.16(목)		행 정 사 무 감 사, 현 장 확 인 (세부 일정 붙임 참조)	소회의실 및 현장
7.17(금) 10:00	8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0호, 생활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호, 생활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2호, 생활지원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7.18(토)		휴 회(토요일)	
7.19(일)		휴 회(일요일)	
7.20(월) 10:00	9	1.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회의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2009. 7. 10 ~ 7. 16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9.7.10 (금)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총 무 국 • 총 무 과 • 회계정보과 • 지 방 세 과 • 민원지적과	
2009.7.11 (토)	10:00	현 장	현장 대상부서	장소는 추후결정
2009.7.13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 무 국 • 환경위생과 ○생활지원국 • 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문화홍보과	
2009.7.14 (화)	10:00	〃	○생활지원국 • 환경미화과 • 평생교육과 ○도시경제국 • 도시녹지과 • 경제교통과	
2009.7.15 (수)	10:00	〃	○도시경제국 • 건 설 과 • 건축주택과 • 농 수 산 과 • 시설재난관리과	
2009.7.16 (목)	10:00	〃	○보 건 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

〈변경 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17(금) 10:00	8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0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소회의실
7.18(토)		휴 회(토요일)	
7.19(일)		휴 회(일요일)	
7.20(월) 10:00	9	1.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회의장

〈변경 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17(금) 10:00	8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0호)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1호)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5호)	원안가결

7.18(토)		휴　　회(토요일)	
7.19(일)		휴　　회(일요일)	
7.20(월) 10:00	9	1.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구정질문의 건(박병석 의원)	본회의장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2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9. 7. 8(제114회 제1차정례회 제6차본회의)

2)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안 제5조제1항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23조제1호는「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자를「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5조 및 제23조는 각각 상위법령에 위반되며,

○ 조례안 제18조제3항는「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나,「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18조는 상위법령에 위반됩니다.

○ 아울러 조례안 제18조제4항은「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향후 자전거로 인한 대인사고시 과도한 책무(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가 보험약관으로 작용하여 구민들에게 보험혜택 수혜를 제한할 수 있으며,

○ 조례안 제19조제1항 중「외부의 위해요소」는 단어해석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같은 항은「반드시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인사고로 인한 보호시설 미설치로 인한 자전거보험 적용시 보험 혜택의 미적용 우려가 생기며, 현재 설치된 자전거 도로상 지장물이 많이 존치하여 이로 인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며 소송재기시 구청이 패소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25조제3항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기는 통례적으로 담당주사가 하므로 서기를 담당과장에서 담당주사로 수정함이 타당함.

○ 따라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2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9. 7. 17 (제114회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8.11.5)으로 그 동안 운영되어온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인원 확대 및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범위를 확대함.

• 대표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

• 실무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

○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의 장이 자치단체장임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역할관계 적절하게 함.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변경

○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2008. 11. 5)에 따라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인원 확대 및 대표협의체 당연직위원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 대표협의체 위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실무협의체 위원을 “20인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여 위원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

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 2008. 11. 5일자로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 구성 범위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22 (문석주의원)

○ 심의일자 : 2009. 7. 17 (제114회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소규모 납부필증 판매소의 고충해소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를 다양하게 공급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기타 실제와 맞지 않는 사항 정비안이유

나) 주요내용

○ 판매수수료 인상 및 납부필증 종류를 현실에 맞게 별표 정비 (안 제14조의 2, 별표 4)

• 판매수수료 5%(현행) → 7.5%

- 3리터 가정용 수거용기 추가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실제 사용하고 있는 60리터 공동주택용 수거용기에 대한 사항 추가
-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납부필증 공급 조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소규모 납부필증 판매소의 고충을 해소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를 다양하게 공급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기타 실제와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 [별표4]의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에 있어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현행 “5%”에서 “7.5%”로 인상하고, 가정용에 3리터 수거용기와 공동주택용에 60리터 수거용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판매수수료의 2.5%를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판매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향후 인상시에는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정용 3리터 수거용기와 공동주택용 수거용기 60리터를 추가하는 것은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 울산광역시 자치단체별 판매수수료 현황

(단위:%)

구 분	우리구	중 구	남 구	동 구	울주군	비고
판매수수료 요율	5	6	6 ~ 9	5	5~10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22 (문석주의원)

○ 심의일자 : 2009. 7. 17 (제114회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금년도에 오토밸리 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관리 및 운영 : 직영 원칙, 일부시설 위탁 또는 임대(안 제4조)

○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사용시간 및 휴무일(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오토밸리 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 및 오토밸리 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토록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도록 하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 제5조에서는 사용신청·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서는 체육시설 및 오토밸리 복지센터의 사용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사용시간과 휴무일을,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오토밸리 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료 등을 책정함에 있어 타 자치단체와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고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7. 10 (박병석의원)

○ 심의일자 : 2009. 7. 17 (제114회 제1차정례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구민자전거의 운영 【안 제6조】

○ 자전거이용자 보험【안 제8조】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안 제10조】

○ 자전거 펌프장 설치【안 제14조】

○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안 제17조】

○ 공무원의 자전거이용【안 제18조】

○ 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2009. 5. 19. 의안번호 제212호로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9. 6. 1)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일부조항의 상위법령 저촉사유로 재의요구되어 이번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09. 7. 8)에서 부결된 조례안에서 재의요구안 심의시 쟁점사항인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안 제18조에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솔선하도록 하며,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0절 제115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박병석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9. 9. 21 10:00

다. 회　　기 : 2009. 9. 21～ 9. 29 (9일간)

라. 부의안건

○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류재건의원·류인목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희의원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이 항상 그래오셨듯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그동안 충분히 수렴해 온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추경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심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종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힘들었던 실물경제가 다소나마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각종 지표가 발표되고 있으나 신종플루로 인해 세계옹기엑스포가 연기되는 등 각종 행

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바람에 지역 경제에 타격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는 물론 확산에 대비한 충분한 의약품 및 기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아가 청소년, 임산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실내행사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 또는 연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우리 모두가 공직자로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석맞이 종합대책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 계절인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17만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3. 의사일정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09. 9. 21～9. 29(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9.21 (월) 10:00 개회식 직 후	1	개 회 식 1.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43호) 4.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본회의장
2009.9.22 (화) 10:00	2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생활지원국	소회의실
2009.9.23 (수) 10:00	3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소회의실
2009.9.24 (목) 10:00	4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경제국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39호, 도시경제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9.25 (금) 10:00	5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 조정	소회의실
2009.9.26 (토)		휴 회	
2009.9.27 (일)		휴 회	
2009.9.28 (월) 10:00	6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4호, 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5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7호, 도시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0호, 이영희의원 발의-의회사무과)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41호, 이영희원 발의-의회사무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부 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9.9.29 (화) 10:00	7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9.25 (금) 10:00	5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 조정	소회의실
2009.9.26 (토)		휴 회	
2009.9.27 (일)		휴 회	
2009.9.28 (월) 10:00	6	1. ~ 7. : 각종 조례안 7건 심의	소회의실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9.25 (금) 10:00	5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2009.9.26 (토)		휴 회	
2009.9.27 (일)		휴 회	
2009.9.28 (월) 10:00	6	1. ~ 7. (당초와 같음) 8.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 조정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3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9.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9. 24 (제115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북구 연암동 1084-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특수학교) 결정(폐지) 됨에 따라 특수학교 부지를 공공청사로 확보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의 결정(변경) 입안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변경)

- 시설명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 시설의 세분 : 북구청사 및 문예회관
- 면　적 : 49,220㎡ → 65,509㎡(증 16,289㎡)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9.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9. 28 (제115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정비·보완하여 기능에 맞게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관련 조문 개정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사업 심사규칙」제정에 따른 조문 개정(안제2조제3호)

○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로 정비 보완하여 기능에 맞게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제3호에 투·융자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투·융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등에는 구민모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2009. 9.11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

회의 기능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기능을 효율적이며 객관성 있는 업무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안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 중 불필요한 단어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여 구민들이 보다 알기 쉬운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9.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9. 28 (제115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09.2.12)됨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

나) 주요내용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 신설(안 제2조제4항)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20세→19세) 조정(안 제3조)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1조)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등을 정비함과 동시에 주민투표에 맞는 구의 책무를 신설하고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본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 제고 등 향후 실시하는 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제11조는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조문을 골자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가오는 각종 선거업무에 대비하여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과 선거권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9.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9. 28 (제115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일부개정('09.4.1)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 개정('09.8.13) 됨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

나) 주요내용

○ 관련 조항 변경에 따라 조항 개정(안 제1조, 제2조)

• 제13조의3제1항 → 제1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변경에 따라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이 제15조제1항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9.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9. 28 (제115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관련 법이 시행중에 있고

○ 가임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 여성에 대한 보건기간 중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고

○ 신설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사유를 세분화하며, 시설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국민체육센터』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 『가임여성』을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으로 정의 (안 제2조제11호 신설)

○ 체육시설의 사용료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함(안 제10조제1항)

○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추가하여 명확히 함 (안 제13조제1항제3호의2)

- 사용시작일 이후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과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

○ 아쿠아로빅 종목 추가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3)

- 수영에 아쿠아로빅 종목 추가(월 수강료 50,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할인적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
- 가임여성(만 12세 ~ 만 55세) 월 사용료 10% 할인적용
- 할인적용은 월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1개 적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2009. 8. 10.자로 전부 개정하였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개장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사항과 국민체육센터 개장을 앞두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2호의2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정의 신설과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였고, 안 별표3에는 아쿠아로빅 종목을 신설하였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로 확대함과 아울러 사용료 할인적용을 월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1개만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 중 제명에 있어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로 구분하던 것을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체육시설 범주에 포함시켜 단순·일원화하였고, 가임여성을 만 12세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임여성에 대한 사용료 할인혜택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사용료 할인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기존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계획인 스포츠 프로그램중에서 수영 및 헬스 등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는데, 금회 추가하고자 하는 '아쿠아로빅' 종목은 주민 다수를 상대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수강료에 있어서도 월 50,00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9.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9. 28 (제115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지방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　　적【안 제1조】

○ 윤리 강령【안 제2조】

○ 윤리실천규범【안 제3조】

○ 윤리심사 등【안 제4조】

○ 겸직신고 등【안 제5조】

○ 영리행위의 제한【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북구의회 의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과 규범을 규정하고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품위유지를 비롯한 5개 항목의 윤리강령과 이러한 윤리강령의 준수를 위한 8개 항목의 윤리실천규범, 그리고 검직신고 절차 등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안제5조의 경우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겸직신고와 영리행위 제한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직을 제외한 겸직사항을 1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겸직하는 기관, 단체의 정관 등을 제출 요구토록 할 수 있고 또한 겸직이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의장은 그 직을 사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9.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9. 28 (제115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

【안 제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제4조에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57조에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과 「지방자치법」제62조에는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4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9. 11 (이영희의원)

○ 심의일자 : 2009. 9. 28 (제115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정과 연계하여「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 【안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91조제2항,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규칙안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4조에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본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지방자치법」 제57조에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안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91조제2항,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1절 제116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문석주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9. 10. 27 (화) 10:00

다. 회　　기 : 2009. 10. 27 ~ 10. 30 (4일간)

라. 부의안건

○ 구국도 31호선 관광테마로드 조성 용역 최종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문화홍보과)

○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간판시범 거리”용역 최종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건축주택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상황(건설과)

○ 중(장)단기 하천 정비계획(건설과)

○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상황(시설재난관리과)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51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8호)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대산·천마산 등산로 조성 세부내역(도시녹지과)

○ 중(장)단기 등산로 정비(조성) 계획(도시녹지과)

○ 신종인플루엔자관련 추진상황(보건소)

2. 개회사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화꽃 향기가 그윽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제1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비회기 기간동안 경로잔치,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참석을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청취는 물론 구민의 입장에 서서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주요사업의 현장 확인,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은 집행부의 처리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안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도 문제점에 대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구도 머지않아 20만 구민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넓은 안목을

키워 주민 본위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인허가 신청에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법령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나 무엇보다 재량권 범위 내에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실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를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엊그제 시무식을 한 것 같은데 며칠 뒤면 11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을 맞아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람된 결실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3. 의사일정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09. 10. 27~10. 30(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9.10.27 (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 5분 자유발언(박병석 의원, 문석주 의원) 1.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9.10.28 (수) 10:00		1. 현장활동 ○ 울산외고 건립 현장 및 진입로 개설 현장 (기획감사실, 건설과) ○ 중산문화센터 및 다목적구장 조성 현장 (시설재난관리과, 문화홍보과) ○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장(시설재난관리과) ○ 진장·명촌지구내 명촌근린공원(도시녹지과·문화홍보과) ○ 무룡운동장 조성 현장(시설재난관리과) ○ 강동 바다행정봉사실(농수산과·문화홍보과)	현 장
2009.10.29 (목) 10:0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구 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 조성 용역 최종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문화홍보과) ○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간판시범 거리”용역 최종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건축주택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상황(건설과) - 자전거도로 개설, 활성화 각종 시책 등 ○ 중(장)단기 하천 정비계획(건설과)-광역시 사업 포함 ○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상황(시설재난관리과)	소회의실
2009.10.30 (금) 10:00	3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동대산·천마산 등산로 조성 세부내역(도시녹지과) ○ 중(장)단기 등산로 정비(조성) 계획(도시녹지과) ○ 신종인플루엔자관련 추진상황(보건소)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의안번호251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8호, 생활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당일 의 사 일 정 변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10.30 (금) 10:00	3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동대산·천마산 등산로 조성 세부내역(도시녹지과) ○ 중(장)단기 등산로 정비(조성) 계획(도시녹지과) ○ 신종인플루엔자관련 추진상황(보건소)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의안번호251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8호, 생활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도시경제국)	소회의실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10.30 (금) 13:00	3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의안번호251호) 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8호, 생활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도시경제국)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동대산·천마산 등산로 조성 세부내역(도시녹지과) ○ 중(장)단기 등산로 정비(조성) 계획(도시녹지과) ○ 신종인플루엔자관련 추진상황(보건소)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5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0. 2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10. 30 (제11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 : 7필지 7,208㎡

- 건물신축 : 1개동 50㎡, 주차장(2,600㎡) 포함

- 기 타 : 데크, 휀스 설치 등 1식

○ 추정가격 : 750백만원(토지매입 480, 건물신축 120, 기타 150)

○ 취득사유

-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문화홍보과)

다)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 주관부서 : 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위　　치 : 북구 어물동 산122번지 외 6필지

○ 취득재산

- 토지매입 : 7,208㎡

- 건물신축 : 1개동(화장실) 50㎡, 주차장 2,600㎡ 포함

- 기　　타 : 데크, 휀스 설치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 : 개발제한구역

○ 추정가격 : 750백만원(토지매입 480, 건물신축 120, 기타 150)

○ 취득사유

○ 문화재보호구역이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주장으로 문화재 관람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함.

○ 취득방법 : 토지 매입 및 신축 취득

○ 사업기간 : 2009. 10 ~ 2010.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시 지정문화재인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토지 7,208㎡ 매입, 화장실 1개동 신축과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로부

터 6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지난 3회 추경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바 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8. 9.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시달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시기를 기본계획의 경우 익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수시계획의 경우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안 제출시기와 연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문화재보호구역이 사유지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주장으로 문화재 관람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0.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10. 30 (제11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통일)

○ 조례 제명 중 용어 정리(혼동 방지)

○ 관외대출(상호대차서비스) 추가

나) 주요내용

○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문고 → 작은도서관

• 자료 → 도서관자료

○ 조례 제명 중 용어 변경

• 공공도서관 → 구립도서관

○ 관외대출 사유에 상호대차서비스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도서관법」이 2009. 3. 25. 개정되어 2009. 9. 26.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정의 부분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관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6호, 안 제17조제1항 제3호, 안 제20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호, 안 제4조제1호,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5조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개정함과 아울러,

○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공공도서관”을 “구립도서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의 관외대출에 있어 4호를 신설하여 상호대차서비스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도서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정의부분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

관은「도서관법」상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도 포함되므로 우리 구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명칭에 있어 “구립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상호대 차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0. 13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10. 30 (제11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조직별 부위원장 선정 기준 마련(안 제3조, 안 제7조)

○ 북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안 제7조)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9년 2월 9일 경남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 행사 중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 공연, 행사 등에 대한 재해대처 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 사전 검토하여 안전사고 없는 행사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위원장을 정함에 있어 안 제3조제2항의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안 제7조제2항의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하였고, 안 제7조제1항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있어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제3항의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실무위원회 소집·운영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공연·행사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2절 제117회 제2차정례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

나. 개회일시 : 2009. 11. 23 (월) 10:00

다. 회　　기 : 2009. 11. 23 ~ 12. 22 (30일간)

라. 부의안건

○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구청장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은영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영의원 발의)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박병석·류인목의원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열정과 정의를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 '경인년' 새해를 설계하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 의회에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하는 입법활동은 물론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한 민원해결 등 전국 그 어느 의회보다 도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

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09년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 속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서거,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신종플루 확산 등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과 성장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로 인정받은 1년이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각종 도시기반 시설에 있어서도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개소는 물론 내년에는 중산문화센터, 양정·염포도서관 개관이 기다리고 있는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 울산 북구로 발돋움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율과 젊은층 구성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우리 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당면 주요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의 경우 내년 한 해 동안의 우리 구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새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과 일회성, 전시성 예산 등은 철저히 가려주시고 경제활성

화,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예산 심의와 더불어 각종 안건심의에 있어서도 제4대 북구의회가 그동안 그래 왔듯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편성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와 답변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주민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와 함께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화재 예방과 주위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 주시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잘 처리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를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17만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3.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안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9. 11. 23~12. 22(3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 회 식	
2009.11.23 (월) 10:00 개회식 직 후	1	1.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63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4.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장) 5.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장
2009.11.24 (화)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8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도시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 도시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도시경제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11.25 (수) 10:00	3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52호, 총무국) ○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 (건설과)	소회의실
2009.11.26 (목)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254호, 박병석·류인목의원 발의 - 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이은영의원 발의-생활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6호, 이은영의원 발의-생활지원국)	수정가결 부 결 부 결
2009.11.27 (금) 10:00	5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62호, 기획감사실)	
2009.11.28 (토)		휴 회(토요일)	
2009.11.29 (일)		휴 회(일요일)	
2009.11.30 (월) 10:00 ~ 12.11(금)	6 ~ 15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당초예산안 심의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12.12 (토)		휴 회(토요일)	
2009.12.13 (일)		휴 회(일요일)	
2009.12.14 (월) 10:00	16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본회의장
2009.12.15 (화) ~ 12.21(월)	17 ~ 21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추경예산안 심의	소회의실
2009.12.22 (화) 10:00	22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폐 회	본회의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일정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9. 11. 30～12. 1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장 소
11.30(월) 10:00	6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기획감사실　○ 보건소	소회의실
12.1(화) 10:00	7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소회의실
12.2(수) 10:00	8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총무국(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회의실
12.3(목) 10:00	9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회의실
12.4(금) 10:00	10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생활지원국(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소회의실
12.5(토)		휴　회(토요일)	
12.6(일)		휴　회(일요일)	
12.7(월) 10:00	11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소회의실
12.8(화) 10:00	12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도시경제국(건설과, 건축주택과)	소회의실
12.9(수) 10:00	13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도시경제국(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소회의실
12.10(목) 10:00	14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64호, 생활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5호, 보건소)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장 소
12.11(금) 10:00	15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소회의실
12.12(토)		휴 회	
12.13(일)		휴 회	
12.14 (월) 10:00	16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본회의장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9. 12. 15~12. 22(8일간)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장 소
12.15(화) 10:00	17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감사실 ○ 보건소	소회의실
12.16(수) 10:00	18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무국	소회의실
12.17(목) 10:00	19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생활지원국	소회의실
12.18(금) 10:00	20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경제국	소회의실
12.19(토)		휴 회(토요일)	
12.20(일)		휴 회(일요일)	
12.21(월) 10:00	21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 조정	소회의실
12.22(화) 10:00	22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폐 회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9.11.26 (목)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254호, 박병석의원·류인목의원 발의 -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이은영의원 발의-생활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6호, 이은영의원 발의-생활지원국)	소회의실
12.10(목) 10:00	14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생활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회의실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9.11.26 (목)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이은영의원 발의 -생활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6호, 이은영의원 발의-생활지원국)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10(목) 10:00	14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254호, 박병석의원·류인목의원 발의 -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생활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회의실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12.14 (월) 10:00	16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본회의장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9.12.14 (월) 10:00	16	<5분 자유발언 >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구정질문의 건(류재건 의원)	본회의장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11. 24.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제도개선 2009-40호(2009.7.20)로 정부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권고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혁 과제 중 수수료의 환불규정 신설 권고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 일부개정(2009.9.21) 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755호, 2009. 9. 29)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5조에서 인·허가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관련 수수료 신설

나) 주요내용

○ 수수료 징수방법 다양화(안 제5조)

- ● 요금계기에 의한 경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
- ●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경우 현금 징수

○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별표 1)

- ● 지방세납세증명서 수수료 삭제
- ● 교통관계 수수료 신설
  -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1건 10,000원
  - •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 변경)신고 : 1건 2,000원
  -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 1건 2,000원
  - •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 1건 2,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참가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세수증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권고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와 관련조항 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혁 과제 중 수수료 환불 규정을 신설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정비하였고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조정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현재 800원에서 무료로 하는 안을 개정하였으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5조에서 규정한 인·허가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새로이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의 다양화와 주민이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고질적인 각종 세수민원 업무의 제도개선 내지 폐지뿐만 아니라 현재 무료로 발급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하여 미 반영된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게 새로이 조정하는 등 증명수수료 징수에 따른 세수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11. 24.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2009.10.5)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반영(안 제2조)

○「주택」을「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안 제3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운영」을「설치·운영」으로 개정(안 제5조)

○「지방세법」이관 및 실효성이 없는 조문 삭제(안 제6조, 제7조제2호부터 제4호, 제19조, 제20조제2항)

○ 감면 제외규정을「보칙」으로 이관(안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사업용」을「아파트형공장용」으로 개정(안 제14조)

○ 감면 제외규정을 보칙 조항으로 신설(안 제29조의2)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0조,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 조례 시달에 근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신설되었고 안 제3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에는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안 제6조, 제7조제2호부터 제4호, 제19조 등에서는 「지방세법」이관 및 감면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였고 안 제11조, 제13조 등에서는 감면처리 규정을 일괄 보칙으로 이관하여 행정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7조에서는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법령용어 기준을 정비하여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행정안전부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며 현행 법령을 또한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11. 24.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2009.7.31 법률 제9401호)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여 재래시장 등 지원사업을 원활한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안 제1장)

○ 인정시장의 기준 등,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인정취소에 대한 규정(안 제2장)

○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에 대한 규정(안 제3장)

○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에 대한 규정(안 제4장)

○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신청자격,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안 제5장)

○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취소, 예산의 지원, 서류비치, 운영상황의 공개, 보고 및 자료제출에 대한 규정(안 제6장)

○ 시장관리자의 지정,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안 제7장)

○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징수, 지도·감독,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에 대한 규정(안 제8장)

○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기준, 처분통지, 강제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지방세의 준용, 시행규칙 등에 대한 규정(안 제9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 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래시장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써 목적, 정의, 시장의 구역·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의 구역설정과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인정취소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장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취소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장에서는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가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기타 주요내용으로는 상인회의 설립, 예산지원,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설물의 위탁관리,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 등을 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11. 24.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체계를 재규정하여 조례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상설시장에 입지할 수 있는 점포를 제한하는 등 공설시장의 활성화 도모

○ 특히,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인 연체료와 변상금을 규정하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등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신설(안 제2조)

○ 상설시장에 입지 할 수 있는 점포를 농·축·수산물의 판매 또는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요리한 제품판매 등으로 구체화하여 재래시장의 의미에 맞도록 업종을 조정,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 종전에는 양도(전대포함)의 경우 허가를 받아 시장을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지하였음(안 제8조)

○ 종전까지는 시장사용료를 분납 시 무이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였음(안 제10조)

○ 시장의 고의, 과실로 시장시설을 훼손 할 경우 손해배상토록 하였음(안 제12조)

○ 건물, 물품 설비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보험가입을 강제하였음(안 제13조)

○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사용에 대한 위탁운영자를 종전에는 단체에게 위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로 하여금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안 제14조, 제15조)

○ 납부기한 내 사용료 및 위탁 수수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허가 없이 시장을 무단사용 시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였음(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조례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 신설로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와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반영으로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분납시 이자반영, 시장시설 훼손, 손해배상 등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설시장의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래시장에 입지할 수 있는 점포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와 안 제10조에서는 연 50만원 이상 시장사용료 분납 시 6%의 이자납부를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손해배상의 의무 및 건물, 물품 설비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시장의 위탁 운영자 확대 및 연체료, 변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문을 주요골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 보완 하는 것으로써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11. 24.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관련법이 시행중에 있고

○ 가임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 여성에 대한 보건기간 중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고

○ 신설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사유를 세분화하며, 시설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

○「국민체육센터」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의2호 신설)

○「가임여성」을 만12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으로 정의 (안 제2조제11호 신설)

○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함(안 제10조제1항)

○ 체육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추가하여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제6호)

- 사용시작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 사용시작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신청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임대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임차인이 결정(안 별표 2)

○ 아쿠아로빅, 생활체조 종목 신설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3)

- 아쿠아로빅, 생활체조 종목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 가임여성(만12세~만55세) 100분의 10 감면
- 할인적용은 월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1개 적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2009. 8. 10.자로 전부 개정하였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개장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사항과 국민체육센터 개장을 앞두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지난 제116회 임시회시 제출하였으나 조례상의 사용료 반환기준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신설하는 종목에 대해 물가대책심의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부결되어 미비사항을 보완

하여 금회 개정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2호의2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정의 신설과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임대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임차인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3에는 아쿠아로빅, 생활체조 종목을 신설하였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로 확대함과 아울러 할인율이 가장 큰 1개만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 중 제명에 있어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로 구분하던 것을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체육시설 범주에 포함시켜 단순・일원화하였고, 가임여성을 만 12세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임여성에 대한 사용료 할인혜택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사용료 할인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이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사용료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추가 및 세분화 한 것은 현재 운영중인 수

영, 헬스, 탁구 등 사용기간이 1개월인 종목의 경우 사용시작일 이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현행조례로는 사용료의 반환이 불가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반환기준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금회 추가하고자 하는 '아쿠아로빅'과 '체육체조' 종목에 대해 지난 물가대책 심의를 통해 수강료 책정에 있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13. (이은영의원 외 4)

○ 심의일자 : 2009. 11. 26.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안 제5조】,【안 제6조】,【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안 제11조】

○ 자료의 비치 및 제공【안 제13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안 제10까지는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아동·여성 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구성·운영되는 지역연대는 여성부에서 발간한「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 가운데, 우리 구는

본 지침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 지역연대를 10명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의 개별 법령에 따라 아동·여성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여성 폭력이 여전한 실정이므로 각종 시책 추진 및 지역연대 활성화를 통해 아동과 여성의 보호시책에 있어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제정조례안의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를 구 단위에서 자체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같은 조제4항에서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지역연대에 보고하고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부분, 안제12조제3항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결과를 반드시 지역연대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 등은 과도한 의무사항을 부과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13. (이은영의원 외 3)

○ 심의일자 : 2009. 11. 26.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작은도서관 기능·공간 및 위치【안 제3조】,【안 제4조】

○ 설비에 대한 조건 【안 제5조】

○ 지자체의 책무【안 제6조】

○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안 제7조】, 운영인력【안 제8조】

○ 운영시간【안 제9조】, 휴관【안 제10조】

○ 운영위원회【안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으로부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의 기능, 공간 및 위치와 설비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회원제, 자료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되는「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에 의하면 도서관의 종류는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으로 나누어지고, 공공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고, 작은도서관, 장애인 도서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도서관 구분 기준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본 제정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부분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본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령”이란 개별 법령의 특정 조항뿐만 아니라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도서관법」을 살펴보면 공립공공도서관에서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운영인력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립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도서관법」시행령 별표 1 작은도서관 기준에 있어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의 경우 안 제5조제1호 후단 부분과 제4호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작은도서관 기준까지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민간 작은도서관 설치와 자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4호의 경우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비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어린이위주의 도서관을 해야겠다라든지 특정계층을 위주로 하겠다든지 운영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약하는 조항이 아닌지 판단됩니다.

○ 나아가, 안 제7조의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안 제8조의 운영인력,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작은도서관 운영전반 및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과 해당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배제하고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립도서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서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우리 구는 양정·염포도서관이 내년 초에 개관 예정이고, 현재 운영중인 공립 공공도서관 4개소의 운영비가 년간 약 7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작은도서관까지 지원하게 될 경우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13.(박병석・류인목의원 외 2)

○ 심의일자 : 2009. 11. 26.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1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주민의 구정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5조】

○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

○ 회의공개의 원칙【안 제7조】

○ 위원회의 주민참여【안 제8조】

○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안 제11조】

○ 참여포인트 등【안 제13조】, 참여자치 주민상【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으로 하여금 구정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제118조에는 지방의회의 설치 및 조직, 조직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행정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빠질 경우에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에게 행정을 견제할 의사와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나아가 이러한 주민의 행정 참여 제도는 각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고 아울러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각종 법률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제도로서「지방자치법」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주민투표·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그리고 주민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20조에서는 주민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 시책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보장을 보다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우리 구「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이외에도 별도로 각종 주민 설명회, 특정 사안에 대한 간담회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각종 위원회, 옴부즈맨 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 안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안 제6조에서는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공개의 원칙과 주민참여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민제안,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참여자 보상을 위해 안 제13조에서는 참여 포인트와 안 제14조에서는 참여자치 주민상 등 인센티브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접목시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과 대의민주주의 실현이 근본적인 취지인 가운데 최근 들어 지방행정 영역이 계속적인 확대추세로서 주민 권익침해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 전반에 대해 주민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중이거나 도입이 필요한 주민참여 각종 시책을 조례로 정하여 행정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례안에 대해 조항별 검토결과, 안 제7조와 안 제8조의 위원회 회의공개의 원칙 및 위원회 주민참여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안 제9조의 주민제안, 안 제10조의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안제12조의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는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으나,

○ 안 제6조의 경우, 구청장은 주민 제안제도,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포인트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주민의견 조사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참여 포인트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 특히, 안 제11조의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의 경우 청구 주민의 수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인천 동구 150명, 광주 북구 200명, 대전광역시 300명, 창원시 200명)와 유사하거나 차이가 크게 없는 가운데 법률에 근거한「정보공개청구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나 이는 정보제공자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므로 양방향 정보공유를 위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구정정책 설명 청구가 빈번하게 청구되거나 본연의 취지와는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이러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와 안 제13조의 참여 포인트 등은 포괄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삭제
제8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① (생략) ② 제1항의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제11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① (생략) ② 제1항의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참여자치 주민상) 구청장은「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구정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고,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6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2. 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12. 10.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1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기존 청소년체육활동장이 폐지되고, 동 소재지에 무룡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조례안은 기존 운영하던 청소년 체육 활동장이 폐지되고, 같은 소재지에 무룡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체육활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2004년 3월 2일 개장한 청소년 체육활동장은 폐교를 활용하다보니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청소년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아 본 청소년 체육활동장이 2009년 2월에 폐지되고, 같은 소재지에 무룡 운동장이 2009년 10월 준공되어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2. 4. (구청장)

○ 심의일자 : 2009. 12. 10.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1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에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현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변경(안 제16조)

• 현금 → 현금・신용카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현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에 있어 기존 현금만으로 납부하던 것을 현금과 신용카드 모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나머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지난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수수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 권고문이 전국적으로 시달된 바 있고, 평소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부 주민의 신용카드 납부 건의가 있었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3절 제118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이은영의원 외 3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0. 2. 18 10:00

다. 회　　기 : 2010. 2. 18 ~ 3. 4 (15일간)

라. 부의안건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북구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석주의원 외 4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건의원 외 3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류재건의원 외 3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석주의원 외 4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영의원 외 1인

발의)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은영 의원 외 2인 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인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구 번영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올해 계획 중인 천곡 문화센터 건립, 송정 수변공원 조성, 2단계 어촌 종합개발 사업,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정비사업, 천마산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각종 도시 개발사업 등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계획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정부 시책과 연계한 녹색 성장 시책 추진, 예산의 정확한 조기집행은 물론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비전 있는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

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작년 한 해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힘든 지자체가 생기고 있을 정도로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이번 임시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 한 해 우리 구가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임시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역 발전의 무한한 봉사자로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통합,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17만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의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올해의 첫 임시회부터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3. 의사일정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0. 2. 18~3. 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2.18 (목)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0.2.19 (금) 11:00	2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소회의실
2010.2.20 (토)		휴 회(공휴일)	
2010.2.21 (일)		휴 회(일요일)	
2010.2.22 (월) 10:00	3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소회의실
2010.2.23 (화) 10:00	4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총무국(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67호, 기획감사실)	원안가결
2010.2.24 (수) 10:00	5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회의실
2010.2.25 (목) 10:00	6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생활지원국(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2.26 (금) 10:00	7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회의실
2010.2.27 (토)		휴 회(공휴일)	
2010.2.28 (일)		휴 회(일요일)	
2010.3.1 (월)		휴 회(공휴일)	
2010.3.2 (화) 10:00	8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도시경제국(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2010.3.3 (수)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기획감사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 기획감사실)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0.3.4 (목) 10:00	10	1.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문석주의원 발의-보건소)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호, 류재건의원 발의-도시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71호, 류재건의원 발의-생활지원국)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3.4 (목) 10:00	10	4.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문석주의원 발의-생활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4호, 이은영의원 발의-생활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5호, 이은영의원 발의-생활지원국)	수정가결 부 결 원안가결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2.23 (화) 10:00	4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총무국(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67호,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2.23 (화) 10:00	4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총무국(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267호, 기획감사실) 3. 현장활동 ○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 현장	소회의실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3.3 (수) 14:30	9	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호, 총무국)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천곡문화센터, 의안번호 제281호) 5.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기획감사실)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3.3 (수) 14:30	9	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 기획감사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6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2. 30 (구청 제출)

○ 심의일자 : 2010. 2. 23 (제118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9. 12. 14.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3) 이 유

○ 상위법령에 시상금 지급은 조례로써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하지 않아 위반됨

○ 조례안 제13조제2항「구청장은 포인트 누적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제86조 및 제112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추상적인 규정은「공직선거법」에 저촉됨.

※ 북구선관위-3633('09.12.17) 질의회신 참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의 침해

○ 조례안 제6조「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

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집행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당해 지방자지단체의 행정여건과 수요에 따라 추진되어할 사안이며, 자치단체장이 정책(시책)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행하는 것인 바, 의회가 조례제정을 통해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추진하라고 조례로써 사전에 강제하는 것은 권한침해.

○ 조례안 제8조제1항「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는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별 성격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공모제나 추천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위원 위촉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

○ 조례안 제9조「구청장은 구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과 기획안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로써 구민창안 및 제안제도를 기 시행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고, 주민제안의 행정에 대한 반영 여부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수용할 사항이며,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

○ 조례안 제13조제1항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참여포인터제도 시행여부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시책(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고유권한으로 권한침해.

○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직접민주제를 지나치게 도입하는 것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비용증가와 업무능률 등의 비효율성, 추진력 약화, 지역 및 주민과의 갈등 조장, 특정이익단체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지역(집단)이익을 위한 공공 전체이익 무시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큰 부작용 발생으로 공익저해

○ 조례안 제11조제1항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으로 한다.”

제3항 “구청장은 구정정책 설명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등 고유권한의 범위내에서 주요정책(시책)을 결정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주요업무계획, 예산심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하고 의견청취하고 있으며

○ 또한, 동 순회 간담회, 만남의 날, 각종 위원회 개최, 민원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 중요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은 개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굳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구정정책을 설명하도록 한 조항은 지나친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회기능 약화와 정책추진의 역기능 발생.

○ 제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구체적 대상 및 범위를 정의하지 않아 사소한 시책부분까지 설명회 개최 청구할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특정이익단체나 집단이 의도적(정치적)으로 정책설명을 청구할시 정책설명회에 응해야 함으로 지나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 발생예상.

○ 제2항에서 설명회 개최 청구권자를 500명으로 연서하는 행위자체가 주민다수의 의견이 아닌 특정이익단체 등이 자치단체장의 정책(시책)이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정치적 의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공공의 이익과 주민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한 정책(시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계획수립시부터 사전에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져 정책소신과 성과를 달성하기 힘든 부작용을 초래.

○ 이미 상위법령이나 우리구의 조례로써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제정 불필요

○ 조례안 제7조「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며 회의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은 누구나 공개청구 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정보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있고, 회의록 작성·관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은 불필요함

○ 조례안 제10조「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법」,「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등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특히,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2005년부터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사업대상과 범위, 심사, 동별 지역토론회개최,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너무 과도한 주민참여는 의회제도와 배치될 수 있음.

○ 기타 용어 부적정

○ 조례안 제4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라 한다)“라고 약칭 표기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라고 약칭 표기 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법제처 발행「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적합함.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 지방자치제도는「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행정정보공개제도, 주민소송제도 등 법령에 근거한 제도적인 장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기타 주민참여제도로서 공청회, 각종위원회, 만남의 날, 간담회, 민원청구제 등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 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위반사항, 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 침해, 상위법령이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내용과의 중복성, 의회민주주의에서 지나친 직접민주제 요소 도입으로 정책수립 및 집행의 역기능 발생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제정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견제방법도 소극적·사후적으로 견제함이 아닌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0. 3. 3 (제11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2009.11.22)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합방위협의회 구성

1) 구성 인원 1명 증원(20명 이내→21명 이내), 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를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개정(안 제2조)

○ “지역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는 문구 삽입(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1월 22일자로「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수를 1명 추가하여 20명이내에서 21명 이내로 하였고,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추가 신설함과 아울러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역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지난 2009년 11월 22일자로「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운영세칙을 구체화하여 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0. 3. 3 (제11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

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세는 보통세로「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함.(안 제3조)

○「시가표준액」을「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안 제23조)

○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함.(안 제36조)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함.(안 제39조)

○「사업소세」를 삭제(안 제47조에서 제52조)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이 2009.12.31자료 만료됨에 따라 현행「1천분의1.8」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부칙으로 그 유효기간을 2010. 12. 31까지 연장 적용코자 함(제25조제1항 관련 부칙 조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지방세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제가 다소 개편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세는 보통세로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시가표준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하였고, 안 제36조에서는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안 제39조에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안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는 “사업소세” 관련조항을 삭제함과 아울러, 조례 제25조제1항 관련 부칙에 있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사항이며, 기타 부분은 지방세 세목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지방세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0. 3. 3 (제11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사업소세를」을「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개정(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지방세법」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제가 개편되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의 “사업소세를” 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지방세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0. 3. 3 (제11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과 업무가 상이한 과에

대하여 소속 국을 조정, 업무부담 경감 및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성격이 다른 업무를 분리하여 과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 생활지원국 → 생활경제국 • 도시경제국 → 도시건설국

○ 국에 두는 과 조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 생활경제국 → 총무국

• 환경위생과 : 총무국 → 생활경제국

• 경제진흥과 : 도시건설국 → 생활경제국

○ 과 명칭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 지방세과 → 세무과 • 경제교통과 → 경제진흥과

○ 과 신설 : 교통행정과(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국의 명칭 조정과 과 신설 및 그에 따른 과 명칭 조정 등을 통해 업무 부담 경감 및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 명칭을 “생활지원국”을 “생활경제국”으로,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경제교통과”를 “경제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는 국에 두는 과를 조정하여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를 “총무국”으로, “환경위생과”와 “경제진흥과”를 “생활경제국”으로 국 소속을 조정함과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교통행정과”

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우리 구는 인구 증가, 도시 개발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타 지자체와 비교할 경우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문화분야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그간 행정기구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므로 행정기구 확대 개편은 필요한 가운데 국 및 과 명칭 조정 또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기존 경제교통과의 소관 업무인 경제업무와 교통업무는 성격이 상호 다른 영역의 업무이고 업무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금회 분리 신설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비록 금회 조례안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입법 예고시 생활지원과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생활지원과에 분장되어 있는 취업, 고용, 구인·구직 업무를 신설되는 경제진흥과의 업무분장에 포함하여 지역 경제, 지역 노사 및 지역 고용문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연계시키는 한편, 내년부터 본격시행 될 예정인 「일자리 공시제」의 선도적 추진은 물론,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국가 사업의 단순한 집행에서 탈피하고, 우리 북구만의 특색 있는 모델 발굴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2개 담당으로만 경제진흥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역고용 창출을 전담하고 지역의 고용 현안을 주도할 수 있는 현실성 있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장기적으로는 시설재난관리과의 시설 관리업무와 재난 관리업무의 분리가 필요하며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마련 등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2.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0. 3. 3 (제118회 임시회 제9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10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우리 구 증원가능 규모인 16명에 대하여 시설물 건립(중산문화센터, 염포·양정도서관) 및 국정 주요시책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 부분에 대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484명 → 500명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기준 조정(안 별표 2)

• 8급 : 29.5% 이내 ⇒ 31.3% 이내

• 9급 : 9.8% 이상 ⇒ 8% 이상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5급 : 29명 ⇒ 30명(증 1명)

• 6급 이하 계 : 383명 ⇒ 398명(증 15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총액인건비 확정으로 우리 구 증원

가능 인력 16명에 대하여 각종 시설물 건립에 따른 필요인력과 주요 시책 추진 등 행정 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484명에서 16명을 증원된 500명으로 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기준에 있어 8급과 9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있어 5급을 1명, 6급 이하는 1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우리 구는 인구 증가, 도시 개발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타 지자체와 대비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문화분야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거나 투입이 필요한 실정인 가운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동 주민센터 직원 결원 등으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등 각종 여건과 현실을 감안할 경우 직원 증원이 필요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2. 3. (문석주의원 외 4)

○ 심의일자 : 2010. 3. 4 (제118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내용(안 제3조)

○ 지원대상 범위(안 제4조)

○ 세부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 홍보 (안 제6조)

○ 환수 조치(안 제7조)

○ 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안 제8조)

○ 포상(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서 심각하게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사항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원 내용과 지원대상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세부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홍보를, 안 제7조에서는 환수조치를, 안 제8조에서는 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을, 안 제9조에서는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그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침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으며, 지난 2009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안 제3조의 지원내용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중인 사항이므로 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지원 근거를 조례안으로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정함에 있어 안 제5조에서 세부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안 제10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2. 3. (류재건의원 외 3)

○ 심의일자 : 2010. 3. 4 (제118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조례상에는 적용범위에 있어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됨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함.

나) 주요내용

○ 적용범위 단서 개정

-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만 지원대상에서 제(안 제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기존 조례에는 지원 대상에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되고 있어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조례 적용범위에 있어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우리 구의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지원 자체가 불가한 현행 조례는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7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2. 3. (류재건의원 외 3)

○ 심의일자 : 2010. 3. 4 (제118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지역 고유문화 계발·보존·전승 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대상(안 제3조)

○ 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안 제4조)

○ 보조금 신청 (안 제5조)

○ 경비 보조 등 (안 제6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안 제7조)

○ 지도·감독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지역 고유문화 계발·보존·전승 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을,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안 제6조에서는 경비 보조 등을, 안 제7조에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을, 안 제8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본 제정 조례안과 제명이 동일하고 내용도 유사한 조례안이 지난 2007년도 제99회 임시회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심의한 바 있는데 추진 사업 실적 부족, 조례 제정에 대한 시기 상조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 검토결과, 그간 조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타 사회단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여 왔으나, 지방문화원은 일반단체와 그 성격을 달리하며 개별 법령인「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서는 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조례로서 명확히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2. 3. (문석주의원 외 4)

○ 심의일자 : 2010. 3. 4 (제118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 속에서 가까운 거리의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기능【안 제3조】

○ 공간 및 위치 【안 제4조】

○ 설비 조건 【안 제5조】

○ 지자체의 책무【안 제6조】

○ 운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를 적극 지원하며 설치된 작은 도서관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기능을, 안 제4조에서는 공간 및 위치를, 안 제5조에서는 설비 조건을, 안 제6조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안 제7조

에서는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안 제6조에서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도록 의무화함과 아울러 안 제6조에서민간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되는 「도서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는 가운데, 이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작은 도서관에도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작은 도서관에도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2. 4.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0. 3. 4 (제118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작은도서관 기능·공간 및 위치【안 제3조】,【안 제4조】

○ 설치【안 제5조】

○ 지자체의 책무【안 제6조】

○ 운영지원【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으로부터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입

니다. 지난 제117회 제2차 정례회시 의원 발의한 바 있으나, 심의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도서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등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 금회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기능, 공간 및 위치를, 안 제5조에서는 설치를, 안 제6조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운영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앞서 검토 보고한 문석주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안과 유사한 조항이 많은 가운데, 안 제1조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석주 부의장 발의 조례안은 공립 및 사립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것이며, 안 제6조의 지자체의 책무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각동 당 1개소이상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반면, 문석주 부의장 발의 조례안은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안 제6조제2항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발의된 두개의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가운데 배부해 드린 두 조례안의 비교표를 통해 일괄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2. 4. (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10. 3. 4 (제118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하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안 제5조】,【안 제6조】,【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안 제11조】

○ 자료의 비치 및 제공【안 제14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아동에 대한 성폭력, 가정 폭력이 사

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17회 제2차정례회시 의원발의한 바 있으나, 집행기관의 면밀한 검토 필요, 구청장에게 과도한 의무사항 부과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와 안 제16조는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여성·아동 폭력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관리를, 안 제12조에서는 여성·아동 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구성·운영되는 지역연대는 여성부에서 발간한「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 가운데, 우리 구는 본 지침에 따라 지난 2008년도에 지역연대를 구성하였지만 현재 운영 실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의 개별 법령에 따라 여성·아동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 추세에 있습니다.

○ 그러나, 조례안 제11조 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에 있어 통계자료 관리는 우리 구의 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 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아동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4절 제119회 임시회

1. 개회이유

가. 소집요구 : 류인목의원 외 2인 발의

나. 개회일시 : 2010. 4. 16 10:00

다. 회　　기 : 2010. 4. 16 ~ 4. 26 (11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의장 제의)

2. 개회사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꽃이 화사하게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좋은 계절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민원상담실 운영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오셨듯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그동안 충분히 수렴해 온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큰일을 앞두고 여러 모로 바쁘시리라 짐작되지만 종착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제4대 의회도 이제 임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7월 민선 제5대 의회가 새로운 출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잘 마무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흔들림 없이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 서해안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 침몰사건은 국민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하루 빨리 수습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도 안전시설물, 각종 공사장 시설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뜻밖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윤 임 지

3. 의사일정

제11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0. 4. 16~4. 26(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4.16 (금)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1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11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	
2010.4.17 (토)		휴 회(공휴일)	
2010.4.18 (일)		휴 회(일요일)	
2010.4.19 (월) 09:30	2	1.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3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4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85호, 보건소)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4.20 (화) 10:00	3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 무 국	소회의실
2010.4.21 (수) 10:00	4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생활경제국	소회의실
2010.4.22 (목) 10:00	5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	소회의실
2010.4.23 (금) 10:00	6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과 ○ 계수 조정	소회의실
2010.4.24 (토)		휴 회(공휴일)	
2010.4.25 (일)		휴 회(일요일)	
2010.4.26 (월) 10:00	7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286호)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4.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4. 19 (제11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울산매곡(2)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2010년 4월 준공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신천동 지역을 매곡동 지역으로 편입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의 조문 및 별표 정비를 통해 “알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법령 조문 개정

○ 농소2동 관할구역(매곡동 855, 857) 신설 : 별표1

○ 조문의 개정연혁 삭제

○ 별표 정비 :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 2”에서 “별표 7”까지를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 매곡(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2010년 4월 1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

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별표1에 있어서 “울산 매곡(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지내 신천동 30필지가 매곡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매곡동 857번지를 대표 지번으로 하여 농소2동 관할구역으로 추가였고, 매곡동 855번지는 매곡 푸르지오 2차 아파트의 지번으로서 누락된 사항을 금회 반영하여 별표 1을 별표로 하였고,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 연혁 및 지번별 조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울산 매곡(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부지를 단일 법정동 지번으로 통일하고 누락된 관할구역을 금회 추가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조문 및 별표 정비를 통해 “알기쉬운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이러한 관할구역 사항은 적기에 반영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4.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4. 19 (제11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송정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및 도로명 주소 재정비사업에 따른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별표 개정 :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동주민센터명	현 소재지	변경 소재지	변경 사유
농소1동주민센터	시장1길 14	호계2길 10	2009년 12월 도로명 주소 재정비
농소3동주민센터	신답로 108	신답로 77	2008년 도로구간 변경
강동동주민센터	정자7길 7	정자7길 5	2009년 12월 도로명 주소 재정비
송정동주민센터	산업로 1120	송내14길 41	2010년 3월 청사 이전 신축
양정동주민센터	오치골3길 26	오치골3길 16-1	2009년 12월 도로명 주소 재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이전한 송정동 주민센터 및 도로명 주소 재정비에 따른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에서 농소1동・농소3동・강동동・양정동 주민센터의 경우 도로구간 정비 변경 및 도로명 주소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고, 송정동 주민센터의 경우 청사 이전 신축(2010. 3. 8 업무개시)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항은 적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기타 사항은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8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4. 9. (구청장)

○ 심의일자 : 2010. 4. 19 (제11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228호, 2008.12.31)됨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가 신설됨

- 금연시설 지정·운영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등 위반행위 별로 과태료 부가 기준 신설 및 조정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가 신설되어 금연시설 지정·운영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등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가 기준 신설 및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 4 장
예산 · 결산심의사항

제1절 2007년도 세입 · 세출 승인의 건
제2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3절 2008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절 2009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5절 2008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절 2009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절 2009년도 제2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8절 2008년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9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10절 2009년도 제3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1절 2010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12절 2009년도 제4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3절 2010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절 2007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6. 25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8. 7. 4 ~ 7. 11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23,561,128,020원

○ 세출결산액 : 90,575,126,040원

○ 세계잉여금 : 32,986,001,980원

나.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산 : 412,252,023,211원

- 부채 : 7,770,254,825원

- 순자산 : 404,481,768,383원

○ 재정운영

- 수익 : 97,633,866,001원
- 비용 : 78,298,044,340원
- 운영차액 : 19,335,821,661원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7년도 세입예산현액 1,171억 6,79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35억 6,11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160억 1,485만원에 수납액은 1,221억 4,284만원이고, 지출액은 900억 6,005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1억 5,31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1,829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1,508만원임.

○ 세입의 경우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징수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다 할 수있겠으나 과년도 세입징수는 거의 모든 부서에서 극히 저조한 실정임. 과년도분과 체납이월분에 대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은닉재산 조사로 재산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구청전체 미수납액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매년 누적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임. 또한 올해 7월부터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어 더 많은 금액이 미수액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 문제는 구 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정부의 관련부처, 시청 등과 공동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임. 우리구는 양적인 면은 물론 질

적인 면에서도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음.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서 구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일소와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1,171억 6,79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5억 7,51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160억 1,48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0억 6,0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1억 5,314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1,508만원임.

○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007년도 결산심의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2005회계연도 결산심의 시 제기된 인건비 과다 집행잔액 발생 문제가 금번에도 되풀이 되었음.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4천 8백만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일시역인부임을 포함한 인건비 6천 6백만원, 주민생활지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백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인건비의 경우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소요예산액에 대해 충분히 예상되므로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또한, 생명산업과의 경우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자녀 1인당 지급해야 할 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7천 7백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 최초 지급시 단가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이렇게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예비비부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비 소요액을 판단함에 있어 담당부서의 부주의, 업무미숙 등으로 2007년도 2회와 3회 추경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비와 주거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발생했음. 물론 담당자가 자기업무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꼼꼼히 업무를 처리해 나갔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만일 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중간 결재라인에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했는

데 그러한 기능이 전혀 없었음.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인수 인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담당자들은 본인이 최종 결재자란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시청,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기금부문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안정적이면서 좀 더 이율이 높은 곳에 적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2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6. 20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8. 7. 4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43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비비 지출내역

· 지출결정액 : 289,500,000원

-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 확인용역 : 9,5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보장 급여 : 280,000,000원

· 지 출 액 : 285,972,490원

-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 확인용역 : 9,354,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보장 급여 : 276,618,490원

· 지 출 잔 액 : 3,527,510원

-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 확인용역 : 146,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보장 급여 : 3,381,510원

4. 심의의견 요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7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289,500,000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활보장 급여 등 2건에 285,972,490원을 지출하였으며, 3,527,5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07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 이행여부 확인 용역비 9,354,000원,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및 주거급여에 276,618,490원을 집행하였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주거비 소요액을 판단함에 있어 담당부서의 부주의, 업무미숙 등으로 2007년도 2회와 3회 추경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비와 주거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발생하였음.

○ 물론 담당자가 자기업무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꼼꼼히 업무를 처리해 나갔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만일 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중간 결재라인에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한 기능이 전혀 없었

음.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담당자들은 본인이 최종 결재자란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시청,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용역의 경우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낀 시기와 제2회 추경심의 시점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로 맞물려 있었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보건데 예비비 당초의 목적인 불예측성과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비비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또한 이 같은 중요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되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3절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8. 26.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08. 9. 3.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08. 9. 11.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08년 예산액	%	기정 예산액 (제1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45,145,425	100.00	131,472,858	100.00	13,672,567	4,354,363
일반회계		138,112,019	95.15	124,447,410	94.66	13,664,609	4,143,361
특별회계		7,033,406	4.85	7,025,448	5.34	7,958	211,00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41,479	0.10	133,521	0.10	7,958	4,244
	폐기물 처리시설	5,520,552	3.80	5,520,552	4.20	-	165,617
	기반시설	340,137	0.24	340,137	0.26	-	10,204
	주차장	1,031,238	0.71	1,031,238	0.78	-	30,937

3.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 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145,145,425	-	141,100	0.10	7,552,556	7,693,656	145,145,425	4,354,363
일반회계		138,112,019	-	141,100	0.11	7,552,556	7,693,656	138,112,019	4,143,361
특별회계		7,033,406	-	-	-	-	-	7,033,406	211,00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41,479	-	-	-	-	-	141,479	4,244
	폐기물처리시설	5,520,552	-	-	-	-	-	5,520,552	165,617
	기반시설	340,137	-	-	-	-	-	340,137	10,204
	주차장	1,031,238	-	-	-	-	-	1,031,238	30,937

붙임: 삭감조서 참조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 세출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81억 1,0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06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25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올해 6월 5일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있어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즉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발생한 34억 5천만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고,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결산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음. 보통 결산은 출납폐쇄 기간인 2월 28일을 지나 3월말 정도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금액이 산정되는데 올해 제1회 추경편성의 경우 5월 19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므로 편성당시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제1회가 아닌 제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시급한 사업을 적시에 할 수 없다는 점,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 만큼 투자를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없다는 점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만일 제1회 추경을 조기에 편성해야 할 경우 융통성을 발휘하여 우선 개략적 금액을 반영하고 제2회 추경에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추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어 예산의 적기사용을 지연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오토밸리 2공구 도로개설, 산업로 확장,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 도로개설 등 현재 우리구에는 국·시비 확보를 통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음. 비록 우리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중앙정부와 시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세출분야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역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10%절감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부서별 일반운영비의 10%정도를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달천운동장 건립에 32억원, 송정동 주민센터 건립에 14억원, 국민체육센터와 중산문화센터 건립 등에 15억원이 편성되는 등 대부분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저해한 사례가 일부 있었음.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구정발전협의회 위원과 간부 공무원간 공동 워크샵 개최의 경우 이는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제1회도 아닌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워크숍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울산시내가 아닌 경주에 소재하는 마우나오우션에 계획한 것은 주민의 눈에 과연 어떻게 비칠지 염려스러우므로 향후 본 워크샵이 꼭 필요하다

고 판단되면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기 바라며, 장소선정에 있어서도 가급적 우리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당 내 TV설치의 경우 현재 구내식당은 직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항상 혼잡한 실정이며, 식사시간이 보통 20분 정도로 아주 짧고, 다른 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삭감하였음.

○ 강동해변 관광 상징물 디자인 공모의 경우 금회에 편성한 것은 정자어항내 설치하는 상징물 디자인임. 그러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3개소로 정자어항내, 무룡상 정상, 구 국도로 각 상징물을 개별적으로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을 확정할 경우 통일성을 확보할 수 없고, 공모된 디자인이 실제 제작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잡하지 않고 제대로 된 디자인 공모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작부터 제대로 된 상징물이 되기 위해서는 설치예정지인 3개소 모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공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액 삭감하였음. 향후 상징물에 대한 전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상징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한 홍보를 위하여 러닝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구청 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문예회관, 도서관의 경우 현재 구 홍보를 위한 홍보 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될 경우 러닝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는 판단하에 삭감하였음.

○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와 관련하여 참가 기관장 및 연구원 리셉션과 행사용 가방 구입의 경우 행사의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일회성, 전시성, 구색 갖추기에 급급하는 측면이 있어 삭감조치 하였으며, 또한 리셉션 경비는 행사운영비 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옳을 것임.

○ 예산편성에 있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과 비록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음.

○ “예산 10%절감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부서별 일반운영비의 10% 정도를 삭감한 사항과 관련한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 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는 사유로 부기별로 삭감하지 않고 총액으로 일괄 삭감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람.

○ 명촌문화센터 빔 프로젝트 구입의 경우 빔 프로젝트는 정수물품으로써 정수배정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에 정수승인을 받은 것은 사전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올해 초 한·미FTA 체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되면서 축산농가 특히 한우사육농가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음. 정부에서도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축산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위한 예산을 금회 추

경에 편성 한 것은 매우 잘된 일임. 어려움에 직면한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권고 및 요구사항

○ 구 양정동주민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칸막이 공사의 경우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과 구 강북교육청 임대만료와 맞물려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됨. 관련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체적인 사무실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천마산 등산로 정비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천마산 정상에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보고하였으나 무룡산에 설치한 전망대를 보건데 적정하지 않다고 전의원들이 판단을 하였음. 따라서 천마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지 말고 정상과 등산로 주변에 파고라와 벤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더 낫다는 판단을 하였음.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

○ 동천 냉천보 보수와 관련하여 동천의 경우 임시방편적인 보수를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보수를 함에 있어 임시방편이 아닌 항구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계획이 수립되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질의 시 관련부서에서는 그 이전의 건립추진경위에 대해 전혀 몰라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초기 건립과정에서 조기 건립을 위한 주민들

의 노력들이 잊혀지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마저 들었음. 향후에는 업무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러한 주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4절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1. 1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08. 11. 24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08. 12. 15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09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2008년 당초)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20,514,564	100.0	111,671,551	100.0	8,843,013	3,615,437
일반회계		115,936,173	96.20	110,777,947	99.20	5,158,226	3,478,085
특별회계		4,578,391	3.8	893,604	0.8	3,684,787	137,35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87,304	0.07	84,285	0.08	3,019	2,619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	2.86	-	-	3,450,345	103,510
	기반시설	343,750	0.29	137,250	0.12	206,500	10,313
	주차장	696,992	0.58	672,069	0.60	24,923	20,910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삭감액 (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120,514,564	0	1,338,611	1.11	5,279,454	6,618,065	120,514,564	3,615,437
일반회계		115,936,173	0	1,338,511	1.15	1,459,558	2,798,069	115,936,173	3,478,085
특별회계		4,578,391	0	100	0.002	3,819,896	3,819,996	4,578,391	137,35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87,304	0	0	0	3,000	3,000	87,304	2,619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	0	0	0	3,450,345	3,450,345	3,450,345	103,510
	기반시설	343,750	0	0	0	343,750	343,750	343,750	10,313
	주차장	696,992	0	100	0.01	22,801	22,901	696,992	20,910

※ 삭감조서 붙임 참조

4.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9년도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대비 88억 4,3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1억 5,822만원, 특별회계는 36억 8,479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28억 1,000만원, 세외수입 102억 980만원, 보조금 2억 1,9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억 6,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억 3,544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으로 그리고 사업소세는 기업체 종업원 급여 증가로 인하여 증가가 예상되나 사업소세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할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며,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은 물론, 교부금·교부세 확보를 통한 세입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세 출

○ 제12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볼링대회 개최 관련임. 본 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의회와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림. 이 대회는 올해 8월 유치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대회유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확

정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2009년도 예산안 설명 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 추후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림.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미이행과 관련한 사항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정수물품과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정수배정승인 또는 교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6건에 대해 전액 삭감하였음. 정수승인과 교체승인이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당한 건수가 승인을 요청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향후에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각종 행사시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사항임.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경로의 달 행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후원금을 받아 문제가 있었음. 2009년도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전액 반영하였으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후원금 문제로 구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임.

□ 세출예산 주요 삭감내역

○ 올해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침체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단체장과 부단체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고, 부서별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총액대비 10%를 삭감하였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정수물품과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정수배정승인 또는 교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6건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였음.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임시 주차장 조성비”와 “임시 주차장 임차료”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감하였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을 전액 삭감하였으므로 조례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 내년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구정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각종 축제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여 심의를 한 결과 일부 축제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하고 집중해야 할 축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삭감하였음.

○ 또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한 “직원 한마음 연수”,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업무유공분야 해외선진지 견학”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앙양 그리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를 삭감하였음. 향후 경기가 좋아지면 이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심의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을 하였음.

○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였으나 그동안 사업실적을 토대로 부서와 중복된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하였음.

□ 당부사항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이며, 각종 단위사업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또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5절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2. 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08. 12. 15(제16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08. 12. 22(제21차 본회의)

2.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08년 예산액	%	기정예산액 (2008. 2회)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49,181,487	100.0	145,145,425	100.0	4,036,062	4,475,445
일반회계		142,165,581	95.30	138,112,019	95.15	4,053,562	4,264,967
특별회계		7,015,906	4.70	7,033,406	4.85	△17,500	210,477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41,479	0.09	141,479	0.10	-	4,244
	폐기물처리시설	5,520,552	3.70	5,520,552	3.80	-	165,617
	기반시설	340,137	0.23	340,137	0.23	-	10,204
	주차장	1,013,738	0.68	1,031,238	0.71	△17,500	30,412

3.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상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149,181,487	-	-		11,172,020	11,172,020	149,181,487	4,475,445
일반회계		142,165,581	-	-		10,643,531	10,643,531	142,165,581	4,264,967
특별회계		7,015,906	-	-		528,489	528,489	7,015,906	210,477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41,479	-	-		-	-	141,479	4,244
	폐기물처리시설	5,520,552	-	-		-	-	5,520,552	165,617
	기반시설	340,137	-	-		279,095	279,095	340,137	10,204
	주차장	1,013,738	-	-		249,394	249,394	1,013,738	30,412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 · 세출

○ 먼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 1,491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21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1,600만원임. 이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음.

○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잔액 삭감분으로 심의결과 삭감액은 없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편성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과 제세"부분과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많은 부서에서 매년 예산을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하고 제2회도 아닌 제3회 결산추경에 와서야 정리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음.

제1회와 제2회 추경 편성 시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점검해 보고,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또한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림.

제2회 추경에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회 제3회 추경에서 전액 집행하지 않고 삭감한 건이 몇 건 있었음. 이것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예산편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지역특산물 전시관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위치를 구청 당직실과 민원실 사이를 계획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좋은 식단 음식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좋은 식단 음식모형"의 경우 구청 못지않게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보건소로 옮기는 방안 등 구청입구가 너무 혼잡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 드림.

□ 수정예산 관련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경비에 있어 정산착오로 인해 83만원 정도를 더 삭감한 부분에 있어, 이는 예산 삭감분 정리시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빚어진 실수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무룡운동장 조성사업"의 경우 당연히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한 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한 행정처리가 요구됨.

끝으로, 금회 추경 시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으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림.

5. 심의결과 : 원안가결(수정예산안 전부 반영)

제6절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3. 12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09. 3. 26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09. 4. 3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09년 예산액	%	기정 예산액 (2009년 당초)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23,067,831	100.0	120,514,564	100.0	2,553,267	3,692,035
일반회계		118,489,440	96.3	115,936,173	96.2	2,553,267	3,554,683
특별회계		4,578,391	3.7	4,578,391	3.8	-	137,35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87,304	0.07	87,304	0.07	-	2,619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	2.80	3,450,345	2.86	-	103,510
	기반시설	343,750	0.28	343,750	0.29	-	10,313
	주차장	696,992	0.57	696,992	0.58	-	20,910

3.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한도액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123,067,831	-	829,535	0.67	1,246,088	5,895,619	123,067,831	3,692,035
일반회계		118,489,440	-	829,535	0.70	1,246,088	2,075,623	118,489,440	3,554,683
특별회계		4,578,391	-	-	-	-	3,819,996	4,578,391	137,35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87,304	-	-	-	-	3,000	87,034	2,619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	-	-	-	-	3,450,345	3,450,345	103,510
	기반시설	343,750	-	-	-	-	343,750	343,750	10,313
	주차장	696,992	-	-	-	-	22,901	696,992	20,910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분야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30억 7,0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20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분야

○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대비 25억 5,000천만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원, 교육 분야에 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1,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4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4,000만원, 보건 분야에 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억 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억 1,000만원, 예비비에 15억 5,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소득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상반기 집행불가한 사업비 삭감, 연간 계약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직원 연가보상비, 일반운영비 절감분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에 5억원, 중산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족분 9억원,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에 5억원 등 고용창출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나, 심의결과 일부 예산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음.

○ 먼저, 미불용지 보상, 강동수산물 축제 효과분석 용역, 보건복지사업 안내책자 제작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사업인 가운데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였음. 특히, 강동 수산물 축제 효과분석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전 의원들이 공감하였으나, 축제가 끝난 뒤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 하였음. 이는 축제기간전, 축제기간, 축제종료후 등 모든 기간을 망라한 용역 추진으로 내용이 알차고 종합적인 용역 결과물 도출을 위해 추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기초질서 지키기 순찰대 운영, 교육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화물차 먼저 보내기운동 스티커 및 현수막 제작, 강동 산하동 공영주차장 대부료, 공유수면 및 불법어업 야간단속 방한복 구입 등의 사업은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음. 특히, 교육진흥 재단설립 출연금의 경우,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라는 이번 추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강동 산하동 공영주차장 대부료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추가 협의할 여지가 남아 있고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의원 다수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음.

○ 구정발전협의회·공무원 공동워크샵, 구정 자문 및 국비 확보를 위한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 간이요트 계류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의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에도 고심한 끝에 구정 발전을 위해 원안 대로 승인한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직원 자녀 보육수당에 있어, 직원 사기 앙양과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검토하였으나, 절차상 단체협상 종결 된 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다음은 적절한 예산편성 사례로서, 농축산 농가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각종 장비 지원, 경제난 고통분담을 위해 공공요금 절감 등을 통한 고용창출 인건비 마련,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 실비 보상, 굴다리 벽화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 등의 예산편성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서 판단되었고, 특히 주민자치위원 박람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관하여 우리 구에도 좋은 시책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굴다리 벽화도색의 경우 일부사업이라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권고 및 요구사항으로, 금회 조기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 조기 집행실적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주하는 공사가 부실화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시부터 면밀히 체크하여 주시고, 저소득 계층 지원에 있어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 편성된 아동급식지원 1억 9천만원은 추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임.

○ 회계년도가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에 집행 불가한 사업이라고 하여 기 확정된 당초예산 사업비를

삭감편성한 것은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은 다소 이해는 되나, 이런 방식의 삭감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임.

무엇보다도, 삭감 편성한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향후에는 꼭 필요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 중요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주시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공공 건축물 건립시 사업시행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예산편성 절차가 누락되지 않고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7절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6. 8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09. 6. 15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09. 6. 22

2.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09년 예산액 (2회추경)	%	기정 예산액 (1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49,866,558	100.0	123,067,831	100.0	26,798,727	4,495,997
일반회계		144,943,248	96.71	118,489,440	96.28	26,453,808	4,348,297
특별회계		4,923,310	3.29	4,578,391	3.72	344,919	147,699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58,083	0.11	87,304	0.07	70,779	4,742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	2.30	3,450,345	2.80	-	103,510
	기반시설	343,750	0.23	343,750	0.28	-	10,313
	주차장	971,132	0.65	696,992	0.57	274,140	29,134

3.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 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삭감액 (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149,866,558	-	1,274,626	0.85	3,978,462	9,346,001	149,866,558	4,495,997
일반회계		144,943,248	-	1,274,626	0.88	3,978,462	5,253,088	144,943,248	4,348,297
특별회계		4,923,310	-	-	-	-	4,092,913	4,923,310	147,699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58,083	-	-	-	-	2,996	158,083	4,742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	-	-	-	-	3,450,345	3,450,345	103,510
	기반시설	343,750	-	-	-	-	343,750	343,750	10,313
	주차장	971,132	-	-	-	-	295,822	971,132	29,134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분야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추경 대비 268억원이 증액된 1,498억 7천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44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 3억 7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05억 9천원만원이 증액되었음.

○ 순세계잉여금에 있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1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계분석을 통해 당초 예산 또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됨에도, 이번 제2회 추경에 이렇게 대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은 시급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조기집행에도 부합 하지 않고, 오히려 그만큼 투자를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저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간 몇 년동안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 수차례 시정요구한 바 있고, 금회 재강조하오니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입의 적정한 관리와 예산의 적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세출분야

○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268억원이 증액 편성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6억 7천만원, 교육 분야에 8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억 8천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9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15억 2천만원, 보건 분야에 2억 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억 7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억 6천만원, 예비비에 19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한시생계보호 지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사업과 동 주민센터 신축,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천곡문화센터, 달천운동장 진입도로, 소방도로 개설, 농로 개설 및 포장, 관광명소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나, 심의결과 삭감한 사업이 일부 있었음.

○ 먼저, 효문공단내부도로 보도블럭 정비공사,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런 사업의 성격이나 관리주체를 감안하여 국·시비 의존 재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삭감된 이러한 사업외에도 시비로 편성하여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었으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음. 향후 국·시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자동차 특구업무 추진, 자전거 이용자보험 가입, 구청사 주차장 재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음. 특히, 자동차 특구업무 추진의 경우 타당성 조사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나,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하였음.

○ 기초질서 지키기 순찰대 운영, 브랜드슬로건 배지 제작, 민원실 필경대 및 의자 구입, 그린리더 유니폼 구입, 가칭 북구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요트승선체험장 운영 등의 사업은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음. 정자항 관

광명소화 사업의 경우 고래벽화 부분은 사업추진에 다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비는 삭감하였음.

○ 해맞이 행사, 국화전시회 홍보물, 연암동 두부곡천 일원 하수 관거 정비 및 오수차단사업, 제전항 정비공사, 미불용지 보상, 염포산 팔각정 공원등 설치 건 등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승인한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자산취득에 있어, 같은 규격의 물품임에도 단가가 각각 다르게 편성된 사례가 있어,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 복지센터, 송정동 주민센터 등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일반수용비를 각각 10% 삭감하였으므로 예산 집행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알뜰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이번 예산편성 요구한 사업 중 많은 금액이 국·시비로 교부되어 어려운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따라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생산성 있는 사업 발굴과 적정한 인원 배치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기 바라며, 특히 최근 정부정책에 편승하여 조기집행이라는 명목아래 부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각종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

출근거를 토대로 사업 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8절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6. 24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9. 7. 2 ~ 7. 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70,318,917,900원
- 세출결산액 : 115,282,257,180원
- 세계잉여금 : 55,036,660,720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457,633,775,815원
  - 부 채 : 8,123,724,825원
  - 순 자 산 : 449,510,050,990원

• 재정운영

- 수　　익 : 135,360,049,989원
- 비　　용 : 92,779,770,373원
- 운영차액 : 42,580,279,616원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부문

○ 2008년도 세입예산현액 1,676억 1,2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03억 1,892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605억 9,649만원에 수납액은 1,651억 5,573만원이고, 지출액은 1,143억 9,585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0억 1,59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억 6,319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8,640만원임.

○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징수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다 할 수 있겠으나 과년도 세입징수는 저조한 실정임. 과년도분과 체납 이월분에 대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은닉재산 조사로 재산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는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음.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서 구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일소와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

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1,676억 1,24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52억 8,22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605억 9,64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3억 9,58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70억 1,591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8,640만원임.

○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 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상당히 늘었고, 특히,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예비비로 남겨 둔 것은 세출예산에 대한 분배가 적정하지 못하였고 사업발굴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등 이에 대한 점검과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적정한 추계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으므로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바람.

○ 자체 사업비는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이 종료되고 향후 추가 집행계획이 없는 잔액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삭감 정리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는 바,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로서 공사 준비단계에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이며, 보상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 또한, 계약심사로 인해 절감된 사업비에 있어,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절감예산이 다시 동장 포괄사업비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보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예비비 부문

○ 여권 민원실 창구 설치에 있어, 이 건은 우리 구의 신청과 외교통상부의 지정 승인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음.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지급의 경우 소송패소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연체이자 부담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불가피하였음

은 인정되나, 사전에 전세자금 대출 채무자, 보증인 등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추후 전세자금을 대출한 저소득층에 대해 채무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기금부문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9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6. 22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09. 7. 2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43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4건	182,440,000		126,256,400	56,183,600	
일반 회계	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사무실 설치	58,995,000	'08. 4.16	51,015,440	7,979,560	2008. 6. 2일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사무실 설치
"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58,110,000	'08. 5.13	9,906,000	48,204,000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실시 비용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일반 회계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1,500,000	‘08. 9. 5	11,500,000	-	집중호우로 발생된 사유재산 피해복구 를 위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 보전금 지급	53,835,000	‘08.11.26	53,834,960	40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 청구소송 판결 결과 배상금 지급

4. 심의의견 요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08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182,440,000원 중 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사무실 설치 등 4건에 126,256,400원을 지출하였으며, 56,183,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08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여권사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설치에 51,015,440원,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에 9,906,000원,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1,500,000원,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손실 보전금 지급에 53,834,960원을 집행하였음.

○ 2008. 6. 2.부터 여권사무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 민원실 창구

설치에 있어, 이 건은 우리 구의 신청과 외교통상부의 지정 승인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의 경우 불가피하게 집행된 점은 인정되는 가운데, 예비비 집행절차로 인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이 당초예산에도 편성하고 있는 만큼,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지급의 경우 소송패소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연체이자 부담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불가피하였음은 인정되나, 사전에 전세자금 대출 채무자, 보증인 등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추후 전세자금을 대출한 저소득층에 대해 채무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0절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9. 11.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09. 9. 21.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09. 9. 29.

2.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09년 예산액 (3회추경)	%	기정 예산액 (2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53,231,415	100.0	149,866,558	100.0	3,364,857	4,596,942
일반회계		148,291,405	96.78	144,943,248	96.71	3,348,157	4,448,742
특별회계		4,940,010	3.22	4,923,310	3.29	16,700	148,20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58,083	0.10	158,083	0.11	-	4,742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	2.25	3,450,345	2.30	-	103,510
	기반시설	343,750	0.22	343,750	0.23	-	10,313
	주차장	971,132	0.63	971,132	0.65	-	29,13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6,700	0.01	-	-	16,700	501

3.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한도액
			삭감액 (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153,231,415	-	342,596		4,474,271	4,816,867	153,231,415	4,596,942
일반회계		148,291,405	-	342,596		4,474,271	4,816,867	148,291,405	4,448,742
특별회계		4,940,010	-	-	-	-	4,102,718	4,940,010	148,20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58,083	-	-	-	-	2,996	158,083	4,742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	-	-	-	-	3,450,345	3,450,345	103,510
	기반시설	343,750	-	-	-	-	343,750	343,750	10,313
	주차장	971,132	-	-	-	-	305,627	971,132	29,13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6,700	-	-	-	-	-	16,700	501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분야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추경 대비 34억원이 증액된 1,532억 3천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6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 15억 8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억 6천 만원이 증액되었음.

○ 해양 낚시공원 조성, 화동못 공원 조성, 바이크텔 설치 사업 등 현재 우리 구에는 국·시비 확보를 통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음. 비록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중앙정부와 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세출분야

○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34억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억 2천만원, 교육 분야에 7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억 9천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5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억 8천만원, 보건 분야에 1억 4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억 3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6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7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 활성화 사업, 천곡

문화센터 건립,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중산동 도시숲 조성,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 울산공항일원 동천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화봉철교 도색 및 가로등 교체공사, 마을 안길 포장공사, 농로 개설 및 포장, 효문 및 양정운동장 스탠드 그늘막 설치 등 주민숙원 사업과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재료구입 등을 중심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나, 심의결과 삭감한 사업예산이 일부 있었음.

○ 먼저, 명촌공원내 체육시설 설치의 건에 있어 명촌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극히 제한적인 가운데 체육시설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순수 구비로서 풋살구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배드민턴장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편의성,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한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으므로 어떤 체육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 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천곡천 생태하천 조성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기존 하천 오폐수 유입 부분을 먼저 보완 개선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삭감하였음.

○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울산북구 운동본부 출범식, 카메라 프롬프트 구입, 여성합창단 옷장 구입, 청사내 그림 구입의 경우에는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음. 특히,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울산북구 운동본부 출범식의 경우 근본

적이고 제도개선을 통한 아이낳기 시책 추진의 필요성은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나, 본 건은 임산부를 주 대상으로 한 1회성 사업으로서 신종플루 확산 등으로 인해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 산하 공중화장실 대부료 및 변상금에 있어 산하지역에 있는 국유지 대부료는 지난 추경 시에도 삭감한 바 있고, 광역시와 연계하여 중앙정부 건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각종 행사 및 구정 주요시책 광고료에 있어 쇠부리 축제의 홍보를 위한 예산 분은 승인하였으므로 우리 구의 대표 축제로 널리 알리는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임.

○ 자동차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추억의 학교 설립 운영 건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승인한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금회 일부 동에서 사업기간이 충분함에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반납한 바 있는데, 지난 결산 검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장 포괄사업비는 비록 계약 심사로 인해 절감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주민 불편 사항들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예산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반납 절차보다는 연내에 다시 집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라며, 농소운동장의 배구·족구장 설치사업의 경우 바닥 재질을 선정함에 있어 우레탄 재질보다는 해당 동호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잔디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박상진 생가의 배수로

공사 시에 주요 출입로 등에 보안등 공사도 병행 추진바람.

○ 또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 복리를 위한 시책과 다양한 사업 발굴·추진도 매우 중요할 것이나, 인구 증가율은 물론 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수는 동결인 가운데, 특히 올해의 경우 재정 조기 집행, 신종 플루 대책 등으로 노고가 많은 우리 구 소속 직원에 대한 배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기 바라며,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수 확충에 보다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11절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11. 1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09. 11. 23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09. 12. 14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10년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2009년 당초)	%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32,099,386	100.0	120,514,564	100.0	11,584,822	3,962,981
일반회계		127,312,521	96.38	115,936,173	96.2	11,376,348	3,819,376
특별회계		4,786,865	3.62	4,578,391	3.8	208,474	143,60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28,305	0.10	87,304	0.07	41,001	3,849
	폐기물처리시설	3,556,645	2.69	3,450,345	2.86	106,300	106,699
	기반시설	332,673	0.25	343,750	0.29	△11,077	9,980
	주차장	769,242	0.58	696,992	0.58	72,250	23,077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 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삭감액 (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132,099,386	-	1,574,108	1.19	5,179,985	6,754,093	132,099,386	3,962,981
일반회계		127,312,521	-	1,574,108	1.24	1,275,487	2,849,595	127,312,521	3,819,376
특별회계		4,786,865	-	-	-	3,904,498	3,904,498	4,786,865	143,60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28,305	-	-	-	3,000	3,000	128,305	3,849
	폐기물처리시설	3,556,645	-	-	-	3,556,645	3,556,645	3,556,645	106,699
	기반시설	332,673	-	-	-	332,673	332,673	332,673	9,980
	주차장	769,242	-	-	-	12,180	12,180	769,242	23,077

4. 심의의결 요지

□ 세 입

○ 2010년도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대비 115억 8,4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3억 7,635만원, 특별회계는 2억 847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2억 9,000만원, 세외수입 44억 143만원, 보조금 53억 6,472만원, 지방교부세 621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 2,24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내년 하반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는 소폭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오토밸리 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입장료 및 수강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 대부분 증가세를 보이나 개발사업 둔화로 개발이익환수금이 다소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세가 전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다소 증액되었음.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 분야 등 국가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다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인구 증가 및 각종 도시개발 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 세입 증가 규모는 예년에 비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며,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은 물론, 교부금·교부세 확보를 통한 세입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세 출

○ 2010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15억 8,4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2억 6,379만원, 교육분야에 2억 1,78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71억 3,954만원, 보건분야에 6억 2,912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652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0억 7,58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은 소폭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아직까지 실물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전망이 많으므로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풀성 경비 및 단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고, 구정시책업무 추진비는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기본경비 중 종이문서 절감 및 전자문서 활성화 차원과 병행하여 복사용지 구입비를 일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중산 문화센터 및 염포양정도서관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일괄 10% 삭감하였으니 예산 집행에 보다 효율을 기하기 바람.

○ 구정발전협의회와 공무원 공동 워크숍의 경우 올해 실시한 사례를 분석하였는 바, 위원 참석율, 운영 프로그램 등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과 우수제안 위원 시상 및 연구활동비 또한 예산편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나아가,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도 주민이 구정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고려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수준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간 의회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고 집중해야 될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금액만 삭감하였음.

○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작년 당초예산 심의의견과 같이 그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였으나 그동안 사업실적을 토대로 1회성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 효과가 다소 낮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하였음.

○ 강동 해변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해안 소공원, 공영주차장 대부료의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은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나 그간 우리 구가 투입한 많은 예산 및 행정력뿐만 아니라 주민 다수에게 제공하는 공공의 편의시설이라는 성격을 감안해서 자산관리공사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삭감하였으니 부서 차원에서 벗어나 구청 차원에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람.

○ 올해 개관한 오토밸리 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의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중 생활체육지도자 연장수당에 있어 이는 생활체육지도자 본연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시간이라는 다수 의원의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5개월분만 승인하였으니 향후 별도로 정식적인 강사를 채용하여 보다 질높은 생활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염포·양정도서관의 인근 풋살구장 조성 건에 있어 이는 행정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아파트 공유면적인

사유지이므로 향후 발생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안고 가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 보호차원에서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니 향후 시설물에 대한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공인된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함은 물론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당부사항

○ 예산 편성권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임은 당연한 사항이고 이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사항임. 그러나 동장 포괄 사업비, 경로당 개·보수비, 관내 보안등 설치 공사비, 긴급도로 복구비 등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임에도 전년 예산보다 삭감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시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풍진 검사,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의 경우 수요에 비해 매년 부족한 예산이므로, 굳이 보조금 편성비율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구비를 증액 편성해서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매년 당부드리는 의견이지만,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기 바라며, 특히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너무 성급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각종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 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12절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12. 7.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09. 12. 14(제16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09. 12. 22(제22차 본회의)

2.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09년 예산액 (4회추경)	%	기정 예산액 (3회추경)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53,427,892	100.0	153,231,415	100.0	196,477	4,602,454
일반회계		148,487,882	96.78	148,291,405	96.78	196,477	4,454,254
특별회계		4,940,010	3.22	4,940,010	3.22		148,20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58,083	0.11	158,083	0.11	-	4,742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	2.25	3,450,345	2.25	-	103,510
	기반시설	343,750	0.22	343,750	0.22	-	10,313
	주차장	971,132	0.63	971,132	0.63	-	29,13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6,700	0.01	16,700	0.01	-	501

3.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 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삭감액 (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153,427,892	-	600,000	0.4	10,260,612	10,860,612	153,427,892	4,602,454
일반회계		148,487,882	-	600,000	0.4	6,131,428	6,731,428	148,487,882	4,454,254
특별회계		4,940,010	-	-	-	4,129,184	4,129,184	4,940,010	148,20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58,083	-	-	-	2,996	2,996	158,083	4,742
	폐기물처리시설	3,450,345	-	-	-	3,450,345	3,450,345	3,450,345	103,510
	기반시설	343,750	-	-	-	343,750	343,750	343,750	10,313
	주차장	971,132	-	-	-	332,093	332,093	971,132	29,13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6,700	-	-	-	-	-	16,700	501

4. 심의의결 요지

□ 세입 · 세출

○ 먼저,『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 1,534억 2,78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84억 8,7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4,001만원임. 이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1억 9,648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음.

○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잔액 삭감분으로 심의결과 수정세출예산안 1건에 대해 삭감하였음.

○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및 2009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필수 신규 사업비, 자산 취득비만 최소한으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올해의 경우 세차례에 걸친 추경이 있었음에도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과 제세”부분과 “시설 장비유지비”의 경우 일부 부서에서 제4회 결산추경에 와서야 정리하는 사례가 있었음.

○ 따라서, 제2회와 제3회 추경 편성 시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점검해 보고,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또한,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림. 제2회 및 제3회 추경에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여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않고 금회 제4회 추경에서 삭감 편성한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였음.

이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예산편성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비 6억원에 있어 인구 증가율,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며 사업중요성에 비추어 일부 금액이라도 승인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미이행에 따른 절차상 하자로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하였음. 이 기회를 빌어 향후 천곡문화센터 건립규모, 위치, 토지사용 효율성 등을 조속히 재점검하여 건립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끝으로, 금회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안이 또다시 제출된 것은 철저한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아래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다소 촉박하므로 사전 원인행위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13절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4. 7.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10. 4. 16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0. 4. 26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계별		2010년 예산액 (1회추경)	%	기정 예산액 (당초예산)	%	증감	비고 (일시차입 한도액)
계		143,898,134	100.0	132,099,386	100.0	11,798,748	4,316,944
일반회계		138,774,759	96.44	127,312,521	96.38	11,462,238	4,163,243
특별회계		5,123,375	3.56	4,786,865	3.62	336,510	153,70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28,305	0.09	128,305	0.10	-	3,849
	폐기물처리시설	3,556,645	2.47	3,556,645	2.69	-	106,699
	기반시설	332,673	0.23	332,673	0.25	-	9,980
	주차장	1,101,152	0.77	769,242	0.58	331,910	33,03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600	0.00	0	0.00	4,600	138

3.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 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 예산액 (예산총액)	일시 차입금 한도액
			삭감액 (B)			예비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계		143,898,134	-	225,000	0.18	1,647,911	143,898,134	143,898,134	4,316,944
일반회계		138,774,759	-	225,000	0.18	1,647,911	138,774,759	138,774,759	4,163,243
특별회계		5,123,375	-	-	-	-	5,123,375	5,123,375	153,70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28,305	-	-	-	-	128,305	128,305	3,849
	폐기물처리시설	3,556,645	-	-	-	-	3,556,645	3,556,645	106,699
	기반시설	332,673	-	-	-	-	332,673	332,673	9,980
	주차장	1,101,152	-	-	-	-	1,101,152	1,101,152	33,035
	발전소주변지역자원사업	4,600	-	-	-	-	4,600	4,600	138

4.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분야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7억 9천만원이 증액된 1,439억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44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 15억 1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원 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2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분야

○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17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억 4천만원, 교육 분야에 4억 9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억 3천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4억 9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0억 2천만원, 보건 분야에 1억 3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 3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5천만원, 예비비에 14억 6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상 경비 및 행사·축제성경비 등을 일괄 절감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중점 편성함이 원칙임에도 행사·축제성 경비는 거의 그대로 유지시키고 업무추진비나 직원 수당, 사업비 절감 등 경상경비 위주로 삭감 편성한 것은 추경 취지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심의결과 일부 예산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음. 특히, 직원의 연가보

상비 삭감 편성 부분은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결원이 많은 부서의 경우에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임.

○ 먼저, 구정발전 협의회·공무원 공동워크샵의 경우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논의 끝에 최소 금액만 삭감하고 승인한 사업이므로 알뜰한 예산 집행은 물론 2009년도에 실시한 워크샵 추진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다수 위원 참석을 통한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교육진흥 재단 설립 출연금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입장을 반영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 승인하였고, 종합 일자리 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건은 우리 구만의 구인·구직 홈페이지로 활용하기에는 인구대비 활용도가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구인·구직자의 규모가 광역시 규모는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광역시 통합으로 구축·운영토록 건의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 판단하였고, 관리상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하였음.

○ 다음은 권고 및 요구사항으로,

먼저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사업임. 이 사업은 우리 구민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좋은 정책 사업임에도 시비 9천만원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 편성된 2억 2천만원 전액 삭감 요구한 것은 대민 행정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 뜨리는 것으로서 향후 시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의존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구 송정동 주민센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고, 기령재, 관문성 등 우리 구의 일부 문화재가 각각 다르게 호칭되고 있음에 따라 전문적인 학술 고증을 통해 명칭이 통일되게 지칭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문화재 보호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또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앞서 경로당내 창호에 대한 보온 단열 조치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부터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그리고, 건강증진 맞춤 운동 지도서비스의 청년사업단 사업, 희망근로 소기업 등 취업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은 비록 국가 및 광역시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과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아울러, 특별교부세로 편성요구된 환경업무관련 워크샵 또한 내실있는 워크샵이 될 수 있도록 알뜰한 예산집행은 물론 내실있는 업무연찬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람.

○ 회계년도가 시작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을 사업 명칭, 계획 변경 등 보완없이 그대로 다시 요구하거나, 행사·축제성 경비는 거의 삭감없이 편성 요구한 것은 금회 추경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5. 심의의결 : 수정가결

제 5 장
행정사무감사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2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3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4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6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7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제8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1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08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감사 기간 : 2008. 7. 14 ~ 7. 18(5일간)

라. 감사 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마.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류 재 건

○ 부 의 장 : 윤 임 지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박 민 수

○ 사무직원 : 장 판 성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강석구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이근필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송태호		
	총무국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과장	김경재		
		회계정보과장	서강수		
		지방세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복지서비스과장	신종도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시경제국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보건소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전 동	농소1동장	이 상 련		
북 구		농소2동장	김 규 석		
		농소3동장	윤 규 태		
		강동동장	이 충 실		
		효문동장	강 수 상		
		송정동장	허 정 행		
		양정동장	박 경 란		
		염포동장	송 지 환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2008. 7. 14 ~ 7. 18(5일간)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3.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8. 7. 14(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ㅇ**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ㅇ**총 무 국** • 총 무 과 • 회계정보과 • 지방세과 • 민원지적과	
2008. 7. 15(화)	10:00	〃	ㅇ**총 무 국** • 환경위생과 ㅇ**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서비스과 • 문화홍보과	
2008. 7. 16(수)	10:00	〃	ㅇ**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미화과 • 평생교육과 ㅇ**도시경제국** • 도시녹지과 • 경제교통과	
2008. 7. 17(목)	10:00	〃	ㅇ**도시경제국** • 건 설 과 • 건축주택과 • 생명산업과 • 재난관리과	
2008. 7. 18(금)	10:00	〃	ㅇ**보 건 소** ㅇ**기획감사실** ㅇ**의회사무과**	

※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 「별첨」

계	공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경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434	21	26	93	133	133	25	3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자료 : 파일 형태로 제출

※ 파일형태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15부 서면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파일 형태로 제출

○ 작성요령 : 「별첨 2」참조

○ 감사범위 : 2007. 6. 1~2008. 5. 31

※ 요구자료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08. 5. 31일 현재

○ 제출기한 : 2008. 6. 20한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ㅇ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ㅇ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ㅇ 감사 첫날 국·소·실·과장·동장 합동 실시 - 29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17명, 동장 8명)

ㅇ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 선서문 : 「별첨 3」 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7. 기타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장판성외 2명

○ 감사지적사항 당일작성 제출 : 감사의원 「별첨 4」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장판성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허순자외 2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시)

ㅇ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소 속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434**	
공 통 사 항		**21**	
기 획 감 사 실		**26**	
총 무 국	**소 계**	**93**	
	총 무 과	30	
	회계정보과	17	
	지 방 세 과	12	
	민원지적과	14	
	환경위생과	20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133**	
	주민생활지원과	23	
	복지서비스과	42	
	문화홍보과	30	
	환경미화과	27	
	평생교육과	11	
도시경제국	**소 계**	**133**	
	도시녹지과	25	
	경제교통과	26	
	건 설 과	25	
	건축주택과	17	
	생명산업과	27	
	재난관리과	13	
보 건 소		25	
의 회 사 무 과		3	

(전부서)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울산광역시
북 구
[공통사항]</td><td>
1. 예산집행현황(일반·특별회계 구분 작성-2008. 5. 31현재)
<table>
<tr><th>항 목</th><th>예 산 액</th><th>주요편성내용</th><th>주요집행내역</th><th>잔 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일자</th><th>처리일자</th><th>민 원 인</th><th>민원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위 치</th><th>사업개요</th><th>사업비</th><th>진 도</th><th>시공자</th><th>예산확보시기</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07.6.1~2008.5.31(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포함)
※ 정산서 사본 첨부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용역종류</th><th>용역비</th><th>착수일자</th><th>완료일자</th><th>용역결과</th><th>계약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예산액</th><th colspan="2">집행액</th><th colspan="2">반납액</th><th rowspan="2">반납
사유</th></tr>
<tr><th>국비</th><th>시비</th><th>국비</th><th>시비</th><th>국비</th><th>시비</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등)
</td><td>※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기재 (단위: 천원)</td></tr>
</table>

(전부서)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울산광역시
북 구
[공통사항]</td><td>11.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12.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3. 2008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14.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
<tr><th>공사명</th><th>변경사유</th><th>공사금액
증 가 액</th><th>설계변경
요 청 자</th><th>설계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5.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내역
(지급방법 -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명시)
16. 법인카드 발급대장(2007. 6. 1 이후 추가분)
17.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8.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9.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 차량번호, 종류, 용도, 구입연월일, 상태
20.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table>
<tr><th>공사개요</th><th>통보일시</th><th>통보내용</th><th>비 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21.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사업내용, 금액, 환수사유 등)</td><td></td></tr>
</table>

(붙임 1)

□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ㅇ 예산과목 :

지급건별 (지급일자)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000외 0명)
계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작성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08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 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 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민간위탁과 용역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3) 제출서류

- **도급(위수탁, 용역)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 **과업지시서 혹은 시방서**
- **북구의 입찰시 내정한 전체 용역원가 및 인건비 내역**
- **도급체결(낙찰)시 반영된 전체 용역원가 및 인건비 내역**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08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총무국	총무과			:												
					: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															
	…	…															
의회	구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없이 상시고용된 자

○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08. 5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08. 5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예 : 1,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0) 근속기간 : 평균근속기간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12) 제출서류 : 업무별 임금대장(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편성표

기획감사실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감사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 2.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07. 1. 1~′08. 5. 31) 3. 2008년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 4. 주민참여예산제 2008년 당초예산 반영내역 5. 예산 전·이용 현황 및 사유(전부서 취합) 6.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수행사항 (일시,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등) 7. 소송관련 비용 지출내역 (소송비, 여비, 사례금, 착수금 포상금 등) 8.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일상감사 포함) 9.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사례) 10.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11.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12.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및 순위,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13. 특별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14. 구민감시관 운영 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시관 인적사항) 15. 세출예산정리부 16.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 및 지원현황 (연도별 신청단체 및 지원금액 도표작성) 17. 각종 통계조사 현황 및 통계연보 자료일체(′07. 1. 1~′08. 5. 31) 18. 고문변호사 활동현황 및 실적(′07. 1. 1~′08. 5. 31)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감사실</td><td>
19. 북구신설 10주년 역점시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20.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21. 건전재정 운영시책 추진실적
22.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실적
23. 혁신과제 발굴현황 및 추진실적
24. 관·학 교류협약 체결현황 및 상호협력사업 추진현황
25.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영수증 사본
26. 위원회 현황 관련(2007년도 행감 제출자료 중 변동분만 기재)
① 설치근거별 현황
- 법령, 조례/ 비상설, 의결적, 행정내부, 기금관련으로 세분
② 성격별 현황
- 심의, 의결, 자문, 협의로 구분, 위원회 개수 및 위원회명
③ 위원 구성현황(공무원, 민간위원-시민사회단체추천 별도)
<table>
<tr><th>구 분</th><th>여성위원
(비율)</th><th>공무원</th><th>구의원</th><th>민간위원</th><th>시민단체추천
(비율)</th></tr>
<tr><td>총 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위원회</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④ 위원장 현황
<table>
<tr><th>구 분</th><th>구청장</th><th>부구청장</th><th>실국장</th><th>지역주민</th><th>시민단체</th></tr>
<tr><td>총 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위원회</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⑤ 각 위원회별 기본 현황 및 운영 실적
<table>
<tr><th rowspan="2">위원
회명</th><th rowspan="2">설치
근거</th><th rowspan="2">설치
목적</th><th rowspan="2">설치일</th><th colspan="3">위원구성(여성)</th><th rowspan="2">임기</th><th rowspan="2">위원장</th><th rowspan="2">주관
부서</th></tr>
<tr><th>당연직</th><th>민간
위원</th><th>시민단
체추천</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⑥ 위원회별 위원명단(성명, 위원회내 직위, 직업, 남녀, 연령 등)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감사실</td><td>⑦ 위원회, 협의회, 운영위원회, 자치위원회,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 변동사항(별도 표기)
- 위원회별 직위, 남여 등 변동사항
- 기존위원회 위원의 변동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현황
- 신설위원회 위원 여성위원 위촉 현황
⑧ 위원회 개최 실적
-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실적(참여인원), 회의록, 주관부서
⑨ 각 위원회 위원 전체 출석율 및 개별 위원 출석율
- 위원회명, 위원성명, 직업, 성별, 최초임명일자, 출석율
⑩ 각 위원회별 회의참석 수당 및 집행실적
<table><tr><td>구분</td><td>국</td><td>과</td><td>위원회</td><td colspan="4">집 행 내 역</td></tr><tr><td>일반</td><td>총무국</td><td>총무과</td><td>00위원회</td><td>예산액</td><td>인원</td><td>회수</td><td>집행실적</td></tr><tr><td>회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특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회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td></tr>
</table>

총무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 무 과</td><td>1. 인력운용 관련
- 전체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3)
2.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
3. 실과별 연가, 특별휴가, 관외출장, 교육 등 월별 사용 인원 및 사용일수
<table>
<tr><th>실과명</th><th>월별</th><th>정원</th><th>사용인원</th><th>사용일수</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실과별, 구분별(연가, 특별휴가 등) 별지작성
※ 교육현황은 기간, 과정명, 장소 등
4. 일용인임(일시사역인부임 포함) 현황 - 전부서 취합
<table>
<tr><th>부서명</th><th>성 명</th><th>사역목적</th><th>사역기간</th><th>단가(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5. 공문서 수·발신 목록
6.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동별 취합)
7. 동별 예산 집행현황(동별 취합)
8.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실적
9. 120민원 기동대 주민불편사항 처리현황(′07. 1. 1~′07. 12. 31)
10.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보조금 별도 표기)
(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표기- 동별 취합)
11.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종합평가 결과
12.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3.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동별)
14. 온라인 고객만족도 조사/시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조사문항, 조사대상, 결과
15. 전년도대비 상근/비상근 일용직 증원현황 (부서, 업무, 비용, 사유)</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총 무 과	16.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교육청 및 각 학교별 요구공문 17.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집행내역(정산서 사본) 18. 인사이동시 업무인수인계 철저 관련 업무연찬 회의록 사본 (′07. 1. 1～ ′08. 5. 31) 19. 7급이상 공무원 중 최근 1년이내 관내 인사이동 현황 (성명, 직책, 업무, 근무개월 수) 20.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07. 1. 1～ ′08. 5. 31) (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현황) 21. 각 실과소동별 계약직 채용현황 및 주요업무 내용 (′07. 1. 1～ ′08. 5. 31) 22. 각 실과소동별 상용직 인원현황 및 주요업무 내용 (′07. 1. 1～ ′08. 5. 31) 23. 구청장 동순회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 (′07. 1. 1～ ′08. 5. 31) 24. 직원 해외연수 현황(감사범위 내) 및 해외연수 후 관련 분야 벤치마킹 실적(최근 3년간) (해외연수 목적, 일시, 장소, 인원, 소요경비 일체 - 도표작성) 25.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 (′07. 1. 1～ ′08. 5. 31) 26. 행정자료실 신간도서 구입현황 및 도서대출 현황(월별), 연구모임 장소제공 현황(월별)(′07. 1. 1～ ′08. 5. 31) 27. 직원 위탁교육 기관별 교육비 지급내역 및 교육인원 현황(월별) (′07. 1. 1～ ′08. 5. 31) 28. 노사협의회 운영현황 및 실적(일자, 회의성원, 안건 협의내용) (′07. 1. 1～ ′08. 5. 31) 29. 현장방문 통장회의 추진실적 30.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공개실적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 (2008년 5월 31기준)

구분	지방공무원인력									기타 인력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소방직	기타	상근인력				일시사역 인부
										단순 노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청원 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08. 5 31기준)

구분	기관명		지방공무원인력								
	실국	부서명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계									
본 청	기획 감사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									
		: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 지원과									
		복지서비스과									
		:									
		:									
	도시 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									
		:									
의 회	의 회										
보건소	보 건 소										
동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인력 규모(2008. 5. 31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분	기관명			기타 인력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실국	부서명	업무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30일이하		60일이하		90일이하		180일 이하		240일 이하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본청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														
			:														
			:														
		회계정보과															
		:															
	:	:															
의회	의 회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총 무 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회계정보과</td><td>1. 공개입찰 계약현황
(공사 2,000만원이상, 물품·용역 2,000만원 이상)
<table>
<tr><th>부서명</th><th>일자</th><th>건명</th><th>사업량
(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각종 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3.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
4.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5.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
6. 공유 재산현황(구소유 - 토지, 건물)
<table>
<tr><th>품 명</th><th>구입(취득)일</th><th>구입(취득)
방 법</th><th>구입(취득)
가 격</th><th>구입(취득)
목 적</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8.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지급내역
9. 관급공사 계약현황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공사개요,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10. 수의계약 현황
- 부서명, 일자,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1.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12. 계약심사제 실시 전·후 비교현황 및 효과
13. 사이버 외국어교실 월별 수강현황 및 출석률(접속 건수별 통계자료(′07. 1. 1~′08. 5. 31)
14. 축제기념사이트 구축 현황 및 월별 주민접속 현황
15. 각 동청사 및 문화센터(문화의 집) 현황 및 추진계획 (대지, 건물, 위치 등)
16. 계약심사 현황(공사, 용역, 물품)
17. 홈페이지 기능개선 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지방세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 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 (건수, 금액, 사유 : 10만원 이상)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비과세 감면, 면세, 세액감면 현황 9. 체납세 징수 활동 주요 실적 10.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상세내역 11. 지방세 기업지원 상담실적 12. 전자우편 지방세 고지서 추진현황 (작년대비 반송율 등 실적이 있으면 비교 작성)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지적과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4.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 5. 재택전자민원 (G4C)신청 및 처리실적 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추진 현황 및 실적 8.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따른 부과·징수 현황 9.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10. 건물등기촉탁 실적 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 및 조치현황 12.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현황 13.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내용 14. 여권업무에 따른 추진사항(준비사항 등)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위생과</td><td>1.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2.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3.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현황(개소수)
(근린공원, 정자해변 등)
5.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6.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
<table>
<tr><th>업 소</th><th>위 치</th><th>건축허가일</th><th>객실수</th><th>위반현황</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집행 내역
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자동차, 시설물)
9. 게임장 현황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10. 게임장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
11.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대장
12.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13. 학교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 향후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점검 계획
1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및 실적
15. 1사 1하천 참여단체 활동 현황 및 추진실적
16.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대책 및 단속실적
17. 야생동물보호활동 실적(′07. 1. 1~′08. 5. 31)
18. 오수처리시설 및 방류수 수질 점검현황(′07. 1. 1~′08. 5. 31)
1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20. 행정조치내역(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내역</td><td></td></tr>
</table>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주민생활 지 원 과	1.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08년도 사업계획, 예산지원현황 - 2008. 5. 31현재 사업실적 - 총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3. 고용촉진훈련 추진 내역(예산집행내역 포함) 4.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현황 5.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6.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7.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8.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및 2008년 시행계획 9. 사회복지 정책 평가내용 및 결과 10. 지역자활센터 1/4분기 집행결과 정산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1. 사회복지 상담실 운영현황(동별 취합) - 민원접수 현황 - 사회복지 상담내용(내용별 분류), 상담 인원수, 상담수(월별), 처리상황 및 조치결과 12.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07. 1. 1～′08. 5. 31)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 분기별 작성) 13.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자료(동별 작성) 14.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 일체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주민생활 지 원 과	15. 자원봉사센터 분기별 지도점검 결과 16. 직업소개소 등록현황 및 점검현황 17.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추진실적 및 인원현황 (도우미 및 대상자 현황) 18. 사회복지시설 법적지원 외 특수시책 현황 및 자체사업 추진실적 19.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접수현황 - 사회복지시설명, 후원자명, 후원금액, 접수일시, 후원금 사용내역, 후원금 회계처리방법, 후원자와 수용자와의 관계 20.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의 자선사업을 위한 모금 (바자회, 일일호프 등) 현황 - 사회복지시설명, 모금내역(사업명, 일시, 장소 등), 수입액, 순수입액, 수입액 사용(지출)내역, 수입액의 회계처리방법 2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관련 -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현황, 근무시간 등 22.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사업(′07. 1. 1～′08. 5. 31) - 동별현황, 지원현황, 사업실적 - 아동인지 향상서비스 사업실적 23. 차량운행일지(느티나무공부방 또는 자원봉사센타, 공동모금회 프로포즈일지 포함)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복 지 서비스과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 - 시설현황, 시설별 이용자수(상주인원과 비상주하여 이용하는 인원수 구분 표시), 미이용자수 현황 2. 북구 노인회 지원 현황 3.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판매실적 등) 4.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지도점검 및 조치 내용 포함) 5.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07. 1. 1~′08. 5. 31) 6.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스티커제작 및 발급현황 - 부정 부착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7. 노인복지자금 운영실태 8.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현황 - 2008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현황 - 2008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9. 장수수당 지급현황(동별/월별/인원 등) 10. 2008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현황 및 내역 - 장애아 아동수, 전담보육시설이용수, 미이용아동수 및 그 사유 - 민원 및 문제점, 만족도 11. 노인복지회관 2007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일체 12. 노인복지회관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13.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14.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15. 북구여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6.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추진계획, 접수현황, 사업진행 내용 및 현재까지의 결과, 동별 배치현황 17. 가정·성폭력상담소 지도점검 결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복 지 서비스과	18. 장애인 사회체험활동 사업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 내역 및 정산서 19. 행복담은 우리가족 캠프 사업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20.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2007 하반기, 2008상반기) 내용 및 참가자 현황 21. 지자체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예산, 추진실적 22. 2008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사업내역 23. 어린이 날 행사관련 수탁자료 (수탁근거, 수탁기관 선정 기준, 근거 법령 등) 24. 느티나무공부방 교사 채용 현황(근무기간 표시) 25. 경로당 현황, 경로당별 운영비 및 동절기 난방비 지급내역 (′07. 1. 1~′08. 5. 31) 26. 2008년도 보육서비스의 실태와 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 나이별 수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과 아동수 - 장애아 보육 확대를 위한 계획 - 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현황과 확대 계획 27. 노인복지관련 ① 동별 노인의 달 행사 현황 -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 영수증, 참자가수, 행사주체 ②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28.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29.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30. 노인복지회관 및 북구청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현황 (건별 예산 및 추진실적, 참여인원 등)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복 지 서비스과	31. 노인이 행복한 러브하우스 운영실적 32. 공립농소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현황 33.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공고, 회의록, 공문, 위탁신청서류 34. 정림은하수노인정 개·보수공사 지출내역 중 환수조치결과 35. H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조치 결과 36. 어린이집 인가제한 관련 - 어린이집 인가신청 현황 - 인가제한 시행으로 인한 인가되지 않은 현황 37.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련 -′07년, ′08년 신청대상자 현황 및 지정인원 - 기초노령지급에 따른 인력지원내역(인원, 사역기간, 소요예산) 38.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실적(구청 및 산하기관) 39.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현황 - 보조금, 성금품 및 기타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40. 아동복지교사 현황 및 실적 41. 여성 관련 법적지원 외 특수시책 현황 및 자체사업 추진실적 42.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홍보과	1.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2. 기자실 브리핑 및 기자회견 자료 3. 구정소식지(전자신문 등) 발간 및 배부내역 4.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 5.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단속 현황 6. 청소년 관련 단속 실적(과태료 부과 등) 7.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8.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문화교실, 공연 등 계획 및 실적) 9. 문화예술회관 월별 대관료 징수실적 10. 문화재 지정현황 및 정비실적 11. 축제 및 문화행사(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12. 2007년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관련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3. 2007년도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4. 쇠부리문화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향후 사업운영 계획(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15. 2008년 정월대보름행사 동별 추진실적 및 정산서 16. 기자간담회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 (일시, 장소, 인원, 경비 등-영수증 사본 첨부) 17. 객원기자 및 시정홍보위원 간담회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일시, 장소, 인원, 경비 등) 18. 래핑광고 활용현황 및 소요예산 19. 운동장별 대여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07. 1. 1~′08. 5. 31)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홍보과	20. 쇠부리축제 3, 4회 평가회의 결과 21.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자전거전용도로 포함 (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22.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신규수강 신청현황 및 콘서트 가요교실 운영현황(′07. 1. 1~ ′08. 5. 31) 23. 사격부 예산집행 현황 (인건비, 운영비 세부내역 및 운영비 영수증 사본) 24. 주상절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25. 강동해변 조형물 설치 추진현황 26. 투게더 콘서트 추진실적 27. 현안사업 추진실적 - 중산문화센터 - 국민체육센터 - 달천운동장 조성 - 무룡운동장 28. 미등록 체육동호회 지원현황 29.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축제 실적 및 평가자료 30.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황,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미화과	1. 폐기물 수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현황 -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지역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포함)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내역 등) - 별도작성 4. 환경미화원 정·현원(2008) 및 담당구역현황 5.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6. 분리수거 추진실태 7. 재활용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 매출실적 - 예산지원 현황 - 이용자수 8.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등 9.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 운영실적 10. 재활용 홍보관 운영 실적 11. 환경단속반 운영 현황 및 실적 12. 청소대행업체 비용설계 자료 일체 13. 월별 음식물 처리방법 및 소요비용(′07. 1. 1~′08. 5. 31) (자체처리량, 위탁처리량, 위탁처리 시설명 등 표기) 14. 공용마대 사용현황(단체별, 동별)(′07. 1. 1~′08. 5. 31) 15. 영농폐기물 수거실적(′07. 1. 1~′08. 5. 31) 16.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추진실적(′07과 비교) 17. 청소대행업체 평가결과 18. 동 청소행정 평가 인센티브 지급내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미화과</td><td>19. 클린환경 나눔장터 사업계획, 사업내용, 추진실적,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20. 어린이 날 실시한 클린환경 나눔장터 추진실적 및 신청자 명단
21. 2008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22. 청소체계 개선에 따른 민원발생 내용, 조치결과,
현재까지 평가내용
23.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실적
24. 음식물자원화시설 중단이후 현황 및 향후계획
- 중산동인센티브 지급, 주민지원협의체 및 감시단 등
25.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table><tr><td>구 분</td><td>계</td><td>1월</td><td>2월</td><td>…</td><td></td></tr><tr><td>아파트</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식당별</td><td></td><td></td><td></td><td></td><td></td></tr><tr><td>주 택</td><td></td><td></td><td></td><td></td><td></td></tr></table>26. 폐기물처리업체 지정폐기물 처리배출 운반기준 위반현황
27.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 처리업체 현황
- 최근 2년간 허가내역
-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처리업소에 대한 조치내역</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평생교육과	1.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 강사 경력 - 신규 수강생 비율 2. 권역별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예산, 하루평균 이용자수, 연령대별) 3. 중앙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포함) 4.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 - 위원현황, 위원위촉 등의 개정 계획 - 운영실적 및 계획 5. 공공도서관(중앙도서관, 농소 1, 3동 및 기적의도서관) 운영계획 6.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 및 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7. 세출예산정리부(′07~′08년) 8.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9. 중증장애인 방문대출 서비스 운영현황 10. 중앙도서관 개관 소요예산 결산서 및 영수증 사본 11. 양정, 염포권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도시경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도시녹지과</td><td>1.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공사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위 치</th><th>공사규모</th><th>사업비</th><th>업체명</th><th>추진상황
(진도)</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3.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현황, 민원현황 및 지원실적
4. 도시계획수립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5.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6. 임도 개·보수 현황 및 계약업체 내역
7. 공원시설물 보수 정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8.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
9.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실적(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0. 공원 현황(장소, 시설현황, 개·보수내역, 관리대장)
11.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2.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3.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요구 현황 및 향후계획
14. 등산로 정비현황(기간, 위치, 정비내용, 소요예산)
('07. 1. 1~'08. 5. 31)
15. 도시벽면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6. 2008년 가로수식재,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17. 2008년 녹지작업단 운영현황 및 실적
18. 무룡산 공원화사업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
19. 공원내 체육시설 현황(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20. 숲가꾸기사업 현황 및 하자보수 내역('07. 1. 1~'08. 5. 31)
21. 동대산 기박산성 소공원 추진현황
22. 쌈지공원 추진현황
23. 공원내 체육시설 추진현황
24. 학교공원화사업 추진현황
25. 동별 등산로변 체육시설 설치 현황
(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경제교통과</td><td>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2. 가스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3.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
4. 가스관련 허가, 신고 접수처리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상담 및 지원사업)
6. 노동자 지원관련 사업 및 행사추진 실적
7.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8.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 현년도분 작성
-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9.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10.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현황 및 단속현황
<table>
<tr><th>연번</th><th>사업자</th><th>차고소재지</th><th>차고지면적</th><th>용도</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1.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실적
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현황, 실적 및 향후계획(′07.1.1~′08.5.31)
13. 공인노무사 업무실적, 민원접수현황 및 조치사항 등
14. 주정차단속 실적 및 민원해소 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단속)
※ 대낮 화물차 단속현황 별도 작성
15. 여성기업인 지원상담실(상담내역 및 조치결과) 및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 운영 실적
16. 호계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7.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18. 글로벌 명예통역관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
19. 공장등록현황 및 취소현황
20.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실태조사 내역
21.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2. 노사정구민협의회 현황,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23. 국제교류 추진현황, 교류협력 실적 및 향후계획
24. 세출예산정리부(′07~′08년)
25.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07.1.1~′08.5.31)
26. 버스승강장 민자유치 추진실적</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건 설 과</td><td>1. 하천 점 사용료 부과 및 납부현황, 무단사용자 조치내역
2.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3. 긴급도로 복구공사 현황
(도로명, 위치, 복구내용, 공사기간, 사업비 등)
4. 도로 점 사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
5.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6.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table>
<tr><th>민원접수일자</th><th>내 용</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7. 제방 응급복구 공사 내역
8.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9.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현황
10. 자전거 전용로로 개설 추진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예산 투입액-2008년, 향후 예산투입 예상액 등)
11. 우·오수관로 뚜껑교체 정비현황
12. 소방도로 개설 현황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13.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4. 교량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15.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7. 기존 정화조시설 현황과 오수관로 연결시설 현황
(오수관로 연결아파트 현황과 비교)
18. 오수관로 계획현황 및 추진실적
19. 미불용지 보상현황 및 집행계획
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 및 집행계획
21. 도로시설물 개·보수 현황 (′07. 1. 1~ ′08. 5. 31)
22.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현황
23.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24. 하천 수해복구공사 현황 (′07. 1. 1~ ′08. 5. 31)
25. 동천 하상정비공사 현황(준설모래 처리현황 포함)</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준공검사 후 불법 확장공사 단속 및 조치 현황 5.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6.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7. 임대아파트 현황 및 향후 분양일정 8.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9.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내역 (일시, 참가자, 내용, 회의결과 등) 10.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11. 현수막 지정게시판 및 벽보 지정게시판 위탁현황 1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실시 현황 13. 건축허가관련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현황 14.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 15.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내역 16. 공공건축물 건립 TF팀 운영실적 및 회의록 17. 소규모 건축물 무료 설계반 운영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생명산업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4.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6. 수산관련 인허가 현황 7.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9.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0.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11.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12.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3. 호접란 해외수출전진단지 수출실적 및 향후계획 14.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5.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7. 1아파트 1촌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현황 18. 강동수산물축제 평가서 및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9. 농정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결과 20. 농사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새비닐 교환 실적 21. 가을꽃,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22. 수산물 특산물 포장제 계약서류 및 배포현황 23. 한우산업 육성 지원예산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24. 강동수산물축제 1, 2회 평가회의 결과 25. AI관련 수·발신 공문 일체 26.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추진현황 27. 학교급식 지원현황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친환경 농산물 지원현황 포함, 정산서 사본 제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재난관리과	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3. 민방위교육 실시 현황 - 일시, 참여인원, 교육내용, 강사 - 민방위 교육불참자 처리 현황 4.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복무연장 등) 5.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 및 관리 실태 6. 수해피해 내용 및 복구 현황 (피해내용, 피해금액, 복구비용, 복구현황, 시공사 - 건별작성) ※ 전실·과·소·동 취합 제출 7. 재해대장 사본 8.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현황 및 활동실적 9.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10.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실적 11. 사설전광판 활용 안전예방 홍보실적 1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현황 13. 풍수해 감시인제도 운영현황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3. 진료비조정 및 징수현황 4. 주요약품 관리현황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7.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8. 방역장비 현황 , 방역실적 및 대책 10. 결핵예방접종에 관한사항 11. 비만·당뇨 예방대책 및 실적(효과) 12.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07. 1. 1~ ′08. 5. 31) 13. 암치료비 지원 실적 14.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 15. 방문보건사업 기초조사결과, 대상자선정, 실적, 만족도 조사결과 16. 요리교실 운영실적 및 비만클리닉 참가자 중 참여실적 17.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 실적, 지원대상자 18. 전염병별 예방접종 실적(보건소, 병원, 의원), 접종률 19. 결혼이민자 건강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20. 업소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교육실시 포함) - 의약업소 - 행정처분업소 점검결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21.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① 보건의료 예산 및 집행내역 (사업별 세부예산 및 집행내역) ②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③ 보건의료 필수의료 장비 규정에 따른 보유 장비 현황 - 사용기간, 장비별 구입연도, 구입단가, 내구연한, 정상작동 여부, 노후정도, 교체계획 명기 ④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진료실적, 예산 내역 - 진료실적을 건강보험적용인구, 의료급여수급자 이용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제출 22. 전염병 발생내역 - 원인, 장소별 발생현황, 방역대책 23. 저소득 무료검진 추진실적 - 종별 24. 다문화가정 출산 지원내역(′07. 1. 1～′08. 5. 31) 25.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 - (붙임 4)	

(붙임 4)

□ 보건소의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2007. 6. 1～2008. 5. 31)

구분	기관명			구분		서면 근로 계약서	임금(천원)		상여금 (천원)	퇴직금	법정 수당	법정 휴가	사회 보험	경조사 휴가	재계약 방법
	실국	부서명	업무				총액	단가							
직속 기관	보건소		:	: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구분 : 직종별 분류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1

○ 총액임금 : 2007. 6. 1～2008. 5. 31 까지 지급된 임금(천원단위)

○ 단가 : 업무별 책정 단가

(4) 상여금 : 2007. 6. 1～2008. 5. 51 까지 지급된 상여금 총액(천원단위)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7)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8)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예 : 1,3 / 1, 2, 3, 4)

(9) 교육훈련 : 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 ○, 받지 않았을 경우 ×

(10) 경조사휴가 : 상근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있으면 ○, 없으면 ×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12)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인원을 기입

(13) 상근인력에 대한 제출서류

- 상근인력관리대장,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각 1부

(14)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인부사역부 각 1부

의회사무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최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	

제2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 2008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의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08. 7. 14 ~ 7. 18(5일간)

4.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북구	○기획홍보실 ○총 무 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경제국 ○보 건 소 ○의회사무과	

5.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 임 지	문 석 주	박 병 석 이 은 영 류 재 건 류 인 목 이 영 희	박 민 수	장 판 성

② 감사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8. 7. 14(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 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 총 무 국 • 총 무 과 • 회계정보과 • 지방세과 • 민원지적과	
2008. 7. 15(화)	10:00	〃	○ 총 무 국 • 환경위생과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서비스과 • 문화홍보과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8. 7. 16(수)	10:00	〃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미화과 • 평생교육과 ○ 도시경제국 • 도시녹지과 • 경제교통과	
2008. 7. 17(목)	10:00	〃	○ 도시경제국 • 건 설 과 • 건축주택과 • 생명산업과 • 재난관리과	
2008. 7. 18(금)	10:00	〃	○ 기획감사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③ 감사방법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실·과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소·실·과장(일부만 실시)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34	30	
공 통 사 항	21		
기 획 감 사 실	26	1	
총 무 국	93	14(동장 8)	
주민생활지원국	133	6	
도 시 경 제 국	133	7	
보 건 소	25	1	
의 회 사 무 과	3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14	72	42
공 통 사 항	5	5	-
기획감사실	5	2	3
총 무 국	31	20	11
주민생활지원국	33	20	13
도시경제국	35	21	14
보 건 소	4	4	-
의회사무과	1	-	1

6. 감사결과

시정요구-공통사항

① 관용차량 보험 가입방법 개선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시 운전자의 연령에 대한 고려 없이 상당수의 차 “연령한정부문” 산정에 있어 전 연령으로 가입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보험가입에 있어 「특별약관 및 특별요율」에서 전연령운전특약, 만21세이상 한정운전특약, 만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이 있으므로 부서별 운전자의 연령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예산 정산 철저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집행하는 거의 모든 부서의 정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간이영수증과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개최시 동 지원금의 경우 교부만 하고 정산을 하고 있지 않음. 교부결정, 집행, 정산, 정산검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이므로 시정이 요구 되며,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카드기가 고장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 매년 같은 단체에서 행사를 함에도 정산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반복적으로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아울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와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산을 함에

있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③ 차량관리 철저(차량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

회계정보과에서 총괄관리 하던 차량관리는 현재 각 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음. 차량운행일지가 거의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운전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가입 문제, 차량사고 처리문제, 심지어 차량등록일도 맞지 않은 경우도 몇 차례 있었음.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는 관용차를 자기차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마음가짐부터가 요구되며, 부서장 책임하에 차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④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현재 주민참여감독제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정보나 교육 없이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경우 감사에 필요한 필수정보가 많은 부분이 알 수 없게 표기되어 의원들이 자료 분석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음.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기능을 감안한다면 추후에는 법적으로 명확히 공개되지 말아야 한다는 정보 외에는 모두 제출되어져야 할 것임.

시정요구-개별사항

企劃監査室

①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실 있는 편성 및 집행**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전 담당부서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타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 바,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집행기준 등이 잘 지키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자치법규 사이트 관리 강화**

전자법령 열람체계 강화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사이트에는 직제가 개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자치법규사이트 별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개선이 요망됨.

總務局

1. 총무과

① **동별 렌트카 사용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

올해부터 동별 렌트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7개동 중 상반기 현재 3개동의 경우 하반기 사용을 이유로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당초 의회에서는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동에 렌트카 보다는 차량을 구입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도농복합지역인 우리구의 경우 거리와 민원 즉시 해소를 위해서는 렌트카 보다는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예산이 문제라면 동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사회단체에 대한 신중한 예산지원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심의에 앞서 해당부서에서 삭감한 “새마을실천다짐대회”에 대하여 편법으로 1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지 않음. 해당부서에서 당초 불필요하다고 한 다짐대회 예산을 다른 부서도 아닌 본 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이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③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조정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의 강사료가 동별, 프로그램별 그리고 강사경력(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인 실정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급되는 운영형태로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구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동별 자치센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강사별 등급산정 등을 통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보기 바람.

④ 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패용 문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직원명찰의 경우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집행부의 난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승인해 주었음.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을 패용하는 문제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증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 이를 달고 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찰패용을 하지 말고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할 것임.

⑤ 목적에 맞는 지역리더 양성교육 실시

2008년도 상반기 리더쉽 함양 자치교육을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한 평생학습 관련 교육으로 대체하였음. 또한 이 교육에는 통장들도 참여하여 통장회의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당초 지역리더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하반기에 실시하는 교육은 당초에 목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⑥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배부방법 개선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는 대부분 통장회의 시 통장을 통해 전 세대에배부하게 되는데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기 바라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 세대별 배부 보다는 아파트 각 통로에 게시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높을 것이므로 시행해 보기 바람.

2. 회계정보과

① 염포동 자치센터 점자블럭 설치

염포동 자치센터의 경우 입구 경사가 30°정도로 급경사로 되어 있

음. 현실적으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려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내실 있는 사이버 외국어교실 운영

사이버 외국어교실 수강현황 추세를 보면 현상유지나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당초 사이버외국어 교실을 시작할 때의 주민호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③ 구청사 장애인화장실 개선

작년과 마찬가지로 구청사 전체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4층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층은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음. 특히 장애인 화장실 키가 맞지 않아 만일 장애인이 화장실 사용도중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밖에서 구호해줄 키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3. 지방세과

① 과오납 최소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과오납 최소화의 경우 금년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신선한 납세제도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②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고액체납자가 전년도에 비하여 조금 늘었음. 현재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370명 정도로 그 건수는 18,000건으로 부동산, 예금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 수시로 조회하여 압류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압류 하는 등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임.

③ **울산북구사랑카드 관련**

2001년도에 구에서 울산북구 사랑카드를 발급하여 그 포인트로 세외수입을 늘리려 하였으나 현재 그 시책은 담당부서도 그러한 시책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유야무야 된 상태임. 이 시책에 대하여 활성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람.

4. 민원지적과

① **직원 친절도 향상**

구청내에서 가장 친절해야 할 부서가 민원지적과임에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에서 10위이고 총무국내에서도 꼴찌인 것인 문제임.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인들에 대한 언어 등으로 인한 문제를 이주노동자센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5. 환경위생과

① **마을 간이상도 시상수도 인입을 위한 방안 강구**

마을 간이상수도 총 44개소 중 16개소가 시 상수도가 설치되었음에

도 인입하지 않아 간이상수도 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 수질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시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에 대한 집중홍보 후 지원을 중단하여 안전한 시 상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 상수도 5개소 추가공사 지역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

모범음식점 6개 업소에 대하여 취소하고 2개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전 회수하는 일이 있었음. 또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시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지정하여 “주의”를 받았음.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는 공신력의 문제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광고부서와 협의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추진방법 개선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실적을 보면 2007년 약2.4t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음. 음식물 싸주기 봉투 배부시에 면적 및 테이블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부하지 말고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배부하도록 하고, 홍보스티커의 경우 대부분 프런트에 설치되어 있어 손님들의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업소안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되도록 하고 메뉴판에도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손님이 스스로 싸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업주도 음식물을 싸주는 것이 유리하므로 “싸드릴까요?”라고 한마디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음식점 업주 교육시 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

도록 조치하기 바람.

④ **환경백일장 개최방법 재검토**

올해 4월 27일 쇠부리축제 기간 중 구청에서 환경백일장을 개최하였음. 쇠부리축제 기간에 백일장을 개최한 것은 학생들을 쇠부리축제에 동원한 듯한 느낌이 있고, 축제로 인한 각종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서 백일장을 한 것은 맞지 않음.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되어 선거법에 상장 외 다른 부상품 등을 줄 수 없으므로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이 주도하여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추후에는 이 행사가 본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⑤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전면 재검토**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이 회사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행사시에만 반짝 인원동원을 하고 있고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1단체 1하천, 1학교 1하천, 1아파트 1하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아파트의 경우 참여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요구되며,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⑥ **실질적인 숙박업소 점검**

현재의 숙박업소 위생점검 방법은 육안검사로 점검이 효과적이지 못함. 시트, 베게커버, 이불의 경우 매일 교체해야 하는데 얼마전 TV에서 매일 교체하지 않고 대충 먼지만 제거하고 펴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우리관내 숙박업소에서는 이러

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안검사 외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점검하기 바람.

⑦ **오존관련 대기환경 오염원 최소화**

농소1동과 효문배수장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3번 오존주의보가 발령 되었음. 이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배출가스 단속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임.

住民生活支援局

1. 주민생활지원과

① **동 상담실 운영 철저**

저소득층 민원상담을 위한 동 상담실 운영 실태에 대해 민원모니터 3명을 활용하여 점검해 본 결과 대부분의 동에서 상담실 안이 아닌 담당직원의 옆자리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동 사회복지담당자의 경우 복지업무만을 전담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상담실내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상담실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가급적 사회복지 업무외 타 업무를 배제해야 할 것이며, 상담실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집행한 예비비 환수 철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주거비 소요액을 판단함에 있

어 담당부서의 부주의, 업무미숙 등으로 2007년도 제2회와 제3회 추경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비와 주거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발생하였음. 물론 담당자가 자기업무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꼼꼼히 업무를 처리해 나갔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만일 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중간 결재라인에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한 기능이 전혀 없었음.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담당자들은 본인이 최종 결재자란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시청,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③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 강화

국·시비 사업인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모집이 원활하지 못하고 2007년도의 경우 총6명이 이수를 하였으나 취업과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은 1명도 없었음. 이는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1명이라도 취업을 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람.

④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 활성화

북구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의 경우 이용가능자 대비 참여자 인원이 적음. 교통문제, 위장결혼문제, 자녀보육문제, 언어소통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수도 있으나 교통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지관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 사업에 출산도우미 사업이 꼭 필요한데 법적검토를 해주기 바람.

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선

자원봉사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하여 인터넷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1365로 연결을 하면 북구자원봉사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시로 연결되므로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⑥ 자원봉사센터와 공부방 운영 업무분장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 공부방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여 시행하기 바람.

⑦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푸드뱅크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음. 최근 유가급등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기탁처 발굴과 수혜자 확대한 필요한 실정임. 기부식품 배분 축소대상은 재가노인 무료급식소, 정부 및 자치단체 보조 사회복지 생활시설로 추후에는 실제 어려운 재가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빵은 가정으로 빵 이외의 식재료, 음료수, 양념류, 기타 간식류는 시설로 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⑧ 명촌문화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명촌문화센터의 경우 1층에 점자(진행)블럭이 없으며,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 할 정도로 좁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보는 창구가 너무 높아 민원 업무대 한쪽을 낮추었으면 함. 또한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데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고 문 앞쪽에 경사도가 있어 자동문이 아니어서 열수 없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시정하기 바람.

2. 복지

① 공립 농소어린이 집 위탁관련

농소어린이 집 위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내용을 보면 시설운영계획서 분량을 20매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정된 위탁기관의 시설운영계획서는 84매가 제출되어 공고내용과 맞지 않음. 또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당일 날 보육심의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 이는 원칙 없는 일 처리 방식으로 공신력을 추락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어린이 모집 시기가 다른 어린이 집 원아를 모집한 후 모집하게 되어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주간행사 개최

법에 의거 여성주간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구·군간 행사참여를 위해 조율을 거쳐 여성주간을 벗어나 개최하였는데 이렇게 행사를 한 것은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조정하기 바라며, 금번 행사시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의 회원만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도 알차게 구성되지 못하였음. 내년부터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칭 “여성축제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서로 공유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함. 또한 시에서 개최한 행사와 같이 여성취업박람회 등 행사위주가 아닌 정책위주의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③ 내실 있는 어린이 집 점검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자료가 점검결과에 대해 작년자료와 올해자료 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자료관리가 문제이고, ○○어린이집 이라고 표기되어 전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알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작년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올해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④ 알차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현재 구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으로 명시된 것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음. 2007년 하반기 교육은 진부하여 재미가 없었다는 평이 많았고, 올해 상반기 실시한 성교육은 DVD로 방영하여 극히 관심 있는 일부 직원들만 시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추후 알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초빙 등 다각적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3. 문화홍보과

① 박상진의사 생가 관리 철저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과 관련하여 시에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우리구로 복원사업을 이관함에 따라 사업이 이월되어 생가 복원외 다른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였다고는 하지만 생가주변 보안등 설치문제, 주차장 확보 등 많은 예산이 남았음에도 추진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움. 시와 협의하여 우물 반대편 연못터 복원, 주차장 확보, 보안등 설치에 대해 협의하여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문화제 관리 철저

작년에도 지적한 문화재 관리문제가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화재 간판, 주변 청소, 풀베기 작업 등 전반적인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③ 상안어린이 공원내 풋살구장 운영 관련

상안어린이공원내 풋살구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료 300만원을 받고 운영권을 넘겨 주었음. 이렇게 할 경우 사용료를 생체에서 부과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기 바라며, 구장사용 신청에 있어 일괄 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구청 별관 2층)에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어 어린이들은 거의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며, 사용료도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비싼 편임. 신청 장소를 농소3동 동사무소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기 바라며, 추후에 풋살구장의 그물망을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④ 청소년 축제 재위탁 금지

청소년축제의 행사를 보면 예산액의 80%정도가 이벤트 회사로 들

어갔음. 행사를 주관한 청소년협의회에서 행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에서 주도한 것은 문제가 매우 큼. 당초 본 행사의 경우 구에서 직접하기로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음. 향후에는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주던지 재 위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4. 환경미화과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교육실시

효문지역 공단에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이들을 한데 모아 교육하기에는 외국인들의 정서상 맞지 않으므로 직접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교육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②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철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음. 당초 감시카메라 도입 목적이 사전 예방적 측면과 단속목적 2가지가 있었는데 사전 예방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처음에는 카메라 설치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카메라가 화질문제 등으로 불법투기자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단속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실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평생교육과

①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

북스타트운동, 독서의 달 행사, 독서주간행사를 맡아 온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활동이 당초 기적의 도서관에서 출발할 때와 비교하여 그 활동이 저조한 실정임.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편중되지 않게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며,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활성화를 위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고민하기 바람.

② 중앙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중앙도서관의 경우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음. 열람실의 경우 화재시 비상탈출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피스로 고정해 놓은 상태로 항구적 조치가 요구되며,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철망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이동이 불편하며 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어 자동문으로 교체가 요구되며, 도서관 입구의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 이동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점자블럭도 설치 되어 있지 않음. 어린이실의 경우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아 의자를 두어 휠체어가 못들어 갈 정도임. 장애인 화장실 내 청소도구가 방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트의 경우 좁아 휠체어를 돌릴 수 없으므로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설치 등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都市經濟局

1. 도시녹지과

① 공원관리 철저

북구 관내 공원관리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음.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비슷한 시설에서 안정감(높낮이)의 차이가 많았으므로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안정감 있게 기초부분을 수정하든지 모래를 넣어 높이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며, 인조잔디가 구석구석 파인 곳이 많고 철거한 쓰레기통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는가 하면 수도고장, 파손된 벤치 방치, 화장실 시설물 파손, 유리파손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보수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1단체 1공원, 1아파트 1공원관리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요망됨.

② 공원내 수목관리 및 지주목 제거 철저

관내 공원을 돌아보면 베어져 나간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음. 이렇게 베어져 나간 나무들 대부분은 전지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태풍 등 바람에 넘어져 베어낸 것이며, 비탈에 심어진 나무의 경우 지주목을 대어 뿌리가 완전히 내린 후 제거해야 하는데 비탈의 나무들 대부분은 지주목이 없는 상태임. 나무를 지속적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심어놓은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함. 또한 구국도31호선변의 가로수의 경우 나무가 뿌리를 완전히 내린 후 지주목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때에 제거하지 않아 철사가 나무를 파고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

로 조사하여 조속히 철거되도록 하기 바람.

③ **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 하자보수 실시**

추계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는 2007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2월 준공을 하였는데 추계공사가 아니라 동계공사가 되고 말았음. 겨울에 터파기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야기하여 봉 110개 중 상당수가 흔들리고 있고 봉을 심은 위치도 반대로 되어 있어 부실공사의 전형이 되었으나 준공처리한 것은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하기 바람.

④ **양정경로당 뒤편 재선충 방제목 제거**

양정경로당 뒤편 등산로변에 재선충 제거목이 3~4군데 방치되어 있어 여름철 우수기 하천을 막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조치 요망.

2. 경제교통과

① **밤샘주차 단속방법 개선**

현재 밤샘주차단속 현황을 보면 1년에 1~2차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차고지가 대부분 울주군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계도방법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화물차주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적극적인 지도와 계도가 필요함.

② **매곡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보완**

매곡산업단지 공영주차장 확인결과 주차장은 141면으로 잘 만들어 졌어나 너무 삭막한 실정이므로 나무식재 등 녹화작업이 요구됨. 산업단지 쪽으로 넝쿨식재도 고려해 보기 바라며, 집수정 위치가 너무 위쪽에 위치해 있고 주차장 입구 우측 끝이 비어 있어 파고라나 주차1면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기 바람.

③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철저

예년의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올해 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천곡초등학교)가 있음. 설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완료 전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져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④ 명예통역관제도 운영 철저

글로벌명예통역관 신청인원이 저조하였으나 현재 7명이 신청하여 다행임. 그러나 거주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베트남어 통역관은 구하지 못한 것은 문제이므로 거주외국인 중 베트남어 통역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 건설과

① 오리사냥~달천중학교간 통학로 정비

본 도로의 경우 2008년 3월 5일 개교한 달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있으며 비만 오면 침수되는 도로임. 학생들이 도로의 물을 피해 담벽을 이용해 가고 있어 아주 위험한 실정임. 이 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동의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를 사용하여서라도 우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기 바람.

② **자전거도로 인근 잡풀제거**

자전거도로 잡풀제거와 관련한 민원신고에 인원 등의 문제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도로변 잡초 특히 칡넝쿨의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고유가시대 자전거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행 중 사고는 차로 분류되므로 이러한 점을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③ **자전거겸용도로 재질에 대한 검토 및 정비 철저**

산업로 자전거겸용도로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상태임. 전용도로는 양호하나 겸용도로의 경우 문제가 심각한 편으로 외국 등 사례연구를 통하여 향후 재질을 신중히 검토해 보기 바람. 또한 겸용도로의 경우 차량, 농기계 등의 진입으로 파손이 심각하므로 보수공사가 요구됨.

④ **홈에버~신상안교 자전거 도로구간 재시공**

홈에버~신상안교 자전거도로는 올해 2월 준공한 것으로 현장확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포장면이 곳곳에 솟아올라 있고, 설계상 70㎜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40㎜정도로 얇게 포장되어 있었음. 뿐만 아니라 재생자갈을 120㎜의 넣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음. 이는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것임.

⑤ **천곡본동 도로개설에 따른 전주 이설**

작년 행감에 지적한 사항으로 천곡본동 도로개설시 도로는 공사가 잘 되었으나 인도부분의 경우 실제 폭이 1.35m로 매우 좁은 실정임. 그런데 인도 한가운데 대형 전봇대가 인도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인도보행이 거의 힘든 상태임. 인도보행에 지장을 최소화 하도록 전봇대를 이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⑥ **정비가 요구되는 기타사항**

- 호계주공아파트~대하그린아파트 뒷도로
  (우수로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 도로가 침수)
- 신상안교 하부도로 반파
- 매곡산업단지내 다리명 변경(방뫼교→방매교로 변경요망)
- 종합복지회관 납골묘 철거
- 천곡보, 제전보 보수
- 자전거전용도로 장미아치 관리 철저
- 농소3동(대동방면), 국도7호선 천곡사거리(우수관에 물이 차 있음)

⑦ **매곡천, 신천천 정비**

매곡천과 신천천의 경우 정화되지 않은 오수유입으로 악취가 심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치가 요구됨.

4. 건축주택과

①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인부를 사역하여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신빙성에 의문이 감. 야간에 주로 사용하는 에어라이트의 경우 단속

이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 지도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5. 생명산업과

① 호접란 수출 만전

2007년도에 11만본을 수출하였고, 올해 2008년도에는 20만본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7월현재 4만본만 수출한 상태로 20만본 목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대만과의 가격경쟁력 문제,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구매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만산을 우리 화훼농가의 동종품종과 대체가 안 되도록 신경 쓰기 바람.

② 봄꽃 전시회 활성화 방안 강구

봄꽃전시회 평가보고서를 보면 미흡하고 쇠부리축제에 비하여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예산확보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기 바람.

6. 재난관리과

①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

현재 우리구의 공익근무요원 중 운전을 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인 실정임에도 사업을 하는 일부부서에서 운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큰 실정임. 위급상황이 아니라면 공익요원에게 운전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어떤 보험회사의 약관을 보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시,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 배상책임 중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 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원 아닌 일반공익요원이 운전할 때는 물론이고 운전요원이 운전할 때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그에 따라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일반 복무분야의 공익요원도 1년에 2번 정도 봉사활동 기회를 늘렸으면 함.

② 풍수해보험사업 홍보활동 강화

풍수해보험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3명만이 가입하였음. 작은 금액으로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교육시에는 보험사에서 직접 나와 설명함으로써 영업활동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교육하고 보험사에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효과적일 것임.

③ 화봉공원 비상급수시설 정비

화봉공원 비상급수시설의 물 빠짐 배수구 크기가 작고 물받이가 트여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즉각적인 정비가 요구됨.

保健所

① 직원 복무기강 확립

홈페이지 열린마당을 보면 22건 중 6건이 불친절로 판단됨. 전화응

대에도 문제가 있으며, 기획감사실 감사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지적사항 13건의 경우 임금대장 등 정비소홀 등 복무와 관계된 것이 많음.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사기진작도 요구됨.

② 약품관리 철저

2006년도에 구입한 인플로엔자 백신 중 1,400명분을 폐기한 것은 문제임. 약국 등을 지도 단속하는 보건소가 약품관리를 허술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③ 방문간호사업 추진 철저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2~8명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사업의 경우 환자와의 신뢰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방문이 꾸준히 진행되어져야 할 것임. 이직이 최소화 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④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보건소 내부에서의 장애인 이동은 가능하지만 주차장에서 보건소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 혼자서 가기에는 실제 어려우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하기 바람.

건의사항-개별사항

企劃監査室

① **여성관련 예산 확충 협조**

우리 구의 경우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타 구의 경우 평균 1%정도이나 우리 구의 경우 0. 09%로 너무 적어 예산증액이 필요하며 여성위원 비율도 24%로 작년 20%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여성위원 보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②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방법 다양화**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방법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구가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공모의 방식을 빌어 각 사회단체들이 그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 수행하는 방법이 검토 되었으면 함.

③ **의회와의 협력 강화(건의)**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음.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업무협조가 중요함.

總務局

1. 총무과

①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형평성 제고

올해 상반기 지급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서간, 개인간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직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공공부문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곤란하여 잘못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경쟁사회에 상급자에 대한 줄을 세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무국 주무과 위주가 아닌 부서별 편차를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하기 바람.

②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건의)

단기간 근무한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이동 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현재의 방침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전보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동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별, 연령별, 능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람.

③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

올해부터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의무이수 시간을 통한 상시학습을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의 고유목적은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대학 참여, 제3대학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해 교육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공무원 참여 유도를 위한 인원동원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므로 가급적 지양하고 실제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④ 구청사 경비용역에 따른 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구청사 경비자에 대한 임금을 보면 우리구와 용역업체 사이에 계약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 실제 경비원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역업체와 경비원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구에서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회계정보과

① 노동자들을 위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권장

울산시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공사대금지급예고제, 각종 대금지급통보제를 시행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매우 좋은 시책이라 판단됨. 아울러 이와 함께 건설노동자, 덤프트럭 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주기 바람.

② 계약심사제 탄력적 운영

현재 계약심사제를 운영함에 있어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양정동 주민센터 건립 후 동장 포괄사업비로 동사무소 정비에 사

용할 정도로 비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계약심사사례집 발간책자를 보면 상호가 표시되지 않아 정보를 획득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으므로 추후 발간시 상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③ 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실시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보면 너무 복잡하여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각 과별 홈페이지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 부실하고, 각 동의 홈페이지의 경우 내용도 부실하고 글을 올리는 기능밖에 할 수 없으므로 쌍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이 요구됨.

3. 지방세과

4. 민원지적과

①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

구민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이화농협에 설치된 것은 건물문제로 24시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발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2001년도 9월에 구입한 것으로 교체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장소에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라며, 모조지문을 이용한 불법 발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 보기 바람.

5. 환경위생과

① 학교 앞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지속 실시

학교 앞에 위치한 문구점 등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24개 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직접 수거검사가 지도점검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원산지 표시관련 단속 및 홍보강화

올해 6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음. 100㎡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충분한 홍보와 계도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③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오염도 조사

2008년 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오염조사 업무가 우리구로 이관 되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현재 대상은 22개소로 되어 있으나, 여건만 된다면 도서관, 병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住民生活支援局

1. 주민생활지원과

① 의료급여관리사 장기고용 검토

국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성과를 보면 수급자의 의약품 중복, 오·남용, 진료기관을 전전하는 행위방지에 기여하였으며, 10억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음. 본 사업의 경우 의

료급여대상자들과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므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장기적 계약이나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② **실현가능성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야 하므로 부서별 계획을 받을 때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독려 또는 교육하고, 그 계획이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2. 복지서비스과

① **시간연장 보육시설 점검 강화**

시간연장 어린이 집을 지원함에 있어 민간어린이 집의 경우 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실제 어린이가 출석하고 있는지를 수시점검 하여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 유통기한 등을 지켜 어린들이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기 바람.

3. 문화홍보과

① **운동장 사용방법 및 사용단체 선정방법 전면 재검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개이상 경쟁하여 심의한 운동장 사용단체를 살펴보면 5번사용 2개 단체, 4번사용 2개 단체, 3번사용 14개 단체, 2번사용 39개 단체, 1번 사용 217개 단체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현재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용단체 선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신청하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② **강동 관광상징물 설치 관련**

강동 관광상징물 학술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의원들과도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진행해 주었으면 함.

4. 환경미화과

①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식당 운영**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주민 1인당 10~15% 정도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어 있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 운동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에 있지만 일반음식점의 음식문화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어느 한 식당을 지정하고 구에서 지원하여 시범식당으로 운영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② **음식물 감량기기 도입문제 신중 검토**

원칙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지만 처리비용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남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감량기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상위법 저촉문제를 검토하여 도입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므로 검토해 보기 바람.

③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관련**

음식물쓰레기 수·운반 대행료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함에 있어 춘산환경의 경우 차량이 3대에서 2대로, 청소인원도 2명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용역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실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유가상승, 도시팽창에 따른 인구유입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업체에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일부업체의 경우 취업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무관리사를 활용하여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④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

쓰레기봉투를 활용한 상업광고는 기업들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해 성사되지 않았으나 공익광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해 보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앞면의 표시방법을 명칭과 용량을 나타내는 부분의 글씨크기는 줄이고 배출시간과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조정하기 바람.

⑤ **청룡암 입구 무단방치 쓰레기 관리 철저**

매곡산업단지 입구(청룡암 입구)에 수년째 재활용품이라 하기에는 가치가 없는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음. 강제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면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기 바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임시로 포장을 이용 덮어두는 것이 옳을 것임.

⑥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련**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 가동 잠정중단 외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나 주위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 상태임. 유지관리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며, 주민지원기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기 바람.

⑦ **고정용 재활용 수집용기 철거**

재활용 수거를 위해 기존에 설치한 고정용 재활용수집용기는 주위청결 및 관리문제가 있으므로 철거하고 수거당일 설치 후 철거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5. 평생교육과

①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올해 9월 신청공고가 나고 11~12월에 지정 결정이 나는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우리구에서 의욕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의회와의 공유도 필요함.

都市經濟局

1. 도시녹지과

① **무룡산 정상부 정리**

무룡산 정상에는 쓰지 않는 노후건물, 철조망, 전기선, 통신선, 군사벙크 등이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한국통신과 군부대에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② **무룡산 개발 관련**

무룡산 개발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체계적으로 개발하였으면 함. 무룡산 헬기장 옆에 설치한 전망데크의 경우 높이가 낮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안전벽에 올라가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후 추가작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기본계획 수립이후 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경제교통과

① **신중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당초 우리의회에서는 장춘시 녹원구, 상해시 남회구와의 교류추진 당시 중국의 투자유치와 우리구의 청소년, 문화교류 등 추진목적이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였음. 서로의 이해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또한 독일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실용적으로 난 수출전진기지가 있는 아팝카시와 교류를 적극 추진해 보거나 미국과 같은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큰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임.

③ **상습 주정차지역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우리구의 상습 주정차 구역이 20개소 정도가 있음.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데이타가 전혀 없으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데이터화 하여 효

율적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며, 연암복개천 표지판이 낮아 야간에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조치하기 바람.

④ **호계공설시장 현대화 사업관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호계공설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7월말 설계를 완료하고 8월초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 상인들 일부는 영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건설과

① **인도에 설치 된 볼라드 정비**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너무 낮고 형광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많으며, 설치한 볼라드가 제각각 이었음. 볼라드는 미관상 좋지 않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자인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규격품이 있으면 그것으로 정비해 나가기 바람.

②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재해예방대책 강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내 상습침수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라며, 하수구 준설과 배수장 2개소 시운전을 통한 가동여부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기에 대비해야 할 것임.

4. 건축주택과

① **대암파크랜드 진입로 확보**

대암파크랜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보도를 캔틸레바식으로 하천방면

으로 내어 주던지 아니면 일직선으로 다리를 놓는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최소화 해 주기 바람.

② **공동주택 녹화사업 지속 추진**

신규아파트의 경우는 구청에서 녹화에 따른 조건을 부여하여 잘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아파트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바람.

③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평찬리비에르아파트 1~3단지에 대하여 분양승인 되었고, 7월 2일 파산관제인, 임차인, T/F팀 관계자가 참석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 4일 분양전환 승인이 되었음. 현재 임차인의 채권순위 중 3순위가 될 경우 제시된 금액으로, 4순위가 될 경우는 가구당 평균 190만원정도 상향될 것이므로 3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④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도서관의 경우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함에도 최초설계에서부터 재설계 등을 거쳐 43억에서 33억 6천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었음.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으나 현재 중앙도서관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실정으로 본 공사비의 경우 60%정도가 의존재원인데 굳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것은 문제임. 공공시설 특히 도서관은 미래를 내다보고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므로 추후에는 이런 공공건물 신축시 신중히 판단하기 바람.

5. 생명산업과

① 소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홍보강화

원산지표시가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100㎡이하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지속적 홍보를 하고, 100㎡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단속 및 홍보 인원을 적정수준 유지할 수 있어야 효과적일 것이므로 강구해 보기 바람.

② 유기동물 보호방안 강구

현재 유기동물 처리에 있어 대부분 안락사 위주로 분양과 주인을 찾아주는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동물보호를 위하여 상설보호센터를 건립하거나 시에 건의하여 주기 바람.

6. 재난관리과

①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철저

지역자율방제단 활동실적을 보면 안전한국훈련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이 다른 단체들에서 흔히 하는 활동이 대부분임. 유사시에 대비하여 긴급히 필요한 곳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임.

保健所

議會事務課

① **의회홈페이지 개편**

의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요구됨.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글 올리기 정도 수준으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재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의안처리현황,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의회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바람.

제3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 6. 1~2008. 5. 31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43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

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14건이며 시정요구사항 72건, 건의사항 42건으로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08년 8월 29일까지 보고하기 바람.

제4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소계	추진중	완결	처리불가	소계	추진중	완결	처리불가	
계		113건	72건	47 (65%)	25 (35%)		41건	30 (73%)	11 (27%)		
공 통 사 항		5	5		5		-				
기 획 감 사 실		5	2		2		3	3			
총무국	총 무 과	11	7	7			4	4			
	회계정보과	6	3	2	1		3	3			
	지방세과	3	3	3			-				
	민원지적과	2	1	1			1	1			
	환경위생과	10	7	4	3		3	1	2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9	7	5	2		2	2			
	복지서비스과	5	4	1	3		1		1		
	문화홍보과	6	4	3	1		2	2			
	환경미화과	9	2	2			7	3	4		
	평생교육과	3	2	2			1	1			
도 시 경제국	도시녹지과	6	4	3	1		2	2			
	경제교통과	7	4	4			3	3			
	건설과	9	7	6	1		2		2		
	건축주택과	5	1		1		4	3	1		
	생명산업과	4	2	2			2	2			
	재난관리과	4	3	1	2		1		1		
보 건 소		4	4	1	3		-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①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실 있는 편성 및 집행**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전 담당부서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타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 바,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집행기준 등이 잘 지키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 강화** • 사회단체보조금 카드관리 이용 시스템 점검 ・기 간 : '08. 7. 21~25(5일간) ・점검내용 -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 이용여부 - 보조금 지출시 집행기준 준수 여부 등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회의의 개최 ・일 시 : '08. 7. 25. ・회의내용 : - '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집행 철저 요구 - '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접수시 당부사항 전달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지적사항 통보 : '08. 8. 7.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② 자치법규 사이트 관리 강화** 전자법령 열람체계 강화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사이트에는 직제가 개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자치법규사이트 별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개선이 요망됨.	**○ 자치법규사이트 일제 정비** - 기 간 : '08. 7. 21~'08. 8. 27 - 정비내용 ·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반영 · 별표 부분 메인화면에 배치	완결
	건의사항	**① 여성관련 예산 확충 협조** 우리 구의 경우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타 구의 경우 평균 1%정도이나 우리 구의 경우 0. 09%로 너무 적어 예산증액이 필요하며 여성위원 비율도 24%로 작년 20%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여성위원 보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여성관련 예산 확충 협조** • 부서에서 여성정책관련 예산 협조시 적극 검토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2009년 당초예산편성시에도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정책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②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방법 다양화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방법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구가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공모의 방식을 빌어	•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이 2008. 7. 28자로 기 공고되었고, 2009년도 사업계획은 8월 18일까지 신청·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 중에 있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건의사항	각 사회단체들이 그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 수행하는 방법이 검토 되었으면 함.	• 따라서, 내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검토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하여 다양화 하는 방안 검토하겠음.	추진중
		③ 의회와의 협력 강화(건의)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음.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업무협조가 중요함.	• 주요업무에 대한 의회보고 : 수시 • 구정 주요시책, 예산현황, 주요 민원사항 등 보고 : 수시 ※ 현안업무 등 주요사항에 대해 의회와의 공유 협조 공문 발송('08. 8. 28)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요구	**1. 동별 렌트카 사용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 올해부터 동별 렌트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7개동 중 상반기 현재 3개동의 경우 하반기 사용을 이유로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당초 의회에서는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렌트카 보다는 차량을 구입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도농복합지역인 우리구의 경우 거리와 민원 즉시 해소를 위해서는 렌트카 보다는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예산이 문제라면 동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렌트카 동별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 : 8. 8 • 사용실적 및 향후계획 파악 • 운용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수렴 ○ 향후추진계획 • 2009년 당초예산 편성시 차량구입 검토(구 재정감안) - 1안 : 권역별 구입 - 2안 : 전 동 구입	추진중
		2. 사회단체에 대한 신중한 예산지원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심의에 앞서 해당부서에서	○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취지와 사회단체별 설립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요구	삭감한 “새마을실천다짐대회”에 대하여 편법으로 1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지 않음. 해당부서에서 당초 불필요하다고 한 다짐대회 예산을 다른 부서도 아닌 본 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이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유도하고, ○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삭감사항을 재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3.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조정 현재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의 강사료가 동별, 프로그램별 그리고 강사경력(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인 실정임. 프로그램·운영 강사료는 각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급되는 운영형태로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구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동별 자치센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강사별 등급산정 등을 통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보기 바람.	○ 7. 1현재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수는 73개이며, 유급 강사수는 57개임. 실제 동별 운영실태가 1주당 출강일수, 편성시간, 강사수준, 야간운영, 지역여건 등이 상이함. ○ 본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구에서 강제할 경우 주민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행정사무감사 후 1개강좌당 월20만원을 일괄 교부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요구		하고 수강료 수입을 고려하여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수당을 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으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 후 내년 초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추진중
		4. 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패용 문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직원명찰의 경우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집행부의 난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승인해 주었음.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을 패용하는 문제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증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 이를 달고 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찰패용을 하지 말고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할 것임.	○ 현행「공무원증규칙」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다수의 지자체에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찰을 패용하고 있음. ○ 명찰에 부서표기를 하여 민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우리구 행정서비스헌장 정비시 명찰패용을 명시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요구	**5. 목적에 맞는 지역리더 양성 교육 실시** 2008년도 상반기 리더쉽 함양 자치교육을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한 평생학습 관련 교육으로 대체하였음. 또한, 이 교육에는 통장들도 참여하여 통장회의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당초 지역리더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하반기에 실시하는 교육은 당초에 목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원 등 지역리더의 자질 함양을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지난 4월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한 교육(평생학습도사와 도시발전)을 상반기 교육으로 대체하였음. ○ 하반기(10월경)에는 짜임새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리더로서의 소양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6.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배부방법 개선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는 대부분 통장회의 시 통장을 통해 전 세대에 배부하게 되는데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기 바라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 세대별 배부보다는 아파트 각 통로에 게시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높을 것이므로 시행해 보기바람.	○ 매월 2회 실시하는 통장회의 시 홍보자료는 회의개최 후 아파트 게시판 및 자연마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음. ○ 반상회 홍보자료는 올해 처음 제작·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써 1월, 5월, 6월에 전 세대 배부하였음. ○ 반상회 홍보자료는 단순 홍보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요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으로써 가정에 두고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임. 향후, 아파트 및 자연마을 게시판 부착도 병행시행토록 하겠음. ※ 주요 제공 자료 - 08년 달라지는 제도, 여권 발급 개시 및 본인직접 신청, 야간민원실 운영(해당동, 운영요일 차이 등), 원산지 표시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등	
총무과 (효문동)		**7. 명촌문화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명촌문화센터의 경우 1층에 점자(진행) 블록이 없으며,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보는 창구가 너무 높아 민원업 무대 한쪽을 낮추었으면 함. 또한,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데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고 문 앞쪽에 경사도가 있어 자동문이 아니어서 열수 없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시정하기 바람	○ 시정요구 조치 통보 : 7. 28 (주민생활지원과 ⇒ 효문동) ○ 조치사항 (효문동) • 점자블럭 설치 : 완료 • 장애인경사로 설치공사 실시 - 공사계약 : 8.14, 착공 : 8.18 - 준공예정일 : 9. 1 - 사업비 : 3,760천원(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 • 화장실은 휠체어 회전 시 다소 불편하지만, 법정기준에 적합하므로 이용토록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효문동)			하고, 장애인 전용테이블 구입으로 장애인 이용 편의도모 • 자동문 설치 대신 정문에 호출 벨 설치로 직원의 안내를 받도록 조치	추진중
총무과	건의사항	**1.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형평성 제고** 올해 상반기 지급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서간, 개인간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직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공공부문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곤란하여 잘못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경쟁사회에 상급자에 대한 줄을 세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무국 주무과 위주가 아닌 부서별 편차를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하기 바람.	○ 200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수립 시 검토 • 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 근거하되, 직원들의 의견 수렴 후 계획 수립 • 단계별 추진시기 - 의견 수렴 : 2009. 3월 - 계획 수립 : 2009. 4월 - 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09. 4월 - 지급 시기 : 2009. 5월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건의사항	**2.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단기간 근무한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이동 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현재의 방침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6개월에서 2년이상인 자에 대하여 전보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동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별, 연령별, 능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람.	○ 전문성과 성실성, 현부서 근무 연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조치 • 경력, 전공 등 업무의 전문화와 개인별 특성, 역량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인력 배치 • 동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구수, 성별 대비, 연령별,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 ※ 신규 임용자는 본청에 배치, 동의 경우 유경험자 우선 배치	추진중
		3.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 올해부터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의무이수 시간을 통한 상시학습을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의 고유목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대학 참여, 제3대학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해 교육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원동원이라는 오해를	○ 전문성 배양 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의 유형별 교육인정시간 범위 준수 • 부서별 교육훈련 계획 시 내용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 선정 ※ 업무의 전문성 배양 또는 상시학습 목적이 희박한 교육의 경우에는 지양 및 대상자 범위 최소화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건의사항	살 소지가 다분하므로 가급적 지양하고, 실제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외국어・정보화분야 의무 이수제 도입 : 2009년부터, 년도별 확대	추진중
		4. 구청사 경비용역에 따른 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구청사 경비자에 대한 임금을 보면 우리구와 용역업체 사이에 계약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 실제 경비원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역업체와 경비원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구에서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최저임금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용역현황 • 용역명 : 북구청사 경비용역 • 수탁기관 :(주)대암환경개발 • 계약기간 :2008. 1. 1 ~ 12. 30 • 계약금액 : 33,221천원 ○ 임금지급 등 • 최저임금법 적용 명시 (계약서 제16조 6항) • 법률에서 정하는 보험가입 명시 ○ 구청은 최저임금과 업체이윤을 보장한 금액을 용역업체로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 업체로 하여금 근무자의 최저임금보장 및 후생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지도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회계정보과	시정요구	**1. 염포동 자치센터 점자블럭 설치** 염포동 자치센터의 경우 입구 경사가 30°정도로 급경사로 되어 있음. 현실적으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려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염포동에 공문통지【회계정보과 - 15370('08.7.16)】 ○ 장애우 점자블럭 설치완료(염포동) - 설치일 : '08. 7. 29 - 내 용 : 청사 내・외부 점자블럭 설치	완결
		2. 내실 있는 사이버외국어 교실 운영 사이버 외국어교실 수강현황 추세를 보면 현상유지나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당초 사이버외국어 교실을 시작할 때의 주민호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사이버외국어 교실 주민홍보 실시 • 일자 : 2008. 7. 18 • 대상 : 관내아파트 72개소, 관내학교 33개소 • 내용 : 안내문 배부 및 알림판에 게첨(수강내용 및 신청방법) ○ 사이버외국어 교실 수강신청 및 이벤트 안내문 배부 • 일자 : 2008. 7. 21 • 대상 : 다중집합장소 (민원실,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회 계 정보과			• 내용 : 수강내용・신청방법 및 이벤트 안내문 배부(480부) ○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배부 • 일자 : 2008. 7. 21 • 내용 : 주민만남의 날 회의시 홍보자료 배부(190부)	추진중
	시정요구	**3. 구청사 장애인화장실 개선** 구청사 전체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 점검 결과 4층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층은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음. 특히, 장애인 화장실 키가 맞지 않아 만일 장애인이 화장실 사용도중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밖에서 구호해 줄 키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 장애인 화장실 미작동 사유는 사용인의 사용방법 미숙으로 용무 후 화장실을 나올 때 화장실 내 닫힘 버튼을 사용하여 문을 닫아 미작동 한 경우로 현재는 정상작동중임. ○ 장애인 화장실 키의 수리 건은 담당부서인 건축주택과에 공문통지 【회계정보과-15574('08.7.17)】 - 8.25 ~ 26(2일간) 조치완료	완결
	건의사항	**1. 노동자를 위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권장** 울산시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공사대금지급예고제, 각종 대금지급통보제를 시행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매우 좋은 시책이라 판단됨. 이와 함께 건설노동자, 덤프트럭 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홈페이지 홍보과 함께 각종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 체결하고 있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회 계 정보과	건의 사항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주기 바람.		추진중
		2. 계약심사제 탄력적 운영 현재 계약심사제를 운영함에 있어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양정동 주민센터 건립 후 동장 포괄사업비로 동사무소 정비에 사용할 정도로 비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계약심사사례집 발간책자를 보면 상호가 표시되지 않아 정보를 획득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으므로 추후 발간시 상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사업별 특성과 현장 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가계산 및 설계의 타당성, 공종별 단위 물량 반영시 적정성, 경쟁입찰시 낙찰 하한율 등을 고려하고 심사기법의 노하우 축적을 위한 원가계산을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 이수 등으로 심사 전문성을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심사하겠음 ○ 추후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시 상호(명칭)사용 표기토록 하겠음	추진중
		3. 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실시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보면 너무 복잡하여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각 과별 홈페이지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 부실하고, 각 동의 홈페이지의 경우 내용도 부실하고 글을 올리는 기능밖에 할 수 없으므로 쌍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이 요구됨.	○ 홈페이지 개편 계획 • 기간 : '08. 8. 4 ~ 12. 1(120일간) • 대상 : 대표・동별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청장・부서별・어린이 홈페이지 디자인변경 • 내용 - 간결하고 세련된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 유사한 메뉴를 찾기 쉽도록 그룹화 - 동・부서별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보강 등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지방세과	시정요구	**1. 과오납 최소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과오납 최소화의 경우 금년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신선한 납세제도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 과오납 최소화 추진계획 수립 • 과오납 현황 : 1,295건, 3,347백만원 • 추진사항 - 고지서 이중납부금지 안내문 표기 - 비과세・감면 과오납은 관련부서에 협조공문 발송 -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도입	추진중
		2.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고액체납자가 전년도에 비하여 조금 늘었음. 현재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370명 정도로 그 건수 18,000건으로 부동산, 예금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 수시로 조회하여 압류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압류하는 등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임.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재산조회, 예금조회 등을 통하여 재산이 있을 시 신속한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소지를 방문하여 체납자 거주지 탐문조사, 재산상태 파악 등 체납세 징수독려를 하고 있음. ○ 고액체납자 재산압류('08.7.31 현재) • 부동산압류 : 107건 1,549백만원 • 자동차압류 : 164건 498백만원 • 예금압류 등 : 48건 3,059백만원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지방세과	시정요구	**3. 북구사랑카드 관련** 2001년도에 구에서 울산북구 사랑카드를 보급하여 그 포인트로 세외수입을 늘리려 하였으나 현재 그 시책은 담당부서도 그러한 시책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유야무야 된 상태임. 이 시책에 대하여 활성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람.	○ 현황 • 타 구・군에 비해 회원가입수가 적고, 타카드의 보급 등으로 적립기금이 적음 ※ 구・군별 적립기금(2007) - 북구 : 2,722천원, - 중구 : 4,007천원 - 동구 : 3,313천원, - 남구 : 46,904천원 - 울주군 : 4,203천원 ○ 향후 추진방향 • 2006년 6월 적립기금율이 높은(0.5%) 보조금 지원업소의 보조금 전용카드사용,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용 등으로 북구사랑카드의 확대보급 어려움 ※ 북구사랑카드 적립금 : 0.1 ~ 0.2% • 향후 설립될 장학재단으로 이관하여 적립기금을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민 원 지적과	시정 요구	1. 직원 친절도 향상 구청내 가장 친절해야 할 부서가 민원지적과임에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에서 하위권인 것이 문제임.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발되지않도록 조치,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인들에 대한 언어문제를 이주노동자센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 민원응대 친절교육 실시 • 교육일시 : '08. 8. 4 18:00 ~ 18:30 • 장 소 : 민원지적과(민원실) • 교육내용 : 민원 및 전화응대 요령 ○ 외국인민원 통역네트워크 재정비 • 추진계획수립 : '08. 8. 1(금) • 통역서비스 지원자 모집 : 8.8까지 • 통역서비스 지원자 지정 : 총8명 • 서비스 개시일 : '08. 8. 11	추진중
	건의 사항	1.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 이화농협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건물문제로 24시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발급실적 저조한 실정임. 또한 2001년도 9월 구입한 것으로 교체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장소에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 해보기 바람. 모조지문을 이용한 불법 발급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 보기 바람	○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예산확보 후 교체시 이전 검토 예정 • 향후 추진 계획 - 2009년도 당초예산 확보예정 - 소요예산 : 21,000천원정도 ○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 점검 • 점검일시 : 주1회(매주 목요일) • 점검대수 : 6대 • 점검결과 : 이상없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1. 간이상도 시상수도 인입을 위한 방안 강구** 마을 간이상수도 총 44개소 중 16개소가 시 상수도가 설치되었음에도 인입하지 않아 간이상수도 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간이상수도 수질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시 상수도가 인입 지역은 주민에 대한 집중홍보 후 지원을 중단하여 안전한 시 상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토록 지도 시 상수도 5개소 추가인입 지역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방상수도가 인입된 지역에 대해지방상수도 인입 홍보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발송(2007년 2회)하는 등 지속으로 홍보하고 있음 ○ 간이상수도는 자연부락에서 대대로 이용하여 왔고 급수공사비 부담 등으로 급수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지방상수도 급수신청률이 90% 이상인 지역도 주민들이 마을상수도 존치를 희망하고 있어 100% 지방상수도 전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함 ○ 지방상수도 인입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설득, 홍보 등으로 상수도를 인입토록 하고 08년 신규 인입지역에 대해서도 급수신청 독려 등 적극 홍보 및 추진 (신전, 주렴, 성혜, 바깥시례의 경우 95%이상 지방상수도 급수신청 완료)	추진중
		2.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 모범음식점 6개 업소에 대하여 취소하고 2개소에 모범	○ 2008년도 모범음식점 재지정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음식점 표지판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전 회수하는 일이 있었음. 또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시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지정하여 “주의”를 받았음.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는 공신력의 문제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광고부서와 협의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대하여는 신규지정 규정에 맞추어 재 지정(2008.7월/93개소⇒118개소)하였으며,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전원 회수조치(6개소) 하였음.(2008.7월)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신규업소 신고 처리 시 불법광고물 검토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음.	완결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3.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추진방법 개선**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실적을 보면 2007년 약2.4t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음. 음식물 싸주기 봉투 배부시에 면적 및 테이블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부하지 말고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배부하도록 하고, 홍보스티커의 경우 대부분 프런트에 설치되어 있어 손님들의 눈에 잘 뛰지 않으므로 업소안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되도록 하고 메뉴판에도 붙일 수 있도록	○ 향후 남은 음식물 싸주기 종이봉투 배부시 소요량 등을 조사하여 실시하겠음 ○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시 “남은 음식물 싸드립니다.” 라는 홍보물(스티커)을 손님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메인홀, 메뉴판 등)에 부착 하였고 ○ 또한 영업주가 먼저 손님에게 “남은 음식을 싸드릴까요“ 라고 이야기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음(2008. 7~8월 원산지 지도단속시 병행)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해야 할 것임. 손님이 스스로 싸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업주도 음식물을 싸주는 것이 유리하므로 “싸드릴까요?”라고 한마디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음식점 업주 교육시 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향후 위생교육 시 상기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완결
		4. 환경백일장 개최방법 재검토 올해 4월 27일 쇠부리축제 기간 중 구청에서 환경백일장을 개최하였음. 쇠부리축제 기간에 백일장을 개최한 것은 학생들을 쇠부리축제에 동원한 듯한 느낌이 있고, 축제로 인한 각종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서 백일장을 한 것은 맞지 않음.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되어 선거법에 상장 외 다른 부상품 등을 줄 수 없으므로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이 주도하여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추후에는 이 행사가 본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 환경백일장을 쇠부리축제 기간중 개최 한 것은 학생들의 행사참여 및 행사홍보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으나, ○ 당초 취지와 달리 축제 기간 중 환경백일장행사를 개최한 결과 축제기간 중 각종 소음 발생으로 환경백일장행사개최가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009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백일장의 개최여부 등을 포함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계획임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5.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전면 재검토**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이 회사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행사시에만 반짝 인원동원을 하고 있고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1단체 1하천, 1학교 1하천, 1아파트 1하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아파트의 경우 참여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요구되며,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1사1하천 살리기운동이란 민간단체・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으로 시비보조사업임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5. 19일 29개 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 2008년 하반기 중 간담회를 1회 더 개최할 계획임 ○ 당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집게, 장갑 등 을 제공하고 있으며 ○ 향후 우수 참여단체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과 지정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추진중
		6. 실질적인 숙박업소 점검 현재의 숙박업소 위생점검 방법은 육안검사로 점검이 효과적이지 못함. 시트, 베게커버, 이불의 경우 매일 교체해야 하는데 얼마전 TV에서 매일 교체하지 않고 대충 먼지만 제거하고 펴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공중위생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에 의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하겠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우리관내 숙박업소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안검사 외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점검하기 바람.		완결
		7. 오존관련 대기환경 오염원 최소화 농소1동과 효문배수장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3번 오존주의보가 발령 되었음. 이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배출가스 단속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임.	○ '08년 상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 단속결과 점검대수 294대, 무료점검 45대 실시하여 배출가스 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2건 및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꾸준히 배출가스 단속(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인원의 부족으로 어려움. ○ 하반기에는 배출가스 수시단속 실시횟수 증가(분기 2회 이상) 및 연간점검목표대수를 전년대비 50%증가한 1,000대를 목표로 하여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 2007년도 점검대수 680대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위생과	건의사항	**1. 학교 앞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지속 실시** 학교 앞에 위치한 문구점 등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24개 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직접 수거검사가 지도점검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학교 앞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청구제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2. 원산지 표시관련 단속 및 홍보 강화 올해 6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음. 100㎡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충분한 홍보와 계도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원산지 표시 관련, 주민 불이익 최소화를 위하여 2008. 6. 22일 부터 적용되는 484개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 계몽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2008. 7. 15.이부터 적용 되는 100㎡미만 업소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표시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완결
		3.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오염도 조사 2008년 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오염조사 업무	○ 하반기에 다중이용시설공기질 오염도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 경 위생과	건의 사항	가 우리구로 이관 되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현재 대상은 22개소로 되어 있으나, 여건만 된다면 도서관, 병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준수여부 확인 •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실시 ○ 현재 북구 관내 일정규모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중 의료기관 5개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관(연면적3,000㎡이상만 해당)은 규모미만으로 대상시설이 아니나 하반기 보건환경연구원과 공기질오염도 측정 시 도서관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음	추진중
주 민 생 활 지원과	시정 요구	1. 동 상담실 운영 철저 저소득층 민원상담을 위한 상담실운영실태에 대해 민원모니터 3명을 활용하여 점검해 본 결과 대부분의 동에서 상담실 안이 아닌 담당직원의 옆자리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동 사회복지담당자의 경우 복지업무만을 전담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상담실내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상담실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가급적 사회복지 업무외 타 업무를 배제해 할 것이며,상담실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동 상담실 운영철저 공문 시달(2008. 8.27자) • 상담실내 쾌적한 환경조성(불필한 물건등이 적재되지 않도록 조치) • 제증명발급 등 간단한 민원이 아닌 경우 민원상담자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상담실 이용 조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 업무외 타 업무가 분장되지 않도록 업무분장 조정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 민 생 활 지원과	시정 요구	**2. 집행한 예비비 환수 철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주거비 소요액을 판단함에 있어 담당부서의 부주의, 업무 미숙 등으로 2007년도 제2회와 제3회 추경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담당자 착오가 중간 결재라인에서 점검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었음.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담당자들은 본인이 최종 결재자란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시,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2272(2008.7.25)호에 의거 • 2007년도 광역시 국고보조금 정산 집행잔액으로 초과지출된 금액을 정산하고, • 부족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충당 후 국고보조금 정산시 집행액에 반영토록 통보됨. ○ 광역시 추경확보 후 교부시 우리 구 국·시비 예산 편성 계획임 ○ 재발방지를 위해 • 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과 수기로 작성하는 추산부를 이중으로 관리하여 수시로 확인대조하고, • 월 1회 부서 직원회의시 예산 관련 교육실시를 하겠음.	추진중
		3.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 강화 국·시비 사업인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모집이 원활하지 못하고 2007년도의 경우 총 6명이 이수를 하였으나 취업과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은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 훈련수료생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대상'작성관리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민생활자원과	시정요구	1명도 없었음. 이는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 1명이라도 취업을 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람.	• 훈련수료 전 설문조사 실시 및 구직등록 •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취업 알선 • 취업 희망자 훈련과정 관련 관내 기업체 구직활동 지원 및 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추진중
		4.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 활성화 북구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의 경우 이용가능자 대비 참여자 인원이 적음. 교통문제, 위장결혼문제, 자녀보육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지관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 사업에 출산도우미 사업이 꼭 필요한데 법적 검토를 해 주기 바람.	○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 참여자에 대해 2007. 9월부터 2대의 차량(25인승/지입차량, 12인승/복지관차량)을 지원 운행하고 있음. ○ 사회통합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장보기, 병원이용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자녀보호를 위해 보육과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북구보건소에서 추진 중에 있음 ○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정방문,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	추진중
		5.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선 자원봉사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하여 인터넷 활용률이 극	○ 자원봉사센터 시정조치 공문 시달 : 2008. 7. 17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 민 생 활 지원과	시정 요구	히 저조한 실정임. 1365로 연결을 하면 북구자원봉사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시로 연결되므로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운영방법 개선 • 전담직원 지정 : D/B코디 • 자료관리 : 매월1회 정기적 자원봉사자료 업데이트, 자원봉사신청 및 연계업무 인터넷 신청가능 조치 ○ "1365"전화 한국통신 가입신청 • 가입신청 : 2008. 8. 6(수) • 개 통 : 8월말	완료
		6. 자원봉사센터와 공부방운영 업무 분장 자원봉사센터 주민생활지원과, 공부방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여 시행하기 바람.	○ 호계, 양정공부방은 자원봉사센터 부속시설로 시설장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나 공부방 운영지원, 정산, 교사채용, 지도감독 및 사무분장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임 ○ 사업주관부서는 업무의 성격과 예산편성권, 인·허가권, 지도·감독권을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복지서비스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함. ○ 2009년 자원봉사센터 위탁시 공부방의 효율적인 관리방법 모색토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민생활지원과	시정요구	**7.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푸드뱅크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음. 최근 유가급등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기탁처 발굴과 수혜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기부식품 배부 축소대상은 재가노인무료 급식소, 정부 및 자치단체 보조 사회복지 생활시설로 추후에는 실제 어려운 재가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빵은 가정으로 빵이외의식재료, 음료수, 양념류, 기타 간식류는 시설로 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 자원봉사센터 시정조치 공문 시달 : 2008. 7. 17 • "2008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련 업무지침"을 준수하고 • 기부식품 이용자 식품제공 우선배분 대상인 긴급구호대상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직면 결식위기가정 및 차상위 가정, 기타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우선배분토록 하겠음. • 재가노인 무료급식소, 정부 및 자치단체보조 사회복지생활 시설 등은 배분 축소, 그러나 유통기한 마감 등의 사유 시는 물품 수량 등을 감안하여 시설에도 배분하겠음. • 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 시 푸드뱅크 공정배분 사항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 민 생 활 지원과	건의 사항	**1. 의료급여관리사 장기고용 검토** 국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성과를 보면 수급자의 의약품 중복, 오·남용, 진료기관을 전전하는 행위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10억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음. 본 사업의 경우 의료급여대상자들과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므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장기적 계약이나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 2008. 1.10,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 책정 요청 • 정수관리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상근인력 관리부서인 총무과에 “의료급여관리직 신설 협조” 공문발송	추진중
		2. 실현가능성 있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야 하므로 부서별 계획을 받을 때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독려 또는 교육하고, 그 계획이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계획 수립시 담당부서별 실현가능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충분한 내부검토 후 제출토록 하고, ○ 담당사업별 세부계획 작성 후 주민생활지원국장 주재하에 해당 실과장 배석하여 자체검토를 실시하겠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 타당성 논의, 공고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의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부사업 내용 및 예산수반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심의 확정 후 시행계획 추진하겠음.	추진중
복지서비스과	시정요구	**① 공립 농소어린이집 위탁관련** • 농소어린이집 위탁업무 추진시 원칙이 불분명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 학부모들이 사전에 시설장이 교체될 수 있음을 알고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업무메뉴얼을 작성 후임자가 올바른 처리과정을 거쳐 위탁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으며(7/25 완료) • 이후 위탁업무 추진시 6개월 이전에 위탁계획을 해당시설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완결
		②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주간 행사 개최 • 여성주간(7/1~7/7)내에 행사를 개최하기 바라며, • 현재보다 더 많은 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정책위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행사시기는 사업지침상 6/20 ~ 7/20까지 개최할 수 있고 비슷한 행사가 市와 각 區郡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여성주간에만 개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 2009년 여성주간행사 개최시 사전검토를 통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사업추진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복지서비스과	시정요구	**③ 내실 있는 어린이집 점검** • 점검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시설에 대하여 재발방지토록 조치	• 지도・점검결과를 매 반기별 전산화하여 자료의 공정성을 기하고, • 지적되는 건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 함.	완결
		④ 알차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형식적이고 진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 2008년 하반기에는 당초계획과 같이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	추진중
	건의사항	**① 시간연장보육시설 점검 강화** ▪ 실제 어린이가 출석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하고 ▪ 어린이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먹거리 유통기한 준수 등에 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하여 향후 분기 1회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보육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화홍보과	시정요구	**1. 박상진의사 생가관리 철저**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과 관련하여 시에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우리구로 복원사업을 이관함에 따라 사업이 이월되어 생가 복원외 다른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였다고는 하지만 생가주변 보안등 설치문제, 주차장 확보 등 많은 예산이 남았음에도 추진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움. 시와 협의하여 우물 반대편 연못터 복원, 주차장 확보, 보안등 설치에 대해 협의하여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주차장 설치 및 진입로 확보는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송정역사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보안등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음. ○ 연못터(연당지) 복원은 2차 복 원실시설계시 문화재위원의 검토결과 연못 설치는 수질오염 우려로 복원사업에서 배제된 사항임	추진중
		2. 문화재 관리 철저 작년에도 지적한 문화재 관리 문제가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화재 간판, 주변 청소, 풀베기 작업 등 전반적인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문화재 안내판 점검 실시 - 점검일시 : '08.7.9~711(3일간) - 점검대상 : 문화재 15개소 - 점검결과 • 안내판 문안 탈색, 탈자 : 7개 • 도로표지판 등 훼손 : 4개 ○ 신규 안내판 설치 : 3개소 - 2009년도 당초예산 확보하여 설치 ※ 시비보조사업 당초예산 신청 : 8. 1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화홍보과	시정요구		○ 문화재 환경정비 실시 - 훼손 안내판 정비 : 8.31일한 완료 - 상반기 문화재 주변 풀베기, 청소 등 환경정비 실시 : 08. 6. 24 ~ 8. 22 - 하반기 환경정비 : 10월중 실시	추진중
		3. 상안어린이 공원내 풋살구장 운영 관련 상안어린이공원내 풋살구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료 300만원을 받고 운영권을 넘겨 주었음. 이렇게 할 경우 사용료를 생체에서 부과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기 바라며, 구장사용 신청에 있어 일괄 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구청 별관 2층)에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어 어린이들은 거의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며, 사용료도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비싼 편임. 신청 장소를 농소3동 동사무소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기 바라며, 추후에 풋살구장의 그물망을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풋살구장 사용료 징수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위탁관리)의 규정에 의해 사무의 전부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였음으로 동 조례 제8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징수가 가능함 ○ 풋살구장 사용 및 관리 • 어린이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신청없이 무료 개방 조치(8. 1이후) • 연 2회 정도 그물망 등 시설물을 점검 수리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완료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홍보과	시 정 요 구	**4. 청소년 축제 재위탁 금지** 청소년축제의 행사를 보면 예산액의 80%정도가 이벤트 회사로 들어갔음. 행사를 주관한 청소년협의회에서 행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에서 주도한 것은 문제가 매우 큼. 당초 본 행사의 경우 구에서 직접하기로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음. 향후에는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주던지 재위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2008년 북구 청소년축제에서는 예산액(15,000천원) 중 일부만 위탁을 줄 계획이고, 이벤트사와는 구에서 직접계약 (무대설치관련)을 맺어 재위탁을 방지하고, 계획수립, 홍보, 프로그램 선정, 공연진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위탁단체와 협의 하에 행사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1. 운동장 사용방법 및 사용단체 선정방법 전면 재검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개이상 경쟁하여 심의한 운동장 사용단체를 살펴보면 5번사용 2개 단체, 4번사용 2개 단체, 3번사용 14개 단체, 2번사용 39개 단체, 1번 사용 217개 단체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현재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용단체 선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신청하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사용료 감면제도 시행 이후 운동장 신청인(대표자)의 단체(회원명부)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운동장별 신청회수를 1회로 제한하여 접수받고 있으나(※구장별월평균 150~250건) ○ 전산추첨 방식 도입 시 신청인의 단체 등록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신청인 명의를 달리한 각 단체의 중복신청 등으로 경쟁률은 오히려 더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홍보과	건의 사항		○ 또한, 콘도처럼 1일 사용권은 가능하지만, 운동장은 단체별 사용신청 시간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산으로 경합팀을 선별하여 추첨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음	추진중
		2. 강동 관광상징물 설치 관련 강동 관광상징물 학술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의원들과도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진행해 주었으면 함.	○ 강동 관광상징물 설치 관련 용역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나 의회 회기중으로 의원 참여가 여의치 못했음. ○ 향후 구정 관련 주요 업무추진시 의회일정을 반영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환 경 미화과	시정 요구	**1. 거주 외국인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교육실시** 효문지역 공단에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이들을 한데 모아 교육하기에는 외국인들의 정서상 맞지 않으므로 직접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교육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외국인 고용 기업체 95개 - 9명이하 기업체 배출방법 안내 홍보물 발송 및 자체교육 실시 협조 공문 발송 : 9월중 - 10이상 고용 기업체 방문교육 : 추진계획 수립 시행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2.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철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음. 당초감시카메라 도입 목적이 사전 예방적 측면과 단속목적 2가지가 있었는데 사전 예방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처음에는 카메라 설치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불법투기자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단속카메라가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현재 운영중인 단속카메라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극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카메라 설치지역이 설치전에 비해 점진적으로 불법투기가 줄어들고 있어 예방적 운영의 효과가 있음. ○ 야간 및 휴일 취약시간대 단속카메라 모니터는 시스템관리 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감시하고 있으며 해상도가 낮아 행위자 적발에는 어려움이 있음	추진중
	건의사항	**1.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식당 운영**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주민 1인당 10~15% 정도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어 있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 운동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에 있지만 일반음식점의 음식문화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어느 한 식당을 지정하고 구에서 지원하여 시범식당으로 운영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무 T/F팀의 검토를 통하여 일반음식점 관련 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시범식당운영 방안을 모색 ○ 이윤을 우선인 일반음식점의 생리 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적용하는 시범업소를 구하기 어려움이 있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 경 미화과	건의 사항	**2. 음식물 감량기기 도입문제 신중 검토** 원칙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지만 처리비용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남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감량기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상위법 저촉문제를 검토하여 도입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므로 검토해 보기 바람.	○ 실무 T/F팀 안건으로 검토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으며 • 주민에게 주민의 부담을 주는 행위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음 • 음식물처리비용 절감으로 구재정 에 도움이 됨. ⇒ 허가시 감량기기 설치 권고를 통 한 설치 유도	완결
		3.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관련 음식물쓰레기 수・운반 대행료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함에 있어 춘산환경의 경우 차량이 3대에서 2대로, 청소인원도 2명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용역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실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유가상승, 도시팽창에 따른 인구유입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업체에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하	○ 유가상승 및 도시팽창 등 주위 여건변화로 인한 원가상승분에 대하여 2009년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취업각서 작성 위탁업체(대화산업, 현대개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시정조치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미화과	건의사항	여 주기 바라며, 일부업체의 경우 취업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무관리사를 활용하여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완결
		4.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 쓰레기봉투를 활용한 상업광고는 기업들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해 성사되지 않았으나 공익광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해 보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앞면의 표시방법을 명칭과 용량을 나타내는 부분의 글씨크기는 줄이고 배출시간과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조정하기 바람.	○ 공익광고 및 종량제봉투 앞면 표시방법을 변경할 경우 동판을 신규로 제작하여야 함. ○ 종량제봉투 단일화에 따른 동판을 교체할 경우 표시방법은 변경가능하나, 공익광고 게재시 봉투제작비(양면인쇄)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불가하며 ○ 2009년 새로운 봉투제작시 검토	완결
		5. 청룡암 입구 무단방치 쓰레기 관리 철저 매곡산업단지 입구(청룡암 입구)에 수년째 재활용품이라 하기에는 가치가 없는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음. 강제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면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	○ 재활용품 소유자(매일상사:장석태)와 대면결과 상품(재산)임을 강력주장, 보상 없이는 처리불가 의사표시로 자진처리 등 협의불가 상태임, ○ 시유지 대부계약 완료에 따른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미화과	건의사항	또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기 바람.	변상금 부과조치 및 대집행 계획중이므로 회계정보과와 협의조치 ○ 연내 미해결시 덮개 등을 씌워 도시미관 훼손 방지	추진중
		6.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련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 가동 잠정중단 외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나 주위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 상태임. 유지관리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며, 주민지원기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기 바람	○ 새로운 부지물색으로 민간투자사업(BTL, BTO) 추진 ○ 향후 설치될 하수종말처리장내 병합시설 설치 검토 ○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주민이 선정한 중산동 지역의 복지증진 사업에 주민지원기금 사용 조치	완결
		7. 고정용 재활용 수집용기 철거 재활용 수거를 위해 기존에 설치한 고정용 재활용수집용기는 주위청결 및 관리문제가 있으므로 철거하고 수거당일 설치 후 철거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환경저해 장소의 용기 우선 철거 - 철거실적 ('07년 4개소, '08년 : 3개소) ○ 나머지 7개소 재활용 수집용기 - 점차적 철거 ○ 이동식용기 보급 - 동별 재활용 배출장소 관리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품 배출일에 설치하는 이동식 용기 점차적 설치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평생교육과	시정요구	1.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 북스타트운동, 독서의 달 행사, 독서주간행사를 맡아 온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활동이 당초 기적의 도서관에서 출발할 때와 비교하여 그 활동이 저조한 실정임.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편중되지 않게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며,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활성화를 위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고민하기 바람.	○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2008. 8. 8.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 구성될 위원회의 위원들은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교육계, 예술계, 문화계 등 지역별로 안배하여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도모할 계획임	추진중
		2. 중앙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중앙도서관의 경우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음. 열람실의 경우 화재시 비상탈출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피스로 고정해 놓은 상태로 항구적 조치가 요구되며,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철망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이동이 불편하며 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어 자동문으로 교체가 요구되며, 도서관 입구의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 이동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점자블럭도 설치 되어 있지 않음.	○ 주차장 입구 철망(스틸그리팅)은 매직그레이팅으로 교체하여 휠체어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자동문 교체・높은 경사도・점자블럭 설치 문제와 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는 통과유효폭 0.8미터이상, 전면유효거리 1.2미터로 규정을 지키고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평 생 교육과	시정 요구	어린이실의 경우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아 의자를 두어 휠체어가 못들어 갈 정도임. 장애인 화장실 내 청소도구가 방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트의 경우 좁아 휠체어를 돌릴 수 없으므로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설치 등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있으며, 자동문설치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 주출입구 경사도 맞추기 곤란할 시 부출입구 경사도 맞출 수 있는바 부출입구의 경사도 1/12로 시공할 계획이며, - 유도 점자블럭은 법적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나 향후 검토할 계획임 ○ 어린이자료실 휠체어의 진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상시 근무 중이므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주민이 올 경우 직원이 직접 안내하여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청소도구함을 설치하여 장애인화장실 내 청소도구를 이전(완료) ○ 승강기 휠체어 180도 회전 및 거울설치 - 중앙도서관의 누드 엘리베이트는 외부전경과 전망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휠체어 회전이 가능하고, 장애인과 함께 동승할 시 장애인 우선이라는 계도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평생교육과	시정요구		를 통하여 경로사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최선을 다하여 운영토록 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1.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올해 9월 신청공고가 나고 11~12월에 지정 결정이 나는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우리구에서 의욕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의회와의 공유도 필요함.	○ 우리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강점은 기반조성단계부터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임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사업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추진체제를 정비하고, 비전 및 전략을 재설정하였으며, 평생교육관련 주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향후, 의회와의 공유가 학습도시 지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므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공요하도록 할 계획임 ○ 현재까지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시녹지과	시정요구	ㅇ **공원관리 철저** 북구 관내 공원관리 실태를 파악해 본결과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음.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비슷한 시설에서 안정감(높낮이)의 차이가 많았으므로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안정감 있게 기초부분을 수정하든지 모래를 넣어 높이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며, 인조잔디가 구석 구석 파인 곳이 많고 철거한 쓰레기통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는가 하면 수도고장, 파손된 벤치 방치, 화장실 시설물파손, 유리파손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보수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1단체 1공원, 1아파트 1공원관리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요망됨.	ㅇ 어린이놀이시설, 인조잔디, 노후된 시설물 등은 도시공원 보수공사시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상의 문제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ㅇ 공원관리를 위한 1단체 1공원, 1아파트 1공원 관리 등 지속적인 공원관리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중
		ㅇ **공원내 수목관리 및 지주목 제거 철저** 관내 공원을 돌아보면 베어져 나간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음. 이렇게 베어져 나간 나무들 대부분은 전지작업등이 제대로	ㅇ 태풍대비 수목전정작업을 발주중에 있으며, 공원 및 녹지의 수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8월중에 시행할 계획임.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시녹지과	시정요구	이루어지지 않아 태풍 등 바람에 넘어져 베어낸 것이며, 비탈에 심어진 나무의 경우 지주목을 대어 뿌리가 완전히 내린 후 제거해야하는데 비탈의 나무들 대부분은 지주목이 없는 상태임. 나무를 지속적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심어놓은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함. 또한 구국도 31호선변의가로수의 경우 나무가 뿌리를 완전히 내린 후 지주목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때에 제거하지 않아 철사가 나무를 파고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조속히 철거되도록 하기 바람.	○ 구국도 31호선변 가로수는 '08. 7. 30 ~ 8. 4까지 지주목 제거 및 수목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가로수 및 공원 및 녹지의 수목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 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 하자보수 추계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는 2007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2월 준공을 하였는데 추기공사가 아니라 동계공사가 되고 말았음. 겨울에 터파기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야기하여 봉 110개 중 상당수가 흔들리고 있고 봉을 심은 위치도 반	○ 등산로 정비사업은 하자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하자발생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 하자보수 처리 공문을 발생하였고, 시공업체로부터 빠른 시일내 하자보수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시정 요구	대로 되어 있어 부실공사의 전형이 되었으나 준공 처리한 것은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하기 바람.		추진중
		ㅇ **양정경로당 뒤편 재선충 방제목 제거** 양정경로당 뒤편 등산로변에 재선충 제거목이 3~4군데 방치되어 있어 여름철 우수기 하천을 막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조치 요망.	ㅇ 현장확인하여 남아 있는 훈증무더기를 '08. 7. 18일 산림병해충 감시원을 활용하여 파쇄기로 파쇄처리 완료함.	완 결
	건의 사항	ㅇ **무룡산 정상부 정리** 무룡산 정상에는 쓰지 않는 노후건물, 철조망, 전기선, 통신선, 군사벙크 등이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한국통신과 군부태에 협주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ㅇ 사용하지 않는 통신선에 대해서는 산림감시원을 활용 하여 제거 하였으며, 철조망 및 군사벙크 등에 대해서는 한국통신과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ㅇ **무룡산 개발 관련** 무룡산 개발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체계적으로 개발하였으면 함. 무룡산 헬기장 옆에 설치한 전망데크의 경우 높이가 낮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안전벽을	ㅇ 전망데크를 위치가 낮은 곳에 설치한 이유는 헬기장에 헬기 이착륙을 용이하게 하고 데크의 높이를 높일 경우 안전성의 문제 및 예산문제를 고려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건의 사항	올라가 관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후 추가 작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기본계획 수립이후 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하여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는 곳에 설치한 것임. 향후 무룡산 개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후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 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경 제 교통과	시정 요구	**1. 밤샘주차 단속방법 개선** 현재 밤샘주차단속 현황을 보면 1년에 1~2차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차고지가 대부분 울주군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계도방법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화물차주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적극적인 지도와 계도가 필요함.	○ 화물차 밤샘주차단속은 자정부터 04시까지 차고지외에 불법주차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 분기별 단속계획수립으로 계도 1~2회 후 단속1회 정도로 단속요구민원지역 및 초등학교주변, 주택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계획 추진하겠음	추진중
		2. 매곡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보완 매곡산업단지 공영주차장 확인결과 주차장은 141면으로 잘 만들어 졌어나 너무 삭막한 실정이므로 나무식재 등 녹화작업이 요구됨. 산업단지 쪽으로 넝쿨식재도 고려해 보기 바라며, 집수정 위치가 너무 위쪽에 위치해 있고 주차장 입구 우측 끝이 비어 있어 파고라나 주차1면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기 바람.	○ 시 관련부서(교통정책과)의 협조하에 '08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정비계획 수립으로 추진하겠음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소요예산 : 10,000천원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 제 교통과	시정 요구	**3.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철저** 예년의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올해 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천곡초등학교)가 있음. 설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완료 전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져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0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정비공사의 경우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6회)및 이해관계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으며, ○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추진 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음	추진중
		4. 명예통역관제도 운영 철저 글로벌 명예통역관 신청인원이 저조하였으나 현재 7명이 신청하여 다행임. 그러나 거주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베트남어 통역관은 구하지 못한 것은 문제이므로 거주외국인 중 베트남어 통역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베트남어 명예통역관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추천을 통하여 2명 확보(추천약속) ○ '08.08월말 위촉 활용계획임	추진중
	건의 사항	**1. 신중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당초 우리의회에서는 장춘시 녹원구, 상해시 남회구와의 교류추진 당시 중국의 투자유치와 우리구의 청소년, 문화교류 등 추진목적이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였음. 서로의 이해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 장춘시 녹원구 및 상해시 남회구와의 국제교류는 다소 서둘렀다는 점을 인정함. ○ 독일 뤼셀스하임시와의 국제교류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접근할 것이며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 제 교통과	건의 사항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또한 독일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실용적으로 난 수출전진기지가 있는 아팝카시와 교류를 적극 추진해 보거나 미국과 같은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큰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임.	○ 상호 우호교류를 위하여 현재 실무적인 절차 및 교류내용을 협의 중에 있음 ○ 양도시가 상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우호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2. 상습 주정차지역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우리구의 상습 주정차 구역이 20개소 정도가 있음.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데이타가 전혀 없으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데이터화 하여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며, 연암복개천 표지판이 낮아 야간에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조치하기 바람.	○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별도 자료관리가 불가하므로 ○ 상습주정차 발생지역중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별도의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겠음 ○ 연암복개천 표지판은 즉시 조치함	추진중
		3. 호계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호계공설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7월말 설계를 완료하고 8월초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 상인들 일부는 영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시설현대화사업은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영업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요구	1. 오리사냥 ~ 달천중학교간 통학로 정비 달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가 비만오면 침수되어 통행에 불편	○ '08년 제2회 추경에 사업비 27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 사업비 확보 후 공사추진토록 하겠음	추진중
		2. 자전거 도로 인근 잡풀제거 자전거도로변 잡초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행중 사고는 차로 분류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	○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풀배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작업할 계획임 ○ 동원인력 : 수로원5명, 공공근로4명	추진중
		3. 자전거 겸용도로 재질에 대한 검토 및 정비 철저 산업로 자전거 겸용도로 상태가 불량하여 보수가 요구되며, 겸용도로의 경우 향후 재질을 신중히 검토	○ 향후 자전거 도로개설시 다양한 자재를 비교 검토하여 미관이 좋고, 내구성이 좋은 자재를 선정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으며 ○ 산업로변 자전거 겸용도로의 불량한 노면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여 보수토록 하겠음	추진중
		4. 홈에버~신상안교 자전거 도로 구간 재시공 포장면이 곳곳에 솟아올라 있고 설계상 70㎜로 포장하도록 되어	○ 파손된 자전거 도로는 '08. 7. 18 보수완료 하였고	완 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요구	있으나 실제 얇게 포장되어 있음. 공사감독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코어를 5군데 채취한 결과 두께가 7cm 이상이었음 ○ 향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후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완 결
		5. 천곡본동 도로개설에 따른 전주 이설 인도부분이 매우 좁은데 인도 중앙에 전봇대가 자리하고 있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 방안 강구	○ '07. 8. 3 한전 동울산지점 방문, '07. 8. 7 전주이설 공문 발송, '08. 7. 7 현장에서 담당자 면담 ○ 협의결과 최소 이설기간인 2년 경과후 이설가능하다는 입장으로 ○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6.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호계주공 ~ 대하그린아파트 뒷도로(우수로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 도로 침수) - 신상안교 하부도로 반파 - 매곡산업단지내 다리명 변경 - 종합복지회관 납골묘 철거 - 천곡보, 제전보 보수 - 자전거전용도로 장미아치관리 철저	○ 호계주공 ~ 대하그린아파트 뒷 도로 • 호계주공 뒷도로는 긴급도로 복구비를 사용하여 공사 추진할 계획임 ○ 신상안교 하부도로 반파 • 우수기 이후 동천하천정비 공사시 보수작업 시행 예정 ○ 매곡산업단지내 다리명 변경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요구	- 농소3동(대동방면) 국도7호선 천곡사거리(우수관에 물 차있음)	• 교량명(방뫼교)은 동 주민센타의 요청에 의하여 명명된 사항으로 주민센타의 교량명 변경 요청시 검토할 계획임 ○ 종합복지회관 납골묘 철거 • 종합복지회관 납골묘는 '08. 7. 22 행정대집행 실시하였음 ○ 천곡보, 제전보 보수 • 동천 하천기본계획(재정비) 용역 결과('08.10월경)에 따라 사업 시행 예정 ○ 자전거전용도로 장미아치 관리 철저 • 장미가 왕성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농소3동(대동방면), 국도7호선 천곡사거리(우수관에 물이 차있음) • 현지점은 우수관이 없는 곳으로 통행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7. 매곡천, 신천천 정비 정화되지 않은 오수유입으로 악취가 심하고 쓰레기 방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치가 요구됨	○ 정화되지 않은 오수유입 차단 및 환경 정비 • 우수기 이후 매곡천 우수토실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오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요구		수유입을 저감시킬 계획임. • 장비임차를 통한 하상정비와 환경정화 활동을 동시에 시행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1.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정비 볼라드는 미관상 좋지 않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자인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비해 나가기 바람	○ 볼라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표준 규격품이 제정되어 ○ 앞으로 설치되는 볼라드는 표준규격품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는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음	완 결
		2.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재해예방대책 강구 집중호우 대비 관내 상습침수지에 대해 점검 및 하수구 준설과 배수장 시운전 등 우수기에 대비하기 바람	○ 관내 상습침수지역 재 점검 • 점검기간 : '08.8.6~8.7(2일간) • 점검내용 : 재해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등 • 점검결과 - 배수장 : 이상없음 - 재해위험지구 : 재해요인 개선 - 소하천 : 일부 정비 필요. ○ 우수기 재해대비 시설물 점검 및 비상근무 요령 교육 • 일시: '08.8.7. 09:30~ 10:00 • 교육내용 - 재해대비 시설물 점검 - 재해대비 비상근무 요령	완 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건의사항		○ 배수장 시운전 • 시운전 일시 : '08.8.6. • 배수문 및 제진지 장동유무 확인, 유수지 오물제거 및 스크린 청소	완 결
건 축 주택과	시정요구	○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인부를 사역하여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신빙성에 의문이 감. 야간에 주로 사용하는 에어라이트의 경우 단속이 거의 형식에 거치 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 지도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 시행하기 바람.	○ 전년도 광고물 전수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리구 전역에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직원4명, 상용2명, 공익등 총16명으로 구성하여 80일간에 걸쳐 12,155개를 조사하였음. ○ 이중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이 8,074건으로 다소 많아 보이나 신고 배제인 광고물(소형)이 포함된 것임. ○ 또한 야간에 에어라이트 광고물이 늦은시간에 도로변에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주1회 이상 야간(심야) 2개조 7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조치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주택과	건의 사항	① **대암파크랜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보도를 캔틸래버식으로 하천방면으로 내어주던지 아니면 일직선으로 다리를 놓는다는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화 해주시기 바람	○ 진입로 확보에 따른 보도를 켄틸래버식으로 하여 하천방면으로 증폭 및 교량증설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인 건설과에 협조 요청하였음.	추진중
		② **공동주택 녹화사업 지속추진** 신규아파트의 경우는 구청에서 녹화에 따른 조건을 부여하여 잘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아파트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바람	○ 신규아파트는 사업승인시 옥상녹화사업 등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하겠음 ○ 기존 아파트는 200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시 지원대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중
		③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평창리비에르아파트 1~3단지에 대하여 분양승인 되었고, 7월 2일 파산관재인, 임차인, T/F팀 관계자가 참석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 4일 분양전환 승인이 되었음. 현재 임차인의 채권순위 중 3순위가 될 경우 제시된 금액으로, 4순위가 될 경우는 가구당 평균	○ 채권순위는 파산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임차인을 위해 행정지원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주택과	건의 사항	190만원정도 상향될 것이므로 3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채권순위는 파산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임차인을 위해 행정지원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완결
		④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도서관의 경우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함에도 최초설계에서부터 재설계 등을 거쳐 43억에서 33억 6천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었음.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으나 현재 중앙도서관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실정으로 본 공사비의 경우 60%정도가 의존재원인데 굳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것은 문제임. 공공시설 특히 도서관은 미래를 내다보고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므로 추후에는 이런 공공건물 신축시 신중히 판단하기 바람.	○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사,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공공건축물 건립시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임.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생 명 산업과	시정 요구	1. 호접란 수출 만전 2007년도에 11만본을 수출하였고, 올해 2008년도에는 20만본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7월현재 4만본만 수출한 상태로 20만본 목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대만과의 가격경쟁력 문제,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재 구매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만산을 우리 화훼농가의 동종품종과 대체가 안 되도록 신경 쓰기 바람.	○ 수출이 저조한 원인은 미국 경제침체로 미국현지 법인의 판매가 저조하여 수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2008년도 20만본 수출달성을 위해 현지법인과 협력하고 있음 ○ 생명산업과 -12775(2008.07.28)호로 “농소농협 및 농소난수출작목반에서는 미국경제침체와 국내의 경기 위축으로 꽃소비 감소에 따른 어려운 실정이므로 미국 코러스와 유기적인 협력 및 판로개척으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협조 공문 발송	추진중
		2. 봄꽃 전시회 활성화 방안 강구 봄꽃전시회 평가보고서를 보면 미흡하고 쇠부리축제에 비하여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예산 확보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보기 바람.	○ 08년 쇠부리 축제외 공동개최로 홍보분야(전단지 제작 초청장 배너 언론매체 등)는 쇠부리 추진위에서 전담함에 따라 봄꽃전시회 홍보는 부족하였으나 09년 쇠부리축제와 공동개최시 홍보분야의 부족한 (언론보도)부문에 대해서는 추진위와 협의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생 명 산업과	시정 요구		08년 쇠부리 축제외 공동개최로 홍보분야(전단지 제작 초청장 배너 언론매체 등)는 쇠부리 추진위에서 전담함에 따라 봄꽃전시회 홍보는 부족하였으나 09년 쇠부리축제와 공동개최시 홍보분야의 부족한(언론보도)부문에 대해서는 추진위와 협의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 구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내실있게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1. 소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홍보강화 원산지표시가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100㎡ 이하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지속적 홍보를 하고, 100㎡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단속 및 홍보 인원을 적정수준 유지할 수 있어야 효과적일 것이므로 강구해 보기 바람.	○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리후렛(원산지 표시대상 및 시기안내) 2,000매 배부하였고 북구홈페이지에 원산지 표시제 안내 내용 공고하였음 ○ 또한, 울산매일 등 4개 신문사에 보도자료 게재 하고 원산지 표기방법에 대한 홍보물 1,475매 우편 발송하였음. ○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홍보 인원을 확충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생 명 산업과	건의 사항	2. 유기동물 보호방안 강구 현재 유기동물 처리에 있어 대부분 안락사 위주로 분양과 주인을 찾아주는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동물보호를 위하여 상설보호센터를 건립하거나 시에 건의하여 주기 바람.	○ 현재 유기동물 발생시 구 홈페이지 및 울산수의사회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병원 자체적인 홍보도 강화하여 분양과 주인 인도를 적극 유도하겠음. ○ 유기동물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생명산업과 - 13689 (2008. 08. 12)호로 “동물보호를 위한 통합보호센터 설치”건의 공문 발송	추진중
재난 관리 과	시정 요구	1.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 현재 우리구의 공익근무요원 중 운전을 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인 실정임에도 사업을 하는 일부부서에서 운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큰 실정임. 위급상황이 아니라면 공익요원에게 운전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운전원 아닌 일반공익요원이 운전할 때는 물론이고 운전요원이 운전할 때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그에 따라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일반 복무	○ 공익근무요원 운전금지 조치 공문 발송 - 일 시 : 7월 22일 - 내 용 : 복무분야 외 업무 금지, 병무청 승인 후 운전 임무 수행 ○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교육실시 - 일 시 : 8. 7. 10:00 ~ 15:00 - 장 소 : 지하 민방위교육장 - 강 사 : 사회복무관리센터장 - 내 용 :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복무교육, 고충상담 실시 ○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활동 - 2008년 4월 30일 실시 - 2008년 10월경 실시 예정	처리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재 난 관리과	시정 요구	분야의 공익요원도 1년에 2번 정도 봉사활동 기회를 늘렸으면 함.	○ 회계정보과에서 메리츠화재에 공익 운전사항 질의회신결과 - 답변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타보험회사 9월중 재질의 예정임.	처리중
		2. 풍수해보험사업 홍보활동 강화 풍수해보험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3명만이 가입하였음. 작은 금액으로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교육시에는 보험사에서 직접 나와 설명함으로써 영업활동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교육하고 보험사에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효과적일 것임.	○ 올해 4월 풍수해보험 첫시행 이후 사업초기에는 홍보부족과 보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이후 주민반상회, 게시판 및 동별 설명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08년 7월말 현재 북구관내 435세대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음. ○ 향후 주민 설명회 시 풍수해보험 업무담당자가 직접적인 교육실시를 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홍보를 할 계획임.	완결
		3. 화봉공원 비상급수시설 정비 화봉공원 비상급수시설의 물빠짐 배수구 크기가 작고 물받이가 트여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즉각적인 정비가 요구됨.	○ 화봉소공원 민방위급수시설 정비 공사 실시 - 정비기간 : 8.5~8.8 - 정비내용 : 하수구배수구 확장 및 배수관 교체, 음수대 물받이 보수함.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재 난 관리과	건의 사항	**1.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철저** 지역자율방제단 활동실적을 보면 안전한국훈련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이 다른 단체들에서 흔히 하는 활동이 대부분임. 유사시에 대비하여 긴급히 필요한 곳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다른 단체와 차별화 된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을 위하여 수상 인명구조, 고립지역 통신활동, 가스 사고대응 등 다른 단체와 차별화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며 ○ 2008년 8월12일 방재단원 교육 및 정자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였고 ○ 전단원 비상연락망을 비상호출 프로그램(크로샷)에 입력하여 비상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였음.	완결
보건소	시정 요구	**① 직원 복무기강 확립** 홈페이지 열린마당을 보면 22건 중 6건이 불친절로 판단됨. 전화응대에도 문제가 있으며, 기획감사실 감사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지적사항 13건의 경우 임금대장 등 정비소홀 등 복무와 관계된 것이 많음.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사기진작도 요구됨.	○ 직원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친절을 행함.(첨부 : 교육일지) ○ 기간제근로자 업무매뉴얼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참고하게 하여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완결
		② 약품관리 철저 2006년도에 구입한 인플루엔자 백신 중 1,400명분을 폐기	○ 2006년도 인플루엔자 백신유효기간 경과로 폐기처분한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보건소	시정요구	한 것은 문제임. 약국 등을 지도 단속하는 보건소가 약품관리를 허술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사실이 있음. 이는 조달청에서 납기가 지연되어 적기 접종시기를 일실하여 불가항력적으로폐기함(첨부 : 인플루엔자 백신 폐기처분, 최종약품확인서) ○ 조달계약 시 납기를 명시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음	완결
		③ 방문간호사업 추진 철저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2~8명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 사업의 경우 환자와의 신뢰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방문이 꾸준히 진행되어져야 할 것임. 이직이 최소화 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리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음.	완결
		④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보건소 내부에서의 장애인 이동은 가능하지만 주차장에서 보건소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 혼자서 가기에는 실제 어려우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하기 바람.	○ 기술적인 부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음	추진중

제5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개요

가. 감사의 목적

○ 2009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감사세부계획

○ 감사기간 : 2009. 7. 10 ~ 7. 16(7일간)

○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라.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윤 임 지

○ 부 의 장 : 문 석 주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윤 규 태

○ 사무직원 : 강 우 송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강석구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이삼재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총무국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과장	신종도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지방세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사회복지과장	박민수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시경제국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도시녹지과장	이차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김연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재난관리과장	송지환		
	보건소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	전 동	농소1동장	윤기현		감사요구 자료참고
		농소2동장	김규석		
		농소3동장	허정행		
		강동동장	이충실		
		효문동장	홍성욱		
		송정동장	윤채걸		
		양정동장	박경란		
		염포동장	김병오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2009. 7. 10～ 7. 16(7일간, 토・일요일 제외)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3.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9. 7. 10(금)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ㅇ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ㅇ총 무 국 • 총 무 과 • 회계정보과 • 지방세과 • 민원지적과	
2009. 7. 13(월)	10:00	〃	ㅇ총 무 국 • 환경위생과 ㅇ생활지원국 • 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문화홍보과	
2009. 7. 14(화)	10:00	〃	ㅇ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미화과 • 평생교육과 ㅇ도시경제국 • 도시녹지과 • 경제교통과	
2009. 7. 15(수)	10:00	〃	ㅇ도시경제국 • 건 설 과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 시설재난관리과	
2009. 7. 16(목)	10:00	〃	ㅇ보 건 소 ㅇ기획감사실 ㅇ의회사무과	

※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계	공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 지원국	도시경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454	22	23	93	126	156	28	6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 행정사무감사자료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 파일 및 책자(15부)로 제출
- ○ 작성요령 : 「별첨 2」 참조
- ○ 감사범위 : 2008. 6. 1 ~ 2009. 5. 31
  ※ 요구자료에 따라 감사범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작성기준일 : 2009. 5. 31일 현재

○ 제출기한 : 2009. 6. 15한

5.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ㅇ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6.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ㅇ 감사 첫날 국·소·실·과장·동장 합동 실시 - 29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17명, 동장 8명)

ㅇ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 선서문 : 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7.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강우송외 2명

○ 감사지적사항 당일작성 제출 : 감사의원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강우송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허순자외 1명

○ 현장확인 활동(필요시)

ㅇ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8.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소 속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454**	
공 통 사 항		**22**	
기 획 감 사 실		**23**	
총 무 국	**소 계**	**93**	
	총 무 과	32	
	회계정보과	14	
	지 방 세 과	11	
	민원지적과	14	
	환경위생과	22	
생활지원국	**소 계**	**126**	
	생활지원과	21	
	사회복지과	38	
	문화홍보과	31	
	환경미화과	25	
	평생교육과	11	
도시경제국	**소 계**	**156**	
	도시녹지과	27	
	경제교통과	26	
	건 설 과	28	
	건축주택과	21	
	농수산과	33	
	시설재난관리과	21	
보 건 소		**28**	
의 회 사 무 과		**6**	

【 전 부 서 】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
1. 예산집행현황(일반・특별회계 구분 작성)
<2008. 1. 1~2008. 12. 31>, <2009. 1. 1~2009. 5. 31> 구분 작성
<table>
<tr><th>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th><th>예 산 액</th><th>주요편성내용</th><th>주요집행내역</th><th>잔 액</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일자</th><th>처리일자</th><th>민 원 인</th><th>민원내용</th><th>처리결과</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각종 공사 추진현황
<table>
<tr><th>공 사 명</th><th>위 치</th><th>사업개요</th><th>사업비</th><th>진 도</th><th>시공자</th><th>예산확보시기</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08. 6. 1 ~ 2009. 5. 31(일반 민간단체-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포함)
<table>
<tr><th rowspan="2">단체명</th><th rowspan="2">사업내용</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colspan="3">예 산 액</th><th rowspan="2">보조금 집행액</th><th rowspan="2">집행잔액</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보조금</th><th>자부담</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산서 사본 첨부
※ 부서 개별사항에 중복요구일 경우 공통사항은 생략가능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용역종류</th><th>용역비</th><th>착수일자</th><th>완료일자</th><th>용역결과</th><th>계약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2">예산액</th><th colspan="2">집행액</th><th colspan="2">미집행액</th><th rowspan="2">미집행 사유</th></tr>
<tr><th>국비</th><th>시비</th><th>국비</th><th>시비</th><th>국비</th><th>시비</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서식 1)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등) - '08. 6. 1이후 신규시설분만 작성
</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공통사항]</td><td>
11.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12.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3. 2009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14.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table>
<tr><th>공사명</th><th>변경사유</th><th>공사금액
증 가 액</th><th>설계변경
요 청 자</th><th>설계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5.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내역
(지급방법 -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명시)
16. 법인카드 발급대장(2008. 6. 1 이후 추가분)
17.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8.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19.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table>
<tr><th rowspan="2">번호</th><th rowspan="2">차량명</th><th rowspan="2">차량번호</th><th rowspan="2">구입일</th><th rowspan="2">용도</th><th rowspan="2">상태</th><th colspan="3">수리내역</th><th rowspan="2">유류비</th><th rowspan="2">비고</th></tr>
<tr><th>일자</th><th>내역</th><th>비용</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0.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table>
<tr><th>공사개요</th><th>통보일자</th><th>통보내용</th><th>비 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21.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사업내용, 금액, 환수사유 등)
22. 재정조기 집행실적(동주민센터는 총무과에서 취합)
<table>
<tr><th>예산서
세부사
업명</th><th>목표액
(천원)</th><th>편성목</th><th>집행
일자</th><th>건명</th><th>세부 집행내용
(사업량, 규모등)</th><th>금액
(천원)</th><th>집행율
(%)</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부서별 총계뿐만 아니라 예산서 세부사업별로 소계작성, 예산서상의 편성목까지 작성
- 건명은 지출결의서 건별로 작성
- 예산서상의 '시설비' 편성목은 작성 제외
</td><td></td></tr>
</table>

(붙임 1)

□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지급일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외 0명)
계				
년, 월, 일 명시				※ 대표 1인 실명 또는 직책 명시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작성,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연도별 합계 계산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09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업체 고용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민간위탁과 용역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09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총무국	총무과			:												
					:												
					: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															
	…	…															
의회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 ○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없이 상시고용된 자
- ○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09. 5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09. 5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예 : 1,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1) 근속기간 : 평균근속기간
(12)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13) 사본 제출서류 : 업무별 임금대장(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편성표
⇒ 제출부서 :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

기획감사실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감사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 2.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3. 2009년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 4. 주민참여예산제 2009년 당초예산 반영내역 5. 예산 전·이용·변경사용 현황 및 사유(전부서 취합) 6.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수행사항 (일시,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등) 7.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사례) 8. 구민감시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9.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10.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및 순위,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11. 자체감사·특별감사·시· 행안부·감사원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 북구자활센터 비리 관련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포함 12. 고문변호사 활동현황 및 실적 13.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실적 14. 건전재정 운영시책 추진실적 15.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실적 16. 관·학 교류협약 체결현황 및 상호협력사업 추진현황 17. 위원회 현황 관련 ① 설치근거별 현황 - 법령, 조례/ 비상설, 의결적, 행정내부, 기금관련으로 세분 ② 성격별 현황 - 심의, 의결, 자문, 협의로 구분, 위원회 개수 및 위원회명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기획감사실</td><td>
③ 위원 구성현황(공무원, 민간위원-시민사회단체추천 별도)
<table>
<tr><th>구 분</th><th>여성위원
(비율)</th><th>공무원</th><th>구의원</th><th>민간위원</th><th>시민단체추천
(비율)</th></tr>
<tr><td>총 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위원회</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④ 위원장 현황
<table>
<tr><th>구 분</th><th>구청장</th><th>부구청장</th><th>실국장</th><th>지역주민</th><th>시민단체</th></tr>
<tr><td>총 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위원회</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⑤ 각 위원회별 기본 현황 및 운영 실적
<table>
<tr><th rowspan="2">위원
회명</th><th rowspan="2">설치
근거</th><th rowspan="2">설치
목적</th><th rowspan="2">설치
일</th><th colspan="3">위원구성(여성)</th><th rowspan="2">임
기</th><th rowspan="2">위원
장</th><th rowspan="2">주관
부서</th></tr>
<tr><th>당연
직</th><th>민간
위원</th><th>시민단
체추천</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⑥ 위원회별 위원명단(성명, 위원회내 직위, 직업, 남녀, 연령 등)
⑦ 위원회, 협의회, 운영위원회, 자치위원회,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 변동사항(별도 표기)
- 위원회별 직위, 남여 등 변동사항
- 기존위원회 위원의 변동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현황
- 신설위원회 위원 여성위원 위촉 현황
⑧ 위원회 개최 실적
-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실적(참여인원), 회의록, 주관부서
⑨ 각 위원회 위원 전체 출석률 및 개별 위원 출석률
- 위원회명, 위원성명, 직업, 성별, 최초임명일자, 출석률
⑩ 각 위원회별 회의참석 수당 및 집행실적
<table>
<tr><th>구분</th><th>국</th><th>과</th><th>위원회</th><th colspan="4">집 행 내 역</th></tr>
<tr><td rowspan="2">일반
회계</td><td>총무국</td><td>총무과</td><td>00위원회</td><td>예산액</td><td>인원</td><td>회수</td><td>집행실적</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특별
회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기획감사실	18.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실적 및 성과 19. 구정발전 T/F 팀 운영실적 20.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평가방법, 개선결과 21.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 현황 및 실적 (팀별 출장실적, 타 우수 시책발굴 및 반영결과 등) 22. 울산외고 2010년 개교 세부 추진계획(학생수급계획 등) 23.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 '09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 시민위원 명단(추천단체 및 소속, 거주지 포함) - 시민위원 모집 홍보내역(반상회보, 게시지역 등) - 시민위원 단체 추천 발신 및 수신 공문 - 시민위원 선정관련 구정조정위원회 회의안 및 회의록, 회의결과 - 연구위원 명단 및 회의안 - 연구위원 추천, 해촉, 위촉관련 발신 및 수신 공문	

총무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총 무 과</td><td>1. 인력운용 관련
- 전체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3)
2.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
3.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인부임 포함) 현황 - 전부서 취합
<table><tr><th>부서명</th><th>성 명</th><th>사역목적</th><th>사역기간</th><th>단가(원)</th><th>비 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4. 공문서 수·발신 목록
5.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동별 취합)
6. 동별 예산 집행현황(동별 취합)
7.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실적
8.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시간당 강사료 표기), 보조금 지원현황(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표기- 동별 취합)
9.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종합평가 결과
10.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1.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동별)
12. 온라인 고객만족도 조사/시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조사문항, 조사대상, 결과
13. 전년도대비 상근/비상근 일용직 증원현황 (부서, 업무, 비용, 사유)
14. 교육경비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정산서 사본)
15.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및 회의수당 집행내역(동별 회의일시, 총원, 참석현황, 수당지급현황)
16. 각 실과소동별 계약직 채용현황 및 주요업무 내용
17. 각 실과소동별 상용직 인원현황 및 주요업무 내용
18. 구청장 동순회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총 무 과	19. 행정자료실 신간도서 구입현황 및 도서대출 현황(월별), 20. 직원 위탁교육 기관별 교육비 지급내역 및 교육인원 현황(월별) 21. 현장방문 통장회의 추진실적 22.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공개실적 23.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복무연장 등) 24.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 추진실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25. 관내 1사 1학교 자매결연사업 추진 실적 26. 직원 한마음 연수 추진 계획 및 희망지별 접수현황 27. 09년 단협 세부합의사항 28. 북구 출향인사 현황 및 연찬회 추진계획 및 실적 29. 삼진아웃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30. 세출예산정리부(이호조 출력) 31. 부서별(동 포함) 초과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현황	

부서명	직급	1인당 실제 초과 근무 시간									1인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									비고
		'08. 9월	'08. 10월	'08. 11월	.	.	.	.	.	'09. 5월	'08. 9월	'08. 10월	'08. 11월	.	.	.	.	.	'09. 5월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 2008. 9. 1~12. 31, 2009. 1. 1~5. 31. 구분 소계 산출
- 휴일근무수당 및 현업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32.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최종평가서 사본(2008, 2009)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 (2009년 5월 31기준)

구분	지방공무원인력									기타 인력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소방직	기타	상근인력				일시사역 인부
										단순 노무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청원 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09. 5 31기준)

구분	기관명		지방공무원인력								
	실국	부서명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계									
본 청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									
		: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 지원과									
		복지서비스과									
		:									
		: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									
		:									
의 회	의 회										
보건소	보 건 소										
동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인력 규모(2009. 5. 31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분	기관명			기타 인력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실국	부서명	업무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30일이하		60일이하		90일이하		180일이하		240일이하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본청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														
			:														
			:														
		회계정보과															
		:															
	:	:															
의회	의 회																
직속기관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총 무 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회계정보과</td><td>1. 공개입찰 계약현황
(공사 2,000만원이상, 물품・용역 2,000만원 이상)
<table>
<tr><th>부서명</th><th>일자</th><th>건명</th><th>사업량
(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각종 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3.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
4.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5.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
6. 공유 재산 취득현황(구소유 - 토지, 건물)
<table>
<tr><th>품 명</th><th>취득일</th><th>취득방법</th><th>취득가격</th><th>취득목적</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지급내역
8. 관급공사 계약현황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공사개요,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9. 수의계약 현황
- 부서명, 일자,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0.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11. 계약심사 현황 및 실적
12. 우리 구 축제사이트의 월별 주민접속 현황
(전년 대비표 작성)
13. 각 동청사 건립계획(대지, 건물, 위치 등)
14. 영상방송 시스템 추진 실적</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지방세과</td><td>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 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요약총괄)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table><tr><td colspan="2">체 납 자</td><td colspan="3">결손내역</td><td rowspan="2">결손처분
일자</td><td rowspan="2">결손사유</td></tr><tr><td>성명</td><td>주소</td><td>세목</td><td>부과연도</td><td>결손액</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비과세 감면, 면세, 세액감면 현황
9. 체납세 징수 활동 주요 실적
10.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상세내역
11.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설치효과분석
(설치 전 후 월별 비교분석)</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민원지적과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재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4.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 5. 재택전자민원 (G4C)신청 및 처리실적 (전년대비 증감표시) 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1일평균)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7.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따른 부과·징수 현황 8.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9. 건물등기촉탁 실적 1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 및 조치현황 11.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현황 12.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내용 13. 여권발급 실적(월별 비교) 14.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발송실적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위생과</td><td>1.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실적(행정처분업소 처분결과 포함)
2.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3.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현황(개소수 현황 포함)
5.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6.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 위반현황
<table>
<tr><th>업 소</th><th>위 치</th><th>건축허가일</th><th>객실수</th><th>위반현황</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자동차, 시설물)
8. 게임장 현황 및 단속실적, 처리결과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9.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10.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11. 학교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 향후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점검 계획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적
13. 1사 1하천 참여단체 활동 현황 및 추진실적
14.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대책 및 단속실적
15. 야생동물보호활동 실적</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위생과	16. 오수처리시설 및 방류수 수질 점검현황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 18. 행정조치내역(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내역 19.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공사 추진현황 20.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업소명, 위치표시) 21.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도표) 최근 3년(2007년 ~ 09. 5. 31) 업소명, 단속일시,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 22. 위생관리 도우미 운영현황 및 실적	

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생활지원과	1.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현황, 실적, 지도점검 현황 - 2009년도 사업계획, 예산지원현황 - 2009. 5. 31현재 사업실적 - 총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 지도점검 현황 3. 고용촉진훈련 추진 내역(예산집행내역 포함) 4.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현황 5.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6.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7. 구 자체 복지사업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8.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및 2009년 시행계획 9. 사회복지 정책 평가내용 및 결과 10.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별 정산내역 및 각종 감사 결과, 조치사항 - 지역자활센터 위탁 이후 모든 사업 11. 사회복지 상담실 운영현황(동별 취합) - 민원접수 현황 - 사회복지 상담내용(내용별 분류), 상담 인원수, 상담수(월별), 처리상황 및 조치결과 12.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사업내용, 소요인원 및 예산 - 분기별 작성)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생활지원과	1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통계자료(동별 작성) 14. 종합사회복지관 2008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 일체 15. 자원봉사센터 분기별 지도점검 결과 16.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접수현황 - 사회복지시설명, 후원자명, 후원금액, 접수일시, 후원금 사용내역, 후원금 회계처리방법, 후원자와 수용자와의 관계 1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관련 - 시설별 급여실태, 처우개선비 지급현황, 근무시간 등 18.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사업 - 동별 현황, 지원 현황, 사업 실적 - 아동인지 향상서비스 사업실적 19. 6. 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실적 20.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인력 분석현황 (동별,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세대주 유무 등 도표 작성) 21.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지원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복지과	1.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2. 북구 노인회 지원 현황 3.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 - 구청 및 지회 감사결과서 - 직원현황, 임금지급현황 : 2005~2009년 - 생산실적, 손이익 현황 : 2005~2009년, 월별 년도별 통계 4.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지도점검 및 조치 내용 포함) 5.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 6.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스티커제작 및 발급현황 - 부정 부착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7. 노인복지자금 운영실태 8. 태연재활원·메아리동산 운영현황 - 2009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현황 - 2009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9. 장수수당 지급현황(동별/월별/인원 등) 10. 2009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현황 및 내역 - 장애아 아동수, 전담보육시설이용수, 미이용아동수 및 그 사유 - 민원 및 문제점, 만족도 11. 노인복지회관 2008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일체 12. 노인복지회관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13.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14.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시회복지과	15. 북구여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6.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추진계획, 접수현황, 사업진행 내용 및 현재까지의 결과, 동별 배치현황 17. 가정·성폭력상담소 지도점검 결과 18.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내용 및 참가자 현황 (2007. 2008) - 5급이상 간부공무원 참석자, 미참석자 명단 포함 19. 지자체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예산, 추진실적 20. 2009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사업내역 21. 어린이 날 행사 일자별 세부지출 내역 및 정산서 (2007, 2008, 2009년) 22. 느티나무공부방 교사 채용 현황(근무기간 표시) 23. 경로당 현황, 경로당별 운영비 및 동절기 난방비 지급내역 24. 2009년도 보육서비스의 실태와 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 나이별 수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과 아동수 - 장애아 보육 확대를 위한 계획 - 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현황과 확대 계획 25. 노인복지관련 ① 동별 노인의 달 행사 현황 -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 영수증, 참자가수, 행사주체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사회복지과	②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26.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27.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28. 노인복지회관 및 북구청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현황 (건별 예산 및 추진실적, 참여인원 등) 29. H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조치 결과 30. 어린이집 인가제한 관련 - 어린이집 인가신청 현황 - 소송 제기현황 및 결과 - 인가제한 시행으로 인한 인가되지 않은 현황 31.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련 - 신청대상자 현황 및 지정인원 - 기초노령지급에 따른 인력지원내역(인원, 사역기간, 소요예산) 32.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실적(구청 및 산하기관) - 부서별·우선구매 품목별 구매실적 작성 33. 장애인단체 관련 - 기본현황 - 보조금, 성금품 및 기타 지원내역 -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34. 아동복지교사 현황 및 실적 35.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36. 긴급생계자금 신청자 현황 및 지원현황(금액 등) 37. 노인요양보험신청후 서비스 이용현황 38.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 추진실적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홍보과	1.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2. 기자실 브리핑 및 기자회견 내역 3. 구정소식지(전자신문 등) 발간 및 배부내역 4.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 5.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단속 현황 6. 청소년 관련 단속 실적(과태료 부과 등) 7.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8.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문화교실, 공연 등 계획 및 실적) 9. 문화예술회관 월별 대관료 징수실적 10. 문화재 지정현황 및 정비실적 11. 축제 및 문화행사(쇠부리, 정월대보름 행사 제외)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12. 2009년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관련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3. 2008년도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4. 쇠부리문화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향후 사업운영 계획(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15. 2009년 정월대보름행사 동별 추진실적 및 정산서 16. 기자간담회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 (일시, 장소, 인원, 경비 등-영수증 사본 첨부) 17. 객원기자 및 시정홍보위원 간담회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일시, 장소, 인원, 경비 등)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문화홍보과	18. 래핑광고 활용현황 및 소요예산 19. 쇠부리축제 4, 5회 평가결과물 20.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 (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21. 사격부 예산집행 현황 (인건비, 운영비 세부내역 및 운영비 영수증 사본) 22. 주상절리 주변 조성사업 추진현황 23. 강동해변 조형물 설치 추진현황 24. 투게더 콘서트 추진실적 25. 미등록 체육동호회 지원현황 2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황,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27. 사이버 외국어교실 월별 수강현황 및 출석률(접속 건수별 통계자료 28. 지정문화재 관리현황 29. 강동 바다 행정봉사실 건립추진 상황 30. 국도 31호선 관광테마로드 조성추진 현황 31. 무룡운동장 조성 추진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환경미화과	1. 폐기물 수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현황 -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지역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포함)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포함 (과태료 부과내역 등) 4. 환경미화원 정·현원(2009) 및 담당구역현황 5.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6. 분리수거 추진실태 7. 재활용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 매출실적, 예산지원 현황, 이용자수 8.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등 9.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 운영실적 10. 재활용 홍보관 운영 실적 11. 환경단속반 운영 현황 및 실적 12. 청소대행업체 관련(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포함) -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정 용역보고서(2006~2009)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2006~2009, 노무비 시설비 기타경비 등 세부내역 첨부) - 대행업체 종사자 임금대장 사본 (2006~2009)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2006~2009) - 청소대행료 지급현황(2006~2009) - 대행업체 지도점검 또는 감사결과, 조치결과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환경미화과</td><td>13. 구청 직영 청소업무 현황(2006~2009)
- 직영업무내용, 차량현황, 종사자 인원, 종사자 평균임금,
작업방식, 총 운영비용 - 노무비, 차량감각상각 등 포함)
14. 월별 음식물 처리방법 및 소요비용
(자체처리량, 위탁처리량, 위탁처리 시설명 등 표기)
15. 공용마대 사용현황(단체별, 동별)
16.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17.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추진실적(′08과 비교)
18. 동 청소행정 평가 인센티브 지급내역
19.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 끈달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
대책
20. 청소체계 개선계획
21. 음식물자원화시설 중단이후 현황 및 향후계획
- 중산동인센티브 지급, 주민지원협의체 및 감시단 등
22. 음식물쓰레기 감량조치에 따른 실적
(2007. 2008. 2009 년도별, 월별 비교)
<‘○○년도>
<table><tr><td>구 분</td><td>계</td><td>1월</td><td>2월</td><td>…</td><td></td></tr><tr><td>아파트</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식당별</td><td></td><td></td><td></td><td></td><td></td></tr><tr><td>주 택</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23.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 처리업체 현황
- 최근 2년간 허가내역
-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처리업소에 대한 조치내역
24. 재활용선별장 체험 활성화 추진 실적
25.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장치 시범운영 추진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평생교육과	1.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 강사 경력 - 신규 수강생 비율 2. 각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예산, 하루평균 이용자수, 연령대별) 3. 중앙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예산포함) 4.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 - 위원현황, 위원위촉 등의 개정 계획 - 운영실적 5. 제3대학 운영 실적 (강사 및 학생선발 과정 및 운영실적, 출석률) 6.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7. 중증장애인 방문대출 서비스 운영현황 8. 양정·염포권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9. 자원봉사사 운영현황 및 포상현황 10.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운영현황 11. 무룡서당 운영실적 및 평가	

도시경제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도시녹지과</td><td>1.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공사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위 치</th><th>공사규모</th><th>사업비</th><th>업체명</th><th>추진상황(진도)</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3. 도시계획사업 건별 추진현황, 민원현황 및 지원실적
4. 도시계획수립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5.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6. 임도 개·보수 현황 및 계약업체 내역
7. 공원시설물 보수 정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8.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9.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실적(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0. 공원 현황 (장소, 시설현황, 개·보수내역, 관리대장)
11.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2.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3.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요구 현황 및 향후계획
14. 등산로 정비현황(기간, 위치, 정비내용, 소요예산)
15. 도시벽면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6. 2009년 가로수식재,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17. 2009년 녹지작업단 운영현황 및 실적
18. 무룡산 공원화사업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
19. 도시녹지과 소관 체육시설 현황(위치, 운동기구 명칭, 개수, 관리상태 등)
20. 숲가꾸기사업 현황 및 하자보수 내역
21. 공원내 체육시설 추진현황
22. 학교공원화사업 추진현황
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24. 09년 사방사업 추진 현황
25. 산림휴양공간 조성현황
26. 천마산 테마등산로 조성 현황
27. 동대산 맨발 숲길 조성 현황</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경제교통과</td><td>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2. 가스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3.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
4. 가스관련 허가, 신고 접수처리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상담 및 지원사업)
6. 노동자 지원관련 사업 및 행사추진 실적
7.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8.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 현년도분 작성
-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9.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10. 사업용화물차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현황 및 단속현황
<table><tr><th>연번</th><th>사업자</th><th>차고소재지</th><th>차고지 면적</th><th>용도</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월별 실적 통계자료 포함
11.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실적(월별 실적 통계자료)
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현황, 실적 및 향후계획
13. 구청 공인노무사 업무실적, 민원접수현황 및 조치사항 등
14. 주정차단속 실적 및 민원해소 대책(이동식, 고정식, 인력단속)
※ 대낮 화물차 단속현황 별도 작성
15. 호계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및 정산서
16.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17. 글로벌 명예통역관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
18. 공장등록현황 및 취소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경제교통과	19.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현황 20.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1. 노사정구민협의회 현황,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자료 22.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부내역 23. 버스승강장 민자유치 추진실적 24. 최근 3년간 관내 교통사고 현황(도표작성) - 사망사고, 자전거교통사고, 어린이교통사고 등 25. 직원 재래시장 이용실적(월별 통계자료) 26. 외국 지자체와의 우호 교류추진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건 설 과</td><td>1. 하천 점 사용료 부과 및 납부현황, 무단사용자 조치내역
2.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3. 긴급도로 복구공사 현황
(도로명, 위치, 복구내용, 공사기간, 사업비 등)
4. 도로 점 사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
5.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6.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table>
<tr><th>민원접수일자</th><th>내 용</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7. 제방 응급복구 공사 내역
8.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9.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현황
10. 자전거 전용로로 개설 추진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 자전거전용도로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포함
11. 우·오수관로 뚜껑교체 정비현황
12. 소방도로 개설 현황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13.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4. 교량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15.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7. 기존 정화조시설 현황과 오수관로 연결시설 현황
(오수관로 연결아파트 현황과 비교)
18. 오수관로 계획현황 및 추진실적</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 설 과	19. 미불용지 보상현황 및 집행계획 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 및 집행계획 21. 도로시설물 개·보수 현황 22.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23. 하천 수해복구공사 현황 24. 동천 하상정비공사 현황(준설모래 처리현황 포함) 25.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통합시스템 설명 26. 불법주기단속의 날 지정운영 실적 27.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개설 추진현황 28.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4. 준공검사 후 불법 확장공사 단속 및 조치 현황 5.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6.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7. 임대아파트 현황 및 향후 분양일정 8.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9.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내역 (일시, 참가자, 내용, 회의결과 등) 10.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11. 현수막 지정게시판 및 벽보 지정게시판 위탁현황 1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실시 현황 13. 건축허가관련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현황 14.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 15.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내역 16. 소규모 건축물 무료 설계반 운영실적 17. 현수막 수거시 폐각목 처리 등 잡수입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18. 공동주택 외벽 색채 및 디자인 지원실적 19. 정자항 일원 간판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20. 광고물 실명제 추진실적 (실명 스티커 발급대상자 대비 발급실적, 향후 대책 등) 21.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 (위생검사, 보험가입 등)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4.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6. 수산관련 인허가 현황 7.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9.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0.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11.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12.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3. 호접란 해외수출전진단지 수출실적 및 향후계획 14.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5.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7. 1아파트 1촌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현황 18. 제3회 강동수산물축제 평가서 및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9. 농사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새비닐 교환 실적 20. 가을꽃,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21. 수산물 특산물 포장제 계약서류 및 배포현황 22. 한우산업 육성 지원예산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23.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추진현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농수산과	24. 학교급식 지원현황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친환경 농산물 지원현황 포함, 정산서 사본 제출) 25. 08년 쌀 직불금 지급현황(도표작성) - 수급자, 지급금액, 면적, 주소지 등 표기할 것 26. 바다행정봉사실 추진현황 27.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생산실적(위치, 생산량 표기) 28. 원예농업육성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29. 2단계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세부현황 30. 수산자원조성 등 어촌복지증진 보조금 집행 세부 내역 31. 아름다운 농촌경관 만들기 추진실적 및 평가 32.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 현황 및 평가 33. 정자항 관광명소화 예산집행 실적 및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고</th></tr>
<tr><td>시설재난
관 리 과</td><td>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3.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 및 관리 실태
4. 수해피해 내용 및 복구 현황
(피해내용, 피해금액, 복구비용, 복구현황, 시공사 - 건별작성)
※ 전실·과·소·동 취합 제출
5. 재해대장 사본
6.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현황 및 활동실적
7.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8.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일시, 구성현황(조직도), 운영실적, 예산집행실적 등
9. 사설전광판 활용 안전예방 홍보실적
10.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현황
11. 풍수해 감시인제도 운영현황
12. 공공건축물 건립 TF팀 운영실적 및 회의록
13.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14. 운동장별 대여현황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표로 작성
15. 체육시설 사용 온라인예약시스템 추진현황 및 문제점
15.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조명설치 추진현황
16. 에너지절약형 생태공공건물 건립 추진실적
18. 구청사 개보수 내역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기간</th><th>사업내역</th><th>사업비</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19. 구 청사 월별 전기사용량 및 전기사용료 납부 현황
('07, '08, '09년도 비교)
20. 청사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
21. 종합복지회관 운영 계획</td><td></td></tr>
</table>

보 건 소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3. 진료비 조정 및 징수현황 4. 주요약품 관리현황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7.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8. 방역장비 현황 , 방역실적 및 대책 9. 비만·당뇨 예방대책 및 실적(효과) 10. 저출산 대책수립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11. 암치료비 지원 실적 12.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 13. 방문보건사업 기초조사결과, 대상자선정, 실적, 만족도 조사결과 14.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 실적, 지원대상자 15. 전염병별 예방접종 실적(보건소, 병원, 의원), 접종률 16. 결혼이민자 건강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7. 업소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교육실시 포함) - 의약업소 - 행정처분업소 점검결과 18.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① 보건의료 예산 및 집행내역 (사업별 세부예산 및 집행내역) ②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보 건 소	③ 보건의료 필수의료 장비 규정에 따른 보유 장비 현황 - 사용기간, 장비별 구입연도, 구입단가, 내구연한, 정상작동 여부, 노후정도, 교체계획 명기 ④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진료실적, 예산 내역 - 진료실적을 건강보험적용인구, 의료급여수급자 이용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제출 19. 전염병 발생내역 - 원인, 장소별 발생현황, 방역대책 20. 저소득 무료검진 추진실적 - 종별 21. 다문화가정 출산 지원내역 22.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 - (붙임 1) 23. 아토피클리닉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24. 전 세계적 확산으로 문제되는 신종플루백신 보유현황 및 예방대책 25.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선별검사 추진실적 (성명, 성별, 연령, 지역, 소득규모 등 표시) 26. 건강생활 실천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 27. 세출예산정리부(이호조 출력) 28. 건강도시사업 추진실적(자체 개발시책 등)	

(붙임 4)

□ 보건소의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

구분	기관명			구분		서면 근로 계약 서	임금 (천원)		상여금 (천원)	퇴직금	법정 수당	법정 휴가	사회 보험	경조사 휴가	재계약 방법
	실국	부서명	업무				총액	단가							
직속 기관	보건소		:	: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구분 : 직종별 분류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l

○ 총액임금 : 2008. 6. 1~2009. 5. 31 까지 지급된 임금(천원단위)

○ 단가 : 업무별 책정 단가

(4) 상여금 : 2008. 6. 1~2009. 5. 31 까지 지급된 상여금 총액(천원단위)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7)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8)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예 : 1,3 / 1, 2, 3, 4)

(9) 교육훈련 : 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 ○, 받지 않았을 경우 ×

(10) 경조사휴가 : 상근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있으면 ○, 없으면 ×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12)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인원을 기입

(13)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인부사역부 각 1부

의회사무과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최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 4. 선진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현황 5. 조례 제·개정 의원발의 총괄현황 6. 의회 회의록 검색시스템 추진현황	

제6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의 목적

○ 2009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09. 7. 10 ~ 7. 16(6일간)

4.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북구	○ 기획감사실 ○ 총 무 국 ○ 생활지원국 ○ 도시경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5.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 임 지	문 석 주	박 병 석 이 은 영 류 재 건 류 인 목 이 영 희	윤 규 태	강 우 송

② 감사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9. 7. 10(금)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ㅇ**증인선서** • 국·소·실·과·동장 ㅇ**총 무 국** • 총 무 과 • 회계정보과 • 지 방 세 과 • 민원지적과	
2009. 7. 11(토)	09:00	현 장	**현장 대상부서**	
2009. 7. 13(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ㅇ**총 무 국** • 환경위생과 ㅇ**생활지원국** • 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문화홍보과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9. 7. 14(화)	10:00	〃	ㅇ **생활지원국** • 환경미화과 • 평생교육과 ㅇ **도시경제국** • 도시녹지과 • 경제교통과	
2009. 7. 15(수)	10:00	〃	ㅇ **도시경제국** • 건 설 과 • 건축주택과 • 농 수 산 과 • 시설재난관리과	
2009. 7. 16(목)	10:00	〃	ㅇ **보 건 소** ㅇ **기획감사실** ㅇ **의회사무과**	

③ 감사방법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실·과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소·실·과장(일부만 실시)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34	30	
공 통 사 항	21		
기 획 감 사 실	26	1	
총 무 국	93	14(동장 8)	
생 활지 원 국	133	6	
도 시 경 제 국	133	7	
보 건 소	25	1	
의 회 사 무 과	3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05**	**46**	**59**
공 통 사 항	6	3	3
기 획 감 사 실	6	4	2
총 무 국	25	11	14
생 활 지 원 국	31	13	18
도 시 경 제 국	30	12	18
보 건 소	6	3	3
의 회 사 무 과	1	-	1

6. 감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각종 공사시 폐기물 처리 철저**

우리 구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있어, 관급공사라는 특성상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건설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바람.

②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관리 및 정산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 있음. 다행히도 올해는 많은 사항이 개선되었음에도 간이영수증 처리, 정산 증빙서류 누락, 자부담에 대한 신용카드 미사용, 강사료의 원천징수 누락, 불합리한 재위탁, 통장 부실관리 등의 사례가 있는 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교육실시는 물론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작년에 이어 올해의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도 요구된 자료가 누락된 사례가 많았고, 오탈자, 합계금액 계산오류, 년도별 구분 없이 작성 등 기본적인 자료작성이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자료 검토 시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고, 향후 의회 의결로 요구된 감사요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바람.

건의사항

① **의존재원 확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의존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세원이며, 사업 성격 및 위임사무에 따라 의존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곳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특별교부세•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관용차량 적정 관리**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일부 부서의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약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투입되는 차량이 있는데, 이러한 잦은 고장 및 노후로 인해 수리가격이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폐차 등 불용 처리하고 신규차량을 구입 검토하시기 바람.

③ **잦은 설계변경 지양**

공사 추진에 있어 불가피한 공사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검토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 이전에 공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① **예산 변경 사용 자제**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내역과는 다르게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수 있음.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 변경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② 사회단체보조금 총괄관리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관리하는 다수 부서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실정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방법 교육이나 지도점검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평가에 있어, 회계처리 적정성 분야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사업비 중 일반 수용비와 실제 사업비 투입비율의 일정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주시고, 당초 사회단체보조사업 심의시 신청 단체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③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 철저

상반기까지 실시한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11회 43명이 다녀왔는데, 당초계획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므로 상반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점은 다소 인정되나,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등 적극 노력바람.

④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예방대책 마련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예산의 15.43%에 해당하는 금액임.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추세에 있고 추계를 통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높으므로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추진바람.

건의사항

①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

최근 언론발표에 의하면 울산시 구·군내 북구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우리 구의 역점시책인 신노사문화 정책 추진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화하도록 점진적으로 검토바라며,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추진 바람.

②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개교 정상추진**

내년 3월 울산 외고 개교를 위해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계획한 일정대로 개교에 차질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개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만일 당초 계획한 대로 개교가 어렵다면 무리한 공기 단축보다는 순연하는 방안도 강구바람.

총 무 국

1. 총무과

시정요구

①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예산편성 관련**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에 있어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시에도 의회 차원에서 실시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럼에도 집행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편성 승인하였음에도 결국 연찬회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사전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며, 출향인사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②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후 정산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검토결과, 자부담분과 구청 예산 지원분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음.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③ 객관적인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추진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결과 조례로 권장한 주민자치위원 여성위원 구성비율을 30%이상 하도록 된 사항을 지키지 않은 동을 최우수 동으로 선정한 바 있음. 향후 평가시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향후 조례상에서 정한 위원 위촉 기준을 준수하여 위촉하기 바람.

④ 통장회의 개선 조치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에 있어, 농소1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의 경우 통장 모두가 전원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동의 경우 통장회의 참석대장에 통장서명 필체가 각기 다르게 서명되어 있었음. 통장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수당이 실제 참석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⑤ 전화친절도 조사방법 개선 및 친절도 향상 노력

작년에 전화친절도 조사에 있어, 개인별 5회까지 통화조사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교육 등으로 인해 일부 직원의 경우 2회만 통화조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해서는 객관적인 조사 및

결과가 도출 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되며, 향후 친절도 조사시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친절도 조사보다는 직원 교육을 통한 개선 등 근본적으로 친절도 조사 자체에 대한 실시 여부를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전체 직원의 친절도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건의사항

① 콘도회원권 재계약 검토

콘도회원권 사용에 있어, 평일과 주말,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배분된 사용일수가 불합리함. 평일보다는 주말, 비성수기보다는 성수기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용실적이 낮은 콘도는 새로운 시설로 섭외하여 재계약하는 등 직원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②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가 최근 급격히 상향 조정된 것에 있어,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상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은 인정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전국 지자체 및 관내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가입시 보다 폭넓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입하여 주시기 바람.

③ 구청사 각종 기 게양 검토

현재 우리 구 청사 게양대에 태극기와 구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타 구의 경우에는 새마을 기, 민방위 기가 게양되어 있음. 우리 구도 대외 위상을 고려하여 새마을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④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행정자료실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약 4,000권에 달하고, 전문서적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1일 이용건수가 2~3회에 불과 하는 등 현재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므로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⑤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

적십자회비 징수를 위한 동별 목표액 달성을 위해 동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⑥ **명촌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관련 추가보수 건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명촌문화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강 개선되었으나, 확인결과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배수가 안되므로 보수 조치 바람.

⑦ **현장방문 회의 운영 활성화**

현장방문 회의 실적이 동별로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므로, 현 시점에서 현장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

⑧ **업무대행공무원 수당 지급검토**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따라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업무보조의 역할에 한정되므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⑨ **시책 등의 홍보를 위한 앰프시설 설치**

마을회관 앰프시설 및 공동주택 앰프시설을 통하여 각종 시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홍보 수단이 없으므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는 앰프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2. 회계정보과

시정요구

① **관용차량 관리 철저**

차량 관리에 있어, 세차를 통해 관용차량 내·외부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일주일에 한번씩 세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음. 세차 횟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종 부품 및 소수리 정비 가격도 현실성 있는 단가를 설정해야 할 것임. 대당 평균 년간 약200만원정도 수리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차량 노후로 인해 수리가격이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폐차 등 불용 처리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른 대책**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라 우리 구 소재 업체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음. 지난 구·군 의회 의장단에서 몇 차례 논의가 되었고,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음. 적극적인 대책 수립은 물론 집행부에서 울주군에 협조 요청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북구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을 높이기 바람.

3. 지방세과

시정요구

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4. 민원 지적과

건의사항

①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실내에 각종 민원 편의시설, 조경, 인테리어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시설물로 인해 오히려 민원인으로 하여금 복잡한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단순미'도 강조되는 환경개선은 물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5.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사회단체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 철저**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성격이 다소 맞지 않다고 판단됨. 5개의 사업이 한 개의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어 사업

간 구분이 안되고 있고, 두 달간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정산을 연말에 하는 부분, 당초 사업계획과 정산내역이 상이한 부분 등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므로, 향후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에 철저 바람.

②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철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에 있어 북구 차량대수는 68,496대로 1.5%에 해당하는 1,056대의 차량만 점검을 하였는데, 점검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실질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 정부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③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있어 여러 단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단체 1하천, 1학교 1하천, 1아파트 1하천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등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하천변 인근 학교의 참여는 거의 전무함. 봉사 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④ 모범음식업소 선정 관련

관내 모범음식업소 선정에 있어 각 전문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업소 선정기준(예를 들어 화장실내 에어타올 또는 종이타올 비치)에 맞게 선정하는 절차를 도입하시고 불법광고물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음식업소가 모범음식업소로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바람.

건의사항

①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적정 관리**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 공신력을 높여 주시고, 검사결과 계속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 상수도 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고, 특히 수질검사 시기 준수 및 간이상수도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② **중식 음식업소 관리 방안 강구**

관내 중국음식점의 경우, 거의 배달업을 주로 하므로 소비자가 직접 위생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거의 없음. 따라서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인증제를 참고로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바람.

③ **오존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홍보**

최근 기상이변으로 오존주의보 및 경보 발령 빈도가 잦고, 계속적으로도 발령 가능성이 높음.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들에게 적절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경로당, 관내 통반장선까지 바로 전파 및 홍보될 수 있도록 건의함.

생활지원국

1. 생활지원과

시정요구

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철저**

정부 방침에 따라 선정된 희망근로자 선정기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자가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향후 저소득층이 신청할 경우 희망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 대부분이 청소업무 등 1회성 업무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생산성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복지정책 평가에 따른 복지정책 제고**

2008년 복지정책 평가결과 전국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므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복지총괄 부문과 아동복지, 지역사회서비스 부문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복지향상에 대한 고민과 복지정책 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보훈 5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단체 중 보훈 5단체는 조국을 위해 몸 바친 회원이거나 유족인 동시에 거의 모든 회원이 원로하므로 엄격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도 필요하겠지만, 행사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넉넉하게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②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활성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하여 인터넷 활용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음. 소통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내에 자유게시

판을 신설검토 바람.

③ **지역자활센터 관리방안 마련**

최근 문제가 된 우리 구의 지역자활센터의 비리관련 지역자활센터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청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자율에 의한 관리보다는 구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방안도 강구바람.

2.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주간행사 추진**

금번 행사시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위주의 참여였음. 내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여성단체가 참여하여 공유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함.

② **어린이날 행사 보조금 집행철저**

어린이날 행사 관련 보조금을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이벤트회사로 재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므로 향후에는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주던지 재위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청사내 장애인주차장 적정 관리**

직원 및 관용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구청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므로 청사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청사 내 장애인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②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 향후 예산편성시 경로당 개보수비에 있어 증액하여 편성요구하기 바라며, 경로당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2층에 소재한 경로당을 조사하여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바람.
- 화정경로당 및 중리경로당의 경우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부족 및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③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간부공무원의 교육 참석율이 매우 저조함. 2008년의 경우 12명이 불참하여 참석률이 35%에 불과함. 성희롱 예방교육의 주관부서를 총무과로 할 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교육이수에 대한 의무사항여부를 떠나 부서의 장이므로 교육 참석율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3. 문화홍보과

시정요구

① 마애여래좌상 등 지정문화재 관리 철저

작년에도 지적한 문화재 관리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마애여래좌상은 市 지정문화재임에도 우리 구가 전적으로 관리한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마애여래좌상 훼손 등 관리에 대한 부분

이 근본적으로 해결 되고 시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② 어린이전용 풋살구장 관리 철저

어린이 전용 풋살구장은 어른들이 대다수 사용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특히 인조잔디가 담뱃불 등으로 훼손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음. 향후 개장하는 구장뿐만 아니라 운영중인 풋살구장에 대해서는 훼손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③ 연암동 교량하부 및 신현동 교량하부 체육시설 운영관련

- 생체협에 관리위탁하고 있는 교량하부 체육시설에 대해 휴일에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고, 희망근로자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연암동 교량하부 체육시설의 경우 비가 오면 구장이 빗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고 바닥 재질, 조명 등 시설 전반에 대해 보강 수리하여 주시기 바람.
- 비록 전 구민에게 개방되어 있다고는 하나, 특성상 시설 전반에 대해 동호회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주민이 접근하기에 심리적인 저항이 있으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 용역관련

중간보고회시 보완할 사항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

고 제시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임. 제시된 의견중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라도 국도 31호선 관광테마로드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② 지역 축제에 대한 재정비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가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있으며,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축제가 있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개최시기를 통일하는 방안이나 우리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③ 청소년 문화사업 확대(건의)

타 구에 비해 북구지역에 청소년 시설 설치가 열악한 가운데, 더구나 농소권에는 더욱 열악하므로 농소권에 청소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나아가 청소년 문화 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④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개설운영 건의

생체협이 종목별로 어느 정도 회원이 구성이 되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회원간 의사소통의 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따라서 체육시설예약시스템과 연계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불가능하다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여 주기 바람.

4.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끈달린 종량제봉투 개선

- 끈달린 봉투에 대한 주민 불만사항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사용은 편하다는 것은 다수가 공감하나, 봉투가 많이 찢어진다는 민원이 다수임. 과연 사용방법이 서툴러서 찢어지는 것인지, 봉투 재질에 대한 문제인지, 이음새에 대한 문제인지 등 민원 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하기 바람.
-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종량제봉투에 표시된 글씨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앞면의 표시방법을 명칭과 용량을 나타내는 부분의 글씨크기는 줄이고 배출시간과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새로운 동판 제작시 개선하지 못한 점은 향후새로운 동판 제작시 적극 반영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

② 객관적인 동 청소행정 평가 및 우수사례 전파 확산

매년 실시하는 동 청소행정 동별 평가에 있어 우수사례가 반영되어 청소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평가순위에만 치중되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면적 등 동별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 동의 시책이 타 동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③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관리 철저

구청과 청소대행업체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구청은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느슨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관리하기 바라며, 업체의 노사분규 발생시 구청에서도 중재의 역할 방안이 없는지 강구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지원기금(17억원)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계획 수립**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의 여건상 더 이상 적립이 어려울 것임. 17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활용 계획, 폐쇄후의 음식물 자원화시설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②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용역 철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용역에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행료가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현지실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③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 건의**

- 배출장소에 근무하는 감시요원이 있을 경우에는 배출질서가 잘 지켜지나, 관리자가 없으면 배출체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출시간대 조정에 대한 검토와
- 진장·명촌지역에 재활용배출장소가 없으므로 배출장소 지정 검토 요망
- 주민 자치회, 아파트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선별체험 검토 요망

④ **불법투기쓰레기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62건에 5,484천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작년 행감자료의 경우 작년 실적은

163건에 12,690천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해는 작년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불법투기 쓰레기가 없어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면 향후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⑤ **공용마대 관리**

쓰레기 마대가 무분별하게 배부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공용마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5. 평생교육과

시정요구

① **제3대학 운영 철저**

제3대학의 당초 운영 취지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에 학생 모집할 경우 기간내 모집인력이 부족하여 대상 연령을 5세 낮추는 등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투입대비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기 바람.

② **북스타트 운동 활성화 추진**

어릴 때부터 올바른 책읽기 습관을 유도하는 취지인데,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하고자 해도 신청 후 바로 참여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너무 획일적이므로 도서관별로 특성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③ **중앙도서관 시설 관리 철저**

중앙도서관 입구 안내 메인부스는 설치되어 있으나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방문객의 오해 소지가 있고, 소화기 비치 문제, 대출자 및 일시 방문객 위주의 사물함으로 개선조치가 필요하고 야외 옥상 테이블의 노후로 따른 교체 필요, 식당 테이블의 낙서, 분리수거 용기 미비치 등 시설 내부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으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평생학습도시 선정추진 노력 및 평생학습 이해도 제고 노력**

우리 구에서 의욕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중요하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② **도서관 상호대차 제도 도입검토**

현재 우리 구의 도서관에 보유중인 도서 대출율이 극히 저조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 특성화 제고 및 주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도서관 상호대차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시책은 부천시, 서울 강남, 김해시 등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전면 시행이 당장 어렵다면 중앙도서관과 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간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③ **도서관 자원봉사 제도의 여성시책사업 참여 검토**

도서관 자원봉사 교육과 활동은 매우 좋은 정책이므로 여성시책 사업으로 참여 건의

도시경제국

1. 도시녹지과

시정요구

① **학교공원화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사후관리 철저**

학교입장에서는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병행하여 설치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수요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람.

② **천마산 등산로 및 상안어린이공원 보수**

천마산 등산로 정비공사 및 상안어린이 공원 조성 공사이후 현장 확인결과 많은 하자가 있으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하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화봉제6어린이 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

화봉제6어린이 공원의 경우 공중화장실이 없어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이용객이 화장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화장실 설치 건의가 있으므로 현장조사 후 설치 검토바람.

② 관내 공원에 대한 고유명칭부여

택지내 각종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 숫자로 부여되어 관리됨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혼선이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명칭이나 공원의 특성에 맞게 고유명칭을 부여 건의

③ 주민참여감독제도 운영 확대

주민참여감독 공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 주민 참여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록 법적으로 주민참여감독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을 지라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사 성격상 주민참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2. 경제교통과

건의사항

① 화물차량 주차 단속 및 시설보강 건의

현재 밤샘 주차단속을 매일 같이 할 수 없는 실정은 이해가 되나 매곡산업단지 진입구간, 쌍용아진 목요장터 구간 등 화물차의 장기주차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쌍용아진 목요장터 구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양성화하는 방안 마련과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 안전봉 설치 검토 요망

② **스쿨존사업 추진관련**

신천초·천곡초등학교에 실시한 스쿨존 사업의 경우 수벽 설치 후 수종이 고사하였는데, 이는 수종선정과 심는 시기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종 선정 및 심는 심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바람.

③ **국제교류 추진시 사전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및 정보공유 건의**

3. 건설과

시정요구

① **자전거도로 볼라드 정비 및 디자인 재검토**

- 신상안교 구간의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된 볼라드가 야광효과가 전혀 없고 미관상 맞지 않으므로 디자인을 재검토바라며,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볼라드는 설치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된 볼라드가 훼손되어 있으므로 차후 개선조치 바람.
- 화봉구간의 경우에는 볼라드가 너무 낮아 통행하는 학생의 안전사고도 우려되므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설치되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보완바람.

② **자전거도로 포장 재질 선정**

자전거 도로 개설에 있어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의 문제로 인해 배수가 안되어 비만 오면 항상 물이 고여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포장에 사용되는 재질 선택에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 겸용도로인지 도로 기능 및 인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택하기 바람.

③ 자전거도로 보수 및 노후된 인도블럭 교체

최근 개설된 신상안교~시례, 홈플러스 마트 ~ 코아루아파트의 자전거 도로 구간 곳곳에 도로가 패여 있고, 도로 침하, 배수 불량, 경계석 이격, 전주의 문제 , 포장 불량, 나무식재 불량 등 전반적인 부실 시공된 부분이 많으므로 조치하여 주시고, 나아가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구간에 대한 보수대상 일제조사 후 보수 조치바라며, 쌍용아진 주변 노후 된 인도블럭교체 바람.

④ 자전거도로 개설 방향 검토 철저

당초 자전거도로개설에 있어 자전거 도로가 과연 필요한 지역인지, 주택가 밀집지역인지, 인도 폭이 얼마나 되는지, 전주 이설이 필요한지 등 자전거도로 개설이전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⑤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자전거 보관대 관리 철저(잡초, 쓰레기 등 방치)
- 천곡천 및 21세기병원 앞 하천 오염이 심하므로 원인 분석과 아울러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람.
- 신상안교 서편 하부 오수집수정에 악취가 너무 심하므로 뚜껑을 설치하든지 조사 후 조치바람.
- 신상안교 하부도로 반파되어 작년 행감에도 지적하였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었으므로 보수요망.

- 천곡교 하부도로 자전거도로 개설 건의
- 농소3동 목요장터 노점상 단속
- 중산동 벽산아파트 진입로 배수로 정비, 신천굴다리 하부도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상안동 새터마을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상안동 오리사냥 식당 입구변 도로 부분포장 요망

건의사항

①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 개설관련**

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울산 외고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 신소재, 다양한 공법 등을 통해 차별화되고 자랑할만한 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

4. 건축주택과

건의사항

① **굴다리 벽화도색 사업 개선(건의)**

부산 안창마을, 양산 등 벽화 도색 사업의 경우 주민생활에 친숙한 도안인 가운데 주민참여형으로 시도된 사업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② **벽화사업 대상지 추가도색 및 보강 건의**

- 연암3통마을 입구 도색 부분 오염
- 갓안마을 입구 빗물누수로 오염

- 이화천 옆 굴다리 벽면 도색 누락부분 도색건의
- 약수천 굴다리 벽면 도색 누락부분 도색건의

③ 광고 간판 디자인 정비 지원 건의

서울의 경우 도시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인증된 디자인에 대해 예산지원을 통해 깨끗한 이미지 도시경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 구도 이러한 지원사업의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④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축심의 등 사전심의 강화

SSM(슈퍼슈퍼마켓)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SSM의 건축허가 등 허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전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강동수산물 축제 협찬업체 참가 자제

올해 강동수산물 축제가 3회째 개최되었는데, 행사장 곳곳에 협찬업체의 각종 광고행위는 축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람.

②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강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소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홍보와 원산지표지 제도의 조기정착을

건의하였음.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에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과 수거 검사를 하여 주시고 기 구성되어 있는 TF-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람.

건의사항

① 양수장 이용 전기사용료 지원 검토

농민들이 사용하는 양수장 및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시 사용한 전기료 납부에 있어 현재 농민들이 부담하고 하고 있는데 전액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② 당사동 어장 백화현상 극복 지원

당사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주관으로 백화현상 극복을 위한 '다시마 해중림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향후 사업효과 분석 후 국·시비 예산 확보를 통한 예산 지원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③ 잉여농산물 수출지원 건의

호접란 미국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지역에서 생산한 잉여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이라든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④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의 역량 강화

강동수산물 축제, 농도축제 개최 정산내역 확인결과 세부적인 각종 사업이 사회단체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함에도 재 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단체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당부함.

6. 시설재난관리과

시정요구

① 구청사 입구 대형 구청안내 입간판 철거이전 검토

구청사 입구 북구청 및 보건소를 알리는 대형 입간판은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접촉사고로 인해 일부 기초부분이 붕괴되어 미관상 저해되고 있으므로 철거 이전 검토바람.

② 각종 공사에 대한 기초설계 등 사전 검토 철저

- 농소1동사무소 설계변경으로 건축공사금액이 변경된 사유가 설계서에는 있으나 설계내역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 기초형식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으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질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③ 풍수해 보험 홍보 철저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은 매우 좋은 시책임에도 가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 수요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여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 바람.

건의사항

① 에너지절약형 생태공공건물 건립관련

생태공공건물 도입 취지는 좋으나 옥상위 인조 잔디 설치 건은 에너지 절약형 생태공공건물 조성취지와는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은 최

소화하시고 오히려 옥상 조경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친환경 소재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② 재해장비 관리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너울성 파도, 집중호우 등 최근 갑작스런 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니 재해장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발생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시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양수기의 경우 방재단에게 사전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검토바람.
- 지역자율 방재단 교육에 있어, 유사시에 대비하여 긴급히 필요한 곳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구청내에 코리아 무전기를 설치한 바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검토바람.

③ 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보완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한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나 시행이후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조기 조치하여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보건소

시정요구

①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 추진철저

-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이 물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환경적 건강등 종합적인 추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도시프로젝트

사업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구청 전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직원 교육 및 나아가 구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부서의 개별사업에 대한 건강의 개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문상 근거라도 남기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② 주요약품 관리 철저

-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주요약품 현황에 있어, 약 4년간의 제출된 자료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약품 배열순서가 틀려서 전년 자료와 현년도 자료를 비교 할 수가 없으므로 향후 자료 제출시 보완 개선하시고,
-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의 이월한 수량과 현재 보유 수량이 전혀 맞지 않으므로 향후 약품관리 및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③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 마련

둘째 자녀 및 셋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 및 세부 지급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 예방 홍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현재 우리 구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며, 향후 손씻기 등 예방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

에 발병했을 경우에도 확산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② **아토피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강화**

아토피클리닉을 비롯한 사업을 올해 5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시행에 이어, 울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동구가 선정되어 약 5천만원의 예산으로 실태조사, 자조모임, 상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는 아토피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우리 구도 아토피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대응 및 아토피 관련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③ **직원 친절도 향상 개선**

작년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 친절도가 최하위였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시적인 친절도 개선이 아닌 항구적이고 친절의식이 꾸준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다양한 봉사활동 실시**

분기별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대외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시책이라 할 것임. 향후에는 보다 봉사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테마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제7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08. 6. 1~ 2009. 5. 31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34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요구가 아닌 항구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고,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05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6건, 건의사항 59건으로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09년 8월 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람.**

제8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시정·건의 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추진중	완결	불가	소계	추진중	완결	불가
계		104	54	21	33	0	50	17	32	1
공 통 사 항		6	3	-	3	-	3	-	3	-
기 획 감 사 실		6	4	3	1	-	2	-	2	-
총무국	총 무 과	14	5	3	2	-	9	3	6	-
	회계정보과	2	1	-	1	-	1	-	1	-
	지방세과	1	1	1	-	-	-	-	-	-
	민원지적과	1	1	-	1	-	-	-	-	-
	환경위생과	7	4	-	4	-	3	1	2	-
생 활 지원국	생활지원과	5	2	1	1	-	3	2	1	-
	사회복지과	5	2	1	1	-	3	1	2	-
	문화홍보과	7	3	3	-	-	4	1	3	-
	환경미화과	8	3	1	2	-	5	2	3	-
	평생교육과	6	3	-	3	-	3	-	3	-
도 시 경제국	도시녹지과	5	2	2	-	-	3	1	1	1
	경제교통과	3	3	1	2	-	-	-	-	-
	건설과	6	5	1	4	-	1	1	-	-
	건축주택과	4	4	1	3	-	-	-	-	-
	농수산과	6	2	-	2	-	4	1	3	-
	시설재난관리과	6	3	2	1	-	3	3	-	-
보 건 소		6	3	1	2	-	3	1	2	-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 시정 요구	**① 예산 변경 사용 자제**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내역과는 다르게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수 있음.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 변경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ㅇ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유의사항 통보** • 일 시 : '09. 1. 21. • 내 용 :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자제요청 **ㅇ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 2009년도 현황(7.31까지) : 7건 251,376천원(전년도 대비 70% 감소)	완결
	② 사회단체보조금 총괄관리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관리하는 다수 부서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실정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 방법 교육이나 지도점검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평가에 있어, 회계처리 적정성 분야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사업비 중 일반수용비와 실제 사업비 투입비율의 일정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주시고, 당초 사회단체 보조 사업 심의 시 신청단체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ㅇ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기 간 - '08. 7. 21 ~ 7. 25, - '09. 1. 12 ~ 1. 16 • 점검내용 -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 이용 여부 및 집행실태 점검 **ㅇ 단체 회계실무자 교육** • 일 시 : '09. 5. 27 • 참석인원 : 총 27명 • 매년 1월경 실시예정 **ㅇ '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및 평가 실시** • 대 상 : 23개단체, 73개사업 (400,971천원) • 중점평가분야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 시 정 요 구		- 정산부문 : 8개항목, 50점 (신용카드 결제비율, 정산서류 구비 여부 등) - 성과부문 : 7개항목, 50점 (사업계획대비 목표달성도, 구정시책 실현정도 등) - (2차)평가결과 □□A·B등급(보조계속가능): 59개 사업 □□C등급(2년 동일 등급지원중단) : 14개 사업 **○ 사회단체 보조금 담당자 회의개최** • 일 시 : '09. 7. 27 • 회의내용 - '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접수 시 당부사항 전달 (신청단체 적정성 확인 철저 및 사업비 위주 사업 신청 등)	완결
	③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 철저 상반기까지 실시한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11회 43명이 다녀왔는데, 당초계획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므로 상반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점은 다소 인정되나,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등 적극 노력바람.	**○ 아이디어 실크로드 추진 활성화** • 상반기 부진사유 - 예산조기집행, 재선거, 직원 한마음 연수 등 • 하반기 아이디어 실크로드 활성화대책 마련 - 하반기 집중시행 기간 운영 : '09. 7. ~ 9월 - 2010년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출장 실시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④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예방 대책 마련**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은 전체예산의 15.43%에 해당하는 금액임.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추세에 있고, 추계를 통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높으므로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추진바람.	○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오차범위를 줄이고, 적기에 예산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①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 최근 언론발표에 의하면 울산시 구·군내 북구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우리 구의 역점시책인 신노사문화 정책 추진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화 하도록 점진적으로 검토바라며,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 추진 바람.	○ 실제 구·군의 비정규직 현황은 남구 329명, 중구 53명, 동구 155명, 울주군 327명, 울산시 119명, 우리 구 230명으로 실제 비정규직 인원은 5개 시·구·군 중 3위로 정규직 직원 수가 타 구·군에 비해 적어 전체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임. ○ 현재 중앙정부의 조직운용 방향은 무기 계약직도 일반직 비율에 맞추어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무기계약직을 증원함에는 어려움이 있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 무기계약직의 경우, 직원 보육수당, 맞춤형복지점수 부여 등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현재 가족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상황 및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 등 점진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② 울산외고 개교 정상추진 내년 3월 울산외고 개교를 위해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계획한 일정대로 개교에 차질이 있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개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당초 계획한 대로 개교가 어렵다면 무리한 공기 단축보다는 순연하는 방안도 강구바람.	○ 울산외고 설립 건축공사 공정률은 5%로 현재 부지정지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10월중 완료 예정이나, 9월중에 부지정지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교사동 신축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울산외고 건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공사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 시정 요구	**①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예산 편성 관련**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에 있어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시에도 의회 차원에서 실시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럼에도, 집행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편성 승인하였음에도 결국 연찬회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사전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며, 출향인사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계획 시에는 면밀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 출향인사 현황도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완결
	②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후 정산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검토결과, 자부담분과 구청 예산 지원분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음.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업무연찬(2009. 8. 13)**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회계처리지침(기배부)에 의거 보조금이 집행·정산되도록 교육 • 동일건으로 사용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사용 금지 •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부분도 간이영수증 첨부 불가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 시정 요구	**③ 객관적인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추진**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결과 조례로 권장한 주민자치위원 여성위원 구성비율을 30% 이상 하도록 된 사항을 지키지 않은 동을 최우수 동으로 선정한바 있음. 향후 평가시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향후 조례상에서 정한 위원 위촉 기준을 준수하여 위촉하기 바람	**○ 주민자치위원 여성 참여율 제고를 위한 동주민센터 공문하달** • 총무과-15007(2009. 8. 11) ○ 향후,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으로 공정한 동주민센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추진중
	④ 통정회의 개선조치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에 있어, 농소1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의 경우 통장 모두가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동의 경우 통장회의 참석대장에 통장 서명 필체가 각기 다르게 서명되어 있었음. 통장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수당이 실제 참석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철저를 위해 동 주민센터 공문하달** • 총무과-12780호(2009. 7. 6) • 총무과-15007(2009. 8. 11) **○ 2009. 8. 12(수) 전동 통장회의 수당 지급실태 점검** • 부당지급 사례 없었음 ○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⑤ 전화친절도 조사방법 개선 및 친절도 향상 노력** 작년에 전화친절도 조사에 있어, 개인별 5회까지 통화조사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교육 등으로 인해 일부 직원의 경우 2회만 통화조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해서는 객관적인 조사 및 결과가 도출 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되며, 향후 친절도 조사 시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친절도 조사보다는 직원 교육을 통한 개선 등 근본적으로 친절도 조사 자체에 대한 실시여부를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전체 직원의 친절도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전화응대 평가”외 고객평가단을 구성하여 “방문평가“나 일정기간 동안의 민원 처리결과를 토대로 민원인을 추출하여 처리한 “민원인이 직접 공무원을 평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1차 고객 의견수렴을 하고, 2차는 공무원 의견수렴으로 개개인의 불만 사항 및 자기 진단서 작성하여 친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할 계획임.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콘도회원권 재계약 검토** 콘도회원권 사용에 있어, 평일과 주말,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배분된 사용일수가 불합리함. 평일보다는 주말, 비성수기보다는 성수기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용실적이 낮은 콘도는 새로운 시설로 섭외하여 재계약하는 등 직원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콘도회원권은 계약 당시부터 법인과 개인별로 일정하게 평일과 주말,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배분된 일수가 정해져 있어 이를 변경하기는 곤란함. 사용실적이 낮은 일성콘도의 경우 계약상 해약은 불가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금액이 현저히 낮아 손해가 너무 큼.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따라서 타 구·군과의 형평성 및 직원복리 증진을 위해 이용 선호도가 높은 콘도회원권 추가 구입을 검토 중에 있음.	추진중
	②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가 최근 급격히 상향조정된 것에 있어,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상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은 인정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전국 지자체 및 관내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 가입시 보다 폭넓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입하여 주시기 바람.	○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향한 것은 공무원노조와의 협상결과와 아울러 우리 구의 경우 인구증가 및 신흥개발지로서의 직원업무 과중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음. 단체보험 설계시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 및 보험상품 선택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추진중
	③ 구청사 각종 기 게양 검토 현재 우리구 청사 게양대에 태극기와 구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타 구의 경우에는 새마을기, 민방위기가 게양되어 있음. 우리 구도 대외 위상을 고려하여 새마을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구청사 새마을기 게양 건의에 따른 검토 보고 : '09. 8. 20 •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각급기관 및 단체의 장이 국민의 정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새마을기 게양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하였음. ○ 의회기 게양 : '09. 8. 24. 우리 구는 의회청사가 별도로 있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따라서, 현재 4개의 게양대에 태극기, 구기, 의회기, 브랜드슬로건기가 게양되어 있음	완결
	④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행정자료실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약 4,000권에 달하고, 전문서적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1일 이용건수가 2~3회에 불과 하는 등 현재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므로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우리구에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농소1·3동, 기적의 도서관이 있어 일반도서는 도서관을 이용하고, 행정자료실에는 전문도서를 주로 비치함으로써 이용률이 저조함. ○ 향후, 직원 도서 추천시 일반도서도 함께 추천토록 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공무원 연구모임 토론장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⑤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 적십자회비 징수를 위한 동별 목표액 달성을 위해 동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적십자회비 유공자 표창 및 선진지 견학에 동직원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적절한 안배를 하겠음 ※ 2009년 대한적십자 총재 및 지사장 표창 추천 : 전동 골고루 추천(직원, 통장)	완결
	⑥ 명촌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관련 추가보수 건의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된 명촌문화센터 장애인편의시설	○ 명촌문화센터 장애인 주차장 배수불량에 대해 건설과에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보강 개선되었으나, 확인결과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배수가 안되므로 보수 조치요망	보수 조치토록 협의요청	추진중
	⑦ 현장방문 회의 운영 활성화 현장방문 회의 실적이 동별로 많이 차이가 나므로, 현 시점에서 현장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	○ 현장방문 통장회의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공문(2009.7.28.)으로 지도하였으며, ○ 8.12 동별 방문점검을 통해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지도하였음	완결
	⑧ 업무대행공무원 수당 지급 검토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따라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업무보조의 역할에 한정되므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업무대행 수당에 대하여는 2010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겠으며, ○ 기간제 근로자 대체 근무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⑨ 시책 등의 홍보를 위한 앰프시설 설치 마을회관 앰프시설 및 공동주택앰프시설을 통하여 각종 시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홍보 수단이 없으므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는 앰프시설을 설치	○앰프시설이 불량하거나 미설치된 곳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 설치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회 계 정보과 □□ 시정 요구	**① 관용차량 관리 철저** 차량 관리에 있어, 세차를 통해 관용차량 내·외부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일주일에 한번씩 세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음. 세차 횟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종 부품 및 소수리 정비 가격도 현실성 있는 단가를 설정해야 할 것임. 대당 평균 년간 약200만원 정도 수리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차량 노후로 인해 수리가격이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폐차 등 불용처리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관용차량 유지 관리계획 수립** **(회계정보과-23869, 2009. 8. 21)** • 차량유지관리계획 전실과시달 • 세차 기준 설정 - 의전용 : 월 2회 (사정에 따라 수시 가능) - 일반 : 월 1회 단, 하절기(6월 ~ 9월)는 잦은 우천으로 기상상태에 따라 탄력적 적용 • 소수리비단가계약체결 철저 -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조사 철저 • 노후차량 불용처리 : 2대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른 대책**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라 우리 구 소재 업체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음. 지난 구·군 의회 의장단에서 몇 차례 논의가 되었고,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음. 적극적인 대책 수립은 물론 집행부에서 울주군에 협조 요청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북구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비율을 높이기 바람.	○ 울주군을 제외한 4개구의 기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공동의 문제임 • '08. 12. 8 :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4개구 공동으로 철회요구 • '08. 3. 25, 6. 23 : 구·군의장단협의회에서 4개구 공동으로 철회요구 • 4개 구와 연계하여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음 ○ 우리 구 소재 우수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 비율을 높이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지방세과 □□ 시정요구	**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해마다 세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특히 과태료)에 대한 고의적 납부기피 의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체납누적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집중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경제교통과의 경우 자체정리계획을 수립, 직원징수할당제 및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등 일제정리 실시 ○ 특히 금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하여 당초목표액 1,208백만원보다 초과된 1,448백만원을 정리하여 체납액 정리에 기여 ○ 9월에는 과년도분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시달하여 고질체납 및 징수불능분 집중 정리 예정 ○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납부의식 개선 및 각 실·과에서 체납액 관리·정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할 것임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민 원 지적과 □□ 건의 사항	**①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실내에 각종 민원 편의시설, 조경, 인테리어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시설물로 인해 오히려 민원인으로 하여금 복잡한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단순미'도 강조되는 환경개선은 물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민원대에 비치되어 있는 작은 화분은 민원 안내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재배치 하였고 ○ 민원실 각종 편의시설물 및 화분은 방문민원인에게 산뜻한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주1회 이상 점검 관리토록 하겠으며 ○ 장애인 민원편의를 위하여 보청기 1대, 화상전화기 1대, 컴퓨터 화면 확대기 1대를 추가 비치하였고 ○ 민원안내를 위해 장애인 전담 도우미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	추진중
환 경 위생과 □□ 시정 요구	**① 사회단체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철저**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성격이 다소 맞지 않다고 판단됨. 5개의 사업이 한 개의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어 사업간 구분이 안되고 있고, 두 달간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정산을 연말에 하는 부분, 당초 사업계획과 정산내역이 상이한 부분 등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므로 향후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에 철저바람.	○ 보조사업 단체에 대하여 사업집행 및 정산 이행 철저토록 안내(2009. 8. 21) ○ 향후 사회단체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 경 위생과 □□ 시정 요구	**②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철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 사항에 있어, 북구 차량대수는 68,496대로 1.5%에 해당하는 1,056대의 차량만 점검을 하였는데, 점검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실질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 정부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이후, 장마, 하계휴가, 을지훈련실시 등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9~10월 중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여 점검실적을 높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③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있어 여러 단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단체 1하천, 1학교 1하천, 1아파트 1하천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등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하천변 인근 학교의 참여는 거의 전무함. 봉사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하천별 네크워크 활성화, 체계적인 관리 강화, 참여단체 평가 및 인센티브 등을 시행하여 학교, 아파트, 기업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특히, 북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④ 모범음식업소 선정 관련 관내 모범음식업소 선정에 있어 각 전문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업소 선정	○ 『모범업소세부지정기준』에 화장실 위생상태(에어 및 종이타올 설치 등)를 권장사항으로 삽입하여 신규 및 기존 모범음식점 재심사 시 반영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 경 위생과 □□ 시정 요구	기준(예를 들어 화장실내 에어타올 또는 종이타올 비치)에 맞게 선정하는 절차를 도입하시고 불법광고물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음식업소가 모범음식업소로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바람.	○ 모범음식점 지정 시 옥외광고물관리법 저촉여부를 확인 후 지정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①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적정 관리**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 공신력을 높여 주시고, 검사결과 계속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 상수도 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고, 특히 수질검사 시기 준수 및 간이상수도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북구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 부적합 판정이 잦은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안전한 시 상수도를 사용토록 주민홍보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주기 : 3개월) 실시하고 있으나 빗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채수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며 약수터의 경우 2/4분기 수질검사를 기온이 높아지는 6월에 실시토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검사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나 가능한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중식 음식업소 관리 방안 강구** 관내 중국음식점의 경우, 거의 배달업을 주로 하므로 소비자가 직접 위생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거의 없음. 따라서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인증제를 참고로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바람.	○ 우리 구 소재 중식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후 위생인증제 또는 업소별 위생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방안 검토	추진중
	③ 오존주의보 및 경보발령시 조치사항 홍보 최근 기상이변으로 오존주의보 및 경보발령 빈도가 잦고, 계속적으로도 발령 가능성이 높음.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들에게 적절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경로당, 관내 통·반장 선까지 바로 전파 및 홍보될 수 있도록 건의함.	○ 오존주의보 발령 시, 우리시 전체의 통보대상은 정부·언론·유관기관, 관공서, 군부대, 도서관, 백화점, 병원, 다중이용시설, 유치원(유아원), 학교, 기업체 등 517개소에 대하여 발령사항을 FAX로 상시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10,000여명에게도 발령사항을 홍보하고 있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생 활 지원과 □□ 시정 요구	**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철저** 정부 방침에 따라 선정된 희망근로자 선정기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가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향후 저소득층이 신청할 경우 희망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 대부분이 청소업무 등 1회성 업무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생산성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	○ 8.19일 현재 근로인원이 815여명이며, 그 중에 최저생계비 120%이하가 469명이 근로중이며,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대체코자 차상위계층자만 신청받아 우선 선정 배정하고 있음 ○ 동천서로 명품자전거조성, 주제가 있는 등산로 만들기, 도시디자인 개선 사업 등 12개를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상황점검 보고회 개최, 간부공무원 및 자생단체 현장체험 등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주민편익적인 사업 위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음	추진중
	② 복지정책 평가에 따른 복지정책 제고 2008년 복지정책 평가결과 전국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므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복지총괄 부문과 아동복지, 지역사회서비스 부문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복지향상에 대한 고민과	○ 계획 수립시 대표·실무 협의체 위원 및 관계자의 적극 참여 유도하고 ○ 1차년도 계획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욕구파악 및 지역현안,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복지정책 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람.	확보하여 전문 용역을 실시 2차년 계획수립이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① 보훈 5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단체 중 보훈 5단체는 조국을 위해 몸 바친 회원이거나 유족인 동시에 거의 모든 회원이 원로하므로 엄격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도 필요하겠지만, 행사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넉넉하게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보훈 5단체의 경우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검토시 현재 사업비 위주의 계획서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서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비보다 운영비를 좀더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예정임	추진중
	②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활성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하여 인터넷 활용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음. 소통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내에 자유게시판을 신설 검토 바람.	○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 메뉴에 자원 봉사활동 자유게시판을 추가하여 방문회원간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사항	**③ 지역자활센터 관리방안 마련** 최근 문제가 된 우리 구의 지역자활센터의 비리 관련 지역자활센터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청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자율에 의한 관리보다는 구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방안도 강구 바람.	**ㅇ 자활센터 관리책임 강화** • 운 영 : 구청 직영 ※ 2009. 4. 24부터 • 센터장 : 구청 생활보장담당 역할 대행 • 관리방법 : 자활센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구청에서 관장 관리 **ㅇ 자활공동체 지원계획** • 지자체 시행사업 우선 위탁 : 청소, 재활용선별 등 • 공동체 생산품 우선 구매 : 홍삼, 칡즙 엑기스 등 • 공동체 창업시 초기자금 지원 : 인건비, 운영비 등 • 자활사업자금 융자 : 신청자에 한함 • 공동체 운영실태 정기 지도·점검 : 행정지원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시정 요구	**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 주간 행사 추진** 금번 행사시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위주의 참여하였음. 내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여성단체가 참여하여 공유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함.	○ 2010년 여성주간행사 개최 시 북구의 다양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으며 ○ 매년 봉사부분에 한정된 수상자를 여성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② 어린이날 행사 보조금 집행철저 어린이날 행사관련 보조금을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가 이벤트 회사로 재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므로 향후에는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주던지 재 위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2009년 어린이날 행사는 무대설치, 천막임대, 당일 무대행사는 이벤트사가 진행 하였으나 무대행사외의 프로그램은 주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및 운영하였음. ○ 주관단체가 행사 진행 후, 보조금 정산시 분야별 집행이 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보조금 정산 검토를 통하여 어린이날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① 청사내 장애인주차장 적정관리** 직원 및 관용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구청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므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청사내 장애인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관련부서 및 전부서 협조공문 발송하여 청사 장애인주차구역 내 주차금지 조치 (2009. 8. 14.) - 시설재난관리과 : 청사주차장 단속 협조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회계정보과 : 관용차량 장애인주차장 주차금지 협조 ○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청사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하고 있음.	완결
	②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 향후 예산편성 시 경로당 개·보수비에 있어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기 바라며, 경로당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2층에 소재한 경로당을 조사하여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바람. ○ 화정경로당 및 중리경로당의 경우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부족 및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경로당 개·보수비 증액 편성 요구 - 2009년 3회 추경과 2010년 당초예산에 경로당 개·보수비를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2층 소재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 - 공동주택 내 경로당(4개소)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토록 통보(2009. 8.17.) - 율동경로당은 추경예산 확보하여 미끄럼방지 타일, 난간대 등 편의시설 설치 예정 ○ 중리경로당 및 화정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중리경로당은 계단양쪽 핸드레일 설치 및 화장실 대·소변기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완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화정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강공사 예정(2009.10월중)	추진중
	③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간부공무원의 교육 참석율이 매우 저조함. 2008년의 경우 12명이 불참하여 참석률이 35%에 불과함. 성희롱 예방교육의 주관부서를 총무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교육이수에 대한 의무사항여부를 떠나 부서의 장이므로 교육 참석율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2009년 10월경 전문가를 초빙하여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예방지침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에 사회복지과장이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등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여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가 타당함	추진중
문화홍보과 □□ 시정요구	**① 마애여래좌상 등 지정문화재 관리 철저** 작년에도 지적한 문화재 관리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마애여래좌상은 市 지정문화재임에도 우리 구가 전적으로 관리한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마애여래좌상 훼손 등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 되고 시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문화재 관리권한이 구로 위임되어 있어 관리업무 및 예산편성은 불가피하며 시에도 수차례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지난 6월 특별교부금을 받아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보상 중임.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문 화 홍보과 □□ 시정 요구	**② 어린이전용 풋살구장 관리철저** 어린이 전용 풋살구장은 어른들이 대다수 사용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특히 인조잔디가 담뱃불 등으로 훼손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음. 향후 개장하는 구장 뿐만 아니라 운영중인 풋살 구장에 대해서는 훼손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북구생활체육협의회 풋살경기장 관리 협조 요청 공문통지 ○ 구청, 생활체육협의회, 동 자생단체의 지속적인 순찰 및 안내판 설치 등 풋살구장 훼손방지를 위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반기 보수 공사시 정비토록 하겠음.	완결
	③ 연암동 교량하부 및 신현동 교량하부 체육시설 운영관련 ○ 휴일에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고, 희망근로자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바람 ○ 우천시 빗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고, 바닥재질, 조명 등 시설전반에 대해 보강 수리하여 주시기 바람 ○ 동호회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주민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교량하부 체육시설이 모든 구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접근하기 쉬운 체육시설이 되도록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리방안을 재검토하겠으며, ○ 교량하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해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 시설물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신규설치는 2010당초 예산에 반영,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 용역관련** 중간보고회시 보완할 사항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시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임. 제시된 의견중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라도 국도 31호선 관광테마로드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중간보고회시 제시된 의견들은 대부분 반영하였고, 대규모 사업이라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진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단계적 사업추진 시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겠음.	추진중
	② 지역 축제에 대한 재정비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가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있으며,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축제가 있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개최시기를 통일하는 방안이나 우리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우리구에는 강동해변 해맞이 축제, 강동 수산물축제, 울산 쇠부리축제, 강동해변축제와 같은 종합축제와 무용예술제, 시노래축제 등 각종 공연행사, 꽃 전시회, 기박산성 의병제가 있음. 축제가 모두 지역과 계절의 특성에 맞게 개최되고 있어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으나, 각종 공연이나 전시위주의 행사를 종합축제와 함께 개최하여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③ 청소년 문화사업 확대** 타구에 비해 북구지역에 청소년 시설 설치가 열악한 가운데, 더구나 농소권에는 더욱 열악하므로 농소권에 청소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나아가 청소년 문화 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청소년 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 설치는 관련법에 의거 접근성이 뛰어난 상업지역 등에 건립해야 하는바 부지 매입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이며, ○ 현재 울산 5개 구군 중 우리 구만 개최하고 있는 청소년축제 외에도 청소년 문화행사, 청소년 축구대회 등 청소년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중
	④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개설운영 건의 생체협이 종목별로 어느 정도 회원이 구성되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회원간 의사소통의 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따라서 체육시설예약시스템과 연계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불가능하다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현재 체육시설예약시스템에 북구 생체협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회원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유게시판』을 설치하도록 시스템 관리부서인 시설재난관리과에 요청하였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끈달린 종량제봉투 개선** 끈달린 봉투에 대한 주민 불만사항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사용은 편하다는 것은 다수가 공감하나, 봉투가 많이 찢어진다는 민원이 다수임. 과연 사용방법이 서툴러서 찢어지는 것인지, 봉투 재질에 대한 문제인지, 이음새에 대한 문제인지 등 민원 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하기 바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종량제봉투에 표시된 글씨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앞면의 표시방법을 명칭과 용량을 나타내는 부분의 글씨크기는 줄이고 배출시간과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새로운 동판 제작시 개선하지 못한 점은 향후 새로운 동판 제작 시 적극 반영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끈달린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 간담회 개최 • 일시 : 2009.7.24(금) 11:00 • 장소 : 환경미화과 사무실 • 참석자 : 총 4명 - 구청 : 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담당, 담당자 - 업체 : 광촉매환경(주) 대표이사 서정걸 • 내용 : 종량제봉투 개선방안 검토 ○ 끈달린 종량제봉투 개선방안 요청 공문 발송 (2009.7.24)	추진중
	② 객관적인 동 청소행정 평가 및 우수사례 전파 확산 매년 실시하는 동 청소행정 동별 평가에 있어 우수사례가 반영되어 청소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평가순위에만 치중되어	○ 서면평가 1회 실시 • 11월말경 동별 청소행정 사례 등 자료수집 및 종합평가 → 우수사례 전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면적 등 동별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 동의 시책이 타 동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서면평가 1회 실시 • 11월말경 동별 청소행정 사례 등 자료수집 및 종합평가 → 우수사례 전파	추진중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 철저 구청과 청소대행업체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구청은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느슨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관리하기 바라며, 업체의 노사분규 발생시 구청에서도 중재의 역할 방안이 없는지 강구바람	○ 청소대행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병과 처벌할 것이며, 향후 위탁계약시 그에 적정한 조치(불이익 등)를 취하겠음. ○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분기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하겠음. ○ 업체의 노사분규 발생시 구청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주민지원기금(17억원)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 활용계획 수립**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의 여건상 더 이상 적립이 어려울 것임. 17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활용 계획, 폐쇄 후의 음식물 자원화시설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시설의 가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음으로 기금 관련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으며, 시설의 활용계획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우리구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 시 주민협의 후 결정할 것임	추진중
	②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산정용역 철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용역에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행료가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현지실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용역시 반드시 현지실사를 거쳐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원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집·운반의 전반적 여건을 감안한 객관적인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결
	③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 건의 - 배출장소에 근무하는 감시요원이 있을 경우에는 배출질서가 잘 지켜지나, 관리자가 없으면 배출체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출시간대 조정에 대한 검토와	○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 환경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배출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배출시간이 밤9시 ~다음날	불가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6시까지이긴 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 현시간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담됨.	
	- 진장 · 명촌지역에 재활용배출장소가 없으므로 배출장소 지정 검토 요망	○ 진장·명촌지역은 개발중인 지역으로 공식적인 배출장소는 지정하지는 못했지만 차량 진입이 가능한곳은 문전수거를 해오고 있으므로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재활용 배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편의성이 있음. 향후 구획정리가 정비되면 재활용 배출장소를 정식적으로 지정할 계획임	완결
	- 주민 자치회, 아파트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선별체험 검토 요망	○ 재활용 선별체험 대상자의 다양성 확보를 단체별, 공동주택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추진중
	④ 불법투기쓰레기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62건에 5,484천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작년 행감자료의 경우 작년 실적은 163건에 12,690천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해는 작년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불법투기 쓰레기가	○ 전문신고꾼(쓰파라치)에 의한 신고가 2007년 86건(46%), 2008년 13건(17%)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 투기자들이 지능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시 인적사항 등 적발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거하고 투기함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없어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면 향후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향후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과 주민신고 활성화로 불법투기를 억제하고, 상설단속반 지속운영 및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확대 운영으로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⑤ 공용마대 관리 쓰레기 마대가 무분별하게 배부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공용마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공용마대 배부대장 작성 및 배부시 사용목적 확인으로 공용마대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 공용마대 사용 시 준수사항 각 실·과·소·동에 통보→ 준수사항 불이행시 공용마대 미수거	완결
평생교육과 □□ 시정요구	**① 제3대학 운영 철저** 제3대학의 당초 운영 취지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에 학생 모집할 경우 기간내 모집인력이 부족하여 대상 연령을 5세 낮추는 등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투입대비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기 바람.	○ 2010학년도 학사운영계획 시 시정요구내용이 전반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 추진하고자 함 • 제3대학 학과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대학교, 연구원 등)과 협의하여, 학사일정 동안 수료증 또는 자격증 과정 진행 검토 추진 • 제3대학의 동아리의 경우, 기존의 취미·교양 동아리는 만족도와 참여도는 높으나,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제3대학의 설립취지에 좀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학과 운영과 연계 추진 • 또한, 2년간의 운영을 바탕으로 제3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도 계속 검토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② 북스타트 운동 활성화 추진 어릴 때부터 올바른 책읽기 습관을 유도하는 취지인데,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하고자 해도 신청 후 바로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너무 획일적이므로 도서관별로 특성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2010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확대 운영 추진하고자 함 • 2010년도 예산편성 시 북스타트데이를 도서관별 주1회 운영으로 확대 추진(책 꾸러미 구입비, 강사수당 등 반영) • 영아와 엄마가 함께하는 '음악놀이' '놀이미술' '동화구연' '종이놀이' '부모교육특강' 등 도서관별 다양한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추진중
	③ 중앙도서관 시설 관리 철저 중앙도서관 입구 안내 메인부스는 설치되어 있으나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방문객의 오해소지가 있고, 소화기 비치 문제, 대출자 및 일시 방문객 위주의	**○ 안내데스크 인력배치** • 중앙도서관 안내데스크 운영은 방문인원이 많고, 다수의 행사로 인해 안내가 필요할 시, 직원이 상주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사물함으로 개선조치가 필요하고 야외 옥상 테이블의 노후로 따른 교체 필요, 식당 테이블의 낙서, 분리수거 용기 미비치 등 시설 내부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으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ㅇ **소화기 배치안내** • 영유아실의 소화기는 도서관 이용자의 눈에 잘 들어오는 장소에 재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초동대처 할 수 있도록 조치함 ㅇ **사물함 운영** • 대출자 및 일시 방문객을 위한 사물함은 각 자료실(종합·어린이)별로 10개씩 비치되어 있는 사물함으로 충분히 수용가능하므로 현 운영대로 계속 운영하고자 함 •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이 있을 시 개선하도록 하겠음 ㅇ **야외옥상 테이블 교체** • 야외 테이블의 내구연한이 만료되고, 훼손이 더욱더 심해지면 실외비치에 적합한 테이블로 교체하도록 하겠음 ㅇ **식당테이블 낙서** • 향후 식당 테이블이 파손 또는 훼손 시, 낙서를 하더라도 유지·관리가 쉬운 재질로 교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ㅇ **분리수거함 비치** • 현재 북카페 내 분리수거함을 비치하기에는 이용자가 다소 불편할 수 있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 북까페 이용자들이 사용한 컵라면 봉지 등은 주방공간내에 설치된 쓰레기통에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 기타 재활용품은 3층 로비에 있는 분리수거함을 이용하도록 지속적 홍보 등으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① 평생학습도시 선정추진 노력 및 평생학습 이해도 제고 노력** 우리 구에서 의욕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중요하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자 함 • 평생학습 구민 요구조사를 통한 여론수렴 및 학습자 지향적 평생학습정책 개발 • 평생교육센터 주요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소식지 발행 추진 등을 통해 사업의 친밀성과 만족도 제고 •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추진으로 평생학습문화에 대한 주민체감도 증대 등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도서관 상호대차 제도 도입검토** 현재 우리 구의 도서관에 보유중인 도서 대출율이 극히 저조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 특성화 제고 및 주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도서관 상호대차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시책은 부천시, 서울 강남, 김해시 등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전면 시행이 당장 어렵다면 중앙도서관과 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간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를 2010년 신규시책으로 우선 추진(중앙도서관) ○ 2010년 염포·양정 권역별 도서관에 기본장서를 비치하여 운영하면서, 책바다 운영 결과를 검토하여 2011년에 우리구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중
	③ 도서관 자원봉사 제도의 여성 시책사업 참여 검토 도서관 자원봉사 교육과 활동은 매우 좋은 정책이므로 여성시책 사업으로 참여 건의	○ 사회복지과 등에서 여성시책사업 추진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추진 • 울산광역시의 Best Ulsan 시책과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추진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자원봉사자(희망자 포함)에 대한 사서도우미과정 개설·운영, 독서동아리 참여 활성화 방안 등 자원봉사에 따른 인센티브가 강화될 수 있도록 2010년 업무계획 등 검토 시 반영 추진	추진중
도시녹지과 □□ 시정요구	**① 학교공원화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사후관리 철저** 학교입장에서는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병행하여 설치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수요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람.	○ 2010년도 학교 공원화 사업추진시 공원화 사업 대상학교 인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수요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활용도를 높일 것이며, ○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상시 관리토록 하겠음.	완결
	② 천마산 등산로 및 상안 어린이공원 보수 천마산 등산로 정비공사 및 상안어린이 공원 조성 공사이후 현장 확인결과 많은 하자가 있으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하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천마산 등산로 정비공사 하자조치** 침목계단주변 물고임 해소를 위한 배수로설치완료, 등산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 및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 시 녹지과 □□ 시정 요구		그루터기 제거완료, 108계단 구간 및 천마산 등산로 급경사지 계단 추가설치완료, 육각정자 의자 받침대 추가설치완료, 관문성~선창골 구간 묘지옆 방향표지판 위치이동 완료, 이화마을, 현대글로리아APT, 삼태봉 연결 등산로 정비완료(동대산 맨발숲길 조성공사에 반영조치), 그린카운티 뒷산 주민쉼터 조성 및 천마산 정상부 비석정비, 주민편의시설 추가설치는 2010년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시 반영조치 ○ 상안 어린이공원 보수 • 하자 검사 : 7. 17(금) • 하자내용 및 처리계획 - 꽃댕강나무 2,000본 고사 ⇒ 8. 20(목) 처리 완료 - 느티나무 외 4종 305본 고사 ⇒ 8. 21(금) 하자 보식 완료 - 체육시설물 기초흔들림 하자 ⇒ 8. 27(목) 완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화봉제6어린이 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 화봉제6어린이 공원의 경우 공중화장실이 없어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이용객이 화장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화장실 설치 건의가 있으므로 현장조사 후 설치 검토 바람.	○ 화봉 제6어린이공원은 공원이 협소하여 화장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인근 화봉 제2근린공원, 중앙 도서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겠음.	불가
	② 관내 공원에 대한 고유명칭 부여 택지내 각종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 숫자로 부여되어 관리됨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혼선이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명칭이나 공원의 특성에 맞게 고유명칭을 부여 건의	○ 도시녹지과-14200(2009.7.20)에 의거하여 전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공원명칭 변경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중이며, ○ 2009년 10월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공원 명칭 변경 계획임.	추진중
	③ 주민참여감독제도 운영 확대 주민참여감독 공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 주민 참여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록 법적으로 주민참여 감독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을 지라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사 성격상 주민참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입여부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공유지 도시숲 조성 등 도심지내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사인 경우 등에 주민참여 감독 제도를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민 원 지적과 □□ (건의)	**④ 구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우리구의 경우 예산절감 및 민원안내 효과성 때문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았다면 창구 앞 직원들에 대한 친절 및 안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이 거리낌없이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민원 응대요령 및 친절교육실시** ○ 일 시 : 2007. 8. 22(수) 17:30 ~ 18:00 ○ 참석인원 : 총22명 ○ 강 사 : 민원지적과장 ○ 교육내용 - 업무연찬을 통한 전직원 민원도우미로서 응대요령 및 친절교육 실시 -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과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 * 매월 친절교육 실시 예정	완결
경 제 교통과 □□ 건의 사항	**① 화물차량 주차 단속 및 시설 보강 건의** 현재 밤샘 주차단속을 매일 같이 할 수 없는 실정은 이해가 되나 매곡산업단지 진입구간, 쌍용아진 목요장터 구간 등 화물차의 장기 주차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쌍용아진 목요장터 구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양성화하는 방안 마련과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 안전봉 설치 검토 요망	○ 매곡공영주차장(매곡천변) 및 쌍용아진@ 주변 등 민원발생지역 중심으로 밤샘주차 계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음 ○ 쌍용아진2·3차아파트 사이 노상주차장 설치는 관리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음 ○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매곡현대아파트 일원) 차선규제봉 설치 건은 예산(3차 추경) 확보 후 설치토록 검토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경 제 교통과 □□ 건의 사항	**② 스쿨존사업 추진관련** 신천초·천곡초등학교에 실시한 스쿨존 사업의 경우 수벽 설치 후 수종이 고사하였는데, 이는 수종 선정과 심는 시기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종 선정 및 심는 심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바람.	○ 향후 수벽을 설치할 경우 수목 선정, 식재시기 등은 관련 부서(도시녹지과)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 고사한 수목은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식재 시기는 나무가 잘 생육할 수 있는 10월경에 재식재토록 하겠음	추진중
	③ 국제교류 추진시 사전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및 정보공유 건의	○ 국제교류 추진 시 새로운 추진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하겠으며, 의회와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음	완결
건설과 □□ 시정 요구	**① 자전거도로 볼라드 정비 및 디자인 재검토** - 신상안교 구간의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된 볼라드가 야광효과가 전혀 없고 미관상 맞지 않으므로 디자인을 재검토 - 화봉구간의 경우에는 볼라드가 너무 낮아 통행하는 학생의 안전사고도 우려되므로 조치 및 향후 설치되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보완	○ 볼라드 설치 규정에 의거 미관 및 성능 등이 우수한 볼라드로 연차적으로 교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연차적으로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한 볼라드로 교체 설치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설과 □□ 시정 요구	**② 자전거도로 포장 재질 선정** 자전거 도로 개설에 있어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의 문제로 인해 배수가 안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포장에 사용되는 재질 선택에 있어 도로 기능 및 인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택	○ 향후 자전거도로 개설 시 도로 기능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포장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하겠음	완결
	③ 자전거도로 보수 및 노후된 인도블럭 교체 최근 개설된 신상안교 ~ 시례, 홈플러스 마트 ~ 코아루아파트의 자전거 도로 구간 곳곳에 도로 침하, 배수 불량, 경계석 이격 등 전반적인 부실 시공된 부분이 많으므로 조치하고, 쌍용아진 주변 노후 된 인도블럭교체 바람	○ 본공사에서 발생한 배수 불량 및 경계석 이격 등은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8월말까지 보수 완료하겠음 ○ 쌍용아진 주변의 노후된 보도블럭은 도로 관리청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수차례 보수건의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차 건의하여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행되지 않을 시 자체 보수조치 하겠음	추진중
	④ 자전거도로 개설 방향 검토 철저 자전거 도로가 과연 필요한 지역인지, 주택가 밀집지역인지, 인도 폭이 얼마나 되는지, 전주	○ 관내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라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이설이 필요한지 등 자전거도로 개설이전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 자전거도로 개설 시공 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 및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추진중
	⑤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자전거 보관대 관리 철저 (잡초, 쓰레기 등 방치)	○ 희망근로 및 도로수로원 등을 활용하여 자전거보관대 잡초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음	완결
	- 천곡천 및 21세기병원앞 하천 오염 원인분석 및 개선	○ 천곡천 일원 중 대동@입구 사거리 주변은 광역시에서 방어진처리구역(농소)지선관거 부설공사를 시행하여 우·오수분리작업중에 있어 2011년 2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으며 ○ 홈플러스 주변 배수암거는 우수토실 설치는 되어 있으나 일부 오수가 흘러나오고 있어 CCTV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 오접된 오수관로를 정비할 예정임 ○ 21세기병원 앞 하천(수성천)은 인근지역 우·오수 미분리 지역으로 가정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방어진처리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구역(농소)지선관거 부설공사 예정지역으로 인근 대단위 아파트 및 가정오수관 차집이 계획되어 있어 2011년 2월이후 수성천으로 유입되는 오수가 차단되면 하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북구) - 합류식 마을하수도 토구 2개소 차집완료 - 수성천 복개박스 준설공사 추진중(40백만원/9월 착공예정)	추진중
	- 신상안교 서편 하부 오수집수정에 악취가 너무 심하므로 뚜껑을 설치하는 방안 등 조사 후 조치바람	○ 신상안교 하부 자전거도로와 인접하여 동천 오수차집관로에 연결되는 우수토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상시 상안동 우·오수 미분리지역에서 나오는 가정오수, 천곡동 쌍용아진아파트 오수가 우수토실을 통해 동천 오수차집관로에 연결되어 있음 ○ 우수토실은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시 하수관리과에 악취차단에 대하여 건의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 신상안교 하부도로 반파되어 작년 행감에도 지적하였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었으므로 보수 요망	○ 보수공사 완료 • 기간 : '09. 8. 3 ~ 4 • 내용 : 잡석 뒷채움 및 철근콘크리트 보강 • 공사금액 : 5,000천원	완결
	- 천곡교 하부도로 자전거도로 개설 건의	○ 천곡교 하부 자전거도로 개설 은향후 예산확보하여 조치코자 함	추진중
	- 농소3동 목요장터 노점상 단속	○ 아파트 단지 내 노점상 단속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과 단속 인력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하지만 시간대별 집중단속 등과 같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 중산동 백산아파트 진입로 배수로 정비, 신천굴다리 하부도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상안동 새터마을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상안동 오리사냥 식당 입구변 도로 부분포장 요망	○ 중산동 백산아파트 진입로배수로 정비 • 보수공사 예정 (공사기간 : 8. 31 ~ 9. 11) ○ 신천 굴다리 하부도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 보수공사 예정 (공사기간 : 8. 24 ~ 8. 31)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요구		○ 새터마을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 배수로 정비 공사 및 파손부분 복구 (공사기간 : 8. 20 ~ 8. 28) ○ 상안동 오리사냥 식당 입구변 도로 부분포장 • 도로파손부분 보수완료	추진중
건의사항	**①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 개설 관련** 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울산 외고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 신소재, 다양한 공법 등을 통해 차별화되고 자랑할만한 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	○ 친환경 소재의 합성목재 데크를 보도 소재로 계획하고 있으며, ○ 곡선화 도로의 잔여부지를 활용한 소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신공법, 신소재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완결
건 축 주택과 □□ 건의사항	**① 굴다리 벽화도색 사업 개선** 부산 안창마을, 양산 등 벽화도색 사업의 경우 주민생활에 친숙한 도안인 가운데 주민참여형으로 시도된 사업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현재 주민참여형 벽화그리기 사업을 위해 각 동에서 장소 및 참여희망자 접수를 받았으며, 향후 주민생활과 연관된 도안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추진중
	② 벽화사업 대상지 추가도색 및 보강 건의 - 연암3통마을 입구 도색부분 오염 - 갓안마을 입구 빗물누수로 오염	○ 벽화오염 부분은 정비할 계획이며,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리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주택과 □□ 건의 사항	- 이화천 옆 굴다리 벽면도색 누락부분 도색건의 - 약수천 굴다리 벽면 도색 누락부분 도색건의	청인 철도시설 관리공단에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도색 일부 누락 부분은 현장 확인 후 주민참여형 벽화그리기를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중
	③ 광고 간판 디자인 정비 지원 건의 서울의 경우 도시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인증된 디자인에 대해 예산지원을 통해 깨끗한 이미지 도시경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 구도 이러한 지원사업의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전체 광고물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강동 지역의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사업 추진시 간판 디자인 및 설치비를 지원하여 강동 지역을 우선으로 정비 할 계획임.	추진중
	④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건축심의 등 사전심의 강화 SSM(슈퍼슈퍼마켓)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SSM의 건축허가 등 허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전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건축법상 SSM에 대한 제한 권한이 없어 관련부서 협조** - 경제교통과 : 유통산업 발전법 운영 관리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 요구 - 市도시계획과·도시녹지과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판매시설규모 축소 및 제도개선 건의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농수산과 □□ 시정 요구	**① 강동수산물 축제 협찬업체 참가 자제** 올해 강동수산물 축제가 3회째 개최되었는데, 행사장 곳곳에 협찬업체의 각종 광고행위는 축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람.	○ 강동 수산물 축제시 홍보부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무료시음회를 한다고 협조를 구하여 협찬 부스를 배정 하였으나, 축제에 걸맞지 않게 되었음. 향후 축제 추진시 협찬부스의 선정(심사)를 철저히 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추진중
	②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강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소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홍보와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을 건의하였음.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에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과 수거 검사를 하여 주시고 기 구성되어 있는 TF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람	○ 현재 TF-팀은 농협과 구 관련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농관원 : 판매업소, 구 : 포장처리업소 월1회 DNA동일성 검사 의뢰), 수입농산물은 유통과정을 점검관리하여 단속함으로 원산지 표시제 위반을 방지하고 있음 ○ 내년도에는 TF-팀의 확대구성과 수거검사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도단속과 수거검사를 보다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① 양수장 이용 전기사용료 지원 검토** 농민들이 사용하는 양수장 및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시 사용한 전기료 납부에 있어 현재 농민들이 부담하고 하고 있는데 전액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구청에서 직접 관리지원 하는 수리시설 외 농업인들이 관리하는 수리시설에 대한 전기세 등의 지원 가능사항 검토중	추진중
	② 당사동 어장 백화현상 극복 지원 당사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주관으로 백화현상 극복을 위한 '다시마 해중림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향후 사업효과 분석 후 국·시비 예산 확보를 통한 예산 지원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해중림 조성은 당사어촌계와 어물어촌계에서 소규모로 자체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 울산시의 해중림 조성사업은 국립 수산과학원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중이며, 2008년 당사어촌계를 시설완료하고 현재 사후관리 중이며, 2009년에는 정자어촌계 해중림 조성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백화현상 대비한 사업으로 자리잡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③ 잉여농산물 수출지원 건의 호접란 미국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지역에서 생산한 잉여농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이라든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호접란 수출지원을 위해 2010년 『호접란 묘종 구입 지원』 신규 사업 추진 및 현지 적응 및 소비자 반응 테스트를 위한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묘종 5000본 2009.08.21일 선적(수출)등 판로 개척 등 지원사업 추진	완결
	④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의 역량 강화** 강동수산물 축제, 농도축제 개최 정산내역 확인결과 세부적인 각종 사업이 사회단체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함에도 재 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단체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당부함.	○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시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무대설치 등 전문적인 부분이외의 행사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 설 재 난 관리과 □□ 시정 요구	**① 구청사 입구 대형 구청안내 입간판 철거이전 검토** 구청사 입구 북구청 및 보건소를 알리는 대형 입간판은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접촉사고로 인해 일부 기초부분이 붕괴되어 미관상 저해되고 있으므로 철거 이전 검토 바람	○ 구청사 입구 입간판을 오토밸리 복지센터 입구로 이전해서 오토밸리 복지센터 안내간판으로 재활용하겠음	추진중
	② 각종 공사에 대한 기초설계 등 사전검토 철저 - 농소1동사무소 설계변경으로 건축공사금액이 변경된 사유가 설계서에는 있으나 설계내역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 기초형식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으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질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각종 건설공사 업무추진지 지반 및 지질조사 등을 충분히 시행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③ 풍수해 보험 홍보 철저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은 매우 좋은 시책임에도 가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 수요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여	○ 풍수해보험 홍보 - 2009. 7. 10 : 북구지식센터 게시판에 홍보 동영상 게시 - 2009. 7. 14 : 북구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 설 재 난 관리과 □□ 시정 요구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 바람.	- 2009. 8. 11 : 관내 15층 이하 공동주택 대표자 및 관리소장 풍수해보험 홍보설명회 개최 ※ 소방방재청에서 국비소진으로 8월말까지 신규가입 제한조치 - 내년초에 신청토록 안내	완결
건의 사항	**① 에너지절약형 생태공공건물 건립관련** 생태공공건물 도입 취지는 좋으나 옥상 위 인조잔디 설치건은 에너지 절약형 생태공공건물 조성취지와는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은 최소화하시고 오히려 옥상 조경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친환경 소재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공공건축물 건립시 사업예산 범위내 친환경 소재를 최대한 반영하며, 옥상조경 반영도 적극 검토하겠음.	완결
	② 재해장비 관리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너울성 파도, 집중호우 등 최근 갑작스런 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니 재해장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발생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시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양수기의 경우 방재단에게 사전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검토바람.	○ 우리구 재해장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자동강우량 측정기 4개소, 상황관제용 시스템(CCTV) 5개소, 지진해일 예, 경보시스템 5개소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자동우량경보시설 1개소가 있으며, 매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 지역자율 방재단 교육에 있어, 유사시에 대비하여 긴급히 필요한 곳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구청내에 코리아 무전기를 설치한 바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검토 바람.	○ 올해 신규시책으로 양수기 27대를 구입하여 동별로 2대씩 배부하고 직원 및 지역자율방재단원 66명으로 양수기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2일과 6월 18일에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양수기 작동법 교육을 실시하였음 ○ 2009. 7. 28 : 북구지역자율방재단에 10월 예정인 전단원 교육시 차별화된 교육 및 무전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검토토록 공문 통보	완결
	③ 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보완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한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나 시행 이후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조기 조치하여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주차장 유료화의 배경이 민원주차곤란 해소에 있으므로 민원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보건소 □□ 시정 요구	**①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 추진철저** -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이 물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환경적 건강 등 종합적인 추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도시프로젝트사업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구청 전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시고 -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직원 교육 및 나아가 구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부서의 개별사업에 대한 건강의 개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문상 근거라도 남기는 방안을 강구 바람	○ 2009년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건강도시 이념 구현, 고품격 교육·문화 도시 기반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보건 복지서비스 확충의 4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실·과별 건강도시 관련사업을 추진중임. ○ 건강도시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건강도시 선포식 및 국제심포지엄, 홈페이지 게재로 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향후 홍보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음. ○ 계획 수립 시 실·과별로 건강도시 개념이 반영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문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제시에 노력하겠음.	추진중
	② 주요약품 관리 철저 -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주요약품 현황에 있어, 약 4년간의 제출된 자료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약품 배열순서가 틀려서 전년자료와 현년도자료를 비교 할 수가 없으므로 향후 자료 제출	○ 주요 약품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정리하여 이월, 구입, 사용, 현재고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주요약품관리 대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보건소 □□ 시정 요구	시 보완 개선하시고, -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의 이월한 수량과 현재 보유 수량이 전혀 맞지 않으므로 향후 약품 관리 및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완결
	③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 마련 둘째 자녀 및 셋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 및 세부 지급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출산장려금지원근거법을 제정중에 있으므로 법제정시까지 유보하고자 함	추진중
건의 사항	**①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 예방 홍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현재 우리 구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며, 향후 손씻기 등 예방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 발병했을 경우에도 확산방지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경계단계)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지정 의료 기관 관리 및 기관별 행동요령 배부, 대국민행동요령(손씻기, 기침예절 등)을, 홈페이지, 포스터, 리플릿 배부 등 홍보 활동을 강화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 임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사항	**② 아토피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강화** 아토피클리닉을 비롯한 사업을 올해 5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시행에 이어, 울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동구가 선정되어 약 5천만원의 예산으로 실태조사, 자조모임, 상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는 아토피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우리 구도 아토피 지원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대응 및 아토피 관련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 2010년에 선진지 견학 및 실태조사 등 사전에 충분한 기초조사를 거쳐 국비신청하여, 2011년부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임	추진중
	③ 직원 친절도 향상 개선 작년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 친절도가 최하위였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시적인 친절도 개선이 아닌 항구적이고 친절의식이 꾸준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작년 전화 친절도 성적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친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2009년도 상반기 전화 친절도 조사결과 평점 94.3점 이상으로 매우친절부서로 선정되었으며 계속적인 대민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겠음.	완결

제 6 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구정질문
제2절 5분 자유발언
제3절 진정 · 건의서 처리현황
제4절 주요의정활동
제5절 의정활동일지

제1절 구정질문

1. 구정질문 현황

일 시	회 순	의 원	질 문 요 지
계	4회		4건
2008.10.23	제108회 임시회	박병석 의원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중인 강동권과 농소권의 송전철탑 및 변전소 설립에 관한 건 등 4건
2008.12.15	제109회 제2차정례회	이은영 의원	○청소년 및 평생교육 관련분야
2009.7.20	제114회 제1차정례회	박병석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문 ○장애 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질문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른 대응방안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에 대한 질문
2009.12.14	제117회 2차정례회	류인목 의원	○프리 바이크 사업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 ○연암동 재활용선별장 이전계획 관한 질문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공사에 관한 질문

2.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중인 강동권과 농소권의 송전철탑 및 변전소 설립에 관한 건 등 4건

○ 질문의원 : 박병석 의원

○ 2008. 10. 23(제10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박병석 의원 질문〉 ○첫째,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인 강동권과 농소권의 송전철탑 및 변전소 설립에 대한 질문 - 북구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7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북구 주민생활 및 자연환경 파괴를 불러오는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특히 송전철탑 설립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음. - 정확한 전력 수요량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한전에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송전철탑 방식이 아닌 지중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함.	〈강석구 구청장 답변〉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 34만 5천볼트 변전소 건설 후보지로 강동 신현, 산하, 대안 및 매곡동 4개 후보지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강동 신현, 산하 및 매곡동에 대하여는 변전소 설치 불가로 통보하였고 대안동의 경우 광역시와의 협의 절차와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의견을 통보한 바 있음. ○지중화의 경우 공사비가 평균 10배이상 증가됨에 따라 기본설계 산출금액이 80억원으로 지중화시 약 800억원이상 소요되는데 우리 구가 4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도시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경관 저해, 산림훼손,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영향과 주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최적의 방안마련으로 한전측과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둘째, 북구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에 대한 대책 건	
- 주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전무함. 최근 이명박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의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이러한 때 관내에서 출퇴근 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기 출퇴근 및 등하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은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에 대한 구청의 정책대안을 요구하며 구청장님의 견해는?	○우리 구는 자전거 명품도시 건설로 경제적이고 건강한 구민생활을 위하여 2002년부터 60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25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동천 일원에 순환형 자전거 도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신송정교 구간은 현재 철구조물 제작중에 있어 2008년 11월 중에 설치 완료될 계획에 있고, 7호 국도변에 일부 파손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효문역에서 상방사거리까지 정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2009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음. ○아울러, 자전거 도로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병행할 계획으로서,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망 및 자전거 관련 법규 안내, 자전거관련 정보를 수록한 팜플렛 제작을 통하여 안전한 자전거 타기 홍보와 함께 행정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안전부에서 추진중인 Free Bike 사업에 도 적극 참여할 계획임.
○셋째, 국제교류 추진사업에 대한 질문 - 지난 5~6년간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제교류에 대한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며 이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준비없이 지자체간의 경쟁심리에 의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국제교류 우호협력사업에 있어 지금처럼 해외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포기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재탕 삼탕 하지 않을 정책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해외교류 사업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는?	○지자체 규모 등 형평성의 문제, 다양한 교류를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목적과 외자유치를 목표로 하는 중국 지자체의 목적이 서로 달라 현재는 답보 또는 중단상태로 지금까지의 교류 성과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향후 국제교류 우호협력증진 사업은 성급한 접근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충분한 자료 분석을 통해 상대 지역과의 유사성, 상호 보완성, 공동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실있는 교류사업 추진토록 하겠음.

나. 청소년 및 평생교육 관련 분야

○ 질문의원 : 이은영 의원

○ 2008. 12. 15(제109회 제2차 정례회 제16차 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이은영 의원 질문〉 ○첫째, 청소년 문화정책에 대한 질문 구청에서 하는 청소년사업은 다양해야 함. 소년 복지사업을 기본으로 청소년 문화 사업을 확대해가야 함. - 농소2동 문화의집, 농소3동 문화의 집,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북구문화예술회관, 주민자치센터, 명촌문화센터 등에서 토요일 오후에는 비어있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음. 단 한곳이라도 북구청소년 영화관을 개설할 의지가 있는지?	〈강석구 구청장 답변〉 ○문화예술회관, 농소2동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 각 권역 도서관에서 청소년은 물론 모든 가족이 관람이 가능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가운데, 굳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관 개설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다만, 청소년이 쉽게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들의 빈 시간대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두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청소년 문화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청소년의 문화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 있어야 함.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센터를 개설하여 청소년문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 방향은 다양하고 참여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등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올해 개소한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지원관, 청소년 공부방 등 청소년 시설 운영과 함께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올해의 경우,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 점프 콘서트, 수험생을 위한 우리문화 한마당 등 특색있고 호응도가 높은 청소년 문화사업을 알차게 추진 하였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둘째, 평생학습동아리와 평생교육단체를 등록받아 인프라를 육성, 발전시켜야 함 -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를 꿈꾼다면 평생학습동아리와 평생교육단체를 등록받아 육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이에 대한 의향은 없으신지?	〈강석구 구청장 답변〉 ○우리 지역내 활동하고 있는 학습 동아리는 취미, 교양, 연구모임 등 총 47개 동아리에 2,60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평생 교육단체는 지역아동센터 등 9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내년 초에 개설 예정인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학습동아리 및 교육기관과 단체를 위한 커뮤니티를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기능은 물론 각각의 전용자료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일단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더 많은 학습동아리와 교육단체들의 참여로 활발한 교육정보 교류 및 평생학습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2009년도에는 관계자 연수 및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동아리 구성원과 단체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을 위해 교육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평생학습 축제시 관내 학습동아리 및 평생교육단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는 물론,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 평생학습 동아리 및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넷째, 정부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에 따른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 - 본의원이 판단할 때 수년 내에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지자체 비용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함.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 전쟁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테스크포스팀이라도 꾸려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북구청이 준비하고 있는 기후변화 기본법제정에 대비한 온실가스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강석구 구청장 답변〉 ○법 제정 계획에 따라 현재 광역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 예정에 있고, 우리 구에서도시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 ○우리 구에서도 구 본청,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태양광·열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복지원에 지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초기의 막대한 예산의 수반은 물론 높은 기술력과 고효율을 요구하지만 실제 운영시 효율은 극히 낮은 상태임.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치밀한 계획아래 추진하도록 하겠음. ○우선적으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으로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없는지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태스크포스팀 운영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부서 직원들을 팀원으로 하여 기후변화대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과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등을 연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다.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문

- 장애 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질문

-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른 대응방안

-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에 대한 질문

○ 질문의원: 박병석 의원

○ 2009. 7. 20(제114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박병석 의원 질문〉 ○첫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문 -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존중하여 줄 것과 이러한 조치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강석구 구청장 답변〉 ○북구의회의 조례입법연구회는 지방의원의 모범적인 입법활동으로 구청장으로써도 높이 평가하고 있음 ○의원발의 조례안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받아 의회심의 의결 이송되면, 공포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절차로 보아주시길 바라며, 결코 의회를 경시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림.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는 조례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의원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이 별도로 없고, 의회로부터 요구되는 집행부 의견 조회기간 또한 충분하지 못하므로 짧은 기간내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위반여부 검토와 관련부처 질의해서 답변을 받을 시간이 있어야 함으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림. ○향후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더욱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상호 활발한 사전의견 교환으로 재의요구 없이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배가할 수 있길 바람.
○둘째,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질문 - 오토밸리 복지센터에 장애아동 놀이시설이 유치되지 못한 이유와 국민체육센터 내에 장애아동 놀이시설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우리 구는 오토밸리 복지센터를 착공하기 전 현대자동차측에 장애아동 놀이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2007년 7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놀이 터인 “어울림놀이터”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고 2007년 10월 오토밸리 복지센터 시설 (안)간담회 개최 시 수차례 장애아동 놀이시설 반영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오토밸리 복지센터 건립을 북구청이 아니고 현대자동차에서 시행하다 보니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반영이 되지 않았음.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내 설치여부는 2007년 국민체육센터 설계 시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검토 및 요구사항 없이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각 실의 용도가 결정된 시점에서 장애아동 놀이시설 반영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림. 또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장애아동놀이시설을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임.
○셋째, 울주군의 전자수의계약 지역제한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 -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전자수의계약 공사에 대한 견적제출 자격을 군지역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북구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 울주군의 지역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향후 계획은?	○우리 구는 하나의 울산이라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을 제외한 울산광역시 4개 구청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또한 우리 구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예규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임. ○이와 더불어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도 2~3개월내 울주군에 지역제한 해제를 요구하여 관내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며, 관내 주소지기업체에 우선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여 지역기업을 보호 육성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림.
○넷째, 북구청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에 대한질문 -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채용방법	○7월 현재 우리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220여명으로 6개월이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과 기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는?	단기 사역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부서별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개인별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채용하고 있음.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실·과별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수행업무에 맞는 능력을 가진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라. - 프리 바이크 사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

- 연암동 재활용선별장 이전계획 관한 질문

-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공사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류재건 의원

○ 2009. 12. 14(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116차 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류재건 의원 질문〉 ○첫째, 프리 바이크 사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 - 프리바이크 사업에서 공용자전거제 도로 변경한 사유와 공용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 강석구 구청장 답변〉 ○지난 8월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본 조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온 프리바이크 사업은 2008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10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자전거시스템 디자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표준안 시달이 되지 않고 있어 우선 공용자전거 100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또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거점별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 동천 자전거도로 개설과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등 각종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17만 구민 누구나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둘째, 연암동 재활용선별장 이전에 관한 질문 - 우리 구의 재활용선별장은 노후된 시설로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제는 현재의 재활용선별장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그동안 주변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연암동이 북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음. 이러한 도시 발전 과정 속에 재활용 선별장을 우리 구 외곽지역으로의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음. ○향후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분석·검토한 후 외곽지역으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아울러 타 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공공성과 주민편의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대산 맨발 숲길 조성 공사건에 관한 질문 - 당초 설계된 등사로 구간을 다른 곳으로 변경한 사유와 남은 사업비 활용계획에 대하여?	○등산로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당초계획노선을 시행하고자 현지측량 등 시행과정에서 일부구간의 급경사 지역 및 계곡과 계곡을 횡단하는 문제점 발생, 추후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 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일부 산주가 동의하지 않은 구간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노선변경하게 되었음. ○집행잔액 1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구간 내에 맨발시설물인 세족물통, 맨발 호박돌길, 맨발 해미석길 등을 설치하고, 급경사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주민편의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사업 발주하여 내년 2월경에는 마무리할 계획임.

제2절 5분 자유발언

□ 류인목 의원

○ 발언일시 : 제106회 제1차정례회 제9차본회의(2008. 7. 21)

○ 건　　명 : 행정사무감사 문제점 지적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고유가, 청년실업, 각종 요금 인상 등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건으로 국민의 손마다 촛불이 들려지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북구 의회는 '07년6월1일부터 '08년5월31일까지 이뤄졌던 북구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난 7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의회의 예산 결산 심의 검사와 조례제정, 행정의 견제라는 권리를 현장에서 벌어진 사업에 접목시켜 실측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즉,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의 자료 요구와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이 있을 때만이 현장의 분석과 주민의 의견수렴이 가능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관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자료, 분석이 가능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업실적 보고 자료에서 회계연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보고를 한

것이 빈번하였습니다. 이것은 매 해 변화하는 추이를 살피거나 할 경우 중요하지만,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을 거칠게 용접해 놓은 집행부의 흉물스런 보고 자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료에 과도한 비공개 처리 즉, 일명 “공공(○○)처리”로 판독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날짜와 행사인원, 행사내용을 명기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타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날짜도 인원도 없는, 사업은 했지만 언제 누구와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북구청의 자료를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지만, 개선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자료 가리기가 실무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전체 자료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즉 각 과 자료의 감사를 불가능하게끔 천편일률적으로 어떠한 지시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시가 아니라면 일명 공공(○○)처리가 많은 과에 포상 계획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들은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현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은 언론에는 있고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북구 관내 자전거 도로를 살펴봤습니다.

초고유가 시대의 어려움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꺼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한 주민들의 지혜와 배치되는 북구청의 자전거 도로의 부실한 시공과 관리상태를 봤습니다.

의원들의 지적에 재빠른 은폐공사를 목도하면서 도로의 부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총연장을 따지는 인프라 구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기장에 모기가 없다는 넌센스 적인 일이 북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시설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조합 놀이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간마저 빼앗는 행위는 일소되어야 합니다.

한 개의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이 자랑거리로써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공할 때까지 목적에 맞는 공사가 되기 위해 의견수렴의 과정과 완공 이후의 꾸준한 관리와 개선이 이뤄질 때 주민들의 북구청에 대한 신뢰는 제고 될 것입니다.

퓨전은 절대 일류가 될 수 없습니다.

일류 북구를 원하신다면 목적에 맞게 더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셋째, 북구청의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북구청의 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까지 가서 자랑을 늘어놓고 온『노사정 구민협의회』등 북구청의 노동정책이 그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과연 북구청은 부끄럽지 않은가 였습니다.

현재 노사환경이 일선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적을뿐더러 북구청이 사기업의 노사관계에 끼어들기 전에 자신의 조건을 먼저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7년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이 보호는커녕 양산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공공부문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북구청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한솥밥을 먹는 가족들의 차별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가족수당 정도일 것입니다.

각종 노동환경의 차별을 모두 열거할 수 없기에 위험근무수당의 경우를 보면 같은 일을 하는데, 공무원은 위험하고 무기계약 직이나 기간제는 위험하지 않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제가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구청에서는 계약심사제가 혁혁한 공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보면 일선 부서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기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든지, 부족하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일선 공무원들을 원망해야 할지 개탄스럽습니다.

관용차량 보험의 경우를 보면 보험연령이 전연령대 또는 21세 이상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병무청으로부터 운전업무를 배당받은 공익요원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의아스러울 뿐더러 계약심사제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의회가 무엇을 견제할 수 있을지 크나큰 걱정거리를 떠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인목의원

○ 발언일시 : 제10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2008. 10. 23)

○ 건　　명 : 종부세 인하에 대하여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서민과 경제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가 진행 시킨 국세 감세안 특히 전액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종합부동산세의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의 열악화에 대해 지방의원으로써 우려 섞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23일 기획재정부가 보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 3천 4백억원, 2009년 1조 1천 4백억원, 2010년 7천5백억원이 줄어든다고 감세규모를 밝히고 있습니다.

총액이 2조 2천 3백억원에 이르는 감세규모를 정부가 연도별로 조율하여 당장 내년에 끼치는 영향을 적게 만들지라도 3년차에 이르면 결과는 동일하게 됩니다. 더불어 정부의 당초 종합부동산세 세제안이 완결된 시점부터는 2조 2천 3백억원 이상의 손실이 해마다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 등을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100% 교부되는 세원이라는 것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중구 106억 8천만원, 남구 81억4천만원, 동구 86억 5천만원, 울주 68억 7천만원, 우리 북구가 81억 4천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수입은 각각 28.4%, 29.5% 늘리는 반면 전국세대 기준

1% 남짓의 대상자를 가진 종합부동산세는 31.4%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 감세안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의 살림살이는 감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감세안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손실이 크지 않지만 재정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어 감세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느 통계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9월 1일 세제 개편안으로 지자체 재정이 연간 9조 4천억원 가량 감소하고, 울산광역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152억원, 분권교부세 31억 9천만원, 지방교육재정이 757억 4천만원이 줄어든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는 종부세 감세액 417억 1백만원과 합해 1천 358억 3천1백만원에 이릅니다.

정부의 감세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이 일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용과 기초노령연금 등을 인상한다는 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용의 경우 매칭펀드의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국비 인상분에 맞추려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더욱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힘들어 질 것이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발표처럼 불을 보듯 뻔한데, 북구를 비롯한 울산광역시에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감세안을 소득계층별로 효과를 분석해 보면 하위소득자에 비해 상위소득자는 60~70배나 많은 감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던 법인세도 상위 0.3%의 대기업이 감면액의 70%를 독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강남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 이번 감세안은 필연적으로 지방과 수도권, 부자와 가난한자의 사회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부의 감세안은 강 건너의 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지역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장 내년부터 이러한 정부의 감세안이 우리 북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재와 같은 감세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향후 몇 년 후에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나서 북구 개청 이래 첫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할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끝으로 이번 감세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주민 모두가 명백히 파악하고 지방과 서민의 편에 서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함께 대처해 나가길 바라며, 예산편성시기인 만큼 전시성·일과 성의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해 주시고 소외된 계층의 복지예산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영의원

○ 발언일시 : 제113회 임시회

○ 건　　명 : 희망근로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재분배 하여야합니다.

○ 발언내용

사랑하는 17만 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은영의원입니다

17만 구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강석구구청장과 공무원의 깊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이 희망근로사업을 제대로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민생안정 대책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과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업목표로 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와 5개구군이 지난 5월에 모집하여 6월1일부터 시작하여 11월말까지 5375명의 일자리를 (예산 366억9천만원) 창출하여 사업하고 있으며, 북구청에서 66개사업 81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인력분석현황은 61개사업, 동에서13개사업 총74개사업에 943명지원하여 829여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개사업이상 준비하고 있다. 국비85%와 시비7.5% 구비7.5%예산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편성한 5억17백만원을 포함하여 56억3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83만원임금(30%를 상품권 포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제 재래시장, 동네슈퍼 등 상품권사용 가맹점이 249개 등록하였습니다.

행안부 선발기준안은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15-17세도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이 1억35백만원이하인 자를 우선선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구청은 희망근로 특화사업으로 동천서로 명품저전거도로 조성사업/ 축산농가지원을 위한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 무룡산, 동대산에 차나무단지 조성/ 호계일원 도시디자인개선사업/아름다운 농촌가꾸기사업/ 정자일원 다시가고싶은 드라이브 코스 조성/ 오치골 등산로 신설/ 동축산 산책로 조성/ 정자 산하해 변 및 포구 정화사업/ 관내 소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용기술을 가진 신청자들과 장애인을 사랑의 이미용사업단에 참여시텨 어르신에게 염색과 헤어컷팅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희망프로젝트 중 희망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실직, 휴폐업인 경우 그리고 청년실업을 극복해보자는 취지가 강했습니다. 때문에 구청장은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시작부터 의지있게 했어야합니다. 2차 추경을 하면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제기를 하였고 본의원 또한 동의하면서 희망근로에 대해 몇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합니다.

첫째 소득기준을 잘 적용하지 못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였습니다. 정부가 돈이 썩어나나보네 돈을 푼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6급이상 공무원도 일자리창출에 의미있게 내놓았던 예산입니다.

희망근로 참여자를 소득수준 자료를 보면 소득수준 월1.200천원 이하는 266명으로 30%안됩니다. 이것은 행안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을 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6월1일부터 하는 방식이 아니라 7월1일부터도 하거나, 인원을 채우기 보다는 실직자나 청년 그리고 휴폐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모집하려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를 마련한 희망근로는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6개월의 한시적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후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한시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1년 등의 효과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계획했어야합니다.

지원자 중 78년생이하(18세에서 32세까지)가 24명정도입니다. 3%가 안됩니다.

청년들이 애초부터 지원할 수가 없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와 울산고용포럼에서 토론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북구청이 의미있는 특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제 사업들이 공공근로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워 고용효과 보다는 생계비지원측면이 강해 소일거리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적 성격의 사업보다는 비생산적 성격의 사업이 많아 실제로 사회취약계층과 실직, 휴폐업을 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망을 주었습니다. 희망근로를 신청하지 않고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월급이 그만해도 장기적인 일자리를 찾아가겠다는 여성가장들의 이야기가 마음 아프게 합니다. 동료의원들이 동네에서 열심히 하던 자원봉사자들에게 허전함을 가지게 한다고 제기하고 있듯이 비생산적인 일을 줄여 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상품권으로 지급하므로써 경기활성화에 도움되고자 하는 의미는 이해하겠으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3개월의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당장 생활비와 자녀학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수 없는 상품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6개월 일을 마치면 실직의 상태가 되는데 4대보험을 넣고 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80일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망근로 실제 근무일수는 결근을 한번도 안하면 **130일**입니다.

여기에 주차와 월차를 포함하면 **전체 16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일 이상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가능합니다.

다섯째 북구청의 공무원들 보다 많은 숫자이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 또한 평소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인력관리를 해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단순업무보조의 성격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일과 사회복지분야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재분배해야합니다. 현제 하고 있는 사업중에도 방중급식아동전수조사나 학교인근 유해환경감시 전담관리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공공도서관 운영보조, 전염병예방을 위한 정화조 유충조사,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경로당 등 도배작업 등은 공공근로성격을 벗어나 생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파견사업이나 생활상담사업, 학교급식과 학교도서관사서도우미등 생산적이거나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작은 문제이기는 하나 관리에 관해 몇가지 제기하고자합니다. 북구청의 희망근로 관련한 과들로부터 자료를 받았으나 어느 하나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5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모두가 숫자가 다릅니다 관리인원도 다르며 사업내용도 다른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관리되겠습니까.

또한 풀독이 오른 참여자 예를 보더라도 안전함을 더욱 살펴야하며 도구가 제때 지급이 안되거나, 퇴근시간 때문에 작업반끼리의 얼굴붉히는 어려움 등 잘 관리하여 북구청이 북구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구청에서 특화사업을 더욱 늘려 생산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실질적위주의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과 예산편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서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09년 당초예산심의에서도 의회는 경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제예산을 동결하거나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2차 추경을 하면서 축제와 1회성 행사 예산이 편성되어있어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 대처하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여러 동료의원들이 희망근로에 대해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재분배하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문석주의원

○ 발언일시 : 제116회 임시회(2009. 10. 27)

○ 건　　명 : 농소~옥동간 도로 개설 관련

○ 발언내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농소~옥동간 도로 건설이 백지화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이후 아직까지 남구~중구~북구를 연결하는 제대로 된 간선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도심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농소~옥동간 도로 개설사업은 총 연장 17km로서 2008년부터 5년간 약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남구~중구~북구를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그 복잡한 산업로와 동천 서로,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도 곧 바로 옥동이나 울산대공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절대적인 기대가 있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진행되던 사업이 후순위 사업이었던 경쟁 노선인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이미 시작되는 바람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와 명정천을 지나는 구간에 고가도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항의에 의해 난데없이 백지화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와 농소~옥동간 도로에 대해 개별적인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타당성이 없는 반면, 농소~옥동간 도로는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에 따라 2007년말에 설계가 완료되고, 국비 또한 현재까지 93억원을 지원받은 검증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니 농소~옥동간 도로는 필요 없다는 논리와 울산 환경운동 연합이 농소~옥동간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바람에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곧 그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도로건설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소~옥동간 도로 개설은 농소 한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울산시 남북간 교통 혼잡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중구 혁신도시 등의 개발을 감안하여 지역내 주 이동을 담당할 핵심 도로입니다.

만일 농소~옥동간 도로가 백지화될 경우 울산시의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새로 수립해야 하는 등 큰 파장이 예고되는 실정입니다.

중구 일부 주민들이 농소~옥동간 도로를 반대한 것은 농소~옥동간의 도로 개설 사업자체가 아니라 명정천을 통과하는 고가도로인 것입니다. 그 부분은 대체 가능한 대안이 있는 가운데농소 구간인 약수IC에서 성안까지 8.9km구간이라도 먼저 개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니 농소~옥동간 도로는 필요없다는 식의 논리는 아무런 설득력과 명분이 없습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오히려 남구 신복로타리 일원에 교통체증만 더 일으키게 되는 등 타당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굳이 국가 정책상 도로건설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소~옥동간 도로도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0일 경상일보에서 실시한 농소~옥동간 도로개설사업 찬반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응답자의 88%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도로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북구 주민 3만여명의 주민서명이 담긴 범시민 서명부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 한국 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울산시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이자 우리 구 숙원사업인 농소~옥동간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발표 이전에 울산시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정치권 등 전방위에 걸쳐 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병석의원

○ 발언일시 : 제116회 임시회

○ 건　　명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 발언내용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17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농소1, 송정, 강동동 지역구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장애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청사 앞 인도에는 8월말부터 지난 주말까지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님들이 노숙 농성과 목숨을 건 단식농성까지 전개하며 울산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께서도 시청에 업무 차 가보셨다면 그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쌀쌀해져만 가는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두달 가까이 시청 앞에서 농성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 단체와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주장하는것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시청은 그들의 애끓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공권력을 앞세워 그들의 절규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둔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앞으로 부모의 보호 없이도 혼자 자립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대한 약속이행을 촉구하다 구속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과연 울산시에서 장애인 복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울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써 시청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를 하게 되었고, 검토결과 자치단체장은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장애인단체와 그 부모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5조 3항을 보면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국・시비 사업인 활동보조지원 40~120시간 서비스 외에 광역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추가지원 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은 평균 40시간으로 당초예산 기준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하여 기초자치 단체인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와 이웃한 경상남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 자체적으로 유사서비스인 도우미 뱅크사업을 통해 1,2,3급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마산, 창원, 밀양, 양산, 진주, 거제, 통영, 진해 등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월 최대 68시간의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마산시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인 김 모씨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활동보조사업으로 월 180시간, 도우미뱅크 지원 40시간, 시청지원 68시간 등 월 288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윤 모씨의 경우 복지부 활동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니지만 도우미뱅크와 창원시 자체지원만으로도 월 9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 임 모씨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활동보조사업으로 120시간과 광역시 자체로 추가지원 40시간을 합쳐 160시간의 활동 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활동보조 사업대상이 아닌 장애인의 경우 울산 북구에 거주한다면 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추가시간 최대 50시간외에는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지만 위에서 보듯이 창원에 사느냐 울산 북구에 사느냐에 따라 같은 조건일 경우 최대 68시간이상의 서비스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 주소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건설하는 것을 구정운영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울산 북구에서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지원에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류 북구를 지향하는 우리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석구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에는 현재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주민의 수가 6천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인 증가추세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역시 언제 어떤 이유로 인해 장애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내가 1급 장애인이라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 기회를 빌어 우리 모두가 심도 있게 구 자체적인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강석구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석주의원

○ 발언일시 : 제117회 제2차정례회(2009. 12. 14)

○ 건　　명 : 1. 신답교 ~ 삼성코아루 아파트 자전거도로 개설이후에 발생된 하자에 관한 건

2. 중산동 이화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설 건

○ 발언내용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17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했음에도 아직도 해결해야 할 민원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본의원은 민원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때에는 의원으로서 자부심 또한 느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답교 ~쌍용아진~ 삼성코아루 아파트앞 자전거도로 개설이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자전거 도로 구간은 총 연장 2.65km로서 작년 8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3월에 준공된 총 3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사입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전거도로의 상피가 탈락되고 물이 고이는 등 하자 발생사실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개선된 게 없다는 점이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전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농소3동 쌍용아진아파트단지 주변도로는 개설된지 약13년이 지나 경계석과 보도블럭 훼손이 심하며 기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뿌리가 보

도블록위로 솟아올라, 인도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보행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제외하고 자전거도로만을 설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공사였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전거 도로를 덮는 포장재가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탄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배수가 되지 않고 표면이 떨어져 나가 동네 주민의 원성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실한 자전거도로로 인해 길을 가던 보행자가 들뜬 탄성포장제에 걸리거나 빗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안전사고까지도 여러번 발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8월에 1차 하자보수, 9월에 2차 하자보수했으나 제대로 되질 않았으며 현재 3차 하자보수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시공이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동절기입니다. 눈이나 비가와서 노면이 얼어 붙는 날에는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도로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지역과 동일하게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원상복구하여 인도만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 조사를 통해 주택가, 상가지역, 보행자 없는 외곽지역인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답교~쌍용아진~코아루아파트앞 구간의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된 하자 보수가 시행되지 않을 바에는 전면 재시공 또는 교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중산동 이화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우파크앞에서 이화초등학교까지의 약150m에 대해 초등학생통학로 안전데커 설치는 물론 나아가 도로 확포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이미 본의원이 주민 다수의 진정으로 구청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대글로리아 아파트 등 중산동에 거주하는 791명의 이화초등학교 학생들은 이화천 제1교, 제2교, 제3교 옆 도로를 따라 통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1교까지만 보행데커가 설치되어 있고 제2교에서 제3교까지의 150m에는 인도 및 데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시 대형차량 운행으로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산동 주민들은 이제까지 많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산동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어 악취속에서 지내왔고, 농소2동 주민센터가 멀어 생활이 불편함은 물론 인근에 고등학교 조차 없어 교통의 불편을 겪으면서 농소고, 호계고, 달천고, 무룡고까지 먼 통학 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다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도 없이 목숨을 담보로 복잡한 도로위를 통학하고 있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아시는지요?

매일 애간장 태우며 자녀들이 귀가해야만 안심을 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 아파트 세대수만 해도 현대글로리아 아파트외 8개 아파트의 세대수가 2,764세대에 달하고 자연부락 주민 200세대 등 약 3,000여 세대 주민의 자녀가 인도 없는 도로로 등·하교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청장께서 직접 수립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우선순위가 최우선으로 세부 사업조서에 나와 있으며, 사업필요성에서도 “이화초등학교 진입도로의 인도 확보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금회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조차되지 않은 것은 정말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다라는 사실에 대해 본 의원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과연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축제예산 하나 줄여서라도 이러한 도로 개설이 훨씬 의미 있는 것입니다. 도로확장에 시간이 걸린다면 보행데커라도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비록 집행기관에 있지만, 주민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본 구간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하루빨리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류인목의원

○ 발언일시 : 제117회 제2차정례회(2009. 12. 14)

○ 건　　명 : “공식의전행사에 관해서”

○ 발언내용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류인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북구의회 제 117회 제2차 정례회를 북구의회 의원의 제4대 임기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들어 북구청과 북구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관변단체의 각종 공식 행사 의전활동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의전행사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을 함으로써 행사에 참석하는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보곤 합니다. 미사여구를 나열한 찬사의 긴 연설보다 짧고 간단한 연설이 감동과 박수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은 간소화는커녕 너무 의전행사가 길어져 정치행사냐는 비아냥을 자주 듣곤 합니다.

단체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이다 보니 자주 연설이나 행사참여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겠지만 행사에 참석하는 구민들에게는 너무나 의례적인 것으로 비춰져서 실제의 소통은 더 벽에 가로막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 중에 구청장의 일정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경기를 하는 도중에 행사를 배치해 경기리듬을 깬다던가 행사시간을 잡아놓고 구청의 인사들이 참석이 늦어져 기다리게 해서 참석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행사에 직원이나 주민들을 동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에서는 행사에 동원된다고 일을 못하겠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에서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인원 할당하느라 고민하는 것을 자주 봐왔습니다. 분명히 성질이 다른 행사이고 관심분야가 다를 텐데도 참석하시는 분은 다 또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시행정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당의 인사를 초청 또는 소개하려면 전체 정당에게 똑같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선출직 공직자 대부분이 정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참석자 중에도 정당 활동을 하고 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구청과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의 행사의전을 보면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개개인은 정치를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기관이나 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공신력이 생깁니다.

엄연하게 구청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 할 수 없도록 법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전의 결례로 국가간에도 외교문제가 되었던 적도 역사상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전은 잘해야 본전이다 라는 속설이 있읍니다만 행사의전을 기획하시는 공무원들은 참석자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서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석주의원

○ 발언일시 : 제117회 제2차정례회(2009. 12. 22)

○ 건　　명 : **의원 발의조례안 2건 부결과 관련된 저의 입장**

○ 발언내용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서서 5분자유발언하게 됨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의 사소한 신상이 아닌, 의회의 존립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 북구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간략하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비록 초선의원이기는 하지만, 17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해결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책무라 생각하고 입술이 터지도록 민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하나 하나 해결할 때 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많은 안건을 발의하였고 그 중 일부가 심의과정에서 아쉽게도 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우리 의회는 의원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장장 8시간 이상 걸친 토론과 질의답변 끝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북구 의회가 그렇게 길게 토론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북구 의회 7명의 의원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부결 자체에 이의가 있는 단, 한명의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북구 의회가 여성 아동 폭력 근절에 의지가 없거나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관심이 없어서 그 두 조례를 부결된 것이 아님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두가지 조례안 명칭은 매우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대로는 통과될 수가 없는 조례였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조항이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라는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고, 이러한 법률 위반 우려로 인해 소속이 다른 당 의원까지도 공감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커녕 오히려 작은 도서관을 규제하는 결과만 초래되므로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신은 지금도 변함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중앙정부 공무원조차도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지침 또는 내부규정을 두는 게 더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고, 국가사무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일선 구청에서 의무화한 사항이나 구청의 시책을 지역연대에 보고토록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등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과도한 의무사항을 부과한 것이므로 원칙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부결된 것입니다.

북구 의회 의원 모두가 아동여성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는 그대로는 통과될 수 없는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중 문제있는 점을 보완하여 다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지만 토론중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조차도 반대의견을 표시하여 도저히 그대로는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북구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명칭만 같았지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초 조례안을 준비할 단계부터 집행부 부서와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조차도 조항별로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 반면, 조례없이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시책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마치, 조례가 없어서 울산 북구청은 여성 아동 폭력방지 시책을 추진 못하는 것처럼 오해받고 여성 아동 보호 시책에 전혀 관심 없는 북구청으로 인식되는 거 같아 입법권을 가진 의원으로서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또한, 조례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발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져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지금 그 2건의 조례 의결 결과를 두고 과연 부결이 옳았는지 가결했어야 되는 것이었는지, 의결 자체를 잘했니 못했니를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부분은, 당시 그 두 조례가 부결된 것은 특정 당이 담합해서 의결된 사항이거나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발의한 조례는 왜 부결되었습니까.

제 조례를 어느 당이 담합해서 부결시켰습니까.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쟁점이 되었고 문제 소지가 있는 그 조례 내용들을 보완 수정하고, 다시 의회에 제출하여 논의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일 것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의원 개인 마음에 안들게 의결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부정한 채로 자리를 박차 나가서 시위를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조례 등 수많은 안건을 어떻게 제대로 의결하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행위는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북구의회 부의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구 지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의결은 제 뜻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북구 의회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4대 북구 의회 임기가 이제 약 6개월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기관을 비롯한 외부에서 바라보는 의회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헌법과 각 개별 법령에 의해 주어진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는 이제 그만 되어야 할 것이며, 저를 비롯한, 제4대 북구의회 의원님 한분 한분이 의회의 권한과 권위를 지키는 역할에 적극 매진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북구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5분 자유발언을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절 진정 · 건의서 처리현황

1. 처리현황

(2008. 6. 1 ~ 2010. 6.30)

연도별	접 수	처 리 결 과			
		계	완 료	추진 중	불 가
계	46	46	19	14	13
2008	17	17	10	1	6
2009	28	28	9	12	7
2010	1	1		1	

2. 2008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8. 6. 5 하수종말처리장관로 조기 연결 요청 (완 결)	농소삼우타운, 백산그린타워 입주자 대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 당아파트 정화조 관로를 조속히 연결 조치	2008. 6. 13 ○건설과 이첩 ○방어진처리구역(농소)지선관거 부설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실시설계완료 사업예산(국비)이 확보되면 단계별로 사업시행예정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울산광역시(하수관리과)에 건의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8. 7. 15 농소1동주민센터 옆 소방도로 개설관련 (완 결)	호계동870-16 이○○	농소1동 주민센터 옆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호계동 868-1번지 122㎡중 93㎡가 도로로 편입되어 나머지 부지 29㎡을 신축건물허가요구 및 적절한 보상금 요구	2008. 7. 16 ○도시녹지과 이첩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반영하여 보상 완료
2008. 7. 3 달천아이파크 111동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수립 및 정밀안전진단 (완 결)	달천아이파크 입주자대표	달천아이파크 1차 111동 지반침하 및 옹벽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 요구	2008. 8. 4 ○건축주택과 이첩 ○긴급보수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조치 ○'09.6.1현재 보수중이며 8월중 완료
2008. 7. 31 벽산블루밍 공사와 관련한 달천아이파크 1차 분진, 소음 및 안전진단(완 결)	달천아이파크 입주자대표	달천아이파크 111동 지반침하 및 옹벽균열의 발생, 분진, 소음은 벽산블루밍 공사로 판단되어 조치요구	2008. 8. 4 ○건축주택과, 환경위생과 이첩 ○소음, 분진 과태료 부과 ○'09.6.1현재 보수중이며 8월중 완료
2008. 8. 8 매곡푸르지오 앞 상가공사로 인한 피해(완 결)	푸르지오 2단지 입주자대표	프리머스 플라자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 먼지, 사생활침해 발생으로 입주자 피해보상	2008. 8. 12 ○건축주택과, 환경위생과 이첩 ○소음측정 10회중 2회 초과로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지속적인 지도점검 ○푸르지오 2차와 상가간 거리 25m며 사유재산 제한 법적근거 없음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8. 8. 8 푸르지오내 헬스장 부실시공의 해결 대책의 건 (완 결)	푸르지오 2단지 입주자대표	아파트 지하 헬스장 결로와 누수로 사용 못하고 있으니 대우건설 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	2008. 8. 12 ○건축주택과 이첩 ○시공사에서 결로 발생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아파트 입대의와 협의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
2008. 8. 8 달천아이파크 111동 보강토 옹벽 크랙 및 주차장 침하 관련 (완 결)	달천아이파크 입대자대표	주차장, 보도블럭 침하, 오폐수관, 배수관과 집수정 등 침하되었으니 전면 재시공 요구	2008. 8. 12 ○건축주택과 이첩 ○안전진단전문기관 현장점검 ○전문기관 보수보강 계획서 제출 및 주민설명 : '08.8.21 ○'09.6.1현재 보수중이며 8월중 완료
2008. 9. 2 그린카운티 4단지민원협조 요청(완 결)	달천그린카운티입주자대표	○그린카운티 학교부지 용도폐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 심의결과 부결에 따른 주민 해명과 도로개설요구	2008. 9. 3 ○도시녹지과 이첩 ○학교폐지 후 부지활용방안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향후 교육정책 및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함이 타당하여 부결되었으며 ○중로 2-142은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투자가용 재원내 우선순위에 의거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8. 9. 2 달천동 쇠곳마을내 오수관 및 도로 설치요구 (불 가)	달천동 68 이○○외14	달천동 37-1에서 69번지 일원에 도로와 오수관 설치 요구	2008. 9. 3 ○도시녹지과 이첩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거 농업에 필요한 시설만 할 수 있어 농수로에 설치는 불가함 ○마을진입로를 통한 오수관로 매설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나 동의 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재정여건과 사업우선순위 등을 검토 후 조치
2008. 9. 5 중산현대아파트옆 축사로 인한 분뇨악취 피해(완 결)	중산현대아파트 201/602호 김○○	중산현대아파트 옆 소축사에서 분뇨악취 발생하여 고통을 겪고 있으니 조치 요구	2009. 9. 29 ○환경위생과 이첩 ○'08.9.26 악취 포집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 조치결과 : 기준치 미달임 ○축사 소유자에게 축사관리 및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제재의 살포 등으로 악취 저감토록 조치
2008. 9. 25 구유동 281-1 번지외2필지 근린공원 해제 요구(불 가)	중구 남외동 447-5 김○○외2	강동권관광개발 사업으로 북구 구유동 28-1, 27-1번지가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해제요구	2008. 10. 1 ○도시녹지과 이첩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의거 근린공원 지정 ○구유동의 경우 취락지역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이며 자연환경과 경관이 잘 보전된 천혜의 해안지역으로 근린공원 폐지는 불가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8. 9. 29 진장동 125-17 (답) 형질변경요청 (불 가)	중구 반구동 736-25 이○○	진장동 125-17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 요청	2008. 10. 1 ○생명산업과 이첩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며 농지보전가치가 높은 집단화된 우량 농지로 농지전용시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추가잠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신청지주변의 농지전용허가 불가
2008. 10. 9 변상금 통지서 취소요구 (완 결)	북구 매곡동 795-25 장○○외1	매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고물상 영업구역인 매곡동 795-154번지가 행정 대집행되어 손실보상요구 및 무단점유 변상금 철회	2009. 10. 13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이첩 ○매곡동795-25,26,27,155번지는 2006.12월말에 대부계약 만료되었으며 소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물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무단점유하였기에 변상금 부과
2008. 11. 4 중산동 현대글로리아 입대의 인정 (불 가)	현대글로리아 아파트 주민 일동	'08.5월 개정된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새로이 입대의를 구성하였는데 구에서 관리규약을 재개정하고 입대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	2009. 11. 11 ○건축주택과 이첩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관리규약 재개정 및 입대의 재구성토록 하였으며 주택법과 관리규약 준수하시기를 양해바람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8. 11. 10 소방도로 변경에 따른 진정인 소유의 땅 및 집에 대한 보상 요구 (불 가)	염포동481-1 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본인의 집(염포동475-5번지) 주위로 도로가 나게 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데 편입된 대지보상 및 집에 대한 상응한 조치 바람	2009. 11. 11 ○건설과 이첩 ○본 도로는 '76.4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0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노선일부가 변경 결정되었으며, 염포동 475 -5번지는 소3-96호선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이 없어 보상이 불가함
2008. 11. 10 염포동 392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추진중)	염포동392-7 김○○	염포동 392-4번지가 태풍으로 파손되어 집이 방치되어 있고 392-5, 3번지 10세대는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 일대에 소방도로 개설 바람	2009. 11. 11 ○건설과 이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업추진 할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및 노력하고 있음
2008. 11. 24 현대글로리아의 개정된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인정요청 (불 가)	중산현대글로리아아파트 서○○	아파트 관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2008년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인정해 주거나 북구청에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줄 것이며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 현 입주자대표회의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	2009. 11. 28 ○건축주택과 이첩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0조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및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협의하거나 입주민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9. 1. 5 신흥사 소방도로 정비의 건 (완 결)	신흥사 주지 차○○	신흥사와 호계~마우나오션 리조트간 도로 상당부분 비포장도로로 굴곡이 심하고 낭떠러지 등으로 사고위험이 있으니 소방도로 확보 요청	2009. 1. 5 ○건설과 이첩 ○구도2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특별교부세 9억 확보로 용역결과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후 9월말까지 완료
2009. 2. 10 교통안전시설물(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추진중)	달천아이파크 입주자대표	달천아이파크 2차아파트와 천곡고등학교 사이 도로 교통안전시설물(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2009. 2. 12 ○건설과 이첩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간선 도로이며 2차적 사고위험이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의 어려움이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주민간담회시 속도제한 30km 지정 주민동의 70%시 과속방치턱 설치 긍정적 검토 ○무인단속카메라 예산 없어 설치 불가 - 중부경찰서
2009. 2. 10 옥동~농서간 도로개설시 제전마을 Y자형 진입로 설치 (추진중)	천곡동 143 이○○	옥동~농서간 도로개설시제전마을 Y자형 진입로설치	2009. 2. 20 ○울산광역시 이첩 ○본 도로의 실시설계는 도로개설의 목적, 기능 등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교차로 및 접속도로 계획을 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의 의견수렴절차 완료한 상태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도로법 64조,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터널 등의 시설물로부터 350M이내의 구간에는 도로연결 금지 및 접속시설 간격을 2Km이상 규정하는 등 적합하지 않으나 주민이용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2009. 2. 26 달천I-PARK 1차 옹벽보수보강관련 (완 결)	달천아이파크 1차 입주자 대표	달천 I-PARK 1차 옹벽 보수보강 관련 완벽한 보수보강을 위한 현대산업개발(주)에 시정지시 요청	2009. 3. 3 ○건축과 이첩 ○사업주체인 현대산업개발(주)에 조속한 협의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시정공문 발송완료
2009. 3. 11 농소3동 지구대 설치 요청 (완 결)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	급속한 인구증가로 치안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지구대 설치 요청	2009. 3. 18 ○중부경찰서 이첩 ○'09.3.18 울산중부경찰서 협조공문 발송
2009. 5. 22 진장동 메가마트 사업장내 주유소 설치 인·허가 반대 및 도시계획조례 제정 건의 (불 가)	(사)한국주유소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지회장 박○○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54B 1N에 위치한 메가마트 울산점 사업장내 주유소 설치 인·허가 움직임에 따라 설치 반대 및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제정 요구	2009. 5. 28 ○경제교통과 이첩 ○진장동 54B 1N의 메가마트 사업장내 주유소 설치시 기존주유소들의 경영 어려움은 예상하나 현행 법규상 요건 충족시 제한규정이 없어 불가하며, ○도시계획조례는 울산광역시 조례 제정사항으로 이첩함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9. 5. 22 중산 디아채아파트 버스증차 및 모화로 가는 버스노선 변경 요구 (불 가)	중산동 디아채 아파트 206/1102 이○○	중산동 디아채 아파트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지선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노인, 주부, 학생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버스 증차 및 모화로 가는 버스 노선 변경 요구	2009. 5. 28 ○경제교통과 및 울산광역시 이첩 ○울산광역시의 한정된 차량으로 특정지역에서 각 방면별로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신설은 어려움이 있어 보완대책으로 '04.10월부터 무료환승제(1시간 이내) 실시하고 있으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기 운행 중인 지선버스(940번 3대 40회)를 이용하여 가까운 정류소(호계, 신천)에서 환승하시기를 바람
2009. 6. 11 중로1-123호선 안전시설물 설치 (신호등, 과속방지턱, 탄력봉 설치)	달천 그린카운티 3단지 관리소장	달천그린카운티3단지와 달천I'PARK 2차 사이에 연결도로(중로1-123)가 개통됨에 따라 경사진 내리막길 도로로서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어 신호등, 과속방지턱, 탄력봉 등 안전시설물 설치 건의	2009. 6. 25 ○건설과 이첩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구간이 도로 곡선이며 안전거리를 확보 할 수 없는 곳으로 중부경찰서에 협의결과 중로1-123호선은 과속방지턱 설치 불가. ○탄력봉 설치 완료.
2009. 7. 20 달천 I'PARK ~ 대동@ 연결도로 부분개설에 따른 통행 불편으로 조기 개설 건의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달천 I'PARK ~ 대동@ 연결도로 부분개설에 따른 통행 불편으로 조기 개설 요망	2009. 7. 22 ○도시녹지과 이첩 ○시공사인 극동주택개발(주)과 시행사인 한유건설(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0. 9.15(수) 민원해소차원에서 먼저 개통.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9. 7. 20 중1-121호선 부분개설에 따른 통행불편으로 조기 개설 건의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중1-121호선 부분개설에 따른 통행불편으로 조기 개설 요망(쌍용아진3차@ ~달천유적공원)	2009. 7. 22 ○시 종합건설본부 이첩 ○'09년 6월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보상완료 되었으며 2011년 착공 예정.
2009. 7. 20 교통량 증가에 따른 쌍용아진@ 단지내 소방도로 혼잡가중 및 교통사고 우려로 대2-31호선 조기개설 건의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쌍용아진@ 단지 내 소방도로 혼잡가중 및 교통사고 우려로 대2-31호선(천곡사거리~ 대동@) 조기개설 요망	2009. 7. 22 ○시 종합건설본부 이첩 ○현재 개설계획은 없으나 옥동~농소간 도로와 연계하여 검토 예정임.
2009. 7. 20 7번 국도 및 농소3동 일대 혼잡으로 오토밸리와 천곡(옥동~농소)간 도로 조기개설 건의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7번 국도 및 농소3동일대 혼잡으로 오토밸리와천곡(옥동~농소)간 도로 조기개설 요망	2009. 7. 22 ○시 건설도로과 이첩 ○2010년 6. 23 공사 착공하여 2015년 준공예정임.
2009. 7. 20 상안동 홈플러스 앞 우회전 불편 및 교통체증으로 가각부 주변 개선 건의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상안동 홈플러스 앞 우회전 불편 및 교통체증으로 가각부 주변 개선 건의	2009. 7. 22 ○시 종합건설본부 이첩 ○본 도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추가적인 가각부 개선은 불가.
2009. 7. 20 7번 국도에서 신답교 진입 좌회전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7번 국도에서 신답교 진입 좌회전 차선길이 짧아 교통체증 유	2009. 7. 22 ○중부경찰서 이첩 ○현재 좌회전 차선 약 85m로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차선길이 짧아 교통체증 유발로 차선길이 연장		발로 차선길이 연장	설치되어 있어 차선길이를 연장할 경우 교차로 내 사고 및 정체유발로 불가.
2009. 7. 20 농소3동 일원 배차간격이 넓어 증편운행 요망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농소3동 일원 배차간격이 넓어 증편운행 요망	2009. 7. 22 ○시 대중교통과 이첩 ○신설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노선 신설 및 증차운행을 추진하여 왔고 지속적으로 향후 동 노선에 대해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극 증편 운행.
2009. 7. 20 달천 I'PARK, 삼성코아루후문 인근 버스전자정보 안내판 설치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달천 I'PARK, 삼성코아루 후문 인근 버스전자정보 안내판 설치	2009. 7. 22 ○시 교통정책과 이첩 ○버스전자장보안내시스템은 노선과 배차시간에 따라 출발⇒위치정보 수집⇒정보제공까지의 처리과정을 위해 1~3분 정도 후 운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건의한 지역은 종점에서 1~3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종점과 가까운 정류소이므로 종점에서 도착까지의 시간이 짧아 수집할 버스운행정보가 없어 안내단말기(BIT)설치 불가.
2009. 7. 20 상안~달천간 신호 연동 요망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상안~달천간 신호연동 건의	2009. 7. 22 ○중부경찰서 이첩 ○현재 비보호 좌회전실시로 신호연동 운영중.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9. 7. 20 홈플러스 앞 신호체계 개선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홈플러스 앞 신호체계 개선 - 상안동 홈플러스 앞 쌍용아진1차 방향 좌회전 - 신답교 ⇒ 홈플러스 방향 2차로의 직좌 신호개선 요망	2009. 7. 22 ○중부경찰서 이첩 ○상안동 홈플러스 앞에서 쌍용아진 1차 방향 좌회전 허용 시 신답교 교통정체를 유발하므로 불가함. 국도7호선을 이용하여 동천서로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이 많아 교통정체 해소차원에서 조치한 사항임.
2009. 7. 20 달천고등학교 앞 사거리 과속단속 CCTV 설치요망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달천고등학교 앞 사거리 과속단속 CCTV 설치요망	2009. 7. 22 ○중부경찰서 이첩 ○상기 지역 과속단속 CCTV 설치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아파트 입주시 설치 불가하다고 기통보한바 있고 시 전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연 4~5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설치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기 지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2009. 7. 20 쌍용아진@ 목요장터와 삼성코아루 수요장터 단속 쌍용아진@ 2·3차 사이 도로 차 없는 거리 지정 요망	농소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	쌍용아진@ 목요장터와 삼성코아루 수요장터 단속 쌍용아진@ 2·3차 사이 도로 차 없는 거리 지정 요망 및 공설시장 조성 등 대책 마련 등	2009. 7. 22 ○건설과 이첩 ○상기 지역의 노점상 단속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과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만족할만한 수준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있음. 하지만 시간대별 집중단속 등과 같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쌍용아진 2·3차 사이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폐지하지 않고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공설시장 등의 조성은 불가함. 인근 지역 또한 공설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성시 예산 또한 많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2009. 7. 20 달천 유적공원 부지 고도를 낮춰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등을 포함한 공원 조성요망		달천 유적공원 부지 고도를 낮춰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등을 포함한 공원 조성요망	2009. 7. 22 ○시 문화예술과 이첩 ○향후 유적공원 조성 시에 소관부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009. 8. 11 하수도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업체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촉구	전국정화조보상대책추진연대울산본부	울산광역시의 하수도정비사업(정화조폐쇄공사)이 수년내 완료될시 30여 정화업체의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어 대책 요구	2009. 8. 12 ○환경위생과 이첩 ○분뇨수집·운반수수료현실화, 재정지원(감차 등 폐업지원, 분뇨처리비 감면 또는 면제, 주차장, 사무실, 차량도색 지원 등), 대체사업 요구내용은 현 상태에서 즉시 수용은 불가하며 현재 수수료 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 추진중.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9. 8. 11 바르게살기위원회 동 활동지원금 분기별 지원 건의	류00	2004년부터 분기별 지원금(읍면동사업비)이 중단되어 봉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지원금을 부활하여 봉사의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구	2009. 8. 12 ○자치행정과 이첩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등을 반영하여 예산금액이 산정되며 보조단체별 제출된 자체사업계획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됨으로 증액 불가하며 참신하고 우수한 사업 계획을 발굴하여 신청할 것을 권고.
2009. 8. 18 행정동명 변경(송정동주민센터→화봉동주민센터) 건의	송정동주민센터개명추진위원회대표 황00	송정동주민센터 →화봉동주민센터로 행정동명 변경 요구	2009. 8. 25 ○자치행정과 이첩 ○2012년 2만여명의 인구가 송정동으로 전입될 예정으로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전입주민 분포도, 관할지역의 특성과 유래, 대내외 인지도, 주민여론, 주민합의 권고 등 장기검토.
2009. 9. 7 진장명촌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 건의	명촌향우회 회장 정00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건립 건의	2009. 9. 9 ○사회복지과 이첩 ○구청소유인 명촌동 700-15번지 기존 명촌마을회관 부지는 도로 및 상·하수도 관로 등의 기반시설이 개설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음. 향후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당해 부지에 관련 도시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기반시설을 완료 하였을 경우 경로당건립 적극 검토하겠음.
2009. 9. 7 엠코타운 아파트 공사 관련 진정	약 수 빌 라 연합회회장 박00	신천엠코타운 공사 관련 야간 및 휴일 공사,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발생에 따른 불편 등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009. 9. 11 ○환경위생과 이첩 ○소음측정1회, 현지지도점검 6회 실시 등 시공사 행정지도로 소음 비산먼지 피해 해소.
2009. 9. 29 상안동 진입로 확장 건의	농소3동통장 한00	상안동 680-1(상안가든) 인근 진입로가 비좁아 통행이 불편하고 사고위험 및 농번기에 주민들과 마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진입로 확장 건의	2009. 10. 5 ○건설과 이첩 ○우리구 재정여건상 관내 미개설된 계획도로와 마을안길 확장을 일시적으로 개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2009. 11. 11 이화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및 도로확장 건의	현대글로리아 회장 서00	이화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보행로 개설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	2009. 11. 16 ○건설과 이첩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우리구 재정형편상 당장개설은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길 확보를 위해 현우파크 앞 이화천을 이용한 보행데크 설치를 2010. 6. 4 완료.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10. 1. 22 제전 천곡간 통학로 확대 보수 건의	천곡동 143 이00	제전 천곡간 통학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므로 통학로 확대보수 건의	2010. 2. 1 ○농수산과 이첩 ○천곡동 1053번지 일원 통학로 개설은 현재 통학로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로 및 임도 개설예정이 없고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천곡동 197번지 일원에 대하여 농로 포장을 검토 중에 있으며 차선책의 통학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유지 토지사용동의서 징구 및 예산확보 후 우회 농로 개설 검토.

제4절 주요 의정활동

1.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과 여론을 청취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가. 운영개요

○ 운영일시 : '98. 10. 12부터 연중 계속 실시

나. 운영방법

○ 기간 : 연 중(월~금 매일실시)

○ 장소 : 의원실 내(의회민원상담실)

○ 일일근무조 편성운영

• 일일근무조 편성운영(의장단 매일 출근, 의원1명 윤번제 근무)

상시	상시	월	화	수	목	금
의장 윤임지	부의장 문석주	의원 이은영	의원 박병석	부의장 류인목	의원 류재건	의원 이영희

• 근무시간 : 10:00 ~ 17:00

• 상담보좌 : 전문위원 1명

※민원접수방법 : TEL(052-289-8111), FAX(052-219-7520)

• 상담내용 : 각종 민원불편 및 애로사항 상담·처리, 여론수렴

다. 운영실적

구 분	운 영 기 간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고
			완결	추진중	불가	
계		99	43	35	21	
2008년도	7. 1 ~ 12. 31	35	14	12	9	
2009년도	1. 1 ~ 12. 31	63	29	22	12	
2010년도	1. 1 ~ 6. 30	1		1		

○ 운영반응 :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처리하므로써 대의기관의 기능수행을 충실히 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며, 특히 개소 1주년('99. 10. 12)을 맞아 지방언론사로부터 호평을 받았음.

라. 기대효과

○ 의회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주민복리증진 기여

→ 친근감 있는 의회분위기 조성

○ 집행부와 관련된 각종 민원처리 불편사항을 의회에서 중계역할을 함으로써 민원 조기해결 도모

□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정례회

북구의회는 신뢰받는 「의회민원상담실」을 운영코자 정기적으로 매월 1회 다목적실에서 『상담실운영 관련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담실운영 관련 정례회』는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번제로 운영중인「의회민원상담실」을 민원상담과 주민 진정서 내용에 대한 담당부서와의 토론을 통해 추진상황과 처리결과에 대해 정리·

분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내실있는 의회 상담실 운영으로 의정활동 신뢰도 향상 및 진정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함이다.

▲ 민원상담실 운영 정례회 개최

2. 『조례입법연구회』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회장 류재건)는 2008년 5월 19일 북구의회 민원접견실에서 조례입법연구회 첫 회의를 가졌다.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는 류재건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연구회 운영기간, 운영방법, 주요임무에 대해 협의하였다.

조례입법연구회 활동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의 조례 중 제정이 필요한 조례,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북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구민편의 증진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을 위해 전 의원들이 공감하여 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연구회는 5월 19일 첫 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12시에 의회 민원접견실 및 다목적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북구의 모든 조례에 대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선별하고 관련 자료를 연구·분석하여 의원들간 토론을 통해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제4대 북구의회 7명의 의원은 지난 4년의 임기동안 총 5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발의건수도 의원 1인 평균 7.71건으로 울산의 시·구·군의회 중 최고의 발의건수이며, 또한 전국 230개 시군자치구의회 중에서도 11번째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로 합리적인 견제와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조례입법연구회 연구활동중 의원들간 토론장면 >

3. 정례회 및 임시회 현장활동 강화

□ 정례회 · 임시회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실시

회 기	일 시	현장활동 대상지	비 고
제106회 제1차 정례회	2008. 7.12	무룡산 공원화사업 준공 현장 등 7개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11.13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등 4개소	
제110회 임시회	2009. 2.16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현장 등 5개소	
제112회 임시회	2009. 5.28	오토밸리 복지센터 건립현장	
제114회 제1차 정례회	2009. 7.11	농소3동 쌍용아진아파트 인근 자전거도로 설치지역 등 5개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16회 임시회	2009.10.28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건립현장 등 6개소	
제118회 임시회	2010. 2.23	송정동 주민센터 건립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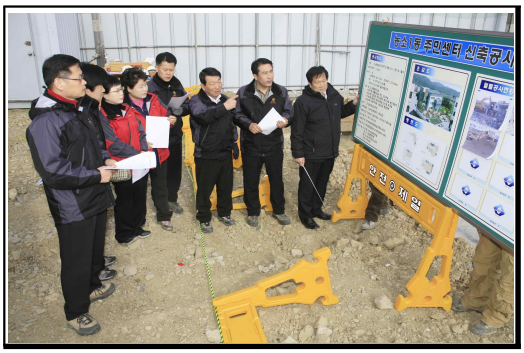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현장 등 5개소 현장활동)

(울산외고 건립현장 등 6개소 현장활동)

4. 의정실무능력향상 특별연수

□ 전문성확보 특별연수 및 경영수익사업 등 벤치마킹

북구의회는 2009년 5월 13일 ~ 15일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한 특별연수 및 타지역 선진시설 견학을 위한 벤치마킹과 각종 의정 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의원 특별연수 및 현장 시설 견학은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힘과 아울러 선진시설의 자료수집 등을 통한 북구 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 울산 구·군의원 합동 워크숍

2009년도 구·군의회 의원 합동 워크숍행사가 8월 19일 신명동 울산교육수련원에서 울산 구·군의회 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의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의회 및 의원 상호간 우호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지역 현안사업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 구축에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전문성 확보 특별연수 및 선진시설 벤치마킹

북구의회는 2010년 1월 25일 ~ 27일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연수 및 타지역 선진시설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과 각종 의정활동 자료수집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의원 특별연수 및 현장 시설 견학은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힘과 아울러 선진시설의 자료수집 등을 통한 북구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의정실무 능력향상 특별연수 실시)

(울산 구·군의원 합동 워크숍)

5. 자원봉사활동 실시

□ 2008년도 4/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 북구의회는 12월 30일 전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8년도 4/4분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의 이번 봉사활동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소재 희망시설 및 일자를 선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자는 논의가 있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의원들과 직원들은 지역구별로 조를 편성하여 자원봉사활동과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2009년도 1/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 북구의회는 2월 17일 오후 2시 연암동 재활용선별장에서 1/4분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자원봉사활동에는 전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여하였다. 북구의회의 자원봉사활동은 2008년부터 실시 해오던 것을 200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2009년도 2/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 북구의회는 6월 4일 오전 10시 중산동 농소화훼작목반에서 2/4분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2/4분기 농촌 일손돕기를 위해 농번기철에 일손이 없어 바쁜 중산동 농소화훼작목반을 방문하여 원예농업 관계자들과 함께 호접란 모종 넓히기 및 열무 파종 등 작업을 실시하고 농업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북구의회는 앞으로도 분기별 어려운 시설 등 몸으로 부딪치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2009년도 3/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 북구의회는 8월 28일 무룡산 등산로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3/4분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3/4분기에는 범정부적 민생안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현장을 찾아 현장체험과 참여자들의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였다. 의원들은 숲가꾸기 부산물 처리를 위해 희망근로 참여자들과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작업에 임하였다.

□ 2009년도 4/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 북구의회는 10월 23일 상안동 동산마을 농소 배 작목반에서 4/4분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4/4분기에는 농촌일손돕기를 위해 농번기철에 일손이 없어 바쁜 배 작목반을 방문하여 배 수확 및 농업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의원들은 배 수확을 위해 배 작목반 관계자들과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작업에 임했다.

□ 2010년도 1/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 북구의회는 2월 9일 관내 복지시설인 울산명성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태연재활원에서 1/4분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의원들은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도록 격려하였다. 또 의원들은 1/4분기 자원봉사활동으로 태연재활원을 찾아 장애우들과 함께 체육활동을 즐기며 친교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중산동 농소화훼작목반 자원봉사활동)

(상안동 동산마을 농소 배 작목반 배수확)

6. 2008년 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및 연수 보고회 개최

□ 호주·대만 선진 복지·문화환경·도시계획시설 등 벤치마킹 결과 보고회

북구의회는 12월 22일 오후 4시 5층 민원접견실에서 '2008년도 공무국외연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북구의회 윤임지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북구청 간부공무원,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각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정회장,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호주·대만의 선진시설 벤치마킹'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호주·대만의 선진 복지·문화·환경·도시계획시설 등의 견학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문석주 부의장의 사회로 참석내빈 소개 후, 윤임지 의장의 공무국외연수 보고회 개최와 관련 인사말씀과 공무국외연수시 현지 기관방문 등 시설 견학 내용을 직접 촬영한 UCC 동영상 상영과 이번 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을 대표해서 류인목 의원의 연수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008년 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회)

북구의회 의원들은 "특히 호주의 시드니항과 대만의 야류지질공원은 우리 지역 강동 산하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정책 자료수집 및 지역민들의 관광자원 개발실태를 직접 견학 및 체험하였으며""호주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와 대만의 마을만들기 조성현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을 두루 견학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7.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 제2회 북구 청소년 모의의회

미래의 정치지도자인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모의의회가 북구의회에서 열렸다.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 북구지회(회장 이 란)는 2008년 10월 29일 오후 2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북구 청소년 모의의회'를 북구의회 윤임지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천곡

중학교 2학년 4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모의의회에서 청소년들은 두발자유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의제로 정하고 회의를 열었으며, 학교 운동장 잔디 설치에 관한 5분 자유발언 등의 내용으로 모의의회 시간을 가졌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천곡중학교 학생들은 “의원들의 모습을 TV를 통해서만 보았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의회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풀뿌리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제3회 북구 청소년 모의의회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 북구지회는 2009년 7월 24일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북구 청소년 모의의회’를 북구의회 윤임지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농소고등학교 1 ~ 3학년 학생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풀뿌리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말했다.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

8. 사회복지시설 방문 설·추석 위문품 전달

□ 2008년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 의원들이 추석을 맞이해 9월 1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북구어르신 행복마을을 방문해 추석 위문품을 전달했다.

윤임지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 7명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위문품이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2008년 설맞이 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는 1월 19일 오후 4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하늘아이지역아동센터 외 2개소를 방문하여 5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 설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설이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대했다.

□ 2009년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 의원들은 9월 29일 오후 4시 관내 복지시설인 염포지역아동센터 외 1개소를 방문하여 학용품과 생활용품 등 추석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격려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 2010년 설맞이 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 의원들은 2월 9일 관내 복지시설인 울산명성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태연재활원에서 1/4분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의원들은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도록 격려하며, “이번 위문품이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모두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설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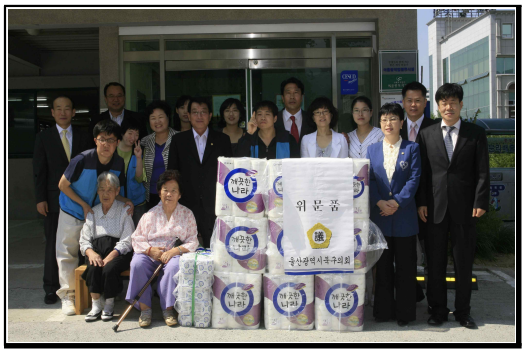

(2008년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2010년 설맞이 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9. 타 의회 의정자료수집 및 선진시설 벤치마킹

□ 2008년 대전시 유성구·원주시의회 방문 자전거도로 벤치마킹

북구의회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대전 유성구의회와 원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자전거도로 벤치마킹과 각종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해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북구의회의 타 시,도 의회의 방문 및 시설 견학은 전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의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북구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견학은 대전 유성구와 원주시의 자전거도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 자전거도로에 접목할 방안을 검토하고, 유성구의 유성온천 족욕체험장과 가로수길 견학 및 원주시의 랜드마크 산업인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견학하여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지역에 접목 할 수 있는 방안 비교 검토를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2009년 화천군의회 방문 상호 정보교류 및 성공적인 축제 벤치마킹

북구의회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화천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상호 정보교류와 지역의 성공적인 축제인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북구의회의 타 시·도 의회의 방문 및 시설 견학은 전국의 여러지역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의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북구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견학은 화천군의회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전국의 성공적인 축제중 하나인 화천 산천어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축제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2009년 삼척시의회 방문 선진시설 벤치마킹

북구의회는 10월 15일 ~ 16일 삼척시의회 및 영덕군을 방문하여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상호 정보 교류와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지역의 선진 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이번 북구의회의 타 시·도 의회의 방문 및 시설 견학은 전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의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북구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대전 유성구 자전거도로 현장견학)

(화천군의회 방문 성공적인 축제 벤치마킹)

제5절 의정활동일지

2008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 1(화)~ 7. 21(월)	북구의회	정례회	◦제106회 제1차 정례회 (21일간)	
7. 9(수)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교 육	◦새마을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그린 마케팅교육	
7. 10(목) 17:30	울산시장실	간담회	◦시장 및 구군의장과의 간담회	
7. 11(금) 14:00	북구문예회관 2층 대공연장	기념행사	◦제13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7. 11(금) 15:00	의장실	현황보고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관련 현황 보고	
7. 15(화) 18:30	현대백화점 울산점	보도사진전	◦제12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	
7. 21(월) 11:10	민원접견실	간담회	◦7월 의원간담회	
7. 22(화) 15:30	북구청 구내식당	종강연	◦제3대학 1학기 종강연	
7. 23(수) 17:00	금모래횟집	월례회	◦구군 의장단협의회 월례회	
7. 24(목) 10:30	장등마을회관	결연식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및 장등마을 자매결연식	
7. 26(목) 17:30	강동 산하해변	축 제	◦제6회 강동해변 영화축제 및 2008 서머페스티벌	
8. 1(금) 20:00	양정동주민센터	콘서트	◦이웃과 이웃의 만남 투게더콘서트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8. 5(화) 20:00	강동 산하해변	캠페인	◦쓰레기배출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캠페인	
8. 8(금) 20:00	중산동 어린이공원	콘서트	◦이웃과 이웃의 만남 투게더 콘서트	
8. 12(화) 10:30	농소새마을금고	개점행사	◦농소새마을금고 매곡지점 개점	
8. 12(화) 11:00	북구새마을회	개소식	◦새마을회 사단법인 설립 및 사무소 개소식	
8. 14(목) 19:00	선암댐수변공원	가요제	◦선암댐 수변공원 연꽃가요제	
8. 15(금) 10:00	울산문예회관 대공연장	경축행사	◦광복 제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행사	
8. 15(금) 11:00	박상진 생가	추모제	◦고헌 박상진의사 서거 88주기 추모제	
8. 18(월) 10:00	북구청 지하 충무상황실	보고회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	
8. 19(화) 12:00	다이아몬드식당	임시회	◦울산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 임시회	
8. 19(화) 16:30	북구청 지하 충무상황실	참관	◦2008 을지연습 자생단체장 및 의회의원 참관	
8. 19(화) 17:00	민원접견실	간담회	◦8월 의원간담회	
8. 19(화) 19:00	양남석계	단합대회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 하계 단합대회	
8. 23(토) 10:30	무룡테니스장	개장식	◦교량하부 체육시설 개장식	
8. 29(금) 17:00	농소1동주민센터	주민설명회	◦매곡변전소 및 철탑건립관련 주민설명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9. 1(월) 15:00	북구청 3층 상황실	보고회	◦북구 노사정구민 상생발전 프로젝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9. 1(월) 19:30	울산문예회관	음악회	◦ubc 울산방송 창사 11주년기념 푸른음악회	
9. 2(화) 11:00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취임식	◦울산매일신문사 신임대표이사 취임식	
9. 2(금) 19:30	북구청 광장	개막식	◦2008 울산무룡예술제 개막식	
9.3(수)~ 9.11(목)	북구의회	임시회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	
9. 24(수) 11:00	무룡청소년체육 활동장	축 제	◦행복한 어울림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	
9. 25(목) 16:30	시 의사당 대회의실	심 사	◦산하 도시개발지구내 제92호 근린공원 설계디자인 현상공고 심사	
9. 27(토) 09:00	농소중학교 실내체육관	축 제	◦제4회 북구민 건강생활실천 줄넘기 축제	
9. 27(토) 10:00	북구청 광장	나눔장터	◦2008 제3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9. 27(토) 11:00	연암초등학교	경로잔치	◦효문동 2008년도 경로잔치	
9. 27(토) 15:00	울산대공원 동문광장	기념식	◦2008 관광의 날 기념식	
9. 27(토) 18:30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음악회	◦한마음 산사음악회	
9. 28(일) 09:30	양정동 생활체육공원	이취임식 족구대회	◦북구족구연합회장 이취임식	
9. 28(일) 10:00	송정초등학교 체육관	경로잔치	◦송정동 노인의 날 경로잔치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9. 28(일) 11:00	송정동 무룡정	궁도대회	◦고헌 박상진의사배 궁도대회	
9. 28(일) 11:00	천곡중학교	경로잔치	◦농소3동 어르신 싱글벙글 큰잔치	
9. 29(월) 10:00	중구청 2층 상황실	치안협의회	◦제3차 중북부지역 치안협의회	
10. 1(수) 19:00	홈에버맞은편 공터	일일호프	◦문화공간협의회 도서기금마련 일일호프	
10. 2(목) 19:00	mbc컨벤션센터 마에스타 1층	개회식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	
10. 3(금) 10:30	매곡초등학교	경로잔치	◦농소2동 노인의 날 기념 주민한마음 큰잔치	
10. 4(토) 08:40	동천체육관외	체육대회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격려	
10. 4(토) 17:30	달동문화공원	퍼레이드	◦처용문화제 거리퍼레이드	
10. 5(일) 11:00	메카볼링장외	체육대회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격려	
10. 6(월) 11:00	장등마을회관	체결식	◦강도 장등마을과 화정의용소방대 자매결연	
10. 6(월) 18:30	두동식당	월례회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	
10. 9(목) 15:00	롯데호텔	출범식	◦세계옹기문화예스포 조직위원회 출범식	
10. 11(토) 10:30	염포초등학교	경로잔치	◦제12회 염포동 어르신 위안잔치	
10. 11(토) 11:00	양정생활체육공원	체육대회	◦제1회 양정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 12(일) 10:30	호계초등학교	체육대회	◦제3회 북구연합회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10. 15(수) 11:00	울산교육연수원	기념식	◦제30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	
10. 15(수) 11:00	울산교육연수원	경진대회	◦제11차 울산광역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10. 17(금) 10:30	의장실	위촉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식	
10. 18(토) 15:00	쌍용@2.3차 사잇길	음악회	◦북구복지한마당 및 농소큰사랑 작은 음악회	
10. 19(일) 10:00	농소중학교 운동장	체육대회	◦2008 이주노동자 미니 올림픽	
10. 20(월) 17:00	북구청 광장	오픈식	◦제5회 가을꽃 전시회장 오픈식	
10. 21(화) 14:00	북구문예회관	경로행사	◦2008년 북구어르신 축제한마당	
10. 21(화) 19:00	북구문예회관 전시실	사진전	◦북구 문화아카데미 사진전	
10. 22(수) 10:30	북구자원봉사 센터 2층	경로잔치	◦지역어르신 생신잔치	
10.23(목)~ 10.31(금)	북구의회	임시회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 (9일간)	
10. 23(목) 11:00	민원접견실	간담회	◦10월 의원간담회	
10. 25(토) 10:00	양정생활체육 공원	체육대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한마음 체육대회	
10. 26(일) 09:3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9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 29(수) 14:30	북구의회 본회의장	모의의회	◦북구청소년 모의의회	
10. 31(금) 14:00	신명교육연수원	워크숍	◦민주평통 울산 권역별 자문위원 워크숍	
11. 1(토) 09:30	농소운동장	운동회	◦직원 화합 명랑운동회	
11. 1(토) 20:00	울산공항	공무국외연수	◦공무국외연수	
11. 9(일) 10:00	농소운동장	행 사	◦제3회 농도 한마당행사	
11. 11(화) 18:00	현대백화점 울산점 9층	사진전	◦제7회 울산매일 보도사진전	
11. 14(금) 11:30	중리경로당	준공식	◦중리경로당 준공식	
11. 17(월) 16:00	북구문예회관	발표회	◦2008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11. 18(화) 15:00	북구청 3층 상황실	보고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11. 19(수) 15:00	울산진장디플렉스	기공식	◦울산진장대플렉스 기공식	
11. 20(목) 13:30	당사항	방류행사	◦2008 해삼종묘 방류행사	
11. 21(금) 10:00	북구문예회관	심포지엄	◦건강도시 선포식 및 국제 심포지엄	
11. 21(금) 11:00	울산MBC컨벤션 2층 안젤로홀	해단식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 해단식	
11. 22(토) 11:00	호계초등학교	복지증진대회	◦제9회 북구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24(월)~ 12.22(화)	북구의회	정례회	◦제109회 북구의회 정례회 (29일간)	
11. 25(화)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토론회	◦노사 상생문화 확산방안 대토론회	
11. 26(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심의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회	
11. 28(금) 15:00	농소운동장 마시구장	합동훈련	◦2008 방사선 사고대응 합동훈련	
12. 1(월) 14:00	북구문예회관	보고회	◦2008학년도 강북교육 실적보고회	
12. 3(수) 12:00	소구루마	위로연	◦2008년도 연말고령회원 경로 위로연	
12. 3(수) 19:30	북구문예회관	정기연주회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2. 5(금) 11:00	대안마을회관	준공식	◦대안마을회관 준공식	
12. 5(금) 12:00	북구보건소	김장담그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12. 7(일) 14:00	메카볼링센터	볼링대회	◦제9회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장배 볼링대회	
12. 9(화) 17:00	중구 가미초밥	월례회	◦구군의장단협의회 12월 월례회	
12. 10(수) 14:00	북구문예회관	수료식	◦주민자치대학 제6기 종강 및 수료식	
12. 10(수) 18:30	울산MBC컨벤션	기념행사	◦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보육인의 밤 행사	
12. 16(화) 09:30	농소화훼단지 김수선농장	개통식	◦농소화훼단지 시설하우스 도시가스 공급 개통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2. 19(금) 14:00	정보통신고교 강당	워크샵	◦청소년 쇠부리놀이 인재양성을 위한 워크샵 및 포럼	
12. 20(토) 19:00	호계교회	위안잔치	◦외국인근로자 초청잔치	
12. 22(월) 11:20	북구의회 의장실	간담회	◦12월 의원간담회	
12. 22(월) 14:00	민원접견실	보고회	◦공무국외여행보고회	
12. 23(화) 11:30	성안 다이아몬드한정식	협의회	◦제4차 중북구지역 치안협의회	
12. 29(월) 10:00	민원접견실	종무식	◦2008년 의회 종무식	
12. 29(월) 11: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글짓기대회	◦2008년도 통일염원 한마음글짓기대회	
12. 29(월) 14:00	효문아파트공장 풋살경기장	준공식	◦효문아파트형공장 풋살구장 준공식	
12. 31(수) 11:40	북구청 구내식당	종무식	◦북구청 종무식 다과회	
12. 31(수) 22:00	정자 남방파제 야외공연장	송년행사	◦해맞이축제 송년행사	

2009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 1(목) 06:30	정자 남방파제 야외공연장	해맞이	◦2009년 강동해변 해맞이축제	
1. 5(월) 10:00	북구의회 의장실	시무식	◦2009년 북구의회 시무식	
1. 5(월) 11:00	민원접견실	간담회	◦1월 의원간담회	
1. 6(화) 11:00	롯데호텔	신년인사회	◦2009년도 신년인사회	
1. 7(수)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신년인사회	◦2009년도 신년인사회	
1. 9(금) 15: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창설식	◦향토예비군 북구지역대 창설식	
1. 13(화) 11:00	민원접견실	설명회	◦홈페이지 제작관련 설명회	
1.14(수)~ 1.15(목)	강원도 화천	견 학	◦1/4분기 선진지 견학	
1. 16(금) 10:30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정기총회	◦제33회 새중앙새마을 금고 정기총회	
1. 22(목) 11:00	보훈회관 2층	정기총회	◦6.25참전유공자회 안보결의대회 및 정기총회	
1. 29(목) 11:30	농소농협	총 회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 총회	
1. 29(목) 15:00	문수월드컵컨벤션	시상식	◦2009년 경상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1. 30(금) 19:00	녹원가든	정기총회	◦(사)자연보호중앙연맹 북구협의회 제11차 정기총회	
1. 30(금) 19:30	엘레팡뷔페	정기총회	◦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기총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2. 2(월) 10:50	북구의회	전달식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2. 2(월) 13:00	민원접견실	연구회	◦조례입법연구회	
2. 3(화) 11:30	옥동 문화뷔페	이취임식	◦사)한국농업경영인 울산광역시연합회 6·7대 임원 이·취임식	
2. 4(수) 14:00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준공식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준공식	
2. 4(수) 17:00	고래고기 원조할매집	회 의	◦구·군 의장협의회	
2. 6(금) 15:00	강동동 주민센터	설명회	◦정자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주민설명회	
2. 9(월) 15:30~	8개동	전통행사	◦09년도 정월대보름 행사 [농소1동~염포동]	
2. 10(화) 10:00	농소농협 3층 대회의실	정기총회	◦농소농협 제40기 정기총회	
2.10(화)~ 2.24(화)	북구의회	임시회	◦제110회 북구의회 임시회 (15일간)	
2. 12(목) 10:30	북구노인복지관 3층 다목적 홀	개강식	◦09년 북구어르신행복대학 개강식	
2. 12(목) 16:00	3층 상황실	정례회	◦09년 민주평통 신년정례회	
2. 13(금) 14:30	강북교육청 2층 대회의실	개소식	◦강북교육청 'Wee Center' 개소식	
2. 17(화) 18:30	연 한정식	간담회	◦시의장과 구·군 의장과의 간담회	
2. 18(수) 13:30	신청사 대강당(2층)	개청식	◦울산광역시 신청사 개청식	
2. 18(수) 17:00	3층 상황실	월례회	◦북구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2. 19(목) 10:00	대전 컨벤션센터 코엑스	정기총회	◦09년도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2. 20(금) 10:00	농소새마을금 고 2층	정기총회	◦농소새마을금고 제42차 정기총회	
2. 20(금) 16:50	3층 상황실	설명회	◦지역 국회의원 초청 현안설명회	
2. 21(토) 14:30	북구문화 예술회관 1층 전시관	공모전	◦강동해변 해맞이축제 전국 사진 공모전 시상	
2. 22(일) 11:00	메카볼링장	대 회	◦제1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배 전국 볼링대회	
2. 23(월) 11:00	소회의실	보고회	◦의정홍보 영상물 보고회	
2. 25(수) 10:00	꿈나무 어린이집 2층 강당	졸업식	◦꿈나무 어린이집 졸업식	
2. 26(목) 18:30	아크로존 뷔페	취임식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신년회 및 5대 회장취임식	
3. 1(일) 10:00	울산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기념행사	◦제90주년 3·1절 기념행사	
3. 1(일) 11:00	박상진 의사 생가	참 배	◦고헌 박상진 의사 생가 참배	
3. 2(월) 13:30	민원접견실	연구회	◦조례입법연구회	
3. 3(화) 11:00	2층 대회의실	정기총회	◦2009년 북구 문화원 정기총회	
3. 3(화)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입학식	◦제3대학 제2기 입학식	
3. 4(수) 14:00	북구청 3층 상황실	위원회	◦강동수산물축제 추진위원회 개최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3. 5(목) 10:30	농소새마을금고 2층 대강당	입학식	◦농소새마을금고 주부대학(가요교실) 제13기 입학식	
3. 5(목) 13:30	외솔교 공터	환경정비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	
3. 8(일) 10:00	진장중학교 실내체육관	기념식	◦북구방범연합회 창립 6주년 기념식 및 단합대회	
3. 11(수) 12:00	당사동 우가마을	준공식	◦나잠(해녀) 어업인 탈의장 시설사업 준공식	
3. 11(수) 14:0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강당	개강식	◦주민자치대학 제7기 개강식	
3. 12(목) 10:30	신청사 광장	개청식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개청식	
3. 14(토) 14: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16회 북구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회식	
3. 16(월) 13:30	민원접견실	연구회	◦조례입법연구회	
3. 18(수) 11:30	보훈회관 2층 회의실	정기총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울산북구지회 “09년도 회원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3. 19(목) 11:0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강당	콘서트	◦천원의 행복 2009 충전콘서트	
3. 24(화) 14:3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정기총회	◦한국음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북구지부 “2009년도 제13차 정기총회”	
3. 25(수) 17:00	동구 대가활복국	월례회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	
3.26(목)~ 4.3(금)	북구의회	임시회	◦제111회 북구의회 임시회 (9일간)	
3. 27(금) 11:00	강동농협 2층 회의실	전달식	◦(재)유포장학회 장학금 및 장학증서 전달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4. 5(일) 11:00	전몰군경 충혼비	위령제	◦제56회 농소·6·25 전몰군경 합동위령제	
4. 10(금) 11:00	화동못 등산로 인근	기념식	◦제64회 나무심기행사	
4. 10(금) 14:00	북구청 광장	기념식	◦북구의회 기념식수 행사	
4. 13(월) 10:30	농소농협 산지유통센터	기원제	◦2009년 북구 배 풍년기원제	
4. 19(일) 11:00	천곡동(속심) 열사 묘역	추모제	◦4·19 민주혁명 제49주년 정임석 열사 추모행사	
4. 20(월) 10:00	북구문화예술회 관 야외공연장	대 회	◦2009 대한민국 장애인축제 '1004 릴레이 희망의 마라톤 대회'	
4. 23(목) 11:00	기박산성 [기백이재]	추모제	◦제10회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4. 24(금) 15:00	대암훼미리 @ 101동 상가 2층	개소식	◦이화노인복지센터 개소식	
4. 25(토) 10:00	호계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대 회	◦제4회 복조리 찰메쌀배 바둑대회	
5. 1(금) 10:30	노인지회 사무실	정기총회	◦사)대한노인회 울산 북구지회 2009년 정기총회	
5. 4(월) 15:00	호계공설 시장	준공식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준공식	
5. 5(화) 10:00	북구청 광장	기념식	◦북구 어린이날 큰잔치	
5. 8(금) 19:00	북구청 광장	개막식	◦제5회 울산쇠부리축제 개막식	
5. 9(토) 10:20	북구노인 복지관 앞 야외공연장	기념식	◦제3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경로잔치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5. 10(일) 08:00	북구청 일원	대 회	◦쇠부리축제기념 '행복북구 건강 달리기'	
5. 11(월) 13:30	부의장실	연구회	◦조례입법연구회	
5.13(수)~ 5.15(금)	제주도	견 학	◦북구의회 선진지 견학	
5. 18(월) 11:00	구암경로당	준공식	◦구암경로당 준공식	
5. 22(금)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개강식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개강식	
5. 23(토) 16:00	북구문화예술 회관 공연장	개막식	◦청소년 직업체험 축제 개막식	
5. 25(월) 11:00	중구청 2층 상황실	협의회	◦09년 제1차 '중구·북구지역 치안협의회'	
5.27(수)~ 6.1(월)	북구의회	임시회	◦제112회 북구의회 임시회 (6일간)	
5. 29(금) 16:00	유통센터 야외광장	개장식	◦울산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개장식	
5. 31(일) 10: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JCI 울산권역 8개롬 가족친선 체육대회	
6. 1(월)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발대식	◦울산북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6. 4(목) 10:00	농소화훼단지	봉사활동	◦2/4분기 자원봉사활동	
6. 5(금) 19: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개회식	◦2009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회식	
6. 6(토) 09:40	울산대공원 현충탑 광장	추념식	◦제54회 현충일 추념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6. 8(월) 13:30	민원접견실	연구회	◦조례입법연구회	
6. 9(화) 14:00	동부경찰서 4층 회의실	개소식	◦동부경찰서 관제센터 개소식 (방범용 CCTV)	
6. 10(수) 10:30	양정생활 체육공원	대 회	◦2009 선진화 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	
6. 12(금) 10:30	달천고등 다목적강당	개교식	◦달천고등학교 개교식	
6. 14(일) 10:00	태화강	대 회	◦시군구 의화간부공무원 친선용선대회	
6.15(월)~ 6.22(월)	북구회의	임시회	◦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 (8일간)	
6. 17(수) 14:00	북구문화예술 회관 대공연장	심포지엄	◦2009 울산북구 평생학습 심포지엄	
6. 19(금) 15:00	북구종합사회 복지관 1층	기념식	◦까페 다(茶) 드림 Open 기념식	
6. 22(월) 11:00	북구의회	간담회	◦6월 의원간담회	
6. 24(수)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교 육	◦Well-Being 친환경 식단제 실천을 위한 남은 음식 제로화 교육	
6. 26(금) 20:00	상방대공원	공 연	◦금요문화마당 '어울림' 공연	
6. 29(월) 15:00	북구청 3층 상황실	회 의	◦교육진흥재단설립추진위원회 회의	
6. 30(화) 19:0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교 육	◦보육시설 교사 교육	
7.1(수)~ 7.20(월)	북구의회	정례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일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7. 4(토) 20:00	상안초등 운동장	콘서트	◦투게더 콘서트	
7. 6(월) 14:0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기념행사	◦제14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7. 10(금) 20:00	농소운동장	콘서트	◦투게더 콘서트	
7. 15(수) 15:00	시청 본관 2층 대강당	기념회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발간기념회	
7. 17(금) 20:00	화봉 제1근린공원	콘서트	◦투게더 콘서트	
7. 20(월) 11:00	북구의회	개소식	◦의회홍보실, 의정자료실 개소식	
7. 21(화) 11:00	화정경로당	준공식	◦화정경로당 준공식	
7. 22(수) 11: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출범식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제14기 출범식	
7. 24(금) 14:30	북구의회	회 의	◦청소년 모의의회	
7. 25(토) 19:00	강동해변 산하특설무대	개막식	◦2009 강동해변축제 개막식	
7. 27(월) 19:00	강동해변 산하특설무대	콘서트	◦2009 서머페스티벌	
7. 29(수) 10:10	오토밸리 복지센터 3층 체육관	개관식	◦오토밸리 복지센터 개관식	
7. 30(목) 11:20	북구청 광장	전달식	◦공용자전거 전달식	
8. 10(월) 14:00	의회홍보실	연구회	◦조례입법 연구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8. 15(토) 11:00	박상진의사 생가	추모식	◦고헌 박상진의사 서거 88주기 추모식	
8. 18(화) 16:00	지하 충무상황실	보고회	◦2009 을지연습 민간인 초청보고회	
8. 19(수) 13:50	신명교육 수련원	워크숍	◦울산광역시 구·군 의원 합동 워크숍	
8. 24(월) 10:30	민원접견실	연구회	◦조례입법연구회	
8. 25(화) 10:0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교 육	◦아이사랑카드 설명회 및 부모교육	
8. 28(금) 14:30	연암테니스장 ~ 무룡산	봉사활동	◦3/4분기 자원봉사활동 (희망근로 숲가꾸기사업)	
8. 31(월) 19:00	울산체육공원 호반광장	대 회	◦2009 울산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전야제	
9. 1(화) 14:30	중부경찰서 4층 강당	창단식	◦「법질서 지킴이」 시민홍보단 창단식	
9. 3(목) 20:00	매곡초등 운동장	축 제	◦제4회「대한민국 詩노래 축제」	
9. 9(수) 18:30	매곡지방산업 단지	콘서트	◦한여름 별밤 콘서트	
9. 15(화) 10:00	농소1동 신청사	개청식	◦농소1동 신청사 개청식	
9.21(월)~ 9.29(화)	북구의회	임시회	◦제115회 북구의회 임시회 (9일간)	
9. 28(월) 16:00	강동 화암마을 경로당	설명회	◦주상절리정비공사 주민설명회	
10. 6(화) 14:00	기령소공원 ~ 동대산 정상	대 회	◦동대산 숲길 걷기행사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 8(목) 11:00	판지구이단지	개장식	◦판지 구이단지 개장식	
10. 9(금) 19:00	울산MBC 컨벤션	개회식	◦제12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	
10. 12(월) 13:30	의회홍보실	연구회	◦조례입법연구회	
10. 13(화) 11:00	모화역옆 현장내	기원제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2공구 안전 기원제	
10.15(목)~ 10.16(금)	삼척, 영덕	견 학	◦3/4분기 선진지 견학	
10. 22(목) 16:00	아파트형공장 신설 주차장	준공식	◦울산아파트형공장 신설 주차장 준공식	
10. 23(금) 14:00	상안동 1052-1	봉사활동	◦4/4분기 자원봉사활동	
10. 24(금) 10:00	박상진의사 생가	대 회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 학생미술 실기대회	
10.27(화)~ 10.30(금)	북구의회	임시회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4일간)	
10. 29(목) 15:00	무룡운동장	개장식	◦무룡잔디구장 개장기념 친선 축구경기	
10. 30(금) 11:00	농소운동장	대 회	◦2009 장애인 체육대회	
11. 1(일) 10:00	농소운동장	대 회	◦제10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1. 3(화) 11:00	북구지회앞 소공원	대 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2009회원 친선윷놀이 및 노래자랑 대회	
11. 5(목) 10:30	종하체육관	대 회	◦제15회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체육 대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 6(금) 13:00	남구 솔마루길	대 회	◦하반기 의원·직원 단합 등반대회	
11. 9(월) 15:00	의회홍보실	위촉식	◦의정모니터 위촉	
11. 13(금) 14:00	극동스타클래스	현판식	◦자원봉사 홈타운 7호점 현판식	
11. 18(수)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발대식	◦민주평통 통일무지개운동 발대식 및 통일시대 시민교실	
11. 19(목)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발표회	◦제3대학 제2기 동아리 발표회	
11. 20(금) 10:30	동천체육관	위안행사	◦호국·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	
11.23(월)~ 12.22(화)	북구의회	정례회	◦제117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30일간)	
11. 26(목)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출범식	◦재)울산북구 교육진흥재단 창립 출범식	
11. 28(토) 11:00	호계초등 실내체육관	대 회	◦제10회 북구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11. 30(월) 15:00	염포동 염포부두	기공식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기공식	
12. 1(화) 10: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졸업식	◦제3대학 제2기 졸업식	
12. 3(목) 13:30	보건소 지하주차장	격려방문	◦울산북구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격려 방문	
12. 4(금) 18:00	울산MBC 컨벤션	개회식	◦제1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볼링대회 개회식	
12. 7(월) 19:3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연주회	◦울산북구여성합창단 제6회 정기 연주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2. 8(화) 15:00	국민체육센터 2층 체육관	개관식	◦국민체육센터 개관식	
12. 9(수) 14:0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수료식	◦주민자치대학 수료식	
12. 11(금) 18:3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대 회	◦북구 자원봉사자 대회	
12. 16(수) 19:00	울산MBC 컨벤션	대 회	◦2009 보육인의 밤 행사	
12. 18(금) 14:0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상식	◦2009 통일염원 글짓기대회 시상식	
12. 21(월) 13:00	북구노인 복지관	종강식	◦2009학년도 북구어르신행복대학 종강식	
12. 22(화)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출범식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북구 운동본부 출범식	
12. 23(수)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출판기념회	◦고헌 박상진 의사 전기집 발간 출판기념회	
12. 23(수) 16:0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발표회	◦북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12. 29(화) 16:00	농소농협 3층 대회의실	출판기념회	◦농소농협 40년사 출판기념회	
12. 31(화) 16: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및 구내식당	종무식	◦북구청 종무식 및 송년 다과회	

2010년도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 1(금) 00:00, 06:30	강동 산하해변 특설무대	송년행사	◦2010년 강동해변 송년&제야 행사 및 해맞이 행사	
1. 4(월) 10:00	의장실	신년인사	◦신년 인사 및 1월 의원간담회	
1. 5(화) 10:40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신년인사	◦울산상공회의소 주관 신년인사회	
1. 11(월) 14:00	의회홍보실	연구회	◦조례입법연구회	
1. 14(목) 14:00	옥천암 입구 주차장	캠페인	◦산불예방 캠페인	
1. 18(월) 17:00	북구청 3층 상황실	평가보고	◦민주평통북구협의회 2009년 활동 평가보고 및 2010년 신년인사회	
1. 19(화) 12:00	농산물 유통센터 내 농산코너	개장식	◦지역우수 농산물 상설 직거래장터 개장식	
1. 21(목) 10:00	의회홍보실	연구회	◦조례입법연구회	
1.25(월)~ 1.27(수)	제주도	합동연수	◦상반기 의원·직원 합동연수	
1. 28(목) 14:00	북구청 3층 상황실	정기총회	◦재)울산북구 교육진흥재단 정기총회	
1. 29(금) 14:00	북구청 2층 대강당	보고회	◦국회의원 조승수 의정보고회	
2. 1(월) 10:00	의회홍보실	연구회	◦조례입법연구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2. 4(목) 14:00	동천실내 체육관	대 회	◦2010 중울산농협 어울림 한마당	
2. 6(토) 18:00	오토밸리 복지센터 3층 체육관	대 회	◦거주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	
2. 9(화) 13:30	명성요양원, 태연재활원	봉사활동	◦설맞이 복지시설방문 및 1분기 봉사활동	
2. 11(목) 11:00	의회홍보실	월례회	◦의정모니터 월례회	
2.18(목)~ 3.4(목)	북구의회	임시회	◦제118회 북구의회 임시회 (15일간)	
2. 19(금) 11:00	대구 인터불고	정기총회	◦2010년도 전국의장협의회 정기총회	
2. 26(금) 10:00	종합사회 복지관 3층	개강식	◦제7회 2010년 북구어르신행복대학 개강식	
2. 28(일) 15:00~	8개동	전통행사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3. 1(월) 10:00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기념식	◦제91주년 3·1절 기념식	
3. 1(월) 11:00	박상진 의사 생가	참 배	◦고헌 박상진의사 생가 참배	
3. 2(화) 14: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입학식	◦제3대학 제3기 신입생 입학식	
3. 3(수) 10:00	울산과학기술 대 114동 강당	입학식	◦2010학년도 울산외국어고 입학식	
3. 8(월) 14:00	창평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창평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3. 10(수) 14:0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개강식	◦주민자치대학 제8기 개강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3. 11(목) 11:00	화봉목욕탕	개소식	◦'장애인 전용목욕탕' 개소식	
3. 15(월) 15:00	송정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	◦송정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	
3. 19(금) 15:00	중산문화센터내 다목적실	개관식	◦중산문화센터 개관식	
3. 22(월) 10:00	의회홍보실	간담회	◦3월 의원간담회	
3. 26(금) 15:00	舊 동해분교	개소식	◦추억의 학교 개소식	
3. 30(화) 10:30	바다행정봉사실	개관식	◦바다도서관 개관	
3. 31(수) 10:30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로비	개소식	◦현대차 미소금융재단 울산지점 개소식	
4. 3(토) 19:00	정자항 일원	개막식	◦제4회 강동수산물축제 개막식	
4. 6(화) 11:00	충혼비 (호봉사 앞)	위령제	◦농소6·25 전몰군경 합동위령제	
4. 9(금) 10:00	기령소공원	기념식	◦제65회 나무심기 행사	
4. 9(금) 19:00	북구청2층 대회의실	개회식	◦2010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회식	
4. 14(수) 11:00	태연학원 체육장	준공식	◦태연학원 체육장 준공식	
4.16(금)~ 4.26(월)	북구의회	임시회	◦제119회 북구의회 임시회 (11일간)	
4. 16(금) 15:00	북구종합 사회복지관	개강식	◦2010년 다문화 여성 배움터 개강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4. 19(월) 11:00	천곡동 정임석 열사 묘	추모식	◦4·19 민주열사 정임석 추모행사	
4. 19(월) 15:00	산하동 7번지	준공식	◦강동화암 주상절리 관광편의시설 조성공사 준공식	
4. 21(수) 17:00	양정동 주민센터	설명회	◦양정동 B-02구역 재개발정비계획 주민설명회	
4. 23(금) 11:00	기박산성 기령제	의병제	◦제11회 기박산성 의병제	
4. 24(토) 10:00	호계초등 실내체육관	대 회	◦제5회 복조리 바둑대회	
4. 28(수) 14:00	쌍용아진 2차@	안전훈련	◦2010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5. 3(월) 10:3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강연회	◦2010 부모교육 대강연회	
5. 4(화) 17:00	북구청 광장	전시회	◦제6회 봄꽃전시회 테이프 커팅식	
5. 5(수) 10:00	북구청 광장	기념식	◦제88회 어린이날 기념 「북구 어린이 큰잔치」 행사	
5. 8(토) 12:3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축 제	◦청소년주간기념 “청소년 직업체험 축제”	
5. 15(토) 10:00	종하체육관 외	대 회	◦북구보육시설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 가정, 정부)	
5. 18(화) 13:30	어르신 행복마을	기념행사	◦행복마을 3주년기념 및 스승의 날 행사	
5. 19(수) 10:20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준공식	◦정부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 준공식	
5. 25(화) 14:00	동대초등 체육관	개교식	◦동대초등학교 개교식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6. 6(일) 09:50	현충탑 광장	추념식	◦제55회 현충일 추념식	
6. 8(화) 13: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세미나	◦2010 쇠부리 국제학술 세미나	
6. 11(금) 11:00	舊 동해초등	대 회	◦제9회 울산광역시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6. 11(금) 19:30	태화강 둔치	개막식	◦2010 태화강 물축제 개막식	
6. 12(토) 08:00	동천초등 운동장	대 회	◦제11회 행복북구 건강달리기	
6. 13(일) 10:00	태화강 용선경기장	대 회	◦제4회 태화강배 전국용선대회 친선경기	
6. 15(화) 10:00	염포동 348-3	개관식	◦염포양정도서관 개관식	
6. 16(수) 18:30	북구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교 육	◦보육시설 교사교육	
6. 17(목) 11:00	새중앙 새마을금고 송정지점	개소식	◦새중앙 새마을금고 송정지점 개소식	
6. 18(금) 19:30	북구청 광장	개막식	◦제6회 울산쇠부리축제 개막식	
6. 22(화) 10:00	북구의회	상견례	◦제5대 당선의원 상견례	
6. 22(화) 14:00	달천운동장	개장식	◦달천운동장 개장식	
6. 24(목) 15:00	바다행정 봉사실	개소식	◦바다행정봉사실 개소식	
6. 25(금) 16:00	북구의회	송별회	◦제4대 의원 송별회	

附 錄

1. 역대 의장단 명단
2. 초대의원 명단
3. 초대의원 사진
4. 제2대의원 명단
5. 제2대의원 사진
6. 제3대의원 명단
7. 제3대의원 사진
8. 제4대의원 명단
9. 제4대의원 사진
10.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이전)
11. 역대 구청장 명단
12.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13.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역대 의장단 명단

□ 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강 동 동	김 성 보	1937. 4. 4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8.7.7 ~2000.2.21	
〃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송 정 동	김 진 영	1964.10.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염 포 동	하 인 규	1959. 9.17	2004.7.7 ~2006.6.30	
제4대 전반기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류 재 건	1961. 2. 5	2006.7.3 ~2008.7.2	
제4대 후반기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윤 임 지	1952.10.15	2008.7.3 ~2010.6.30	

□ 부의장 명단

구 분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송 정 동	윤 두 환	1955. 3. 5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농소3동	박 춘 환	1952. 1.11	1998.7.7 ~2000.2.21	
〃	양 정 동	진 한 걸	1953.11.15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강 동 동	박 광 식	1955.11.15	2000.7.7 ~2002.6.30	
제3대 전반기	농소2동	김 재 근	1958. 9.11	2002.7.9 ~2004.7.6	
제3대 후반기	농소1동	이 재 경	1956. 4.25	2004.7.7 ~2006.6.30	
제4대 전반기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윤 임 지	1952.10.15	2006.7.3 ~2008.7.2	
제4대 후반기	농소2동, 농소3동	문 석 주	1962. 8.27	2008.7.3 ~2010.4.21	
〃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류 인 목	1961.12.30	2010.4.22 ~2010.6.30	

초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강동동	김성보	1937. 4. 4	1997.7.15 ~1998.6.30	환경수도
2	부의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7.7.15 ~1998.6.30	교육사회
3	의 원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7.7.15 ~1998.6.30	운영·건설
4	의 원	농소동	한성두	1941. 3.31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5	의 원	농소·강동 (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7.7.15 ~1998.6.30	운영·내무
6	의 원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7.7.15 ~1998.6.30	내무위원장
7	의 원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간사)·운영
8	의 원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8.3.2 ~1998.6.30	환경수도 (간사)·운영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

초대의원 사진

□ 의장단

강 동 동(면)

의장 **김 성 보**

송 정 동

부의장 **윤 두 환**

□ 의 원

제10선거구

이 상 원

농 소 동(읍)

한 성 두

진 장 동

정 석 수

효 문 동

이 병 우

양 정 동

진 한 걸

염 포 동

조 승 수

제2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8.7.1 ~2000.2.21	전반기
2	〃	농소3동	박춘환	1952. 1.11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보궐)
3	〃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보궐) 및 후반기 의장
4	부의장	강동동	박광식	1955.11.15	1998.7.1 ~2002.6.30	
5	의 원	농소1동	김수헌	1957.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6	〃	농소2동	강혁진	1961.10. 1	1998.7.1 ~2002.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1998.7.1 ~2002.6.30	
8	〃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0.6.8 ~2002.6.30	보궐선거 당선
9	〃	염포동	윤종오	1963. 8.14	1998.7.1 ~2002.6.30	후반기 운영위원장

제2대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윤 두 환**

농 소 3 동

의장 **박 춘 환**

양 정 동

의장 **진 한 걸**

강 동 동

부의장 **박 광 식**

□ 의 원

농 소 1 동

김 수 헌

농 소 2 동

강 혁 진

효 문 동

류 재 건

송 정 동

김 진 영

염 포 동

윤 종 오

제3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2.7.1 ~2006.6.30	전반기 의장
2	〃	염포동	하인규	1959. 9.17	2002.7.1 ~2006.6.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2동	김재근	1958. 9.11	2002.7.1 ~2006.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1동	이재경	1956. 4.25	2002.7.1 ~2006.6.30	후반기 부의장
5	의원	농소3동	김대영	1960. 2. 2	2002.7.1 ~2006.4.10	후반기 운영위원장
6	〃	강동동	윤임지	1952.10.15	2002.7.1 ~2006.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2002.7.1 ~2006.6.30	
8	〃	양정동	류인목	1961.12.30	2002.7.1 ~2006.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3대의원 사진

□ 의장단

송 정 동

의장 **김 진 영**

염 포 동

의장 **하 인 규**

농 소 2 동

부의장 **김 재 근**

농 소 1 동

부의장 **이 재 경**

□ 의 원

농 소 3 동

김 대 영

강 동 동

윤 임 지

효 문 동

류 재 건

양 정 동

류 인 목

제4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재건	1961. 2. 5	2006.7.1 ~2010.6.30	전반기 의장
2	〃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윤임지	1952.10.15	2006.7.1 ~2010.6.30	후반기 의장
3	부의장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윤임지	1952.10.15	2006.7.1 ~2010.6.30	전반기 부의장
4	〃	농소2동, 농소3동	문석주	1962. 8.27	2006.7.1 ~2010.4.21	후반기 부의장
5	〃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류인목	1961.12.30	2006.7.1 ~2010.6.30	후반기 부의장
6	의원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	박병석	1966. 9.25	2006.7.1 ~2010.6.30	
7	〃	농소2동, 농소3동	이은영	1966.10.16	2006.7.1 ~2010.3.22	
8	〃	비례대표	이영희	1963. 7.22	2006.7.1 ~2010.6.30	

제4대의원 사진

□ 의장단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의장 **류 재 건**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의장 **윤 임 지**

농소2동, 농소3동

부의장 **문 석 주**

효문동,양정동,
염포동

부의장 **류 인 목**

□ 의 원

농소1동,강동동,
송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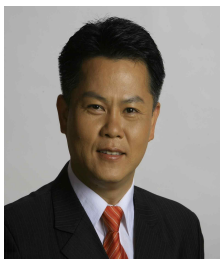

박 병 석

농소2동, 농소3동

이 은 영

비례대표

이 영 희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97.7.15 이전)

연번	직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원	울산시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5.7.1 ~1997.7.14	제5대 경남도의회의원 운영·내무위원
2	의장	울주군 농소읍	한성두	1941. 3.31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울주군의회의장 통합시의회 부의장
3	의원	울주군 강동면	김성보	1937. 4.4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원
4	〃	중 구 송정동	윤두환	1955. 3.5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교육사회위원
5	〃	중 구 진장동	김두헌	1936. 4.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원
6	〃	중 구 효문동	한기찬	1938. 4.3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건설위원
7	운 영 위원장	중 구 양정동	류재락	1945. 8.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위원장
8	의원	중 구 염포동	김춘길	1942. 10.10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
9	〃	중 구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건설위원
10	내 무 위원장	중 구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장
11	의 원	중 구 양정동	진한걸	1953. 11.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운영위원
12	〃	중 구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간사·운영위원

역대 구청장 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직무대행	황 성 환	1948. 2.29	1997.7.15 ~1998.6.30	
2	민선초대	조 승 수	1963. 1.22	1998.7.1 ~2002.6.30	
3	민선제2대	이 상 범	1957. 4.15	2002.7.1 ~2006.5.24	
4	민선제3대	강 석 구	1960. 9.18	2006.7.1 ~2010.6.30	
5	민선제4대	윤 종 오	1963. 8.14	2010.7.1 ~현재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연번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1	사무 국장	지 방 서 기 관	이종영	1939. 9.27	1997.7.15 ~1998.9.30	1998.10.1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
2	사무 과장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8.10.1 ~2001.1.15	〃
3	〃	〃	최종식	1952.10.20	2001.1.16 ~2004.3.5	
4	〃	〃	송태호	1955. 1.10	2004.3.6 ~2006.1.11	
5	〃	〃	이상헌	1955. 2. 6	2006.1.12 ~2007.7.26	
6	〃	〃	홍장희	1956. 7.22	2007.7.27 ~2009.7.19	
7	〃	〃	윤규태	1959. 5.10	2009.7.20 ~2010.7.22	
8	〃	〃	이차범	1955. 9.17	2010.7.23 ~현재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1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7.7.15 ~1998.9.30	
2	〃	〃	이차호	1960.10.26	1998.10.1 ~1999.9.30	
3	〃	〃	성낙화	1952. 5. 5	1999.10.1 ~2001.1.15	
4	〃	〃	김찬수	1955. 9.28	2001.1.16 ~2003.1.27	
5	〃	〃	이상찬	1971.12.25	2003.1.28 ~2006.1.8	
6	〃	〃	박민수	1957. 4.27	2006.1.12 ~2008.7.20	
7	〃	〃	윤규태	1959. 5.10	2008.7.21 ~2009.7.19	
8	〃	〃	김규석	1956. 7.26	2009.7.20 ~2011.2.13	
9	〃	〃	김종구	1956.10. 2	2011.2.14 ~현재	

議政白書 제7집

제4대 후반기

印　刷 : 2010年　　12月　　日
發　行 : 2010年　　12月　　日
發行處 : 蔚 山 廣 域 市 北 區 議 會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
(연암동 1004-1)
編輯處 : 蔚山廣域市北區議會事務課
TEL : 052-289-7160
FAX : 052-219-7549
印刷社 : 인쇄마을/TEL : 052-227-3040